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19-01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2018. 11.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원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이수연 (경남대학교)
이영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 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허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연구보조원 박희수 (이화여자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6
2. 연구 내용	10
3. 연구방법	11
가. 문헌 및 관련 통계 분석	11
나. 실태조사	12
다. 심층인터뷰	15
라. TFT 운영	15
마. 전문가 자문회의	15
4. 연구체계도	16
5. 선행연구	17
6. 기대효과	22
II.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23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25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분석	25
나. 이주민 관련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분석	32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진정사건 등	37
라. 소결	39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40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40
나. 이주레짐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53

다. 이주레짐별로 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56
 라. 시사점 68

Ⅲ.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1

1. 조사개요 73
 가. 조사목적 73
 나. 조사개요 73
 다. 조사항목 73
 2. 설문조사 결과 75
 가. 응답자 특성 75
 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95
 다.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166
 라.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197
 마.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240
 3. 요약 및 시사점 267
 가.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267
 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269
 다.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271
 라.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272
 마. 소결 272

Ⅳ.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75

1. 조사개요 277
 가. 조사 목적 277
 나. 조사 개요 277
 다. 조사 항목 277

2. 설문조사 결과	279
가. 응답자 특성	279
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284
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332
3. 요약 및 시사점	367
가.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사항	367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370
다. 소결	372

V. 심층면접 조사결과 373

1. 조사개요	375
가. 조사목적	375
나. 조사개요	375
다. 조사항목	375
라.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사항	378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379
가. 이주민의 권리	379
나. 사회통합 방안	420
3. 요약 및 시사점	439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439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452

VI. 정책제언 459

1. 법제개선방안	461
가. 공직선거법	461
나. 지방자치법	466

다. 출입국관리법 467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472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0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492
 가.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492
 나.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494
 다.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495
 라.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496
 마.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 497
 바.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499

참고문헌 502

부 록

※ 부록1. 이주민 당사자 설문조사지 509
 ※ 부록2.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지 516

표 목 차

〈표 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4
〈표 I-2〉 국내체류외국인현황과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선거권자	6
〈표 I-3〉 이주민의 참정권	10
〈표 I-4〉 조사 개요	13
〈표 I-5〉 조사 내용	13
〈표 I-6〉 조사 개요	14
〈표 I-7〉 조사 내용	14
〈표 I-8〉 이주민 당사자 및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15
〈표 I-9〉 연구 체계도	16
〈표 II-1〉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_투표권	44
〈표 II-2〉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_피선거권	45
〈표 II-3〉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형태	50
〈표 III-1〉 조사 개요	73
〈표 III-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74
〈표 III-3〉 출신국가별 구분	76
〈표 III-4〉 성별 구분	77
〈표 III-5〉 연령별 구분	79
〈표 III-6〉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80
〈표 III-7〉 경제활동 여부	82
〈표 III-8〉 직업 (1)	83
〈표 III-9〉 직업 (2)	83
〈표 III-10〉 월평균 개인소득 (1)	85
〈표 III-11〉 월평균 개인소득 (2)	85
〈표 III-12〉 월평균 가구소득 (1)	87
〈표 III-13〉 월평균 가구소득 (2)	87
〈표 III-14〉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89
〈표 III-15〉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90
〈표 III-16〉 최초 입국 시기	91
〈표 III-17〉 체류기간	93
〈표 III-18〉 한국어 수준	94
〈표 III-19〉 지방선거 선거권 보유 여부	97

〈표 III-20〉 여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98
〈표 III-21〉 남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99
〈표 III-22〉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01
〈표 III-23〉 여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02
〈표 III-24〉 남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102
〈표 III-25〉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105
〈표 III-26〉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106
〈표 III-27〉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107
〈표 III-28〉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107
〈표 III-29〉 남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07
〈표 III-30〉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0
〈표 III-31〉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1
〈표 III-32〉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2
〈표 III-33〉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3
〈표 III-34〉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4
〈표 III-35〉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5
〈표 III-3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6
〈표 III-3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8
〈표 III-3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8
〈표 III-3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19
〈표 III-4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표 III-41〉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표 III-42〉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2
〈표 III-43〉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2
〈표 III-44〉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3
〈표 III-45〉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4
〈표 III-4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5
〈표 III-4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6
〈표 III-4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6
〈표 III-4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7
〈표 III-5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8

〈표 III-51〉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8
〈표 III-52〉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30
〈표 III-53〉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31
〈표 III-54〉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131
〈표 III-55〉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133
〈표 III-56〉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134
〈표 III-57〉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134
〈표 III-5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137
〈표 III-59〉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138
〈표 III-60〉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138
〈표 III-61〉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0
〈표 III-62〉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1
〈표 III-63〉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1
〈표 III-64〉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43
〈표 III-65〉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44
〈표 III-66〉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44
〈표 III-67〉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6
〈표 III-68〉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7
〈표 III-69〉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47
〈표 III-70〉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49
〈표 III-71〉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50
〈표 III-72〉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50
〈표 III-73〉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52
〈표 III-74〉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53
〈표 III-75〉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53
〈표 III-76〉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155

〈표 III-77〉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156
〈표 III-78〉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156
〈표 III-79〉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SNS, 언론매체 등)	158
〈표 III-80〉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SNS, 언론매체 등)	159
〈표 III-81〉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SNS, 언론매체 등)	159
〈표 III-82〉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61
〈표 III-83〉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62
〈표 III-84〉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62
〈표 III-8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164
〈표 III-86〉 여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165
〈표 III-87〉 남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165
〈표 III-8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보장	168
〈표 III-8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보장	170
〈표 III-9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172
〈표 III-91〉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174
〈표 III-92〉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176
〈표 III-9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178
〈표 III-94〉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180
〈표 III-95〉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 청구권	182
〈표 III-96〉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184
〈표 III-97〉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186
〈표 III-9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188
〈표 III-9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	190
〈표 III-10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192
〈표 III-101〉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1)	195
〈표 III-102〉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2)	196
〈표 III-10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199

〈표 III-10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201
〈표 III-10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203
〈표 III-10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205
〈표 III-10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207
〈표 III-10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209
〈표 III-10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211
〈표 III-11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214
〈표 III-11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216
〈표 III-112〉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218
〈표 III-11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220
〈표 III-114〉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222
〈표 III-115〉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224
〈표 III-11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226
〈표 III-11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229
〈표 III-11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231
〈표 III-11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233
〈표 III-12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235

〈표 III-12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237
〈표 III-12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	239
〈표 III-12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242
〈표 III-12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244
〈표 III-12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246
〈표 III-12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248
〈표 III-12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250
〈표 III-12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학부모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증진지원	252
〈표 III-12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254
〈표 III-13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256
〈표 III-13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할당	258
〈표 III-13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1)	261
〈표 III-13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2)	262
〈표 III-13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1)	265
〈표 III-13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2)	266
〈표 IV-1〉 조사 개요	277
〈표 IV-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관계자 조사	278
〈표 IV-3〉 성별	279
〈표 IV-4〉 연령	280
〈표 IV-5〉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	281
〈표 IV-6〉 이주민 접촉 빈도	282
〈표 IV-7〉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1)	283
〈표 IV-8〉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2)	283

〈표 IV-9〉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	285
〈표 IV-10〉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286
〈표 IV-1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88
〈표 IV-12〉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289
〈표 IV-13〉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0
〈표 IV-14〉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92
〈표 IV-15〉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293
〈표 IV-16〉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95
〈표 IV-17〉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296
〈표 IV-18〉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98
〈표 IV-1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300
〈표 IV-2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301
〈표 IV-2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303
〈표 IV-22〉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304
〈표 IV-23〉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305
〈표 IV-24〉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307
〈표 IV-25〉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308
〈표 IV-26〉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310
〈표 IV-27〉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311
〈표 IV-28〉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313
〈표 IV-2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314

〈표 IV-3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316
〈표 IV-3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317
〈표 IV-32〉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319
〈표 IV-33〉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321
〈표 IV-3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323
〈표 IV-3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325
〈표 IV-3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27
〈표 IV-3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329
〈표 IV-3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331
〈표 IV-3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34
〈표 IV-4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336
〈표 IV-4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338
〈표 IV-4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340
〈표 IV-4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 제도 개선	342
〈표 IV-4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344
〈표 IV-4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346
〈표 IV-4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348
〈표 IV-4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350

〈표 IV-4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352
〈표 IV-4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354
〈표 IV-5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356
〈표 IV-5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358
〈표 IV-5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360
〈표 IV-5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1)	362
〈표 IV-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2)	363
〈표 IV-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1)	365
〈표 IV-56〉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2)	366
〈표 V-1〉 조사 개요	375
〈표 V-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376
〈표 V-3〉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377
〈표 VI-1〉 공직선거법 개정안	462
〈표 VI-2〉 지방자치법 개정안	467
〈표 VI-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471
〈표 VI-4〉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473
〈표 VI-5〉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476
〈표 VI-6〉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479
〈표 VI-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491

그림 목 차

〈그림 III-1〉 출신국가별 구분	75
〈그림 III-2〉 성별 구분	77
〈그림 III-3〉 연령별 구분	78
〈그림 III-4〉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79
〈그림 III-5〉 경제활동 여부	81
〈그림 III-6〉 직업	82
〈그림 III-7〉 월평균 개인소득	84
〈그림 III-8〉 월평균 가구소득	86
〈그림 III-9〉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88
〈그림 III-10〉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89
〈그림 III-11〉 최초 입국 시기	91
〈그림 III-12〉 체류기간	92
〈그림 III-13〉 한국어 수준	94
〈그림 III-1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03
〈그림 III-15〉 [정치적 권리 인식] 종합	108
〈그림 III-16〉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1
〈그림 III-17〉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23
〈그림 III-1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종합	135
〈그림 III-19〉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163
〈그림 III-2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166
〈그림 III-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197
〈그림 III-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198
〈그림 III-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200
〈그림 III-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202
〈그림 III-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204
〈그림 III-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206

〈그림 III-2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208
〈그림 III-2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210
〈그림 III-29〉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종합	212
〈그림 III-3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213
〈그림 III-3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215
〈그림 III-32〉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217
〈그림 III-3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219
〈그림 III-34〉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221
〈그림 III-35〉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223
〈그림 III-3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225
〈그림 III-3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종합	227
〈그림 III-3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228
〈그림 III-3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230
〈그림 III-4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232
〈그림 III-4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234
〈그림 III-4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236
〈그림 III-43〉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	238
〈그림 III-4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종합	240
〈그림 III-4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241

〈그림 III-4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243
〈그림 III-4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245
〈그림 III-4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247
〈그림 III-4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249
〈그림 III-5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학부모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증진지원	251
〈그림 III-5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253
〈그림 III-52〉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255
〈그림 III-5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할당	257
〈그림 III-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259
〈그림 III-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263
〈그림 IV-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종합	284
〈그림 IV-2〉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297
〈그림 IV-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299
〈그림 IV-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종합	318
〈그림 IV-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319
〈그림 IV-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320
〈그림 IV-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322
〈그림 IV-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324
〈그림 IV-9〉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26
〈그림 IV-10〉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328
〈그림 IV-11〉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330

〈그림 IV-1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332
〈그림 IV-1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33
〈그림 IV-1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335
〈그림 IV-1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337
〈그림 IV-1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339
〈그림 IV-1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341
〈그림 IV-1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343
〈그림 IV-1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345
〈그림 IV-2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347
〈그림 IV-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349
〈그림 IV-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351
〈그림 IV-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353
〈그림 IV-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355
〈그림 IV-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357
〈그림 IV-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359
〈그림 IV-27〉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361
〈그림 IV-28〉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364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우리 사회에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책 등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상품, 자본 및 노동력의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는 2백만 명이 넘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대비 6.02%(131,057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은 2017년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2017년 전체 국민인구 51,778,544)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 사실 이주민에 대해 취업, 노동에 관한 권리 보장, 사회복지제도, 교육과정 등에서 소외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불인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에서 배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 이주민의 기본권 미보장은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사회적 통합의 저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우선 단일민족에 기초한 역사관과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은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 다름(different)에 대한 멸시와 경멸,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사회인식의 문제이다. 둘째, 이주민 및 이주민 출신 구성원의 사회적 소외의 문제로서 언어장벽, 종교적

소외,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외,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로서의 소외, 교육과정에서의 소외, 취업에서의 소외 문제이다. 셋째, 노동권과 인권 보장 문제로서 미등록체류자의 노동3권 인정, 인종 및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인 소극적 대응, 미등록체류자의 양산과 장기체류자에 대한 법제도망 내로의 편입제도의 부재, 이주민의 가족이민제도의 부재, 사회보장법의 내국인과 차별적 적용 문제이다. 넷째, 이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불인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에서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 이 중에서도 시민권 및 정치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국가의사 형성과 국가기관의 구성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과정과 결과를 적절히 통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권리는 정치적 질서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 최근 이주민들의 정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도입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생계형 정책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도 정치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법적 인정의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참정권 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개별 법령이 정치활동을 인정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 현행법은 「국적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일정 부분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치활동 그 자체를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강제퇴거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과 누군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여, 보편적 권리를 기반을 둔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연구 목적

-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이 그동안 전시적·시혜적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에 대한 관련 정책, 즉 다문화 정책들을 입안하는 행정부처가 중첩되어 있고, 부처 간의 단기성 시책이 나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경향도 있다. 이주민 관련 정책은 국제협약이나 기준에 따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우리 「헌법」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제6조제2항에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최근 개헌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사회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주민 권리보장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개헌안에서 기존에 국민이 주체가 되고 개별 법령에서 이주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련법령의 규정방식도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들의 권리보장 등의 문제도 재검토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예외적으로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우선 정치활동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 이주민의 범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인구의 약 4% 정도가 국내체류 이주민이므로 이들을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므로, 현행 국내법상 이주민의 법률상 규정된 지위를 검토하여 그 범주를 검토·분석하여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정치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관광이나 방문과 같은 단기체류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으나, 장기체류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또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 및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 우리 현행 법령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의 규정내용이 형식적이 아닌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규정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강행규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 현재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주민의 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사회통합적, 인권적 측면에서 이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인정여부 및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인 공공시설이용권과 균등행정수혜권, 감사청구권과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이주민을 이유로 하는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참여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주민소환권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은 인정하나 피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입장을 선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피선거권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또한 이주민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 관련 해외 선진국가의 법제 및 정책,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출범이후 이주민 통합정책이 일찌감치 이루어져 왔으나 유럽연합회원국 시민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수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 내지 기준 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주민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에 대한 법제 및 정책 등을 그 국가의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명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정도와 요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주민의 지위, 권리, 혹은 정체성으로서의 주민권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정비방안과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이주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로 이주민의 선거권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첫째,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체계도,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 둘째,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법제 현황 및 이에 관련하여 권리 인정여부 등에 대한 해외국가들의 법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셋째,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유학생,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참정권 등 권리인식과 권리요구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욕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다.
- 넷째, 이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업무담당자, 시민단체 등의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참정권 등 권리에 대한 인식, 권리요구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욕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다.
- 다섯째, 이주민의 참정권 부여 등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시의원, 국회의원, 이주민당사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검토·분석한다.
- 여섯째, 이주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방안을 위해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관련 통계 분석

- 이주민의 기본권 인정 등 권리에 관한 현황, 정치적 활동, 사회통합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행정문건, 통계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 이주민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 사회통합 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제,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진정 등에 대한 검토·분석
- 해외사례 연구로, 국내 이주민 참정권 인정여부 등에 대한 법제 등 사례 검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현황 등을 검토·분석

나. 실태조사

- 설문조사의 객관성, 정확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개발을 하고 연구진 등의 참여하에 조사를 수행함.
-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결혼이주민,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이주노동자 등 9명).
- 대상자 선정은 지역, 연령, 성별, 체류자격, 국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조사 수행함.
- 설문지는 이주민이 많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일본과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실시함.
- 이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주민 433명(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미등록체류자 등 포함)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전국의 참여기관의 협조로 진행되었음(경남부산권 34부, 경북대구권 25부, 전남권 11부, 전북권 18부, 충청권 113부, 경기권 139부, 인천권 46부, 서울권 47부 등).
- 이주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주민 업무담당자 109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전국에 걸친 기관들의 협조로 진행되었음(부산권 6부, 전남권 12부, 충청권 16부, 서울경기권 28부, 중앙정부 4부, 지방자치단체 31부, NGO 4부, 출입국관리사무소 4부 등).

다. 심층인터뷰

- 이주민 설문조사 및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주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다문화관련 업무담당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라. TFT 운영

- 이주민의 참정권 관련 법제 및 정책발굴을 위해 학계전문가, 변호사,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TFT 운영

마.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단계별로 연구진행에 대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4. 선행연구

- 우리 학계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이주민이 폭증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반해, 한국 학계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이고 확립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관련 연구들은 첫째,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내용, 추진체계,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 정책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정책 실효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 둘째,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관련 정책적 대안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다문화사회 진입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통합정책의 필요성, 한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사회통합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인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7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 이주민 인권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이주민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주민 그룹별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수요와 의견을 살펴보고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의 도입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이상우(2011)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정치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선호를 표현할 정치적 권리가 확보되고 그들의 이익을 표명할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정권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외국인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정상기(2018)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도 유럽연합회원국의 시민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이주민에게까지 지방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저하고 있는 등, 외국인에게까지 피선거권까지 인정하는 국가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 역시 성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한다.
- 반면 이상우(2011)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의 제도적 정치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부여를 제안한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후보의 부적합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 임희선·김경제(2017) 역시 이주민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피선거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경우 단지 제한적으로만 선거권을 가질 뿐 스스로 후보자가 되고 당선되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원천 봉쇄되어 있다. 그런데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를 때 신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

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정상우(2016)는 이주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역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모임 또는 회의체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박해욱·윤영근(2018)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 참여 외에 이주민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주민 단체의 조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주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참정권 등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인권보장 및 다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기대효과

- 이주민의 지위와 이들에 대한 인식,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 증진에 관련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이주민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주민 관련 권리증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개선방안, 서비스 욕구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주민 권리 강화 자료로 활용
- 체류자격별 등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이주민 인권보장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II.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분석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정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상호주의는 한국사회에 현재와 같이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어 정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주장이다. 「헌법」 제6조 해석에 의하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차이성의 존중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갈등적 대립적 사태로 전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소와 조정이 필요하다.
- 또한 모든 법과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차이의 존중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실질적 평등원리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만이라도 허용하려는 추세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공직의 피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과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제17조제2항), 그 위반의 경우 강제퇴거의 사유가 된다(제46조제1항제8호).
- 현행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정치적 권리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정되는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소환투표권,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권 정도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나. 이주민 관련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분석

-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인정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루거나 문제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다는 입장이나, 평등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며, 사회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이지만 아울러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진정사건 등

-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 인정여부에 대해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또는 권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원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경우가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있고, 그 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의무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던 바 있다.
-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있으며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소결

- 「헌법」은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어 정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차이성의 존중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갈등적 대립적 사태로 전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소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외국인은 「헌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에 대하여 현행법은 이주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극히 한정된 범위의 권리만을 인정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민들은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단계에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그러므로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타자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이들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 권리의 식제고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 실제로 국가들 간에 외국인 선거권의 행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선거권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있고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유럽연합회원국 국적자에게만 지방의회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과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영연방국가 국적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다. 지방의회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반면 중앙의회의 경우에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더욱 제한적인데 중앙의회는 더욱 제한적이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유럽연합회원국간에는 상호간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의회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나미비아, 슬로베니아가 있고, 영연방 국가들 간에 중앙의회에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그레나타, 모리셔스, 앤티가 바부다, 영국, 자메이카가 있다.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지방의회와 중앙의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에도 그 요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와 뉴질랜드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모든 정주 외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중앙선거에서 투표권을 부

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우루과이는 이주민이 15년 간 우루과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1년만 거주하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 모든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주민에게 요구하는 거주기한이 다르며 또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이주민이 지방선거권 획득을 위해 합법적으로 3년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나라인데 영주 자격을 획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며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일랜드는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3년 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투표(national referenda)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보인다.
- 일부 국가들은 특정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회원국들이다.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1992년에 서명, 1993년에 효력 발생)에 의해 유럽연합시민권이 도입됨에 따라, 유럽연합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할 때 그 국가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 이외에 식민지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영국은 영연방국가와 아일랜드의 국민들에게만 지방 및 중앙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상호호혜조약을 맺은 10개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3년 간의 거주요건(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2년)을 충족시키면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특히 브라질 이주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등을 위한 특별법령에 의거해서 중앙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프랑스나 스위스처럼 정부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또는 호주나 미국처럼 시행했다가 폐지한 국가가 있다. 독일은 일부 주에서 주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이

주민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흐름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주레짐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 국가의 이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사회 속에서 통합되었는지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과 이민국가로서 원래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근대 국가가 이루어진 국가로서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 이주민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민이 되어야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 두 번째 유형은 오래전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주레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손님노동자 레짐(Guest worker Regime), 식민주의 레짐(Colonial Regime), 혼합형(Hybrid Regime)이 그것이다.

다. 이주레짐별로 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 첫 번째 손님노동자 레짐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이 노동력의 부족이어서 외국인 이주민을 노동자로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영구히 그 국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하러 왔다가 돌아갈 것으로 상정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인 방식이다. 해당 국가로서는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이 경우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노동력이 필요했던 전후 독일은 해외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베를린 장벽이 건축된 1960년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이 보다 분명해지면서 양자적인 손님노동자협정을 기초로 하여 해외 노동자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가족 재결합이 허용된 이후에도 재결합을 위해서 독일에 입국한 노동자의 피부양자들에게는 임시 거주 허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정치적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 두 번째 식민주의 레짐으로 20세기 이전에 유럽국가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혹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식민모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특별한 관계의 일환이 식민지로부터 식민모국

으로 이주할 때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서, 영연방국가나 아일랜드로부터 영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민에게 영국국민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이다.

- 영국의 식민주의 레짐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인들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이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에 참전했던 폴란드인 12만 명 정도는 전후에 영국에 남았고 10만 명에 달하는 발트해 및 동유럽국가출신의 노동자들 역시도 전후에 영국에 남았다. 이들에게는 1년짜리 노동허가증이 주어졌고 초기에는 피부양자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곧이어 1947년 이후부터는 피부양자를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자격으로 노동이주가 허용되었고 전후 남은 노동자들보다는 다소 나아진 조건으로 노동허가가 주어졌다.
- 아일랜드인은 이미 과거부터 그래왔던 대로 영국으로 노동이주를 계속해왔다. 1948년 영국 국적법에 의해서 카리브연안 국가들과 인도양 인근의 영연방국가의 시민들은 영국에 와서 정주하고 가족동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영연방국가 시민은 영국 국적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 세 번째는 혼합형으로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 형태는 식민주의 레짐과 손님노동자 레짐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식민지로부터 이주가 발생하지만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동허가를 받거나 손님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프랑스에서 이민을 관장하는 국가이민사무소(Office National d'Immigration)가 생긴 것이 1945년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이주, 노동 그리고 거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장하였다.
- 초기에는 인구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인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에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민이 급증하자 1955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이주에 대해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프랑스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국인의 노동이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족재결합만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프랑스의 외국인 이주정책은 단일한 체제를 가진 것이 아니고 구식민지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프랑스 해외영토 거주자로부터의 이주, 양자적인 계약에 의한 이주 등 다양한 제도들이 공존하는 형태이다. 1962년까지 알제리는 프랑스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에도 에비앙협정에 따라서 알제리로부터의 프랑스로 이주하는 것에는 어떠한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튀니지와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과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이 국가들로부터의 이주가 받아들여졌다.

- 1987년 유럽공동체에서 유럽단일의정서가 통과되면서 인적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가들로부터의 노동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 프랑스로 일하기 위해서 이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간에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자가 아닌 이주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이 진행되었다.

라. 시사점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가들 내부에는 점차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주 기간도 상당히 다양하며 정주 형태도 다양하고 정주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결과로 인한 이주 혹은 노동을 위한 인력의 이동으로서의 이주에 한정되던 시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주로 인한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의 성격 변화는 이주민들의 권리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이민이 전제되어 국가가 형성된 국가로서 이민으로 인하여 시민권(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라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독일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주 성격의 변화는 점차 혈통주의(jus sanguinis)와 출생지주의(jus soli)가 혼합된 형태로 권리가 주어지고 있으며 국적 취득의 요건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
- 이미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비시민의 권리 사이의 분명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져 왔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인 ‘자유(Liberty)’, ‘재산(Property)’, ‘안전(safety)’(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 선언 제2조)은 원래는 시민의 권리였지만 이제 더 이상 배타적으로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는 아니며 국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시장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는 연금, 실업수당 혹은 건강 및 산업재해 보장과 같은 권리들

역시 시민에게 국한된 권리는 아니다. 서구의 복지국가 원칙은 기본적으로 영토성에 기반하고 있다. 근대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자비’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빈민구제와는 달리 영토에 기반한, 정해진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민족국가 속에서도 개인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더 이상 국적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인 것이다.

- 그렇다면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영국의 ‘납세자 정권’하에서 정치적 권리는 시민의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권리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권리의 보장도 불가능하며 시민의 권리 보장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주가 보편화되고 그 이주의 성격이 다원화되면서 반드시 귀화를 통해서만 영토내의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점차 정치적 권리를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논리를 근거로 두고 있다. 첫째,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권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이주민의 정치참여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의 역량을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내에서 의견을 말하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주민은 일을 하면서 혹은 그 사회에 정주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유럽에서 유럽연합회원국가 출신의 이주민과 비유럽국가 출신 이주민 사이에 이주민이라는 신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 최근의 논쟁 속에서 나타난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의 선거권 허용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소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권은 국가의 국민이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진정으로 그 국가에 애착을 가

지고 있다면 귀화를 통해서 이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면 귀화에 대한 동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에게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외국인의 이익과 내국인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어 국가가 분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이 단위가 되어 국가를 이루는 동인으로서 전제되어 있는 민족주의 이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인의 전면적인 투표권 부여는 민족국가의 경계가 뚜렷한 오늘날의 시대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보다 생활정치적이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직접적인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지방선거에서는 국적을 초월하여 거주민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볼 문제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주민은 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와의 동화 및 통합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당사자는 이주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유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사지역은 전국을 안배하였으며, 응답은 이주민 당사자의 경우 433명이 회수되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다.
- 이주민 당사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가.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 선거권 보유와 관련 질문에서, 현행법상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 1.5%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각각 1.5%와 3%이다. 또한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름’ 24.2%에 달했다. 이는 선거권이 있음에도 제대로 교육 또는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향후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체류형태별 투표경험은 ‘귀화자’가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6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화자의 투표율은 지방선거 국내 전체 투표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별 투표경험도 성별로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여성’이 87.5%로 투표를 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0.0%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시간이 없어서’(25.0%),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가 각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53.8%)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에 포함된 권리는 일정 자격을 보유한 이주민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 권리들에서 ‘있음’이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 등에게도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인식 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틀린 답변을 선택하거나 ‘모름’ 이나 ‘무응답’을 선택하여 답변을 유보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이주민 당사자는 권리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미 확립되어 있는 노동권 등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거나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1)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제도의 균등한 적용’(68.8%), ‘국적 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67.7%), ‘국적 취득에 관계없이 교육권 보장’(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58.4%), ‘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이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5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서 보듯이 권리보장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저조함에 비해,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사 대상 질문에서 모두가 절반 이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사회보장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제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체 및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자유권, 노동권), 공무원임권도 그 요구도가 높다.
- 전체적으로 이들 질문에 대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는 다른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을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요구정도에서 성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성’이 70.1%로 ‘남성’(6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 등 E-9의 체류자격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아, 이동의 자유의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남성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은 F-2(거주)가 가장 높았고, F-5(영주), F-6(결혼이민)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6%로 ‘남성’(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 이주민의 권리 필요 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체류형태별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0%)과 미등록체류자(27.3%)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3.0%, F-6(결혼이민)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24.2%, F-5(영주)(48.3%), D-2, D-4(유학생)(27.3%), 귀화자(39.3%)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48.3%, F-2(거주)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각 36.8%, 난민은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40.0% 등으로 가장 높았다.

라.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46.7%,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5.7%,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4.8%,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4.1%,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43.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4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7.7%)에 비해 남성(22.7%)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45.3%,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3.9%,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42.5%,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민의 고용악화’ 42.3%, ‘이주민 범죄의 증가’ 40.6%,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39.5%,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3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관련하여 걱정하는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권리보장으로 한국인이 우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은 모두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동의 정도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37.4%,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37.2%,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36.0%,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33.5%,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 32.6%,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32.3%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복지혜택이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 외에도, 이주민이 가지는 공포 중 하나는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는 가족동반 불허 등과 같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보다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7.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45.0%,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43.9%,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8.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7.4% 등으로 나타났다.
- 이주민이 원하는 권리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권리공유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주민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IV.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는 팩스와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사지역은 전국을 안배하였으며, 응답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는 109명이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실시되었다.
- 이주민 관계자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 이주민의 권리 보유 관련하여 ‘등록 외국인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는 ‘있음’ 15.6%, ‘없음’ 74.3%이고,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있음’ 73.4%, ‘없음’ 8.3%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있음’ 33.0%, ‘없음’ 36.7%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있음’ 22.9%, ‘없음’이 36.7%이다. ‘등록 외국인인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이 37.6%, ‘없음’이 45%이다. ‘등록 외국인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있음’ 84.4%, ‘없음’ 6.4%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는 ‘이다’가 45.9%, ‘아니다’가 32.1%이다.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 26.6%, ‘없음’ 49.5%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있음’ 44.0%, ‘없음’ 37.6%로 나타났다.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에 대한 질문에서 근무기관별 권리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5%), ‘지방자치단체’(9.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1%)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에서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5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길수록 권리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로 구분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등록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를 관할하거나 관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련 업무만을 주로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5점)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25점)은 인식정도가 높았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각 3.10점), ‘중앙정부’(2.50점), ‘출입국관리사무소’(2.25점)는 상대적으로 인식 정도가 낮았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과 자신이 속한 각 기관의 업무적인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정도’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23.9%, ‘인정받지 못한다’는 40.4%였으며, 평균은 3.21점이다(5점 만점).
-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4.55점으로 이주민이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2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각 3.10점), ‘중앙정부’(2.50점), ‘출입국관리사무소’(2.25점) 등의 순이다.

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 이주민에 대한 권리의 인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각 기관별 입장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계자는 각 50%, 12.5%만이,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전면보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 관계자는 각 50%, 25%만이,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

동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 그러나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은 중앙정부 관계자 37.5%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등 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이주민에 대한 공무담임권 인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50%)와 중앙정부(37.5%), 사회보장관련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아동수당과 보육권의 인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37.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중앙정부 관계자는 권리인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 또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은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의 긍정적 입장을 보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는 6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 한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는 모두 60%대 이상이 인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60%대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인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축제 등 참여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보상 전체 답변 중 ‘보통’이 17.4%임을 감안하면, ‘반대’는 9.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 수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따라서 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다소 그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다만, 중앙정부 등 정부기관은 비정부기관에 비해 권리 인정에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행법상 권리 인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입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 미등록체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간에 분명하게 갈린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대학입학기회 부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에서 각 2.71점과 2.25점으로 상대적으로 권리인정에 소극적

인 입장을 보인다.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이 50%임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각 22.6%와 0%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보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기본권 인정과 관련하여, 더욱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치적 참여 확대는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이 0%, 지방자치단체 9.7%,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0%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72.7%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미등록체류자의 권리인정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미등록체류자와 다른 등록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는 0%, 지방정부는 9.1%만이 긍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이주민지원 NGO 등은 72.7%, 75%가 긍정하고 있어, 각각의 기관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긍정에 대한 답변도 차이를 알 수 있다.
- 다만, 미등록체류자라 하더라도 긴급의료비 지원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11.9%에 불과하여, 건강관련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이주민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미등록체류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권리 인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인정은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치는 영향

-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인 적극적인 경제참여,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긍정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0.9%만이 답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거의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인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관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중앙정부에서는 복지

비용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3.2%정도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16.5%, 보통이 30.3%에 달하고 있어,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28.4%, ‘보통’이 41.3%임을 감안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37.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2.0%였으며, ‘보통’이 39.4%를 보여 유보적인 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 증가와 외화 유출 등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향이 약간 강했으나, 이주민 범죄는 32.1%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17.4%),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13.8%),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각 8.3%),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6.4%),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2+3 순위 기준)으로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60.6%),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46.8%),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35.8%),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27.5%),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각 16.5%) 등의 순이다.

V. 심층면접 조사결과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로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당사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주민 관계자의 경우 민간 기관과 정부기관을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만 앞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심층면접의 경우 이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여서 실시하였다.
- 이주민 당사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주민 관계자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에 관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가. 이주민의 권리

-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치적 권리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유무에 앞서, 정치적 권리에 관심이 없는 이주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정보나 후보자들의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 이주민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이주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개별 법령이 정치활동을 인정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하에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가능하나 이주민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며,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주민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 전문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의 권리를 이주민을 위한 중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문제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인권 내지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대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주요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현재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주민의 단체설립·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도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등은 각각 다르다.
- 면접자들 중 몇몇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권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면접자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면접자들이 많았다.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 이주민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제어할 제도가 없다는 점,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권리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점, 한국이 아닌 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주민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 면접자는 이주민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사례를 통하여 이주민 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활동에 관하여는 상당수의 면접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주민이 각종 자문활동과 입법활동을 하

는 것, 의견개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주민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았다. 반면, 공무수행 능력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면접자들도 있었다. 또한 이주민 관련 업무는 누구보다도 이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업무에는 이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필요에 의해 점점 개방이 되고는 있지만, 국가안보 등 국가의 비밀정보를 담은 업무에는 이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러한 사업장 이동 제한은 오히려 사용자 등의 부당행위를 조장하여 이주민에게 굴레가 되고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사업장이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해진 업무만 해야 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체류 관리의 필요성, 예측가능성, 규정된 비자타입 등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주민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세금 또는 보험금을 내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입 자격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제방안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관광 목적으로 여행 온 외국인에게까지 해당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권리를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다.
- 많은 면접자들이, 세부적 견해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다는 견해, 한국에서의 아동수당은 일관적인 진행이 어렵고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 동등하게

지급할 경우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이 받는 수당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미등록체류자의 자녀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들의 보육권 및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몇몇 전문가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면접자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미등록체류자들에게까지 정치적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한다.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들은 재난시 보상, 지역사회 내 참여 및 미등록체류 아동의 교육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것들을 긍정한다. 다른 한 면접자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 등록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더라도, 긴급의료비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사회통합 방안

- 면접자의 대부분이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주민 차별 완화, 문화의 다양성,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다수 면접자들은 이주민의 차별이 완화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 많은 전문가들이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불허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위원회에 이주민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하여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 등 단체에의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에 이주민 대표 또는 이주민 할당을 두는 적극적 정책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그러한 권리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주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준다면, 이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이주민은 자신의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에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도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으므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행사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및 홍보 작업이 시급하다.
-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수 면접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학교 등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나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이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주민 역시 이주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 정책제언

1. 법제개선방안

가. 공직선거법

1) 이주민의 선거권 부여 요건 완화

가) 현황

-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일명부작성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주민들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5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정주한 사람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3년을 더 거주하게 한 것은 너무 요건이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이를 영주자격 체류자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하고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묶어내려는 거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주민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03.11. 91헌마2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의 자격을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개선안

-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당사자들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신이 보유한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5.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3.2%,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5%,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4%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요구도에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각 55.0%,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53.3%,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52.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5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권리의 필요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

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따라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확대가 요구된다.

〈표 VI-1〉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제15조(선거권) ① 생략</p> <p>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p>제15조(선거권) ① 생략</p> <p>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피선거권 인정여부 검토 필요

가) 현황

- 「공직선거법」상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립된 태도는 없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주권행사의 한 양식임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 이주민도 주민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면 피선거권도 일정한 요건을 두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피선거권을 심도있게 다루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통합차원에서 정

주이주민의 피선거권은 국정선거차원과 지방선거차원으로 구분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차원의 선거에 정주이주민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방차원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라 본다.

-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의 행사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제한의 합헌성심사에 선거권과는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평등선거 원칙에 의해도 신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연령 혹은 거주요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뿐 신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다.

나) 개선안

-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46.7%,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5.7%,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4.8%,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4.1%,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43.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보아도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 선거권을 갖는 이주민의 경우는 피선거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이 주권자의 권리로서 동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주민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계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하면 정주이주민에게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를 행하므로 국민주권과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도 할 수는 있기는 하다.
- 노르웨이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

아,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인도 등의 국가는 일부 제한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이라고 피선거권을 배제하기 보다는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책임 있는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무를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이주민의 피선거권 인정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나 그에 대한 제한요건이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

가) 현황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로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도 주민의 자격이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로서 제13조제1항에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법에서 주민의 권리로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13조제1항), 지방선거참여권(제13조제1항), 주민투표권(제14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5조), 감사청구권(제16조), 주민소송청구권(제17조), 주민소환권(제20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다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동일한 요건 하에서 주

민소환투표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의 요구를 하지 않아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개선안

- 우리 법제는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여 19세 이상으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국민인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VI-2〉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출입국관리법

가) 현황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위험이 크다. 아직은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아 강제퇴거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실제로는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치활동"이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정

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른 법률상 규정된 “정치활동”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예시 문구도 없어 입법취지 및 관련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곤란하다. 결국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과 양립하기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연혁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1977년 전부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당시 개정이유는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류증대에 따라 출입국자의 수가 격증하고 있어 내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실정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며, 제23조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05년 3월 24일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제17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같은법 제17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이주노동조합의 지도부를 표적단속하거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입국당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에서 집단행동, 집회참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을 듣기도 한다. 그리하여 「출입국관리법」의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모르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음은 알고 있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정치활동”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그 안에서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허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85년 UN총회는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을 채택하여 모든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거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나) 개선안

- 정부는 동 조항에 대해 혐의의 참정권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경우도 있으나, 그 해석론의 근거를 찾기 힘들며 그렇게 해석한다면 무용한 조항에 불과하다. 실제로 동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위 조항의 존재로 인해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어 문제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정치행위를 자제할 것을 학교 담당자가 요청한 사례,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법무부 난민과 직원들이 위 조항을 예시로 들며 정치활동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 등이 있다. 사실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 조항에 의해 위축되는 것도 활동가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문제이다.
- 이주민의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제한에 엄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즉, 이주민의 경우 선거활동은 다소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특히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강제출국의 처분은 과도하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출국은 보통 수년간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특히 이미 한국 사회 내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한 이주민의 경우, 강제출국은 이러한 기반 및 관계가 일순간에 모두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정치활동의 ‘금지’는 강제출국 등과 같은 고강도의 ‘불이익’과 결합하여 위축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 강제출국 등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모호한 개념의 정치활동으로 강제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외국인 관련 행정편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p> <p>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p> <p>1~7. 생략</p> <p>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p> <p>9~14. 생략</p> <p>② 생략</p>	<p>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p> <p>1~7. 생략</p> <p>8. 제17조제1항·삭제,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p> <p>9~14. 생략</p> <p>② 생략</p>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정 참여 내용 규정

가) 현황

- 이주민들과 관련된 조례의 명칭도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명하면서 거주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광역단체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이다. 이외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고 명하면서 거주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

화가족에 대해서는 별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

- 이주민에 대한 관련 조례 내용에서 이주민 지위에 대한 조항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선안

- 이주민들의 ‘권리 필요이유’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등이 광역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주민 등에 대한 행정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을 인정하는 것은 광역단체 등의 행정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단체 등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 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VI-4〉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예: 서울시)

현행법	개정안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2) 협의회 등에 참여규정

가) 현황

-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주민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한다고 반드시 해당 지역 내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거버넌스가 창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접촉 지점을 늘리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조직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 법적인 권리 이전에 지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성원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세금 논쟁이 많은데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지방자치에 주는 교부금이 주민 수에 비례하여 주는 것인데, 거기에 이주민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주민은 세금은 내는데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통로가 닫혀 있다. 예를 들어, 구로중학교의 30%, 대동초등학교의 1~2학년 90%가 중국동포인데,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에 중국동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냐 하면 단 1명도 없다. 사실 선거권, 피선거권 이전에, 동네정치에서도 비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

기운동 등 관변단체 어디에도 이주민이 없는데,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이야기하려면 그러한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안

- 우선 지자체의 이주민지원조례상의 협의회 구성시 이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기간과 범위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 또한 현재 우리 법제상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달리 보고 있고 광역지자체 중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외국인주민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상의 협의회 및 위원회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표 VI-6〉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예: 서울시)

현행법	개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 현황

-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2017년 현재 이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으로 거주외국인의 10.8%에 해당한다. 자녀의 연령대는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 56.4%(113,506명), 초등학생(만 7~12세) 28.2% (56,768명), 중고생(만 13~18세) 15.4%(31,059명) 등이다. 행안부 통계는 결혼이주민과 등록된 거주외국인 등의 자녀에 대한 통계이므로 실지로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수는 이 통계보다 많을 것이다.
- 이주민의 상당수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법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회는 학교전반에 대한 중요 모니터링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 의견전달이나 학교행사 등에 학부모 참여 독려 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안

-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지 조사결과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은 과반수인 53.6%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하였다. 이주민 당사자나 관련자 등의 인터뷰 결과를 보아도 학부모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이주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주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등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법규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무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위원이 구성원의 40% 내지 50%를 구성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이주민을 고려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이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근거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무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부모위원 40% 내지 50%를 구성시 성별, 이주민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법	개선안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p> <p>2~3. 생략</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p> <p>① 생략</p> <p>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 구성시 성별, 이주민 등을 고려한다.</p> <p>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p> <p>2~3. 생략</p> <p>③-④ 생략</p>
<p>학부모회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p>	<p>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회에 법적 근거 마련하여 학부모회의 학교참여활동을 기반조성하고 학부모회 구성시 성별, 이주민에 대한 내용 규정 필요함</p>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가.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에 포함된 권리는 이주민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일정 자격을 보유한 이주민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 권리들에서 '있음'이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정권 등에 대한 자신의 권

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등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 등에게도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인식 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현행법상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 94%가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나머지 1.5%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각각 1.5%와 3%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화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름’ 24.2%에 달했다.
- 이는 선거권에 대한 보유인식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교육 또는 홍보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한국민의 경우에도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 이주민은 국적 취득자,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제도적으로 정치참여가 보장된, 한국사회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 단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 이주민의 층위가 다 다르다. 귀화자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면, 국적을 취득해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다. 어떤 제한도 없이 다 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말, 응급처치 정도만 배우고 정당 지지나 그런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별 그룹, 생애주기에 맞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므로 이주민의 참정권, 정치권에 대한 교육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해뿐 아니라 조금 더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 정당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정당방문, 마을정책에서 요구도 등을 발표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인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류형태별 투표경험을 보면 ‘귀화자’가 90.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5(영주)’의 투표율은 63.6%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류형태별로 F-5(영주)(58.3%)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F-5(영주)’(55.6%)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F-5(영주)’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은 앞서 F-5(영주)의 경우 투표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선거에 대하여 그 나라 언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정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거에 관련된 정보제공을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참여나 지역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중 언어적 장벽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선거공보(온라인이나 각 선거단위별로) 또는 선거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나, 주민투표 관련한 부분 등에서 한국어 비숙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치하면 좋을 것 같다.
- 선거절차는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 후보자 공보물에 대하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지방선거 등에서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국가가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재난방송과 같은 경우는 다

양한 언어로 송출할 필요가 있다. 응급상황에 대피 등을 할 수 있게 재난 방송, 라디오 등은 다국어로 방송하여야 한다.

- 이처럼 이주민의 참정권 행사 등을 위해서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선거관련교육을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민 강사도 있고, 이주민 대상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와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7.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45.0%,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43.9%,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8.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7.4% 등으로 나타났다.
-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뿐만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시기가 길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해 지방의회나 구의회 등에서 일부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주민이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선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에 일정비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일정비율 의원으로서 참여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라.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 이주민 기본권의 범위가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아동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

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동이 전 인류의 미래라는 점, 아동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였다면 그 책임은 그 아동이 거주하고 성장한 국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국가의 책임은 자국 국적 아동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교육권은 물론, 보육권 또한 교육의 전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양질의 양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국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배제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보육법」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3조제3항)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보육예산(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5세 한국 국적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난민아동을 제외한 외국국적의 아동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높은 보육료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육기관의 보육서비스는 유아의 성장 발달, 한국어 습득 및 정규 교육 준비를 위해 필요한데, 적절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주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지적능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주아동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육지원 및 이후 교육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이주아동의 한국 사회통합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주아동 가족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이주아동의 보육권 및 교육권이 중요한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을 불가피하게 본국의 친척에게 보내어 맡기는 등 비자발적인 가족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관련하여, 이주민들의 권리요구 정도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10년 가까이(4년10개월+4년10개월) 한 사업장에 묶어놓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능에 가까우며,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 또한 모두 사업장변경사유가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요건(예를 들어 30%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사유가 된다.
-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동안에만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만 수급자로 선정되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는다.
- 고용허가제의 기본 전제가 정주화 방지 및 (노동력의) 단기순환정책이므로,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가 쉽게 감춰지고 구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이주노동자를 소외, 차별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결혼이주민과 난민 인정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임신 또는 양육, 국민의 양육” 등의 기여를 기준으로 수급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성격은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부 이주민들을 배제시키고, ‘권리’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구획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
- 그러므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인권중심 차원에서의 사회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법과 정책의 검토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바.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1+2+3순위 기준)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55.2%),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38.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24.9%),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23.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14.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12.9%),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시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선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주민의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서로간의 만남이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체계도
5. 선행연구
6. 기대효과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정책 등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상품, 자본 및 노동력의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는 2백만 명이 넘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¹⁾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대비 6.02%(131,057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은 2017년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2017년 전체 국민인구 51,778,544)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한 국가에 이주민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도적, 개인적 또는 문화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고학력자의 증가,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고임금화, 자국민의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 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이주결혼의 증가 및 세계화로 인한 ‘국제 혼인의 증가’가 이주민의 증가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의 증가 추세는 저출산·고령화 및 국제 혼인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공급자 증가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정책에서 이제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1-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류외국인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인구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84%	3.08%	3.50%	3.69%	3.96%	4.21%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8면.

그렇다면 현행 법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사회통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미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이주민에 대해 취업, 노동에 관한 권리 보장, 사회복지제도, 교육과정 등에서 소외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불인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에서 배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기본권 미보장은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사회적 통합의 저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우선 단일민족에 기초한 역사관과 다문화에 대한 배타성은 순혈주의에 기반을 둔 이민족에 대한 배타성, 다름(different)에 대한 멸시와 경멸,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사회인식의 문제이다. 둘째, 이주민 및 이주민 출신 구성원의 사회적 소외의 문제로서 언어장벽, 종교적 소외, 경제적 약자로서의 소외,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로서의 소외, 교육과정에서의 소외, 취업에서의 소외 문제이다. 셋째, 노동권과 인권 보장 문제로서 미등록체류자의 노동3권 인정, 인종 및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법·정책적인 소극적 대응, 미등록체류자의 양산과 장기체류자에 대한 법제도망 내로의 편입제도의 부재, 이주민의 가족이민제도의 부재, 사회보장법의 내국인과 차별적 적용 문제이다. 넷째, 이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불인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에서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도 시민권 및 정치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어야 한다. 정치적 기본권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국가의사 형성과 국가기관의 구성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과정과 결과를 적절히 통제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권리는 정치적 질서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따라서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최근 이주민들의 정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입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존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생계형 정책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민들에게도 정치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법적 인정의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²⁾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참정권 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개별 법령이 정치활동을 인정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현행법은 「국적법」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일정 부분에서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치활동 그 자체를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강제퇴거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 이주민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을 갖는 비율을 보면 아래의

2) 장서연(2009), “사회권관련 국내법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권 워크숍 자료집」, 172~173면.

표와 같이 매우 낮아서 이주민의 거주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국내체류외국인현황과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선거권자

(단위 : 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체류외국인	1,445,103	1,575,034	1,797,618	1,899,519	2,049,441
인구	50,948,272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비율(%)	2.84	3.08	3.50	3.69	3.96
※ 2014년 선거 :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선거권자 비율 2.694% (48,428/1,797,618 x 100)					

출처 : 정상기(2018),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43면.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과 누군가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참정권의 규정형식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기본권인 자유권과는 달리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선거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형성을 필요로 한다.³⁾

따라서 이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여,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연구 목적

이주민의 확대와 다문화의 진행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시적인 영역을 형성해 왔

3) 임희선·김경제(2017),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일 고찰 -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36면.

고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 구조의 일부로 자리 해 왔으므로 이주민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의 인정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정책적 차원을 넘어 법제도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게 일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과 제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사회적응 지원, 상호문화 존중을 넘어 권리에 기반한 이주민 당사자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 수단이 제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은 그동안 전시적, 시혜적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에 대한 관련 정책, 즉 다문화 정책들을 입안하는 행정부처가 중첩되어 있고, 부처 간의 단기성 시책이 나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경향도 있다.⁴⁾ 이주민 관련 정책은 국제협약이나 기준에 따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하고,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헌법」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제6조제2항에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최근 개헌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사회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주민의 권리보장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이주민의 지위의 기준도 모호하고 상호주의, 출입국 통제 환원론 등 이주민 기본권을 배제한 논리들에서 벗어나 국제인권법이 표방하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내 외국인 평등주의 등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주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이주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개별기본권의 경우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1083등). 또한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나 이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헌법

4) 임희선·김경제(2017), 위의 글(주 3), 130~131면.

재판소 99헌마494; 2011헌마 474,476(병합)) 참정권과 같은 관련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에서 기존에 국민이 주체가 되고 개별 법령에서 이주민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의 규정방식도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들의 권리보장 등의 문제도 재검토하면서 기본권제한의 목적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예외적으로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활동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 이주민의 범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체인구의 약 4% 정도가 국내체류 이주민이므로 이들을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므로 현행 국내법상 이주민의 법률상 규정된 지위를 검토하여 그 범주를 검토·분석하여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주’는 주로 시간적인 방식으로 구분하게 된다.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일반체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로 본다(「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일반체류는 관광이나 방문과 같은 단기체류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로 구분되며(동법 제10조의2), 외국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동법 제17조제2항).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동법 제10조의3제1항).

따라서 정치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관광이나 방문과 같은 단기체류는 소지가 크지 않으나, 장기체류의 경우에 문제된다. 또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 및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현행 법령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의 규정내용이 형식적이 아닌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규정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강행규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개별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이주민의 법률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법률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서의 재한외국인은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경우, 관련 규정 대부분 “~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는 재량형식으로 되어있다. 이들의 권리보장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 구체화하여 보편적 권리의 보장은 강행적인 규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선거에서 이주민의 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사회통합적, 인권적 측면에서 이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인정여부 및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이주민의 의사를 선거를 통하여 지역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주민과 대표자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정치적 의사를 교환하고 이를 지방정책 입안 과정에 상시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공고화 될 수 있다. 특히 이주민들에게 있어 지역사회는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이므로 여기에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인 공공시설이용권과 균등행정수혜권, 감사청구권과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이주민을 이유로 하는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참여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및 주민소환권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은 인정하는 반면 피선거권을 주지 않은 것은 실제로 그 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입장을 선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피선거권 조항을 넣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1-3〉 이주민의 참정권

	지방선거권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근거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주민소환법 제3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인정요건	영주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계속 거주자격이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법률) 영주체류자격(조례)
※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를 위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로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의무				

또한 이주민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 관련 해외 선진국가의 법제 및 정책,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출범이후 이주민 통합정책이 일찌감치 이루어져 왔으나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수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 내지 기준 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주민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에 대한 법제 및 정책 등을 그 국가의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명하고,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정도와 요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주민의 지위, 권리, 혹은 정체성으로서의 주민권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안과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이주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로 이주민의 선거권 등에 중점을 두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체계도, 선행연구,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현행법제 현황 및 이에 관련하여 권리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해외국가들의 법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유학생,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참정권 등 권리인식과 권리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욕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검토한다.

넷째, 이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업무담당자, 시민단체 등의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참정권 등 권리에 대한 인식, 권리요구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욕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다.

다섯째, 이주민의 참정권 등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지자체 시의원, 국회의원, 이주민당사자,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검토·분석한다.

여섯째, 이주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방안을 위해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제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관련 통계 분석

1) 문헌연구

- 이주민의 기본권 인정 등 권리에 관한 현황, 정치적 활동, 사회통합 관련 연구 보고서, 논문, 행정문건, 통계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분석.
- 이주민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 사회통합 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제, 지침 등 관련 법규, 정책,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진정 등에 대한 검토·분석.

- 해외사례 연구로, 국내 이주민 참정권 인정여부 등에 대한 법제 등 사례 검토.

2) 통계 분석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등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현황 등을 검토·분석.

나. 실태조사

1) 조사방법

- 설문조사의 객관성, 정확도 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개발을 하고 연구진 등의 참여하에 조사를 수행함.
-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설문지 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결혼이주민,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이주노동자 등 9명).
- 대상자 선정은 지역, 연령, 성별, 체류자격, 국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조사 수행함.
- 설문지는 이주민이 많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일본과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실시함.

2) 이주민 당사자 대상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이주민 433명(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난민, 귀화자, 영주자격 체류자, 미등록체류자 등 포함)
- 일시: 2018. 9. ~ 10.
- 참여기관: 경남부산권 34부, 경북대구권 25부, 전남권 11부, 전북권 18부, 충청권 113부, 경기권 139부, 인천권 46부, 서울권 47부 등임.

〈표 1-4〉 조사 개요

구분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이주민 당사자	경남이주민센터,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 방법	이주민 기관 업무담당자 혹은 연구자 참석하여 조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 지역	전국	의정부엑소더스, 천안모이세
분석 사례수	433명	한국이주민센터, 국제학생회
조사 기간	2018. 9. ~ 10.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표 1-5〉 조사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응답자 인적사항	-출신국가 -연령, 성별 및 혼인상태 -교육받은 기간 -경제활동 유무 및 현재 직업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총 자녀 수 및 그 중 미취학 자녀의 수 -처음 한국에 입국한 시기와 총 체류기간 -현재 체류형태 -본인의 한국어 수준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지방선거의 선거권 유무 및 행사 유무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의 인식 유무 -정치적 권리 인정의 정도에 관한 인식 조사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이주민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권리의 인정시점은 언제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이주민에게 일정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주민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이 보장될 경우, 그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의 정도 -이주민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인식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3) 이주민 업무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개요

- 대상: 이주민 업무담당자 109명.
- 일시: 2018. 9.
- 참여기관: 부산권 6부, 전남권 12부, 충청권 16부, 서울경기권 28부, 중앙정부 4부, 지방자치단체 31부, NGO 4부, 출입국관리사무소 4부 등임.

〈표 1-6〉 조사 개요

구분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수원시, 경기안성시, 경기양주시, 경기여주시, 경기연천시, 경기파주시, 경기하남시, 부산시동구, 부산시기장군, 부산시북구, 전남고흥군, 전남담양군, 전남장성군, 전남함평군, 충남공주시, 충남태안군, 충북단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제천시, 충북진천군, 경기도안산, - 노동자지원센터: 경기도의정부노동자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NGO -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방법	팩스/이메일 조사	
조사 지역	전국	
분석 사례수	109명	
조사 기간	2018. 9.	

〈표 1-7〉 조사 내용

구분	질문내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현재 근무기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주민을 접하는 빈도 -이주민의 기관 방문 사유 -이주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총 재직연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인지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에 관한 인식 정도 -이주민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및 권리 인정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정도

구 분	질문내용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이주민에게 일정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바뀌어야 할 정책

다. 심층인터뷰

- 이주민 설문조사 및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주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미등록체류자, 다문화관련 업무담당자, 현장 전문가, 학계전문가,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2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

〈표 1-8〉 이주민 당사자 및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구 분	이주민 당사자 및 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및 부수	이주민 당사자, 이주민 관계자를 포함하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25명
조사기간	2018. 9. ~ 10.

라. TFT 운영

- 이주민의 참정권 관련 법제 및 정책발굴을 위해 학계전문가, 변호사 등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TFT 운영.

마.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단계별로 연구진행에 대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4. 연구체계도

〈표 1-9〉 연구 체계도



5. 선행연구

우리 학계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 이주민이 폭증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반해, 한국 학계에서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이고 확립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민의 참정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관련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항록(2011)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실제와 과제”(「다문화와 평화」 제5권 제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길강목(2011)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다문화사회연구」 제4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센터), 손병덕(2012)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간기관의 역할”(「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7권,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연구) 등은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내용, 추진체계,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도입하게 된 사회적 배경, 정책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정책 실효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관련 정책적 대안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박채복(2008),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한국동북아논총」 제46권, 한국동북아학회),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한상우(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3호, 한독사회과학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다문화사회 진입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통합정책의 필요성, 한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사회통합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인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2017년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적 이주민 인권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이주민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주민 그룹별로 인권보장을 위한 정

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므로 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의 수요와 의견을 살펴보고 검토·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의 도입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⁵⁾도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민들에게 정착을 지원하는 면에서는 호의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참정권 문제에서는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하므로⁶⁾ 이주민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실질적인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이들의 참정권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한다.

이상우(2011)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정치사회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선호를 표현할 정치적 권리가 확보되고 그들의 이익을 표명할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정권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외국인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 영주 외국인의 선거권을 허용하면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⁷⁾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정상기(2018)의 경우, 유럽연합회원국의 시민은 1993년 발효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서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까지 인정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1985년 이미 유럽연합회원국의 시민은 물론 제3국 국적의 이주민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나(물론 제3국 국적의 이주민에게는 5년의 거주요건을 요한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유럽연합회원국의 시민이 아닌 제3국 국적

5) 오동석(2005),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헌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이윤환(2008),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한국법학회.; 이용승(2016),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제65권, 한국민족연구원.; 임희선·김경제(2017), 위의 글(주 3); 정상기(2018),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등 참조.

6) 임희선·김경제(2017), 위의 글(주 3), 131면.

7) 이상우(2011), “다문화시대의 이주민 참정권”, 「대한정치학회보」 제19권 제2호, 대한정치학회, 78~79면.

의 이주민에게까지 지방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주저하고 있는 등, 외국인에게까지 피선거권까지 인정하는 국가가 아직은 소수에 불과한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우리 역시 성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고 한다.⁸⁾ 반면 이상우(2011)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외국인의 제도적 정치참여를 위한 피선거권 부여를 제안한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후보의 부적합을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⁹⁾ 임희선·김경제(2017) 역시 이주민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으로 피선거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주민 의사의 정책 투입, 지방정부의 대표선출과 정부 구성, 민주시민 교육, 지역공동체 형성, 책임정치 구현의 기능을 하고 주민과 대표자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정치적 의사를 교환하고 상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경우 단지 제한적으로만 선거권을 가질 뿐 스스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되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원천 봉쇄되어 있다. 그런데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때 신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실제 「공직선거법」도 연령 혹은 거주 요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뿐 신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다(제15조, 제16조).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이미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선거권만을 다르게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선거권이 공무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주민에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또 만일 이주민들이 당선될 경우, 당선된 이후의 직무수행활동은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통제될 것이므로, 우려할 바가 아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도 일부 제한적으로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와

8) 정상기(2018), 위의 글(주 5), 253면.

9) 이상우(2011), 위의 글(주 7), 79면.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¹⁰⁾ 따라서 이들은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주자격 체류자들은 이미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주요건과 기본소양을 갖춘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부여에 있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의 기간을 더 요하는 것은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많은 이주민이 본국국적 상실을 우려하여 국적 취득을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국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선거구 비례대표에 영주자격을 받은 이주민에게 영주자격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주민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¹¹⁾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공적 자유권”임을 근거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해성(2016)은 국민인 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선거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을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이라고 하는 반면,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헌법」상의 권리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공직선거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면서, 이주민의 지방선거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¹²⁾ 또한 공적 자유권의 행사방법이란 ‘선출하는’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선출되는’ 방식일 수 있으며, ‘임명될’ 권리 역시 공적 자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긍정하고 있다.¹³⁾

정상우(2016)는 이주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이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사회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고,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역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10) 임희선·김경제(2017), 위의 글(주 3), 142~144면.

11) 임희선·김경제(2017), 위의 글(주 3), 145~146면.

12) 정해성(2016),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보장-인간의 권리로서 공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제82권 제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20면.

13) 정해성(2016), 위의 글(주 12), 129~130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거주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에는 거주외국인 직능별 대표자가 위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⁴⁾

그러나 현재 약 1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주민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¹⁵⁾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거주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등에 외국인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¹⁶⁾ 이상우(2011)는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쇄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문위원회의 경우 권고적 권한만을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비하고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될 우려가 제시되나, 아직 외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공식적 통로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로로서 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¹⁷⁾

조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상황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는 실효성도 낮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방하기보다는, 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례가 형식적, 명목적으로 남지 않고 실천적, 규범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¹⁸⁾ 예를 들어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안산시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에는 외국인주민을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제14조), 실질적으로 이주민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¹⁹⁾

정상우(2016)는 이러한 자문위원회 외에도,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는 모임 또는 회의체를 마련해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²⁰⁾

14) 정상우(2016),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388면.

15) 박해욱·윤영근(2018), “지방정부의 이주민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Stuttgart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26면.

16) 정상우(2016), 위의 글(주 14), 397면.

17) 이상우(2011), 위의 글(주 7), 79면.

18) 정상우(2016), 위의 글(주 14), 401면.

19) 정상우(2016), 위의 글(주 14), 397면.

박해육·윤영근(2018)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위원회 참여 외에 이주민간의 교류·협력
 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주민 단체의 조직·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²¹⁾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주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참정권 등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이들의 인권보장 및 다양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회통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기대효과

- 이주민의 지위와 이들에 대한 인식,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권리 증
 진에 관련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해 이주민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주민 관련 권리증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개선방안, 서비스 욕구도 등
 을 통해 실질적인 이주민 권리 강화 자료로 활용.
- 체류자격별 등 이주민 특성을 고려한 이주민 인권보장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0) 정상우(2016), 위의 글(주 14), 397면.

21) 박해육·윤영근(2018), 위의 글(주 15), 128면.

II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해외사례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1.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현행 법제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분석

1) 헌법에 의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가) 헌법 제6조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정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는 「헌법」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규범으로 국가생활공동체의 범주를 확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범주의 확정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주민의 지위, 기본권 주체성 논의는 이들이 적어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되는 경우는 주권자로서 지위가 생겨나므로 이주민의 지위, 기본권 주체성 논의는 당연히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공존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학계의 일부 주장에 의하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상호주의는 한국사회에 이처럼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어 정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주장이며, 「헌법」 제6조제2항은 제1항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조항을 통해서 보면 이주민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발하는 모든 조약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질서에 부합하여야만 하며 그러한 경우에만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와 관련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당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주민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사회가 널리 승인하고 그에 대한 강행성을 인정한 규범으로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규범이다.

즉 이들 국제규범들은 국내 법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제1항). 따라서 이주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내용과 보호범위에 따른 권리를 내국인과 차별 없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법이 조약과 특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부인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는 경우 또는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제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조제1항의 「헌법」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판례는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제98호 조약, 위 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및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비추어 「헌법」 제6조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2.02.14. 선고 89구16296 판결 파면등처분취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07두4995)에 관한 의견 제출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사안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91명이 2005.04.2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노동청장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노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위 노조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고 2심에서 인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은 모두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제조약에 의한 규율은 확대되고 있으며, 인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6조제1항에 기초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GATT 협정에 관한 대법원 2005.09.09. 선고2004추10 판결, WTO협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1998.11.26. 선고 97헌바65 결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1980년 1월 27일에 발효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따르면,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in good faith) 이행되어야 하며(제26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류의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인권조약의 존중과 이행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위 상고는 기각되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이주민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주장하여 보장을 받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견해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자유권 영역에서 가능하고 사회권 영역은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상호주의에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의 본질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해당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결정에 관여할 만큼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결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권리에서 유래하는 자유권 영역에서의 일부 기본권과 노동권 등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권의 인정여부는 상당 부분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인 태도이다.

또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보다 확대하거나 전면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조문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국민’으로 시작하는 각 기본권의 문언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기본법의 태도처럼 우리 「헌법」도 기본권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부분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하여 기본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본권이 이주민에게도 인정되고 어떠한 기본권이 부정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와 그러한 국민적 합의의 도달은 물론 그에 따른 「헌법」 입법기술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현행 「헌법」의 체계를 통하여 이주민의 기본권 인정의 확대와 보호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6조제2항과 제1항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국제법규의 법원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주민의 법적 지위는 우리 「헌법」 속에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헌법」 제6조가 가지는 의미는 제헌 「헌법」 당시와는 매우 달라졌다. 제헌 「헌법」의 기초자들이 어떠한 사상과 의견에 기초하여 국제법규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계화 및 사람의 국제적 이동의 적극적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우 새로운 「헌법」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나) 헌법 제9조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 ‘원리’ 조항이라기보다는 고유문화(전통문화, 민족문화)의 보존·계승에 관한 국가적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며 아직 한국 「헌법」상 ‘문화국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조항은 없다고 할 것이다.²³⁾ 그리고 문화헌법과 관련하여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문화관련 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즉 고유문화의 보호를 특별히 요청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외래문화)의 유입,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며 적어도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예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헌법」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헌법」의 핵심가치로 하고 그에 기반한 각종 문화활동(학문, 예술 등)을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문화 간에 상하서열을 절대적

22) 최윤철(2012),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3) 김선택(2012),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할 것이므로 「헌법」 제9조는 고유문화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할 국가적 의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주류문화·선도문화로 가치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9조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헌법」 개정안(대통령발의 2018.03. 28.)에서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회변화와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전통문화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 헌법 제10조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방향에서 인권과 인간존엄성에서 근거를 찾는 것은 인간이 해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서 모든 문화와 종교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고 인류의 공동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며,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실천의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소수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헌법」과 법률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질적인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차이성의 존중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갈등적 대립적 사태로 전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소와 조정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에만 비로소 다양한 개인적 집단적 차이성과 다름, 고유한 가치가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합리적 조정을 위한 보편적 척도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보편적 척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회 성원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주던 문화적 전통의 유대감 즉 유교적 가치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단일민족, 국민국가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보편적 척도는 특정한 규범적 내용이 배제된 형식적인 형태

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통한 법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해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일 것이다.

또한 모든 법과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차이의 존중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실질적 평등원리가 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⁴⁾

2) 법률에 의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가)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 입장

장기체류 이주민이 많아지고, 특히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정주 이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세 등의 일정한 공적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므로 지방자치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주 이주민의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만이라도 허용하려는 추세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으나(제 41조제1항, 제67조제1항) 지방선거의 선거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9조는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시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에 관한 한, 법률로써 규정한다면 이주민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자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4)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법제 633호, 법제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주민이 반드시 국민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공직의 피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권과 주민투표에 있어서 투표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주민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원칙적 정치활동 금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제17조제1항), 체류자격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이나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이 있다(제10조). 그런데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의3).

그러나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제17조제2항), 그 위반의 경우 강제퇴거의 사유가 된다(제46조제1항제8호).

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권 인정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우선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라)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소환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제3호는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권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20조제2항), 이를 근거로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역시 동일한 요건 하에서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제1항제2호). 이러한 요건은 「공직선거법」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동일하다.

마)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제60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단서에서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60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 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권 인정

「주민투표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제5조제1항제2호)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주민 관련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분석

1) 헌법재판소

가) 기본권주체성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1.11. 29. 99헌마494, 헌법재판소 2007.08.30. 2004헌마670, 헌법재판소 2011.09.29. 2007헌마1083).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이 외국인에게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1.11.29. 99헌마494).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07.08.30. 2004헌마670),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헌법재판소 2011.09. 29. 2007헌마1083등; 헌법재판소 2011.09.29. 2009헌마351)”고 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미등록체류자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하여서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2.08.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집행행위 등 위헌 확인)”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더 나아가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4.12.29. 93헌마120),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나) 평등권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06.28. 99헌마516; 헌법재판소 2003.12.18. 2001헌바91)”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나 심판대상조항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03.31. 선고 2014헌마367 전원재판부).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생계는 그것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한다.

다) 사회권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적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아울러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07.08.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라고 한다.

2) 법원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대법원 2015.0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임금 등의 금전적 청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 위법한 고용의 결과이긴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기왕의 근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하여 취업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그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마당에 장차 근로관계가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결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10.10. 선고 97누10352 판결, 2005.11.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곧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진정사건 등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2011.12.12.)

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12.30. 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04.0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배경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미등록 이주민을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대상자로 보고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단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진술서 미제출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할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12.30. 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권고’에 대한 회신(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외국인정책과-801, 2011.04.06. 시행)에서,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법」 제84조제1항의 통보의무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2011.04.06.자 회신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후속 입법조치

2012.10.15.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의무 면제규정이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 92조의2제2호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규정되어 의료기관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2)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정책개선(2013.11.19.)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 배경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은 현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배우자를 포함하여 모두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자격(G-1-6)으로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진정인, 배우자 및 영유아인 자녀들은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진정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01.14. 진정(사건번호 13-진정-0026800)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11.19.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에서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권고하였다.

나) 관련법규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의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의료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인데,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소결

「헌법」은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어 정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차이성의 불확정적 존중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그것이 심각한 갈등적 대립적 사태로 전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소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헌법」은 규범구조의 추상성, 개방성으로 인하여 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능 수행을 위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며,²⁵⁾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와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헌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에 대하여 현행법은 이주민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지극히 한정된 범위의 권리만을 인정할 뿐이다.

법률에 의해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극히 제한적이고 인정범위가 협소하며, 중앙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악용의 소지까지 있다.²⁶⁾

25) 권영성, 『헌법학개론』(2000, 법문사), 10~15면.

26) 앞에서 본바와 같이 대법원 2015.0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위원장(팀부 토르너) 및 부위원장(소부르 압두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간부로 선출된 직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주노동 사무실 앞과 주거지 앞에서 각각 긴급보호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단속이 이주노동 집행부임을 이유로 한 명백한 표적단속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완료시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라는 긴급구제조치 결정까지 받았으나 소송과 진정 진행 도중에 갑자기 강제출국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외노조인 노동자의 집행 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부 단속 결사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이러한 현실에서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된 경우 또한 전혀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자유권이나 사회권에 대한 요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제기가 없지는 않으나, 정치적 기본권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점에서 자유권, 사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더욱 그 인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타자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한 이들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정치적 권리 인정에 대한 법제개선, 권리의식제고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해외 사례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주가 흔한 일이며 이주가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전은 더 이상 자본뿐만이 아니라 노동까지도 지리적 한계에 묶어두지 않고 움직이게 했고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소통하면서 국경이라는 것이 점차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인류를 살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인 국경을 지키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리적인 국경 속에 살고 장·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국가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쟁취', '미등록체류자 전원 합법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해왔고, '불법체류 외국인 동원하여 한미 FTA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며 정치적 시위 활동에도 가담'해 왔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치적 활동에 가담해 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정권문제가 논의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국가는 그 국경 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나 비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개념의 취지에 따라서 비록 국적이 다르더라도 국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정의된 국가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으로 인정된 이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삶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국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에 생긴 상당히 한정된 개념이며 보다 광범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국민주권 원리가 동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을 볼 때 지방의 생활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지방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으로서 정주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외국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에 더 나아가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정치적 권리라고 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 권리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샬은 시민권을 말하면서 시민권을 시민적 권리, 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⁷⁾ 시민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격의 자유,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등 개인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사회적 권리는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유산 등을 비롯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인데 여기에는 외국이주민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사회보장, 건강보험, 근로연금, 양육비공제, 공영주택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

27) T.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거권과 피선거권, 집회·결사 및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시민적 권리는 천부인권으로서 개인으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적 권리는 보다 확대된 개인의 권리로서 빈곤과 공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정치적 권리를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사와 정치활동의 권리, 시민권, 공무담임권으로 나눈다. 18세기로부터 개인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상가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시민적 권리만을 의미하다가 점차 사회적 권리로 그 자유권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여기에서 국적을 막론하고 국가는 개인의 시민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며 최근에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도 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이다. 사회권규약 또는 A규약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일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B규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유권규약(ICCPR)으로서 모든 사람이 고문, 비인간적 대우, 노예, 강제노동, 아동노동,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²⁸⁾ 이 규약들은 세계인권선언보다는 훨씬 많고 종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의해서 이주민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및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지수(MIPEX, 2015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네 가지 항목에 의거해서 해당 국가들의 이주민 사회통합지수 가운데 정치참여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²⁹⁾ ① 투표권: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는 덴마크와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0%를 받아 최고의

28) 이병하(2014),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269-290면.

29) <http://www.mipex.eu/political-participation>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② 정치적 자유: 이주민들이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치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 항목에서는 22개국이 100%의 평점을 받아서 유럽 연합회원국들의 상당수가 이주민의 결사와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자문기구: 이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서는 100% 평점을 받은 국가는 없었으며 룩셈부르크가 92%로 1위를 차지했다. ④ 기타 정책: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정부가 이주민 조직에 대해 재정적인 보조를 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는 포르투갈과 스웨덴이 100%의 평점을 얻었다³⁰⁾.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해외 사례에 있어서도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국가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피선거권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주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대표로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민족국가가 처음 시작된 근대 초기에는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는 견고하여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이 그 국가 내에서 장기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그 숫자 또한 많지 않고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 내에서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은 그 국가에 속한 즉 그 국가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주의 시대가 되면서 국경을 넘어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살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민권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가의 정책결정이 장기적으로 그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참정권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따라 참정권을 다르게 해석하는 국가들이 등장하였다.

30)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한 결과를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가 각각 1위에서 10위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13위, 영국은 15위에 올랐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국가 수준의 중앙선거에서는 외국국적 이주민에게 비차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은 1970년대 이래 일부 서유럽국가를 필두로 인정되는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표 II-1〉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 _ 투표권

	투표권			X
	지방의회		중앙의회 (국회 또는 하원)	
모든 국가	그리스 나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모로코 미국(일부 주) 베네수엘라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일부 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우루과이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일부 주) 홍콩	나미비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칠레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북한 불가리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특정 국가만 (해당 국가)	유럽연합회원국에게	그 이외	영연방	
	독일 몰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프랑스	스페인(브라질, 스페인어권 국가) 캐나다(영연방 소속 일부 주) 포르투갈(브라질, 스페인어권 국가) 브라질(포르투갈) 호주(영연방, 일부 주는 외국인 가능)	그레나다 도미니카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영국 자메이카 호주 아일랜드 앤티가 바부다	
			그 이외 포르투갈(브라질, 스페인어권 국가) 브라질(포르투갈)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외국인참정권>
(최근 수정 시각: 2018년 8월 24일 / 검색일: 2018년 9월 18일)

〈표 II-2〉 국가별 이주민 참정권 현황 _ 피선거권

	피선거권		
	지방의회	중앙의회 (국회 또는 하원)	X
모든 국가	나미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모로코 미국(일부 주) 베네수엘라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핀란드 홍콩	나미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북한 불가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특정 국가만 (해당 국가)	유럽연합회원국에게	영연방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몰타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그레나다 모리셔스 앤티가 바부다 영국 자메이카	
	그 외		
	포르투갈(브라질, 스페인어권 국가) 스페인(브라질, 스페인어권 국가)		

출처 : 위키피디아 (검색어 : Right of foreigners to vote)
https://en.wikipedia.org/wiki/Right_of_foreigners_to_vote#Malta
 (최근 수정 시각: 2018년 9월 16일 / 검색일: 2018년 9월 18일)

실제로 국가들 간에 외국인 선거권의 행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선거권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 그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있고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다. 후자의 경우 유럽연합회원국 국적자에게만 지방의회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과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영연방국가 국적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다. 지방의회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반면 중앙의회의 경우에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이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더욱 제한적인데 중앙의회는 더욱 제한적이며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유럽연합회원국 간에는 상호간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지방의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의회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로는 나미비아, 슬로베니아가 있고 영연방 국가들 간에 중앙의회에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그레나타, 모리셔스, 앤티가 바부다, 영국, 자메이카가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에게 지방의회와 중앙의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에도 그 요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와 뉴질랜드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모든 정주 외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중앙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우루과이는 이주민이 15년간 우루과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일 년만 거주하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³¹⁾ 모든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주민에게 요구하는 거주기한이 다르며 또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이주민이 지방선거권 획득을 위해 합법적으로 3년 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나라인데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며 피선거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일랜드는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3년 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투표(national

31) David C. Earnest, *Old Nations, new Vote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8), 22면.

referenda)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보인다.

일부 국가들은 특정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회원국들이다.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1992년에 서명, 1993년에 효력 발생)에 의해 유럽연합시민권이 도입됨에 따라 유럽연합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할 때 그 국가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외에 식민지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반영하여 영국은 영연방국가와 아일랜드의 국민들에게만 지방 및 중앙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은 상호호혜조약을 맺은 10개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3년 간의 거주요건(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2년)을 충족시키면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특히 브라질 이주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등을 위한 특별법령에 의거해서 중앙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³²⁾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정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프랑스나 스위스처럼 정부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또는 호주나 미국처럼 시행했다가 폐지한 국가가 있다. 독일은 일부 주에서 주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흐름이며 향후 보다 많은 국가들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는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독일과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에서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특정국가에게 참정권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도 있다. 한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정주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도 있다.

32) Jan Niessen, Thomas Huddleston, Laura Citr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07) <http://www.integrationindex.eu>, 149면.

두 번째 유형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이 역시 법률로 선거권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법률로 상호 인정되는 국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로 정주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³³⁾

가) 헌법상 국적요건형

헌법상 지방참정권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가는 독일과 룩셈부르크이다. 이 국가에서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정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는 국정레벨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레벨에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EU회원국 출신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나) 법률상 국적요건형

지방참정권의 주체에 관해서 헌법은 국적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상 국적이 요건이 되고 있는 국가로서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다.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는 국가레벨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방레벨에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EU회원국 국민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레벨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헌법상 호혜요건형

헌법상 호혜요건형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다. 1993년 EU가 발족되면서 유럽연합회원국들의 헌법이나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모든 유럽연합회원국 출신의 외국인들에게 지방의회선거권을 상호 인정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은 식민지였던 브라질 국적 국민에게는 5년 이상 거주 요건으로 국정선거에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권은 2년 이상 거주, 피선거권은 4년 이상 거주권자에게 부여한다.

아르헨티나,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는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스페인의 경우 EU회원국 국민인 경우 지방선

33) 이윤환(2013),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18-19면.

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3년 이상 거주한 노르웨이 국민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라) 법률상 호혜요건형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국에서는 국적법이나 기타 법률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영국의 경우 엄격하게 말하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연방 소속 국민에게는 모든 레벨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외에는 참정권 부여가 없다.

마) 헌법상 정주요건형

헌법에 정주 요건이 명시되어서 외국인이 이 요건을 맞출 때 참정권이 부여되는 유형으로 네덜란드가 이에 속한다. 네덜란드는 1983년 개정된 헌법 제130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 지방의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였고 동법 제54조와 제55조에 국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민에게만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바) 법률상 정주요건형

법률에 의거하여 정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정권이 부여되는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이다. 스웨덴은 197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유럽연합회원국 국민과 더불어 선거전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도입했다. 1단계로 1977년 이래 3년 이상 거주한 북구협력국가(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적자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했고 2단계로 1981년 지방선거법을 개정하여 3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선거에 관한 명시적 헌법규정이 없다.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우선 북구협력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했고 1983년 스웨덴을 모델로 하여 3년 이상 거주 '노르웨이 국민이 아닌 자'에게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표 II-3〉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형태

유 형		내 용	해 당 국 가
국적요건형	헌법상 국적요건형	- 헌법상 지방참정권의 주체가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가 - 지방레벨에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EU회원국 출신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 룩셈부르크
	법률상 국적요건형	- 헌법에 국적요건이 없어서 법률상 국적요건을 정한 국가 - 지방선거에서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외국인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 벨기에의 경우에는 5년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호혜요건형	헌법상 호혜요건형	헌법으로 유럽연합회원국, 혹은 과거 식민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한 경우	포르투갈 스페인
	법률상 호혜요건형	헌법의 명시 없이 법률로 이를 정한 국가	영국
정주요건형	헌법상 정주요건형	헌법상 정주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	네덜란드
	법률상 정주요건형	법률로 정주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2) 결사와 정치활동

이주민의 정치활동에는 선거참여 이외에도 정당과 노조에 가입하거나 이주민 단체를 조직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즉 의미있게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르는 조치가 정당과 노조를 조직하거나 혹은 가입하여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없이 단지 선거권, 피선거권만 주어진다면 그 선거권은 의미없는 들러리 행사가 될 수 있으며 피선거권 역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의미있게 선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진전된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가입하고 단체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담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자체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

성된 자문기구를 형성하여 거주국 정부(중앙/지방)에게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은 이주민의 정치참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다수의 이주민 수용국가에서는 이주민들의 이러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주민은 일본과 서유럽의 전통적인 이민국가에서 내국인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결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하여 선거권, 피선거권과는 달리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게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동부 유럽 11개국과 터키에서는 유럽연합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때로 이주민이 그 나라의 민주적 질서에서 도움이 된다는 정치인들이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인정될 수 있지만(체코 2012년 개정)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민주적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는다(헝가리 정당가입 제한).

3) 자문기구

이주민들은 모두 24개국에서 지방정부의 자문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도 한다. 2009년 통계에서는 13개국에 그쳤지만 그동안 다소 증가하였다. 대부분 이러한 자문기구들의 성격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회를 만드는 정도의 영향을 가지는 기구들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특히 중동부유럽의 경우 주로 정부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하며 정부가 직접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다소간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구들은 만들어졌다가 쉽게 폐지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쉽게 폐지되거나 신설되기도 한다. 기구들의 권한이 약하고 이주민들이 직접 개입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때로 이주민들의 신뢰나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이익을 대변하기에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들이 있다.

4) 이주민에 관한 정책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취하는 이주민에 관한 정책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주민에 관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주민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출

때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적 취득과 관련된 정책이다. 국적 취득은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권은 “특정한 가치를 가진 자치적 정치공동체에서 완전히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³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법적 관계로서 국적(nationality)과 동일시된다. 그렇다면 시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민이란 누구인가. 래스킨(J. Raskin)은 시민을 세 가지 의미에서 정의하고 있다.³⁵⁾ 첫째, 시민은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공동체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둘째, 시민은 지역공동체의 가치관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화하고 통합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셋째, 시민은 투표권을 포함하여 정치적 권리를 실행하는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다. 요컨대, 시민이란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면서 공동체의 가치관과 활동에 동화하고자 하며 동시에 투표권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시민권은 이주민이 모든 단위의 선거와 모든 합법적 유형의 정치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정권을 가지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주민 참정권의 내용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캐슬즈는 시민권의 네 가지 기본적 이념형을 구분하고 있다.³⁶⁾ 첫 번째는 제국적 모델(the imperial model)로서 동일한 통치자나 통치 권력의 신민(subject)이라는 문맥에서 국민의 소속성을 찾고 있다. 이 모델은 1981년 국적법이 통용되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작동했다. 둘째는 민속 또는 인종적 모델(the folk or ethnic model)인데 공동의 선조와 언어, 문화라는 문맥에서 국민을 규정하는데 2000년 국적법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독일 그리고 일본이 이 모델에 가깝다. 셋째는 공화주의적 모델(the republican model)로서 국가를 헌법과 법 및 시민권에 바탕을 둔 정치적 공동체로 이해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사고와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이주민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프랑스가 이 모델에 가장 근접한

34) Rainer Bauböck, *How migration transforms citizenship: international, multination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2), 2면.

35) Jamin B. Raskin, “Legal Aliens, Local Citizens: The Historical, Constitutional and Theoretical Meanings of Alien Suffrag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1-4 (1993), 1391-1470면.

36)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44-45면.

국가이다. 넷째는 다문화적 모델(the multicultural model)로서 공화주의적 모델처럼 국가를 헌법과 법, 시민권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로서 정의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고 인종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면에서 공화주의적 모델과 차이가 있다. 다문화적 모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호주와 캐나다, 스웨덴에서 지배적 모델이었다. 그리고 지구화로 인해 초국가주의가 미래에 민주적 제도와 정치적 소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경을 초월하는 사회적 및 문화적 정체성으로 구성된 초국가적 모델(the transnational model)을 상정할 수 있다.

시민권 내지는 국적에 관한 법들은 일반적으로 속인주의(ius sanguinis)와 속지주의(ius soli)의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속인주의는 출생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것으로 혈통주의라고도 부른다. 속지주의는 출생지에 근거해서 국적을 획득하는 것으로 출생지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대체로 이 두 원칙을 혼용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의 자손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의 성인들은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참여를 보인다. 2000년대에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의 37%가 정당참여, 정치단체 활동, 청원, 시위, 정치인과의 접촉을 하는 반면 내국인은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는 일반적으로 북유럽국가와 베네룩스 국가,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서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고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는 내국인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모두 53% 수준으로 나타났고 저학력의 경우 내국인보다 이주민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참여의 격차는 결국 교육수준의 격차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내국인이나 이주민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주레짐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이 나타난다. 어떤 국가는 국적을 얻은 외국인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국적과 상관없이 참정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련의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이 그 국가에서 이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³⁷⁾ 그것을 광범위한 개념의 이주레짐이라고 할 때 이주레짐의 특성이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부여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의 문제를 접근하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주레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손님노동자 레짐(Guest worker Regime), 식민주의 레짐(Colonial Regime), 혼합형(Hybrid Regime)이 그것이다. 손님노동자 레짐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이 노동력의 부족이어서 외국인 이주민을 노동자로 받아들이지만 이들이 영구히 그 국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하러 왔다가 돌아갈 것으로 상정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인 방식이다. 해당 국가로서는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 식민주의 레짐이다. 이것은 20세기 이전에 유럽국가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혹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고 난 이후에도 식민모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특별한 관계의 일환이 식민지로부터 식민모국으로의 이주할 때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서 영연방국가나 아일랜드로부터 영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민에게 영국국민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혼합형으로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 형태는 식민주의 레짐과 손님노동자 레짐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식민지로부터 이주가 발생하지만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동허가를 받거나 손님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이다.

손님노동자 레짐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

37) Elenore Kofman,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Rosemary Sales,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44면.

들과는 달리 식민지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이나 소련 지역으로부터 독일민족의 뿌리는 가진 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과거 독일민주공화국 시민이었다가 추방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950년대 초에 1,200만에 달하는 독일민족 즉 과거 독일제국에 속해 있었던 동유럽에 거주하던 독일인이 독일로 이주해 왔다. 1953년부터 1987년 사이에 이러한 이주는 급속히 줄어들어서 연간 37,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전후 독일은 해외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베를린 장벽이 건축된 1960년 이후부터 이러한 경향이 보다 분명해지면서 양자적인 손님노동자협정을 기초로 하여 해외 노동자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는 국가 기관을 통해서 독일에 입국하였고 작업장에 배치되었다. 초기에는 특정한 직업에 정해진 기간을 전제로 하여 노동허가가 발급되어 기간 동안 정해진 직장에서 일해야 했으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귀국해야 했다. 가족 재결합이 허용된 이후에도 재결합을 위해서 독일에 입국한 노동자의 피부양자들에게는 임시 거주 허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정치적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영국에서 보이는 식민주의 레짐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유럽인들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이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쟁에 참전했던 폴란드인 12만 명 정도는 전후에 영국에 남았고 10만 명에 달하는 발트해 및 동유럽국가 출신의 노동자들 역시도 전후에 영국에 남았다. 이들에게는 1년짜리 노동허가증이 주어졌고 초기에는 피부양자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곧이어 1947년 이후부터는 피부양자를 데려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자격으로 노동이주가 허용되었고 전후 남은 노동자들보다는 다소 나아진 조건으로 노동허가가 주어졌다. 아일랜드인은 이미 과거부터 그래왔던 대로 영국으로 노동이주를 계속해왔다. 1948년 영국 국적법에 의해서 카리브연안 국가들과 인도양 인근의 영연방 국가의 시민들은 영국에 와서 정주하고 가족동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영연방국가 시민은 영국 국적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의 혼합형이다. 이 유형은 프랑스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민을 관장하는 국가이민사무소(Office National d'Immigration)가 생긴 것이 1945년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이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이주, 노동 그리고 거주에 관한 모

든 문제를 관장하였다. 초기에는 인구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인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주에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이민이 급증하자 1955년 이후부터는 외국인 이주에 대해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프랑스 경제가 침체되면서 외국인 노동이주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가족재결합만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프랑스의 외국인 이주정책은 단일한 체제를 가진 것이 아니고 구식민지로부터 이주해 온 이주민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프랑스 해외영토 거주자로부터의 이주, 양자적인 계약에 의한 이주 등 다양한 제도들이 공존하는 형태이다. 1962년까지 알제리는 프랑스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에도 예비양협정에 따라서 알제리로부터의 프랑스로 이주하는 것에는 어떠한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튀니지와 모로코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과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이 국가들로부터의 이주가 받아들여졌다. 1987년 유럽공동체에서 유럽단일의 정서가 통과되면서 인적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유럽공동체 회원국가들로부터의 노동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 프랑스로 일하기 위해서 이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간에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자가 아닌 이주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3가지 유형의 이주민 레짐의 대표 국가들에서 정치적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래의 주민 없이 모두 이주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국에서의 정치적 권리를 살펴보면서 한국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 이주레짐별로 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1) 이민국가 유형: 미국

가) 일반 현황 및 최근의 정책 변화

미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국가로서 유럽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건설한 국가라는 것이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를 목적으로 이주해왔기 때문에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명시적인 이민 정책

은 사실상 없었다.³⁸⁾ 초기의 이민은 사실상 이민이라기보다는 유럽에서 영국 식민지로의 이주였기 때문에 영국 본토의 이민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누구든지 간단한 신체검사와 입국 심사를 받고 이민 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민이 가능했다.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연방정부는 세 개의 이민법령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장애인, 노약자, 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입국을 금지한 법령과 중국인 배제령 즉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화를 원천 봉쇄하는 법, 그리고 1924년에는 신규 이민자의 본래 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추가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수적인 이민정책으로부터 1965년 이민 및 국적 법령이 제정되면서 모든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민자의 전문적 기술과 가족재결합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이민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미국은 동부의 13개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주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합류하게 된 연방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처럼 지방분권적인 제도화된 질서가 중앙집권으로 통합된 근대적인 민족국가와는 그 건국 과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들의 자율성이 강하고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도 주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체 미국인구의 25%인 8,000만 명이 이주민 1세대 혹은 2세대이며 외국출생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13%이다. 2012/3년 통계에 의하면 1,930만 명이 귀화자로서 국적취득자이며 1,330만 명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이고 1,140만 명이 미등록체류자이며 190만 명이 비자 소지자이다. 가족이민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합법적인 영주권 이민 방법이며 2011~13년에는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 가운데 2/3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계가족 초청비자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통합이민개혁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와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미등록체류자들 가운데 미성년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이주민들은 직업과 관련된 영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했다. 또 다른 최근의 정책 변화는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성애커플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지

38) 김태근(2017),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 창간호(2017), Vol.1. 93-97면.

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는 가족 재결합정책에 있어서도 동성애 배우자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미연방법원이 확인했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이주민의 참정권을 선거권(투표권)과 피선거권에 한정하여 살펴보면,³⁹⁾ 이주민은 각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 귀화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민은 미국본토시민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선거(연방, 주, 지방)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다. 반면에 영주권자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연방선거(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반해, 일부 주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이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선거에 공직후보로 참여하는 피선거권은 시민권자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은 대통령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⁴⁰⁾으로,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시민권 획득 후 7년 이상’,⁴¹⁾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시민권 획득 후 9년 이상’⁴²⁾ 경과한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이 아닌 이주민(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피선거권 부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주민집단에게 피선거권을 보다 확대하여 부여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⁴³⁾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유타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오린 해치(Orrin Hatch)가 제안한 헌법수정안(‘Equal Opportunity to Govern Amendment’ or ‘Hatch Amendment’)인

39) 미국 이주민 집단의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치적 활동 예를 들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이주민으로서의 권리보다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미국 일반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와 혼재되어 논의되고 있는 특징이다.

40) U.S. CONST. art. II, § 1, cl. 5

41) U.S. CONST. art. I, § 2, cl. 2

42) U.S. CONST. art. II, § 3, cl. 3

43) 시민권 이민자로서의 대통령 피선거권의 확대는 우리가 잘 아는,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화당의 아널드 슈워제네거(Arnold Alois Schwarzenegger)가 2003년 10월 7일, 당시 34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도화선이 되어 치루어진 주지사 소환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취임 시에 기준으로 하여 만 35세 이상; 둘째,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 셋째, 미국에서 출생; 넷째, 미국 시민권자. 슈워제네거는 1947년에 태어나서, 1968년 21살의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온 미국 시민권자로서, 오스트리아 태생인 당시 공화당의 인기 정치인(2004년 8월 31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논쟁이다.

데, 이 수정안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한지 20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대통령 피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국적 취득은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미국 내 출생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 없이 미국 국적을 가진다. 반면 국외에서 출생한 부모가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 신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영주권은 직계 가족이 미국시민인 경우, 혹은 미국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국적 신청할 당시의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해 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어로 말하기, 쓰기,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적 신청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식민주의 레짐: 영국

가) 일반 현황 및 최근의 정책 변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연방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존 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틀 속에서 정립하였다. 이 영연방체제는 과거 식민지국가 국민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보장하는 레짐으로 작동하였고 1962년 영연방이주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식민지 국민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원할 때 이를 제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1962년 영연방이주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구식민지로부터 영국으로의 이주가 허용되었으며 영연방이주민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주를 제한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구식민지국가로부터 자유로이 이주가 일어나면서 1962년에는 이미 영국은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었다. 이후 영국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 평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일련의 인종평등관련 법체계들과 ‘인종평등위원회(Commission of Racial Equality CRE)’의 설립으로 나타난다.⁴⁴⁾

44) 김용찬(2011), “영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1호, 201-228면.

영국은 영연방제하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남아시아, 서인도제도, 아프리카 등의 국가로부터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였다. 영국은 과거 식민지국가들인 이들 국가 국민들에게 영국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영연방회원국가 국민들 간에는 이러한 정치적 권리를 서로 인정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1975년 이전에는 영국군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나 1975년부터 거주기간 1년이 경과한 영연방회원국 국민에게 등록을 통해서 의회선거에 참여하게 하였고 아일랜드는 6개월 이상 거주 이주민의 경우 모두 투표권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영국은 영연방국가의 회원국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하원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조약 제19조에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권리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었다.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부여되고 중앙의회에서는 이러한 권리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유럽의회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비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에게는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에의 참여나 인종평등평의회 등의 지방 차원의 외국인 협력기구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영국에서의 이주민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들에게 오래전부터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어 왔기 때문에 이주민 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이주민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많은 도시에서는 정당들이 이주민들의 투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정당에서는 정당 내에 이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두기도 하면서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의 인종평등평의회를 두어서 지역 이주민 정책의 형성에 있

45) Marco Marticiello, “Political Participation, mobilisation and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offspring in Europe” in Rainer Bauböck ed., *Migration and Citizenship*, 89면.

어서 이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인종평등평의회는 지역차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인종평등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영연방 이주민들에게 영국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 국적은 영국 내 출생과 영국 밖 출생의 두 가지 경우가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 출생자 중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영국 국적이 자동으로 취득되고, 부모가 모두 영국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경우에는 출생 이후 10세까지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만 영국 국적이 주어진다. 이 경우 10세까지 지속적으로 영국에서 거주하고 18세에 등록하여 영국 시민권을 가진다. 한편 국외 출생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국시민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을 가진다. 영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최소 3년의 거주기간 이후에 영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국외 출생자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국 거주 5년 이후에 국적을 신청하여 귀화할 수 있다.

3) 손님노동자 레짐: 독일

가) 일반현황 및 최근의 정책 변화

독일은 유럽국가들 가운데 가장 외국인이 많은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이주 노동자가 입국하였고 이어서 가족 재결합 정책에 따라서 이들의 가족들이 입국하고 가족들이 이주민 2세대를 출산하면서 외국인이 늘어났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구소련과 동유럽에 거주하던 독일 재외동포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또 한 번 외국인이 늘었고 최근에는 난민의 상당수를 수용하면서 다시 외국인 수의 급증을 가져왔다.

이렇게 초기 이주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입되면서 기본적으로 노동을 위해서 일정기간 정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손님노동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임시적인 거주자로 간주되어서 이들이 영주하는 일은 드문 일로 생각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영주권자나 귀화가능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했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는 인정

하지 않았다.⁴⁶⁾ 또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혈통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거주자인 이주민들에게 까다로운 귀화 요건을 제시하였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약의 제19조에 따라서 독일 내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28조를 개정하였다. 같은 이주민이라도 비EU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게 되면서 비유럽인에게도 EU 출신 이주민과 같은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다. 비유럽국가 출신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64%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독일인의 31% 정도만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이주민의 지방선거권 도입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⁴⁷⁾

1998년 출범한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연정은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보다 쉽게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독일에서 출생한 자 중에서 부모 중 한명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14세 이전에 독일로 이주한 경우에는 18세에 독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다.⁴⁸⁾ 개정 국적법과 더불어 제정된 이민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주, 인권보장에 입각한 망명 수용, 사회통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체류허가의 종류를 기한부와 무기한 체류허가로 단순화하였고 초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어학과 사회통합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첨가되었다.⁴⁹⁾ 또한 연방차원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이주난민청이 주관하고 정책의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체는 각급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체계화하였다.⁵⁰⁾

2006년 기민당-사민당 대연정 내각은 이주민 통합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각계 대표와 더불어 이주민 대표들을 초청하여 제1회 국가통합정상회의를 개

46) 이상우(2011), 위의 글(주 7), 66면.

47) 이규영·김경미(2010),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제42권 제2호, 164면.

48) 장미혜 외(2008),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II)』 (여성정책연구원), 77면.

49) 고상두·김민정·김성진(2017), 『이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생애주기 언어·문화교육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4-65면.

50) 구춘권(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145면.

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발전을 위해서 이주민들의 역량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독일에 이주민이 유입되게 된 것은 가스트아르바이트(Gastarbeiter, 손님노동자)제도에 의해서인데 이 제도는 로테이션원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독일에 와서 정해진 계약기간동안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독일에 이주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주민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부터 점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초청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정한 기간 체류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주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도 출생하게 되어 이러한 이주민 2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독일은 혈통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혈통이 아닌 이주민 2세들을 학교에서 교육받는 정도의 권리만을 인정하였고 다른 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일체의 정치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다가 영국에서와 같이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고 제19조를 국내법에 적용하면서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만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독일의 기민당은 비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독일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면 당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민당은 14세 이상인 자로서 당의 기본노선에 동의하는 자는 입당이 가능하다고 하여 국적여부는 당원자격의 조건을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정당활동은 외국인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자문위원회를 두어 그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연방정부 첫 외국

인담당관이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지사였던 사민당의 쿤(Heinz Kühn)은 1979년 “독일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이들 가족의 통합 상태와 향후발전”이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쿤은 일관성 있는 이주민 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장기거주자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정치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가 지방정치기들로 하여금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여 통합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¹⁾ 지방선거권의 도입이 어렵다면 대안으로서 “외국인자문위원회”를 들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서 외국인자문위원회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최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이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외국인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설립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헤센(Hessen)주의 경우에는 약 11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대표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외국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⁵²⁾

4) 혼합 레짐: 프랑스

가) 일반현황 및 최근의 정책 변화

프랑스는 오랜 이민국가다. 이미 19세기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20세기에는 정치적 망명자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의 국가이념인 공화주의(republicanism)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인권은 국가가 존중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군사적으로 새로운 인구의 충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부족과 전후 복구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상당히 충원하였고 1962년 프랑스 알제리간의 예비양협정으로 프랑스인과 알제리인은 모두 두 국가를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게 되어 알제리인의 프랑스 이주가 급증하였다. 초기에는 프랑스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이탈리아, 스페인으로부터 이주한 노동자들은 프랑스 사

51) 이규영·김경미(2010), 위의 글(주 47), 167면.

52) 이상우(2011), 위의 글(주 7), 67면.

회에 쉽게 동화되었고 프랑스화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에 따라서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이주한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은 프랑스의 문화적 정향과는 차이가 있는 이슬람 문화권 출신으로 프랑스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들은 가족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1970년대 가족재결합정책에 따라서 가족들이 이주하여 함께 정주하면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 문화적 섬처럼 분리되어갔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의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이 실패의 조짐을 보인 것은 몇 차례에 걸친 공립학교 내에서 히잡 착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마침내 2005년에는 이주민 2세들의 대규모 폭동으로 폭발하였고 프랑스 사회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프랑스인들에게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역시 더욱 강화되고 있다.⁵³⁾ 이미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反)이민주의를 표방한 민족전선(Front national)과 같은 정당은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2002년에는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민족전선의 후보인 르펜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하였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족전선의 후보 마린 르펜이 결선투표에까지 진출하면서 프랑스 내 반이민정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입증하였다. 민족전선은 각종 선거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족전선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하여 시(市) 행정을 맡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다. 유권자들의 반(反)이민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도, 심지어 좌파 정당들까지도 반(反)이민정책에 어느 정도 동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국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는 전체 인구 가운데 25% 가량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로서 이민 2세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다.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영연방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식민지 국가와의 어떠한 연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식민지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프랑스인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대신 1992년 이후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에게는 지방의회에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 정주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가운데 2/3는 유럽연합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이며 이 중 90% 이상은 저개발국가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53) 김민정(2007),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3호, 5-34면.

유럽회원국가 이외 출신 이주배경 인구 가운데 40%는 저학력이며 31%는 고졸 수준의 학력자들이지만 최근에 오면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있다.

2011년 법(Besson Loi)에 의해서 2012년부터 이주민들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있어서도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성애 커플에게도 가족 재결합 권리가 부여되었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프랑스는 “국적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헌법적 전통”의 원칙에 기초해 정책을 유지해왔다. 프랑스 선거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선거 및 피선거의 자격은 18세 이상의 ‘프랑스인’으로, 법률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으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 명시하고 있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프랑스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해오던 프랑스의 전통은 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 유럽연합조약의 국내적 적용을 반영해 개정된 헌법 제88-3 조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럽연합국가의 국민들은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러한 시민에 속하는 자들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될 수 없으며, 상원의원 선거의 선거인단으로 임명되거나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가 국민들의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배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취업과 의료보험 혜택 등에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⁵⁴⁾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 중 과거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 선거권을 부분적으로 확대해주었다면, 프랑스의 경우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포함된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다.

비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에

54) 박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2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들에게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비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의 경우에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귀화할 수밖에 없으며 2012년 통계에 의하며 비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 가운데 60% 정도가 귀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 미테랑 정부 하에서 이주민 정책을 변경하여 이주민들의 결사체 조직을 허용해오고 있다.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1981년 10월 9일 발표된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조직은 프랑스 국민의 조직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주민 결사에 대한 허용은 이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제공해 주었다. 1981년 이전까지 이주민의 결사가 불허되면서 프랑스 이주민들의 정치사회적 요구는 제시되기 어려웠는데 당시 1981년 프랑스 정부의 이주민 결사 허용 정책으로 인해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4,200여개에 달하는 이주민 단체가 설립되었다.⁵⁵⁾

이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문기구의 경우 프랑스 주요 도시, 예를 들어 파리, 그르노블, 낭트, 스트라스부르 등의 도시에서는 지역 자문기구를 두고 있어서 이주민들이 시정부 정책 형성에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새로 이주한 외국인을 위하여 6시간의 의무 시민교육이 부여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프랑스의 제도 및 공화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프랑스에서 국적 취득 과정은 프랑스 내 출생과 프랑스 국외 출생으로 나뉜다. 프랑스 국내 출생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속지주의에 기반하여 18세가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11세부터 최소한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기간의 설정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프랑스 공교육을 이수하여 이주민 청소년들이 프랑스의 가치와 프랑스 문화를 습득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을 현실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국외 출생자의 경우 프랑스 거주 5년 이후에 국적을 신청하여 귀화할 수 있으며

55) Patrick Ireland, "Reaping What They Sow: Institutions and Immigra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in Ruud Koopmans and Paul Statham eds.,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38면.

프랑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프랑스 거주 1년 이상에 결혼 후 2년 경과이거나 혹은 프랑스 거주 1년 미만에는 결혼기간 3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라. 시사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국가들 내부에는 점차 더 많은 외국인들이 정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주 기간도 상당히 다양하며 정주 형태도 다양하고 정주의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결과로 인한 이주 혹은 노동을 위한 인력의 이동으로서의 이주에 한정되던 시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주로 인한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성격 변화는 이주민들의 권리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이 전체 되어 국가가 형성된 국가에서는 이민으로 인하여 시민권(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라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독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독일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주 성격의 변화는 점차 혈통주의(jus sanguinis)와 출생지주의(jus soli)가 혼합된 형태로 권리가 주어지고 있으며 국적 취득의 요건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다.⁵⁶⁾

이미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유럽국가들에 있어서는 시민의 권리와 비시민의 권리 사이의 분명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져 왔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인 ‘자유(Liberty)’, ‘재산(Property)’, ‘안전(safety)’(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프랑스 선언 제2조)은 원래는 시민의 권리였지만 이제 더 이상 배타적으로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권리는 아니며 국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시장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는 연금, 실업수당 혹은 건강 및 산업재해 보장과 같은 권리들 역시 시민에게 국한된 권리는 아니다. 서구의 복지국가 원칙은 기본적으로 영토성에 기반하고 있다.⁵⁷⁾ 근대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자비’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서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6) Christian Joppke, “Citizenship in immigration states” in Ayelet Shachat, Rainer Bauböck, Irene Bloemraad, Maarten Vink eds., *The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393면.

57) *ibid.*, 394면.

전통적인 빈민구제와는 달리 영토에 기반한, 정해진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민족국가 속에서도 개인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더 이상 국적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니며 국가의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영국의 '납세자 정권'하에서 정치적 권리는 시민의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치적 권리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권리의 보장도 불가능하며 시민의 권리 보장도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이주가 보편화되고 그 이주의 성격이 다원화되면서 반드시 귀화를 통해서만 영토 내의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점차 정치적 권리를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몇 가지 논리를 근거로 두고 있다. 첫째,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권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이주민의 정치참여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은 이주민들의 역량을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의견을 말하는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주민은 일을 하면서 혹은 그 사회에 정주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주장이다. 특히 유럽에서 유럽연합회원국가 출신의 이주민과 비유럽국가 출신 이주민 사이에 이주민이라는 신분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출신국가를 이유를 차별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 최근의 논쟁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의 선거권 허용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소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권은 국가의 국민이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진정으로 그 국가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귀화를 통해서 이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면 귀화에 대한 동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에게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외국인의 이익과 내국인

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어 국가가 분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이 단위가 되어 국가를 이루는 동인으로서 전제되어 있는 민족주의 이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외국인의 전면적인 투표권 부여는 민족국가의 경계가 뚜렷한 오늘날의 시대에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보다 생활정치적이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직접적인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지방선거에서는 국적을 초월하여 거주민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해 볼 문제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주민은 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와의 동화 및 통합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나. 조사개요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당사자는 이주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유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사의 지역은 전국을 안배하였으며, 응답은 이주민 당사자의 경우 433명이 회수되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었다.

〈표 III-1〉 조사 개요

구분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이주민 당사자
조사 방법	이주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유치 조사
조사 지역	전국
분석 사례수	433명
조사 기간	2018. 9. ~ 10.

다. 조사항목

이주민 당사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인적사항은 출신국가,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 경제

활동여부, 직업, 개인 및 가구의 월평균 소득,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 및 미취학자녀수, 최초 한국 입국시기 및 총 체류기간, 현재 체류형태, 한국어 수준 등이다.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여부, 지방선거 투표 여부,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이주민 참정권 인지 여부, 이주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지 여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정도에 대한 실태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및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점,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게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들이 우려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이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과 한국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표 Ⅲ-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응답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가 - 연령 - 성별 - 혼인상태 -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 - 경제활동여부 - 직업 - 월평균 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 -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 및 미취학 자녀수 - 최초한국입국시기(년/월) 및 체류기간(년/개월) - 현재체류형태 - 한국어수준

구분	조사 항목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 지방선거 선거권 여부 - 지방선거 투표 여부 -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 이주민 참정권 인지 여부(10문항) - 이주민 정치적 자유활동 인지 여부(9문항) -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 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및 인정시점(13문항) -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미칠 영향(7문항) - 이주민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게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들의 우려 여부(7문항) - 이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6문항)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도(6문항) - 한국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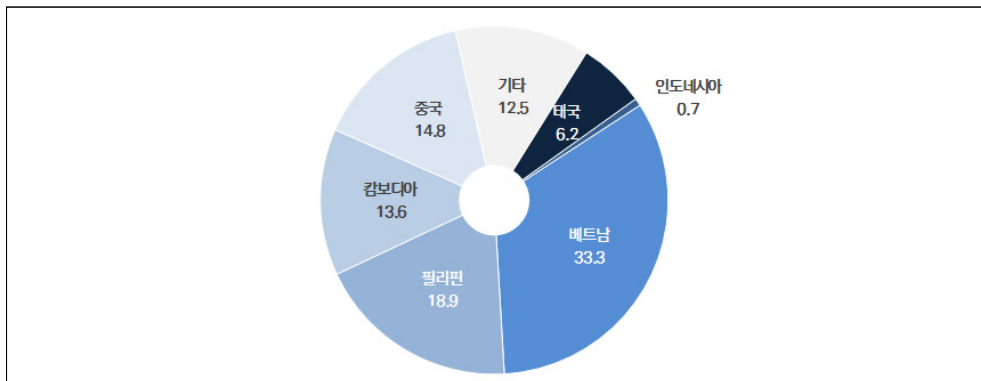
가. 응답자 특성

1) 출신국가

이주민 당사자 응답자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144명(33.3%), 필리핀 82명(18.9%), 중국 64명(14.8%), 캄보디아 59명(13.6%), 태국 27명(6.2%), 인도네시아 3명(0.7%)이며, 기타 54명(12.5%)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III-1〉 출신국가별 구분

(단위 : %)



응답자의 체류형태는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가 125명(28.9%)로 가장 많고, F-6(결혼이민)이 106명(24.5%), 귀화자 67명(15.5%), F-5(영주) 33명(7.6%), D-2 및 D-4(유학생) 23명(5.3%), F-2(거주) 20명(4.6%), 난민 15명(3.5%)이며, 기타 거주자도 21명(4.8%)에 달한다.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이 35.2%로 가장 높았고, F-6(결혼이민)은 '베트남' 출신이 49.1%로 가장 높았다. F-5(영주)는 '중국' 출신이 78.8%, F-2(거주)도 '중국' 출신이 40.0%로 높았다. D-2, D-4(유학생)은 '기타' 출신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고용허가제 및 결혼이주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닐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귀화자는 '베트남' 출신이 47.8%, 미등록체류자는 '필리핀' 출신이 60.0%, 난민은 '기타'가 7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출신국가별 구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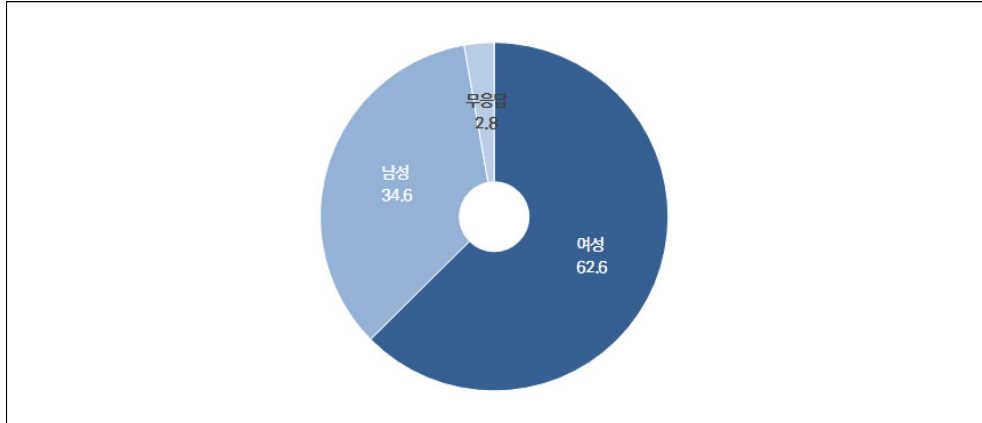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태국	인도 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 디아	중국	기타	
전체	(433)	6.2	0.7	33.3	18.9	13.6	14.8	12.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9.6	0.0	28.0	18.4	35.2	0.0	8.8
	F-6(결혼이민)	(106)	0.0	0.0	49.1	19.8	8.5	15.1	7.5
	F-5(영주)	(33)	3.0	0.0	9.1	6.1	0.0	78.8	3.0
	F-2(거주)	(20)	5.0	0.0	25.0	10.0	5.0	40.0	15.0
	D-2, D-4(유학생)	(23)	0.0	13.0	21.7	0.0	0.0	13.0	52.2
	귀화자	(67)	0.0	0.0	47.8	25.4	7.5	14.9	4.5
	미등록체류자	(15)	6.7	0.0	20.0	60.0	0.0	0.0	13.3
	난민	(15)	13.3	0.0	0.0	13.3	0.0	0.0	73.3
	기타 거주자	(21)	33.3	0.0	28.6	19.0	0.0	4.8	14.3
	무응답	(8)	37.5	0.0	37.5	25.0	0.0	0.0	0.0

2) 성별

이주민 당사자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62.6%로, '남성'(34.6%) 보다 많다.

〈그림 III-2〉 성별 구분

(단위 : %)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남성’이 79.2%로 ‘여성’ 14.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F-6(결혼이민)은 ‘여성’이 95.3%로 ‘남성’ 4.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F-5(영주)는 ‘여성’ 87.9%로 ‘남성’ 12.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F-2(거주)는 ‘여성’이 85.0%로 ‘남성’ 15%보다 높다. D-2, D-4(유학생)은 ‘남성’ 52.2%로 여성 47.85와 유사한 수준이며, 귀화자는 ‘여성’이 98.5%이다. 미등록체류자는 ‘여성’ 66.7%이고 ‘남성’은 33.3%이며, 난민은 ‘남성’ 66.7%이고 ‘여성’ 33.3%이다.

특히, 조사대상 권리 인정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귀화자의 경우에는 여성만 있고, 제한적으로 투표권 등이 인정되는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7배 이상 높다. 또한 장기체류가 인정되는 결혼이주민이나 거주자의 경우에도 여성비중이 남성비중보다 매우 높다. 따라서 권리의 인식 수준에서 성별, 체류자격별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I-4〉 성별 구분

(단위 : %)

구분	사례수	여성	남성	무응답	
전체	(433)	62.6	34.6	2.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4.4	79.2	6.4
	F-6(결혼이민)	(106)	95.3	4.7	0.0
	F-5(영주)	(33)	87.9	12.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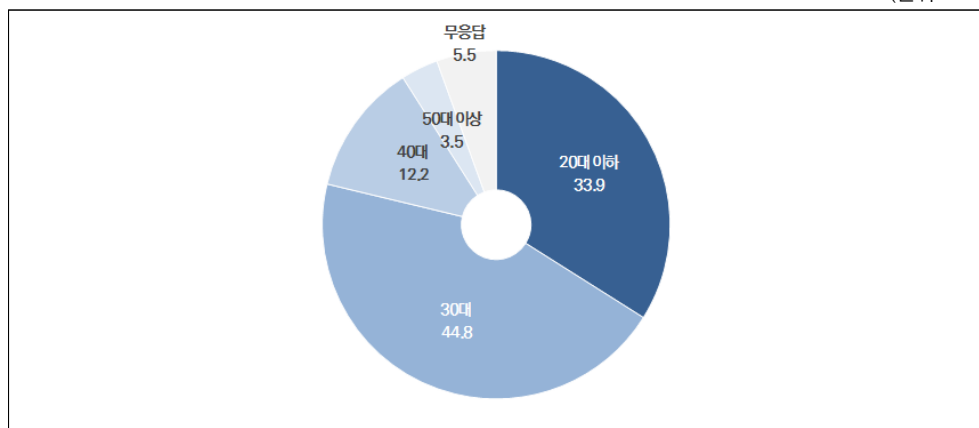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여성	남성	무응답
F-2(거주)	(20)	85.0	15.0	0.0
D-2, D-4(유학생)	(23)	47.8	52.2	0.0
귀화자	(67)	98.5	0.0	1.5
미등록체류자	(15)	66.7	33.3	0.0
난민	(15)	33.3	66.7	0.0
기타 거주자	(21)	42.9	47.6	9.5
무응답	(8)	62.5	25.0	12.5

3) 연령별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 147명(33.9%), '40대'는 53명(12.2%), '50대 이상' 15명(3.5%)이며, 무응답도 24명(5.5%)이 있다.

〈그림 Ⅲ-3〉 연령별 구분

(단위 : %)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20대 이하' 46.4%, F-6(결혼이민)은 '30대' 49.1%, F-5(영주)는 '30대' 63.6%, F-2(거주)는 '20대 이하' 35.0%, D-2, D-4(유학생)은 '20대 이하' 78.3%, 귀화자는 '30대' 55.2%, 미등록체류자는 '20대 이하' 40.0%, 난민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 연령별 구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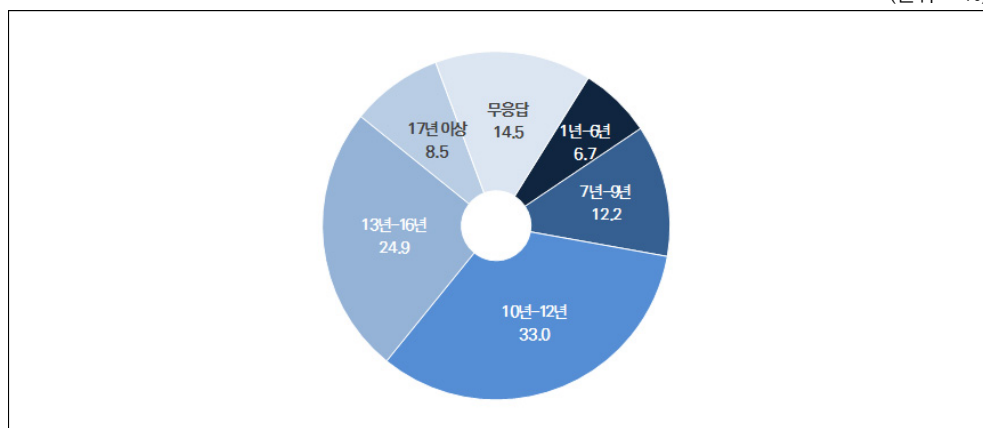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전체	(433)	33.9	44.8	12.2	3.5	5.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6.4	41.6	4.0	0.0	8.0
	F-6(결혼이민)	(106)	34.9	49.1	11.3	1.9	2.8
	F-5(영주)	(33)	3.0	63.6	27.3	6.1	0.0
	F-2(거주)	(20)	35.0	30.0	20.0	5.0	10.0
	D-2, D-4(유학생)	(23)	78.3	21.7	0.0	0.0	0.0
	귀화자	(67)	10.4	55.2	22.4	6.0	6.0
	미등록체류자	(15)	40.0	13.3	20.0	20.0	6.7
	난민	(15)	40.0	40.0	6.7	13.3	0.0
	기타 거주자	(21)	23.8	42.9	19.0	4.8	9.5
	무응답	(8)	25.0	50.0	0.0	0.0	25.0

4) 학교교육 기간

응답자의 학교교육 기간은 '10년-12년'이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16년'(24.9%), '7년-9년'(12.2%), '17년 이상'(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I-4〉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단위 : %)



교육기간을 체류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10년-12년' 36.8%, F-6(결혼이민)은 '10년-12년' 33.0%, F-5(영주)는 '10년-12년' 42.4%, F-2(거주)는 '10년-12년' 35.0%, D-2, D-4(유학생)는 '17년 이상' 60.9%, 귀화자는 '10년-12년' 40.3%, 미등록체류자는 '10년-12년' 33.3%, 난민은 '13년-16년'이 33.3%로 나타났다.

D-2, D-4(유학생)는 '17년 이상'의 교육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유학생의 대부분이 한국 내 대학교육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난민의 경우도 13~16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난민의 교육정도 역시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6〉 학교교육 기간별 구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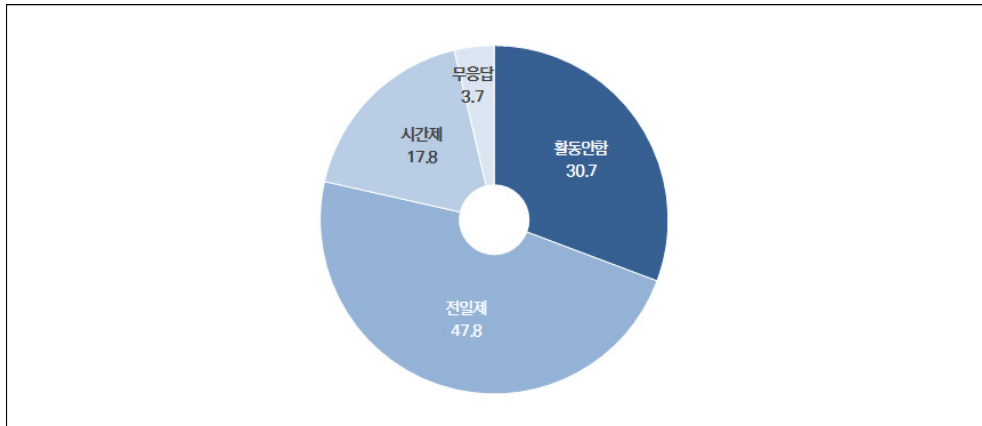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년-6년	7년-9년	10년-12년	13년-16년	17년 이상	무응답	
전체	(433)	6.7	12.2	33.0	24.9	8.5	14.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8.8	12.8	36.8	18.4	3.2	20.0
	F-6(결혼이민)	(106)	4.7	18.9	33.0	22.6	0.0	20.8
	F-5(영주)	(33)	0.0	9.1	42.4	39.4	3.0	6.1
	F-2(거주)	(20)	15.0	15.0	35.0	25.0	5.0	5.0
	D-2, D-4(유학생)	(23)	0.0	0.0	4.3	30.4	60.9	4.3
	귀화자	(67)	6.0	9.0	40.3	28.4	7.5	9.0
	미등록체류자	(15)	20.0	0.0	33.3	26.7	13.3	6.7
	난민	(15)	13.3	0.0	20.0	33.3	26.7	6.7
	기타 거주자	(21)	4.8	19.0	9.5	38.1	28.6	0.0
	무응답	(8)	0.0	12.5	37.5	0.0	0.0	50.0

5) 경제활동 여부

응답자 당사자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일제'가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0.7%), '시간제'(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경제활동 여부

(단위 : %)



이를 체류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전일제’ 84.8%, F-6(결혼이민)은 ‘활동안함’ 60.4%, F-5(영주)는 ‘시간제’ 39.4%, F-2(거주)는 ‘활동안함’ 45.0%, D-2, D-4(유학생)는 ‘활동안함’ 69.6%, 귀화자는 ‘전일제’ 40.3%, 미등록체류자는 ‘전일제’ 66.7%, 난민은 ‘활동안함’이 4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경제활동 여부는 체류형태별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학생과 난민의 경우, 유학생은 시간제, 난민은 전일제(33.3%), 시간제 2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일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활동안함’이 42.8%, ‘전일제’ 33.2%, ‘시간제’ 21.8%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남성’은 ‘전일제’ 77.3%, ‘시간제’ 12.0%, ‘활동안함’ 10.0%의 순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일제가 대부분인 것은 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조사대상 남성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여성의 경우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은 F-6, 귀화, 영주 등의 경우 경제활동이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I-7〉 경제활동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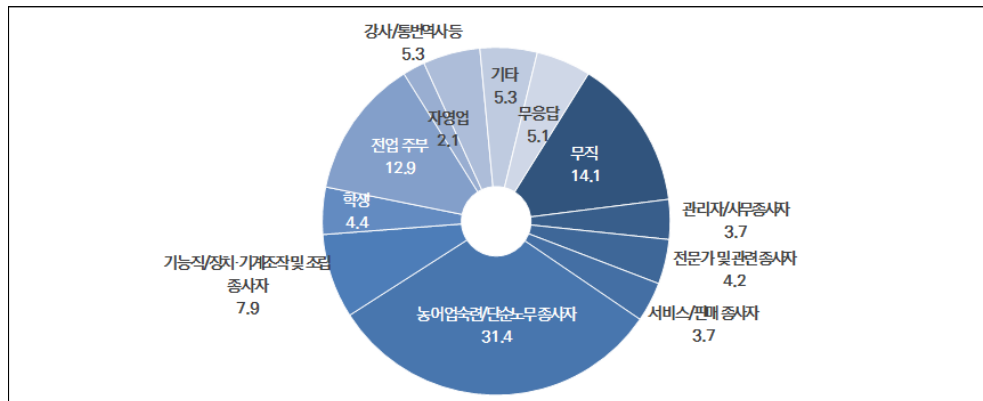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활동안함	전일제	시간제	무응답	
전체	(433)	30.7	47.8	17.8	3.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8	84.8	8.8	5.6
	F-6(결혼이민)	(106)	60.4	24.5	13.2	1.9
	F-5(영주)	(33)	30.3	27.3	39.4	3.0
	F-2(거주)	(20)	45.0	35.0	20.0	0.0
	D-2, D-4(유학생)	(23)	69.6	0.0	26.1	4.3
	귀화자	(67)	23.9	40.3	32.8	3.0
	미등록체류자	(15)	6.7	66.7	20.0	6.7
	난민	(15)	46.7	33.3	20.0	0.0
	기타 거주자	(21)	33.3	61.9	4.8	0.0
	무응답	(8)	25.0	50.0	0.0	25.0
성별	여성	(271)	42.8	33.2	21.8	2.2
	남성	(150)	10.0	77.3	12.0	0.7
	무응답	(12)	16.7	8.3	0.0	75.0

6) 직업

응답자의 현재 직업은 '농·어업숙련/단순노무 종사자'가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직'(14.1%), '전업 주부'(12.9%), '기능직/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직업

(단위 : %)



이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농·어업숙련/단순노무 종사자' 64.0%, F-6(결혼이민)은 '전업 주부' 35.8%, F-5(영주)는 '무직' 24.2%, F-2(거주)는 '전업 주부' 30.0%, D-2, D-4(유학생)는 '학생' 73.9%, 귀화자는 '강사/통번역사 등' 17.9%, 미등록체류자는 '농어업숙련/단순노무 종사자' 33.3%, 난민은 '무직'과 '농어업숙련/단순노무 종사자'가 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8〉 직업 (1)

(단위 : %)

구분		사례수	무직	관리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어업 숙련/단 순노무 종사자	기능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체		(433)	14.1	3.7	4.2	3.7	31.4	7.9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4	0.8	4.0	0.8	64.0	16.0
	F-6(결혼이민)	(106)	23.6	1.9	1.9	1.9	20.8	2.8
	F-5(영주)	(33)	24.2	3.0	3.0	15.2	6.1	6.1
	F-2(거주)	(20)	15.0	0.0	0.0	5.0	15.0	10.0
	D-2, D-4(유학생)	(23)	26.1	0.0	0.0	0.0	0.0	0.0
	귀화자	(67)	7.5	13.4	9.0	10.4	11.9	1.5
	미등록체류자	(15)	13.3	0.0	13.3	0.0	33.3	26.7
	난민	(15)	33.3	13.3	0.0	0.0	33.3	0.0
	기타 거주자	(21)	14.3	4.8	9.5	0.0	38.1	4.8
무응답	(8)	12.5	0.0	0.0	0.0	37.5	12.5	

〈표 III-9〉 직업 (2)

(단위 : %)

구분		사례수	학생	전업 주부	자영업	강사/ 통번역 사 등	기타	무응답
전체		(433)	4.4	12.9	2.1	5.3	5.3	5.1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0	0.0	2.4	0.0	2.4	7.2
	F-6(결혼이민)	(106)	0.0	35.8	0.0	3.8	4.7	2.8
	F-5(영주)	(33)	3.0	9.1	9.1	6.1	12.1	3.0
	F-2(거주)	(20)	0.0	30.0	5.0	15.0	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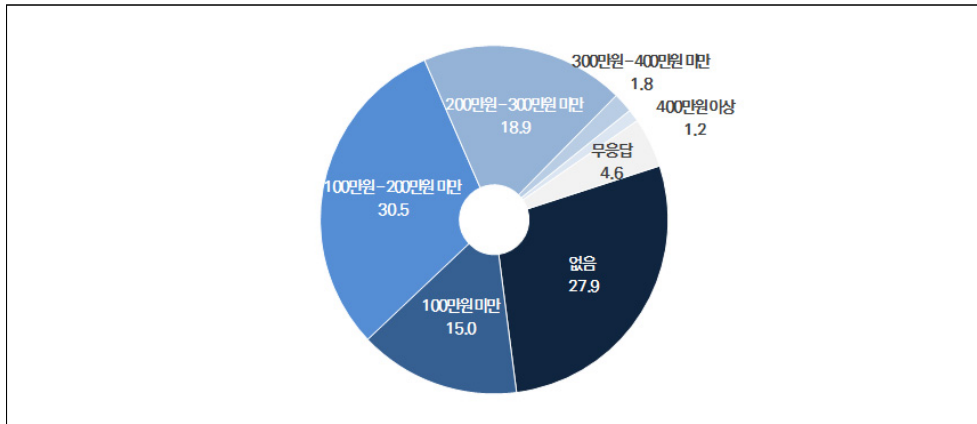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학생	전업 주부	자영업	강사/ 통번역 사 등	기타	무응답
D-2, D-4(유학생)	(23)	73.9	0.0	0.0	0.0	0.0	0.0
귀화자	(67)	0.0	11.9	1.5	17.9	9.0	6.0
미등록체류자	(15)	0.0	0.0	0.0	0.0	6.7	6.7
난민	(15)	0.0	0.0	0.0	6.7	13.3	0.0
기타 거주자	(21)	4.8	4.8	4.8	4.8	4.8	4.8
무응답	(8)	0.0	0.0	0.0	0.0	0.0	37.5

7) 월평균 개인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없음'(27.9%), '200만 원-300만 원 미만'(18.9%), '100만 원 미만'(15.0%), '300만 원-400만 원 미만'(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0만 원 이하가 58.4%이고 이중에서도 소득이 없음이 27.9%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7〉 월평균 개인소득

(단위 : %)



응답자의 월 개인소득을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100만 원-200만 원 미만' 44.0%, F-6(결혼이민)은 '없음' 59.4%, F-5(영주)는 '없음' 30.3%, F-2(거주)는 '없음' 30.0%, D-2, D-4(유학생)은 '없음' 60.9%, 귀화자는

‘100만 원-200만 원 미만’ 40.3%, 미등록체류자는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3.3%, 난민은 ‘없음’과 ‘100만 원 미만’이 각 3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직업과 교차 분석해 보면, 결혼이주민,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와 무직이 많았으며, 유학생과 난민 역시 경제활동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은 시간제 일 등에 종사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10〉 월평균 개인소득 (1)

(단위 : %)

구분		사례수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전체		(433)	27.9	15.0	30.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8	2.4	44.0
	F-6(결혼이민)	(106)	59.4	9.4	15.1
	F-5(영주)	(33)	30.3	27.3	12.1
	F-2(거주)	(20)	30.0	20.0	15.0
	D-2, D-4(유학생)	(23)	60.9	39.1	0.0
	귀화자	(67)	16.4	29.9	40.3
	미등록체류자	(15)	20.0	20.0	53.3
	난민	(15)	33.3	33.3	26.7
	기타 거주자	(21)	28.6	9.5	57.1
무응답	(8)	25.0	0.0	37.5	

〈표 III-11〉 월평균 개인소득 (2)

(단위 : %)

구분		사례수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433)	18.9	1.8	1.2	4.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1.6	2.4	0.8	8.0
	F-6(결혼이민)	(106)	11.3	0.0	0.9	3.8
	F-5(영주)	(33)	21.2	6.1	3.0	0.0
	F-2(거주)	(20)	20.0	5.0	5.0	5.0
	D-2, D-4(유학생)	(23)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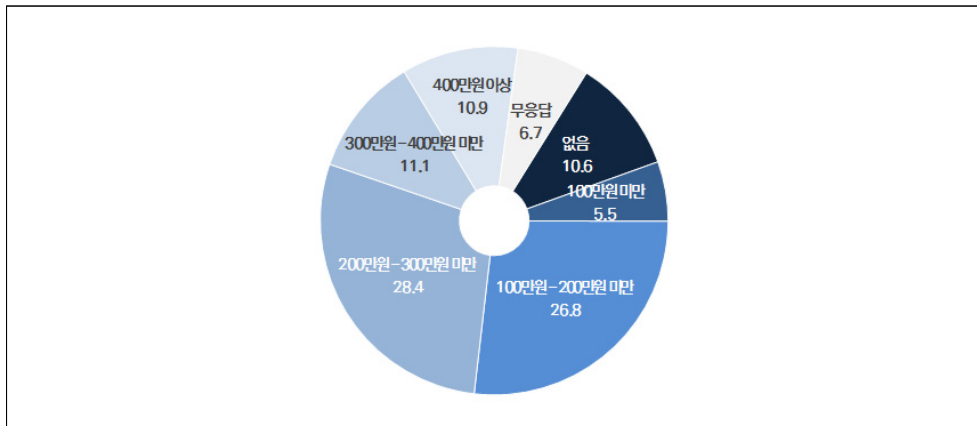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귀화자	(67)	6.0	3.0	1.5	3.0
미등록체류자	(15)	6.7	0.0	0.0	0.0
난민	(15)	0.0	0.0	0.0	6.7
기타 거주자	(21)	4.8	0.0	0.0	0.0
무응답	(8)	12.5	0.0	0.0	25.0

8) 월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28.4%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200만 원' 26.8%인데 비해, '100만 원 미만'과 '없음'은 각각 5.5%와 10.6%이었고, '4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10.9%에 달했다.

〈그림 Ⅲ-8〉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이를 체류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100만 원-200만 원 미만' 41.6%, F-6(결혼이민)은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9.2%, F-5(영주)는 '400만 원 이상' 36.4%, F-2(거주)는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5.0%, D-2, D-4(유학생)은 '없음' 43.5%, 귀화자는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2.4%, 미등록체류자와 난민은 각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D-2, D-4(유학생)과 난민을 제외하면, 개인 소득이 낮은 수준을 보였던 결혼이주민과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 가구 소득 수준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2〉 월평균 가구소득 (1)

(단위 : %)

구분		사례수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전체		(433)	10.6	5.5	26.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8	1.6	41.6
	F-6(결혼이민)	(106)	17.9	3.8	14.2
	F-5(영주)	(33)	3.0	3.0	15.2
	F-2(거주)	(20)	10.0	5.0	10.0
	D-2, D-4(유학생)	(23)	43.5	21.7	13.0
	귀화자	(67)	9.0	10.4	17.9
	미등록체류자	(15)	6.7	13.3	46.7
	난민	(15)	20.0	13.3	46.7
	기타 거주자	(21)	9.5	0.0	42.9
무응답	(8)	12.5	0.0	50.0	

〈표 Ⅲ-13〉 월평균 가구소득 (2)

(단위 : %)

구분		사례수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전체		(433)	28.4	11.1	10.9	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8	1.6	2.4	11.2
	F-6(결혼이민)	(106)	29.2	16.0	11.3	7.5
	F-5(영주)	(33)	27.3	15.2	36.4	0.0
	F-2(거주)	(20)	45.0	10.0	20.0	0.0
	D-2, D-4(유학생)	(23)	0.0	17.4	4.3	0.0
	귀화자	(67)	19.4	22.4	17.9	3.0
	미등록체류자	(15)	20.0	6.7	0.0	6.7
	난민	(15)	13.3	0.0	0.0	6.7
	기타 거주자	(21)	19.0	9.5	14.3	4.8
무응답	(8)	12.5	0.0	0.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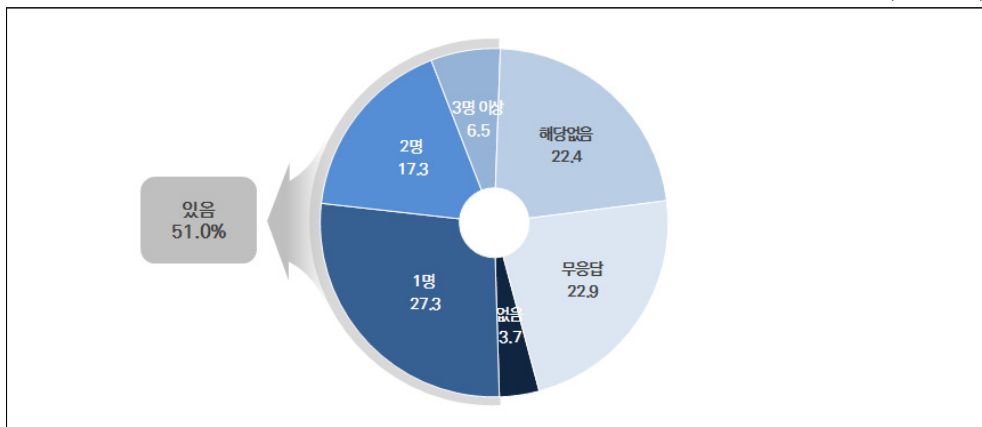
9)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응답자의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5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음’ 3.7%, 체류자격상 자녀 동반이 허락되지 않거나 비혼인 경우 등 ‘해당없음’이 22.4%의 비율로 나타난다.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자녀 수는 ‘1명’이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명’(17.3%), ‘3명 이상’(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단위 : %)



이를 체류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1명’ 15.2%, F-6(결혼이민)은 ‘1명’ 40.6%, F-5(영주)는 ‘1명’ 45.5%, F-2(거주)는 ‘2명’ 50.0%, D-2, D-4(유학생)은 ‘해당없음’ 95.7%, 귀화자는 ‘2명’ 34.3%, 미등록체류자는 ‘1명’ 33.3%, 난민은 ‘1명’이 4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족동반이 인정되지 않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단순노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미등록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와 동거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출산, 육아, 아동권 등과 같은 사회보장적인 권리 측면에서 이주민들의 권리가 강조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14〉 미성년자녀 동거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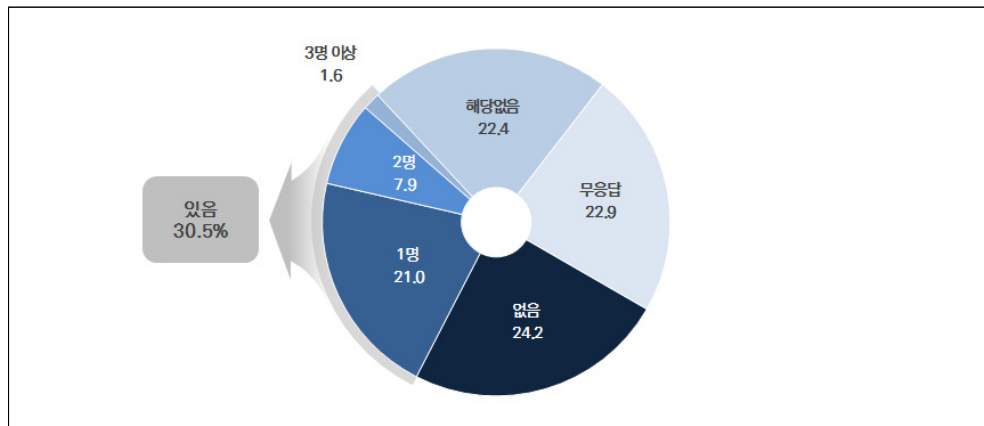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해당 없음	무응답	
			소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433)	3.7	51.0	27.3	17.3	6.5	22.4	22.9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2	28.0	15.2	5.6	7.2	46.4	22.4
	F-6(결혼이민)	(106)	7.5	58.5	40.6	15.1	2.8	0.9	33.0
	F-5(영주)	(33)	3.0	84.8	45.5	36.4	3.0	3.0	9.1
	F-2(거주)	(20)	5.0	80.0	30.0	50.0	0.0	5.0	10.0
	D-2, D-4(유학생)	(23)	0.0	4.3	4.3	0.0	0.0	95.7	0.0
	귀화자	(67)	1.5	74.6	25.4	34.3	14.9	0.0	23.9
	미등록체류자	(15)	0.0	53.3	33.3	6.7	13.3	33.3	13.3
	난민	(15)	0.0	53.3	40.0	13.3	0.0	13.3	33.3
	기타 거주자	(21)	4.8	47.6	19.0	19.0	9.5	33.3	14.3
	무응답	(8)	0.0	37.5	25.0	0.0	12.5	0.0	62.5

10)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응답자의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등의 보장 대상이 되는 미취학 동거자녀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취학 동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1명'이 2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명'(7.9%), '3명 이상'(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에도 미취학 동거 자녀를 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Ⅲ-10〉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단위 : %)



이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1명’ 12.0%, F-6(결혼이민)은 ‘1명’ 29.2%, F-5(영주)는 ‘1명’ 42.4%, F-2(거주)는 ‘1명’ 35.0%, D-2, D-4(유학생)은 ‘해당없음’ 95.7%, 귀화자는 ‘1명’ 17.9%, 미등록체류자는 ‘1명’ 13.3%, 난민은 ‘1명’이 20.0%로 가장 높게 조사된다.

따라서 ‘해당없음’을 선택한 D-2, D-4(유학생)을 제외하면, 모든 체류자격에서 미취학 자녀는 1명이 가장 많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4.8%, F-6(결혼이민) 7.5%, F-5(영주) 9.1%, F-2(거주) 15%, D-2, D-4(유학생) 0%, 귀화자 13.4%, 미등록체류자 6.7%, 난민 6.7%, 기타 거주자 14.3%로 조사되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3.2%, 미등록체류자 6.7%를 제외하면 없거나 있더라도 1% 미만의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될 수 있는 것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이주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 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표 III-15〉 미취학자녀 동거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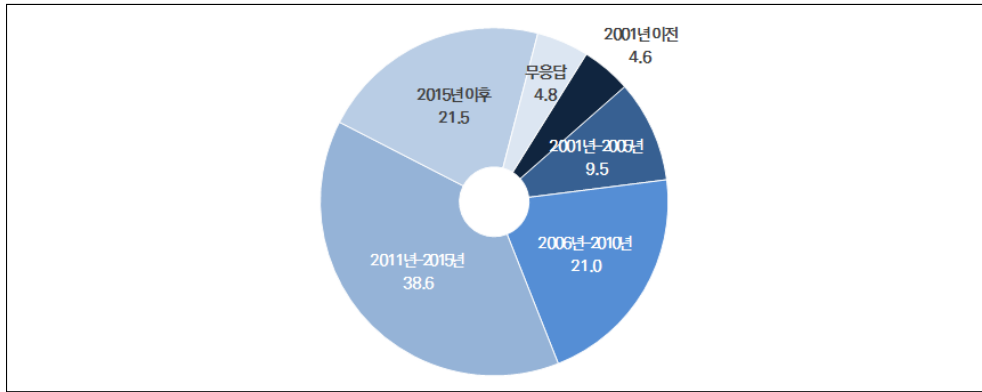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있음				해당 없음	무응답	
			소계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433)	24.2	30.5	21.0	7.9	1.6	22.4	22.9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1.2	20.0	12.0	4.8	3.2	46.4	22.4
	F-6(결혼이민)	(106)	28.3	37.7	29.2	7.5	0.9	0.9	33.0
	F-5(영주)	(33)	36.4	51.5	42.4	9.1	0.0	3.0	9.1
	F-2(거주)	(20)	35.0	50.0	35.0	15.0	0.0	5.0	10.0
	D-2, D-4(유학생)	(23)	0.0	4.3	4.3	0.0	0.0	95.7	0.0
	귀화자	(67)	44.8	31.3	17.9	13.4	0.0	0.0	23.9
	미등록체류자	(15)	26.7	26.7	13.3	6.7	6.7	33.3	13.3
	난민	(15)	26.7	26.7	20.0	6.7	0.0	13.3	33.3
	기타 거주자	(21)	14.3	38.1	19.0	14.3	4.8	33.3	14.3
무응답	(8)	12.5	25.0	25.0	0.0	0.0	0.0	62.5	

11) 최초 입국 시기

응답자의 최초 입국 시기는 '2011~2015년'이 가장 많아 38.6%를 차지했으며, '2015년 이후'가 21.5%, '2006~2010년'이 21%, '2005년 이전'이 14.1%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체류기간은 '3~5년' 27.9%, '6~10년' 26.8%, '11~15년' 15.7%, '16년 이상' 7.2%로 나타나 대부분이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Ⅲ-11〉 최초 입국 시기

(단위 : %)



최초 입국시기를 체류형태별로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2011년-2015년' 44.8%, F-6(결혼이민)은 '2011년-2015년' 46.2%, F-5(영주)는 '2006년-2010년' 51.5%, F-2(거주)는 '2011년-2015년' 40.0%, D-2, D-4(유학생)은 '2015년 이후' 47.8%, 귀화자는 '2001년-2005년' 34.3%, 미등록체류자는 '2011년-2015년' 33.3%, 난민은 '2015년 이후'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Ⅲ-16〉 최초 입국 시기

(단위 : %)

구분	사례수	2001년 이전	2001년 - 2005년	2006년 - 2010년	2011년 - 2015년	2015년 이후	무응답	
전체	(433)	4.6	9.5	21.0	38.6	21.5	4.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8	0.8	12.8	44.8	33.6	7.2
	F-6(결혼이민)	(106)	1.9	4.7	21.7	46.2	19.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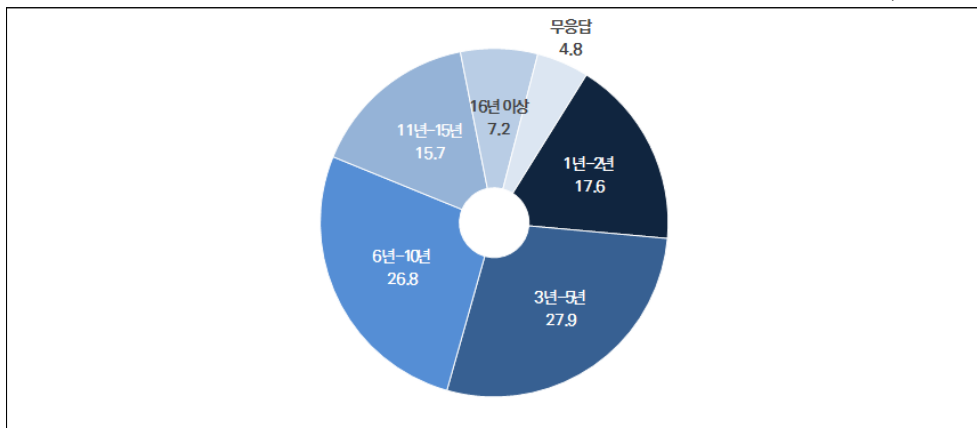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2001년 이전	2001년 - 2005년	2006년 - 2010년	2011년 - 2015년	2015년 이후	무응답
F-5(영주)	(33)	3.0	15.2	51.5	27.3	3.0	0.0
F-2(거주)	(20)	5.0	5.0	35.0	40.0	10.0	5.0
D-2, D-4(유학생)	(23)	0.0	0.0	4.3	43.5	47.8	4.3
귀화자	(67)	14.9	34.3	32.8	14.9	0.0	3.0
미등록체류자	(15)	13.3	6.7	26.7	33.3	20.0	0.0
난민	(15)	6.7	20.0	0.0	33.3	40.0	0.0
기타 거주자	(21)	9.5	9.5	4.8	52.4	23.8	0.0
무응답	(8)	0.0	0.0	0.0	50.0	25.0	25.0

12) 체류기간

응답자의 체류기간은 '3년-5년'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26.8%), '1년-2년'(17.6%), '11년-15년'(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의 대부분이 3년 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Ⅲ-12〉 체류기간

(단위 : %)



이들 체류 기간을 체류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3년-5년' 40.8%, F-6(결혼이민)은 '6년-10년' 32.1%, F-5(영주)는 '6년-10년' 51.5%,

F-2(거주)는 '6년-10년' 55.0%, D-2, D-4(유학생)은 '3년-5년' 39.1%, 귀화자는 '11년-15년' 40.3%, 미등록체류자는 '11년-15년' 33.3%, 난민은 '1년-2년' 과 '3년-5년'이 각 33.3%로 높게 조사되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단순노무자도 3년 이상의 장기체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결혼이민, 영주, 거주, 귀화 등은 장기 체류를 전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 미등록체류자는 기존 체류자격의 상실이 전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7〉 체류기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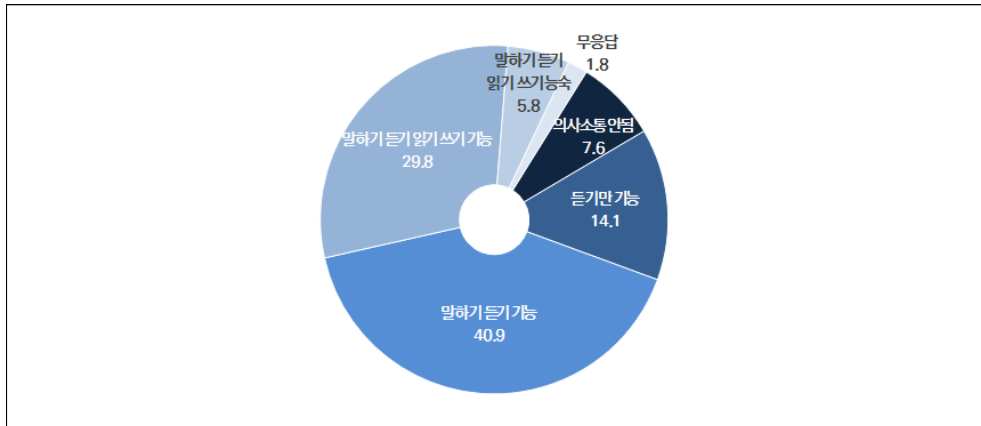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년-2년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 이상	무응답	
전체	(433)	17.6	27.9	26.8	15.7	7.2	4.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7.2	40.8	20.0	4.0	0.8	7.2
	F-6(결혼이민)	(106)	17.0	31.1	32.1	11.3	2.8	5.7
	F-5(영주)	(33)	3.0	6.1	51.5	33.3	6.1	0.0
	F-2(거주)	(20)	5.0	20.0	55.0	15.0	0.0	5.0
	D-2, D-4(유학생)	(23)	34.8	39.1	17.4	4.3	0.0	4.3
	귀화자	(67)	0.0	3.0	26.9	40.3	26.9	3.0
	미등록체류자	(15)	20.0	13.3	20.0	33.3	13.3	0.0
	난민	(15)	33.3	33.3	6.7	13.3	13.3	0.0
	기타 거주자	(21)	19.0	52.4	4.8	9.5	14.3	0.0
	무응답	(8)	25.0	25.0	25.0	0.0	0.0	25.0

13) 한국어 수준

응답자의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듣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경우가 40.9%, '말하기·듣기·읽기·쓰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경우가 29.8%로 나타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7.6%, '듣기만 가능'한 경우 14.1%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선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수준도 함께 높아졌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III-13〉 한국어 수준

(단위 : %)



이를 체류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말하기·듣기 가능’ 53.6%, F-6(결혼이민)은 ‘말하기·듣기 가능’ 51.9%, F-5(영주)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가능’ 48.5%, F-2(거주)는 ‘말하기·듣기 가능’,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가능’ 각 35.0%, D-2, D-4(유학생)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가능’ 60.9%, 귀화자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가능’ 61.2%, 미등록체류자는 ‘말하기·듣기 가능’ 46.7%, 난민은 ‘말하기·듣기 가능’이 6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생과 대한민국 국민인 귀화자의 경우에는 더 높은 한국어 능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영주자격 체류자나 거주자의 경우에도 유창한 한국어 수준을 보유한 경우가 다수이다. 나머지 체류형태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8〉 한국어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의사소통 안됨	듣기만 가능	말하기 듣기 가능	말하기 듣기읽기 쓰기가능	말하기 듣기읽기 쓰기능숙	무응답	
전체	(433)	7.6	14.1	40.9	29.8	5.8	1.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2.8	24.0	53.6	9.6	0.0	0.0
	F-6(결혼이민)	(106)	1.9	9.4	51.9	32.1	2.8	1.9

구분	사례수	의사소통 안됨	듣기만 가능	말하기 듣기 가능	말하기 듣기읽기 쓰기가능	말하기 듣기읽기 쓰기능숙	무응답
F-5(영주)	(33)	3.0	9.1	18.2	48.5	18.2	3.0
F-2(거주)	(20)	5.0	5.0	35.0	35.0	15.0	5.0
D-2, D-4(유학생)	(23)	4.3	4.3	17.4	60.9	13.0	0.0
귀화자	(67)	1.5	6.0	16.4	61.2	13.4	1.5
미등록체류자	(15)	26.7	26.7	46.7	0.0	0.0	0.0
난민	(15)	0.0	20.0	60.0	13.3	6.7	0.0
기타 거주자	(21)	23.8	14.3	47.6	14.3	0.0	0.0
무응답	(8)	25.0	25.0	12.5	0.0	0.0	37.5

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1) 지방선거 선거권⁵⁸⁾ 인식 여부

이주민 응답자는 자신에게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23.8%에 불과하고,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5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지방선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인식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26.4%), ‘필리핀’(24.4%), ‘캄보디아’(15.3%), ‘태국’(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9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33.3%), ‘난민’(26.7%), ‘F-2(거주)’(20.0%), ‘F-6(결혼이민)’(16.0%), ‘미등록체류자’(6.7%),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법상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 94%가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나머지 1.5%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각각 1.5%와 3%이다. 따라서 귀화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권리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 선거권이

58)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함.

인정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름' 24.2%에 달했다. 이는 선거권에 대한 보유인식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교육 또는 홍보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93.9%로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60.0%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권리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F-5(영주)'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거권이 인정되나 34.5%만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거주)'(23.5%), 'F-6(결혼이민)'(14.9%), '미등록체류자'(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아, 오히려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은 조사대상자 중 선거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는 귀화자가 없다. 다만, 'F-5(영주)'의 경우에는 25.0%만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F-6(결혼이민)'은 40.0%가 선거권이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권리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난민'(10.0%)과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0%)는 권리인식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3.3%), '30대'(28.4%), '20대 이하'(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1.1%), '전일제'(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7.1%), '6년-10년'(28.4%), '1년-2년'(9.2%), '3년-5년'(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지방선거 선거권 보유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3.8	58.2	12.5	5.5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1.5	14.8	0.0	$x^2=29.549,$ $p=0.003$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베트남	(144)	26.4	58.3	8.3	6.9	
	필리핀	(82)	24.4	51.2	14.6	9.8	
	캄보디아	(59)	15.3	76.3	5.1	3.4	
	중국	(64)	35.9	46.9	15.6	1.6	
	기타	(54)	22.2	50.0	22.2	5.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4	77.6	15.2	4.8	$x^2=246.744,$ $p=0.000$
	F-6(결혼이민)	(106)	16.0	73.6	5.7	4.7	
	F-5(영주)	(33)	33.3	42.4	24.2	0.0	
	F-2(거주)	(20)	20.0	60.0	10.0	10.0	
	D-2, D-4(유학생)	(23)	0.0	73.9	26.1	0.0	
	귀화자	(67)	94.0	1.5	1.5	3.0	
	미등록체류자	(15)	6.7	60.0	13.3	20.0	
	난민	(15)	26.7	33.3	13.3	26.7	
	기타 거주자	(21)	0.0	71.4	28.6	0.0	
무응답	(8)	0.0	50.0	25.0	25.0		
성별	여성	(271)	35.4	50.2	9.6	4.8	$x^2=52.975,$ $p=0.000$
	남성	(150)	4.0	73.3	17.3	5.3	
	무응답	(12)	8.3	50.0	16.7	25.0	
연령별	20대 이하	(147)	7.5	70.1	16.3	6.1	$x^2=42.957,$ $p=0.000$
	30대	(194)	28.4	57.7	10.8	3.1	
	40대	(53)	49.1	39.6	9.4	1.9	
	50대 이상	(15)	33.3	40.0	6.7	20.0	
	무응답	(24)	25.0	41.7	12.5	20.8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1.1	60.2	11.3	7.5	$x^2=24.297,$ $p=0.000$
	전일제	(207)	18.4	65.7	12.1	3.9	
	시간제	(77)	44.2	37.7	16.9	1.3	
	무응답	(16)	18.8	43.8	6.3	31.3	
체류 기간	1년-2년	(76)	9.2	65.8	19.7	5.3	$x^2=94.039,$ $p=0.000$
	3년-5년	(121)	4.1	75.2	14.0	6.6	
	6년-10년	(116)	28.4	58.6	9.5	3.4	
	11년-15년	(68)	47.1	38.2	8.8	5.9	
	16년 이상	(31)	71.0	22.6	6.5	0.0	
	무응답	(21)	19.0	47.6	14.3	19.0	

〈표 III-20〉 여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5.4	50.2	9.6	4.8	-
출신 국가	태국	(17)	5.9	76.5	17.6	0.0	$\chi^2=15.847,$ $p=0.198$
	인도네시아	(1)	0.0	100.0	0.0	0.0	
	베트남	(100)	37.0	49.0	6.0	8.0	
	필리핀	(57)	33.3	45.6	14.0	7.0	
	캄보디아	(17)	52.9	47.1	0.0	0.0	
	중국	(56)	41.1	44.6	12.5	1.8	
	기타	(23)	30.4	60.9	8.7	0.0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83.3	11.1	0.0	$\chi^2=162.302,$ $p=0.000$
	F-6(결혼이민)	(101)	14.9	74.3	5.9	5.0	
	F-5(영주)	(29)	34.5	44.8	20.7	0.0	
	F-2(거주)	(17)	23.5	58.8	5.9	11.8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93.9	1.5	1.5	3.0	
	미등록체류자	(10)	10.0	40.0	20.0	30.0	
	난민	(5)	60.0	20.0	20.0	0.0	
	기타 거주자	(9)	0.0	55.6	44.4	0.0	
무응답	(5)	0.0	40.0	40.0	20.0		
연령 별	20대 이하	(74)	13.5	66.2	12.2	8.1	$\chi^2=24.816,$ $p=0.000$
	30대	(132)	39.4	50.0	8.3	2.3	
	40대	(44)	54.5	31.8	11.4	2.3	
	50대 이상	(11)	45.5	36.4	0.0	18.2	
	무응답	(10)	50.0	30.0	10.0	1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16)	24.1	62.1	7.8	6.0	$\chi^2=18.022,$ $p=0.001$
	전일제	(90)	37.8	47.8	11.1	3.3	
	시간제	(59)	54.2	32.2	11.9	1.7	
	무응답	(6)	33.3	33.3	0.0	33.3	
체류 기간	1년-2년	(38)	18.4	52.6	21.1	7.9	$\chi^2=59.140,$ $p=0.000$
	3년-5년	(56)	8.9	78.6	5.4	7.1	
	6년-10년	(86)	36.0	51.2	10.5	2.3	
	11년-15년	(52)	59.6	28.8	7.7	3.8	
	16년 이상	(27)	74.1	18.5	7.4	0.0	
	무응답	(12)	16.7	66.7	0.0	16.7	

〈표 III-21〉 남성 - 지방선거권 보유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0	73.3	17.3	5.3	-
출신 국가	태국	(10)	0.0	90.0	10.0	0.0	$\chi^2=33.153,$ $p=0.001$
	인도네시아	(2)	0.0	50.0	50.0	0.0	
	베트남	(40)	0.0	82.5	12.5	5.0	
	필리핀	(17)	5.9	70.6	17.6	5.9	
	캄보디아	(42)	0.0	88.1	7.1	4.8	
	중국	(8)	0.0	62.5	37.5	0.0	
	기타	(31)	16.1	41.9	32.3	9.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2.0	78.8	15.2	4.0	$\chi^2=34.504,$ $p=0.002$
	F-6(결혼이민)	(5)	40.0	60.0	0.0	0.0	
	F-5(영주)	(4)	25.0	25.0	50.0	0.0	
	F-2(거주)	(3)	0.0	66.7	33.3	0.0	
	D-2, D-4(유학생)	(12)	0.0	58.3	41.7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40.0	10.0	40.0	
	기타 거주자	(10)	0.0	80.0	20.0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연령별	20대 이하	(72)	1.4	75.0	19.4	4.2	$\chi^2=10.583,$ $p=0.102$
	30대	(62)	4.8	74.2	16.1	4.8	
	40대	(9)	22.2	77.8	0.0	0.0	
	50대 이상	(4)	0.0	50.0	25.0	25.0	
	무응답	(3)	0.0	33.3	33.3	33.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5)	0.0	40.0	40.0	20.0	$\chi^2=16.162,$ $p=0.003$
	전일제	(116)	3.4	80.2	12.1	4.3	
	시간제	(18)	11.1	55.6	33.3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체류 기간	1년-2년	(35)	0.0	77.1	20.0	2.9	$\chi^2=39.034,$ $p=0.000$
	3년-5년	(61)	0.0	72.1	21.3	6.6	
	6년-10년	(29)	6.9	82.8	6.9	3.4	
	11년-15년	(15)	0.0	73.3	13.3	13.3	
	16년 이상	(4)	50.0	50.0	0.0	0.0	
	무응답	(6)	33.3	33.3	33.3	0.0	

2)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응답자 중 지방선거권이 있는 자 중 ‘지방선거 투표 여부’에 대해 ‘예’는 86.5%, ‘아니오’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의 투표율은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이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국가별 투표경험은 ‘태국’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93.3%), ‘베트남’(90.6%), ‘캄보디아’(8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 투표경험은 ‘귀화자’가 90.5%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귀화자의 투표율은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5(영주)’의 투표율은 63.6%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투표경험을 성별로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90.3%, ‘F-5(영주)’(70.0%)가 투표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남성은 F-5(영주)가 100%가 투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성이 오히려 권리행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투표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90.0%), ‘20대 이하’(80.0%), ‘40대’(7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투표경험을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8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85.7%), ‘활동안함’(84.2%) 등의 순이다. 이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취학자녀 동거여부별 투표경험은 ‘없음’이 90.3%로 ‘있음’(8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의 동거 여부는 투표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체류기간별 투표경험은 ‘16년 이상’이 9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92.9%), ‘6년-10년’(77.3%), ‘3년-5년’(5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22〉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통계량
전체		(74)	86.5	10.8	2.7	-
출신 국가	태국	(1)	100.0	0.0	0.0	$\chi^2=6.392,$ $p=0.270$
	베트남	(32)	90.6	6.3	3.1	
	필리핀	(15)	93.3	0.0	6.7	
	캄보디아	(5)	80.0	20.0	0.0	
	중국	(17)	76.5	23.5	0.0	
	기타	(4)	75.0	25.0	0.0	
체류 형태	F-5(영주)	(11)	63.6	36.4	0.0	$\chi^2=8.383,$ $p=0.004$
	귀화자	(63)	90.5	6.3	3.2	
성별	여성	(72)	87.5	9.7	2.8	$\chi^2=7.988,$ $p=0.005$
	남성	(1)	0.0	100.0	0.0	
	무응답	(1)	100.0	0.0	0.0	
연령별	20대 이하	(5)	80.0	0.0	20.0	$\chi^2=2.899,$ $p=0.407$
	30대	(40)	90.0	10.0	0.0	
	40대	(20)	75.0	20.0	5.0	
	50대 이상	(5)	100.0	0.0	0.0	
	무응답	(4)	100.0	0.0	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9)	84.2	5.3	10.5	$\chi^2=0.750,$ $p=0.687$
	전일제	(28)	85.7	14.3	0.0	
	시간제	(25)	88.0	12.0	0.0	
	무응답	(2)	100.0	0.0	0.0	
체류 기간	1년~2년	(1)	0.0	100.0	0.0	$\chi^2=13.484,$ $p=0.009$
	3년~5년	(2)	50.0	0.0	50.0	
	6년~10년	(22)	77.3	22.7	0.0	
	11년~15년	(28)	92.9	7.1	0.0	
	16년 이상	(19)	94.7	0.0	5.3	
	무응답	(2)	100.0	0.0	0.0	

〈표 Ⅲ-23〉 여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통계량
전체		(72)	87.5	9.7	2.8	-
출신 국가	태국	(1)	100.0	0.0	0.0	$\chi^2 = 6.383,$ $p = 0.271$
	베트남	(31)	90.3	6.5	3.2	
	필리핀	(15)	93.3	0.0	6.7	
	캄보디아	(5)	80.0	20.0	0.0	
	중국	(17)	76.5	23.5	0.0	
	기타	(3)	100.0	0.0	0.0	
체류 형태	F-5(영주)	(10)	70.0	30.0	0.0	$\chi^2 = 5.185,$ $p = 0.023$
	귀화자	(62)	90.3	6.5	3.2	
연령별	20대 이하	(5)	80.0	0.0	20.0	$\chi^2 = 1.803,$ $p = 0.614$
	30대	(40)	90.0	10.0	0.0	
	40대	(19)	78.9	15.8	5.3	
	50대 이상	(5)	100.0	0.0	0.0	
	무응답	(3)	100.0	0.0	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9)	84.2	5.3	10.5	$\chi^2 = 0.461,$ $p = 0.794$
	전일제	(27)	88.9	11.1	0.0	
	시간제	(25)	88.0	12.0	0.0	
	무응답	(1)	100.0	0.0	0.0	
체류 기간	1년-2년	(1)	0.0	100.0	0.0	$\chi^2 = 12.881,$ $p = 0.012$
	3년-5년	(2)	50.0	0.0	50.0	
	6년-10년	(21)	81.0	19.0	0.0	
	11년-15년	(27)	92.6	7.4	0.0	
	16년 이상	(19)	94.7	0.0	5.3	
	무응답	(2)	100.0	0.0	0.0	

〈표 Ⅲ-24〉 남성 - 지방선거 투표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통계량
전체		(72)	0.0	100.0	2.8	-
출신국가	기타	(3)	0.0	100.0	0.0	$\chi^2 = .,$ $p =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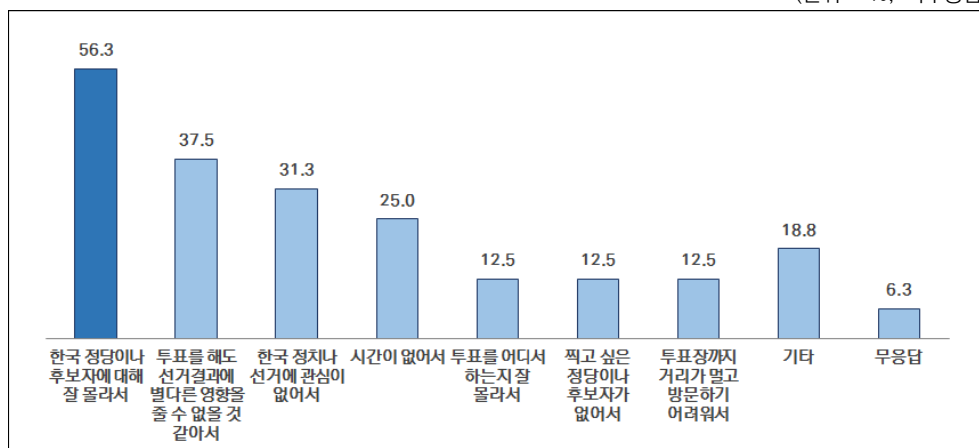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무응답	통계량	
체류형태	F-5(영주)	(10)	0.0	100.0	0.0	$\chi^2 = .$, $p=0.000$
연령별	40대	(19)	0.0	100.0	5.3	$\chi^2 = .$, $p=0.000$
경제활동 여부	전일제	(27)	0.0	100.0	0.0	$\chi^2 = .$, $p=0.000$
체류기간	6년-10년	(21)	0.0	100.0	0.0	$\chi^2 = .$, $p=0.000$

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응답자 중 '지방선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시간이 없어서'(25.0%),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가 각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캄보디아(100.0%), 중국(66.7%)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베트남은 ‘시간이 없어서’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 형태별로 보면 F-5(영주)(58.3%)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F-5(영주)’(55.6%)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F-5(영주)’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은 앞서 F-5(영주)의 경우 투표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연령별로 30대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55.6%, 40대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60.0%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활동안함’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66.7%로 높게 나타났고, 전일제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66.7%, 시간제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 50.0%로 높았다.

이를 체류기간별로 보면 6년-10년(71.4%)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1년-15년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와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6년 이상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잘 몰라서’가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정당 및 후보에게 선거 운동에서 이주민 대상자에게도 정당과 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표 Ⅲ-25〉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전체	(16)	56.3	37.5	31.3	25.0	
출신 국가	베트남	(2)	0.0	0.0	0.0	50.0
	캄보디아	(1)	100.0	0.0	0.0	0.0
	중국	(12)	66.7	41.7	41.7	16.7
	기타	(1)	0.0	100.0	0.0	100.0
체류 형태	F-5(영주)	(12)	58.3	41.7	33.3	25.0
	귀화자	(4)	50.0	25.0	25.0	25.0
성별	여성	(13)	53.8	38.5	23.1	23.1
	남성	(3)	66.7	33.3	66.7	33.3
연령별	20대 이하	(1)	0.0	0.0	0.0	0.0
	30대	(9)	55.6	33.3	33.3	22.2
	40대	(5)	60.0	60.0	20.0	40.0
	50대 이상	(1)	100.0	0.0	100.0	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3)	66.7	0.0	66.7	0.0
	전일제	(6)	66.7	50.0	33.3	33.3
	시간제	(6)	50.0	50.0	16.7	33.3
	무응답	(1)	0.0	0.0	0.0	0.0
체류 기간	1년-2년	(1)	0.0	0.0	0.0	0.0
	3년-5년	(1)	0.0	0.0	0.0	0.0
	6년-10년	(7)	71.4	42.9	14.3	42.9
	11년-15년	(6)	50.0	33.3	50.0	16.7
	16년 이상	(1)	100.0	100.0	100.0	0.0

〈표 III-26〉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기타	무응답
전체		(16)	12.5	12.5	12.5	18.8	6.3
출신 국가	베트남	(2)	0.0	0.0	0.0	50.0	0.0
	캄보디아	(1)	0.0	0.0	0.0	0.0	0.0
	중국	(12)	16.7	16.7	8.3	16.7	8.3
	기타	(1)	0.0	0.0	100.0	0.0	0.0
체류 형태	F-5(영주)	(12)	16.7	16.7	16.7	16.7	8.3
	귀화자	(4)	0.0	0.0	0.0	25.0	0.0
성별	여성	(13)	15.4	7.7	7.7	15.4	7.7
	남성	(3)	0.0	33.3	33.3	33.3	0.0
연령별	20대 이하	(1)	0.0	0.0	0.0	100.0	0.0
	30대	(9)	11.1	11.1	0.0	11.1	11.1
	40대	(5)	20.0	0.0	40.0	20.0	0.0
	50대 이상	(1)	0.0	100.0	0.0	0.0	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3)	33.3	33.3	0.0	0.0	33.3
	전일제	(6)	16.7	0.0	33.3	33.3	0.0
	시간제	(6)	0.0	16.7	0.0	0.0	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체류 기간	1년-2년	(1)	0.0	100.0	0.0	0.0	0.0
	3년-5년	(1)	0.0	0.0	0.0	100.0	0.0
	6년-10년	(7)	28.6	0.0	28.6	14.3	0.0
	11년-15년	(6)	0.0	16.7	0.0	16.7	16.7
	16년 이상	(1)	0.0	0.0	0.0	0.0	0.0

〈표 III-27〉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1)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전체	(13)	53.8	38.5	23.1	23.1	
체류 형태	F-5(영주)	(9)	55.6	44.4	22.2	22.2
	귀화자	(4)	50.0	25.0	25.0	25.0

〈표 III-28〉 여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2)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장 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기타	무응답	
전체	(13)	15.4	7.7	7.7	15.4	7.7	
체류 형태	F-5(영주)	(9)	22.2	11.1	11.1	11.1	11.1
	귀화자	(4)	0.0	0.0	0.0	25.0	0.0

〈표 III-29〉 남성 -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장 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기타
전체	(13)	66.7	66.7	33.3	33.3	33.3	33.3	33.3
체류 형태	F-5(영주)	(9)	66.7	66.7	33.3	33.3	33.3	33.3

4) 정치적 권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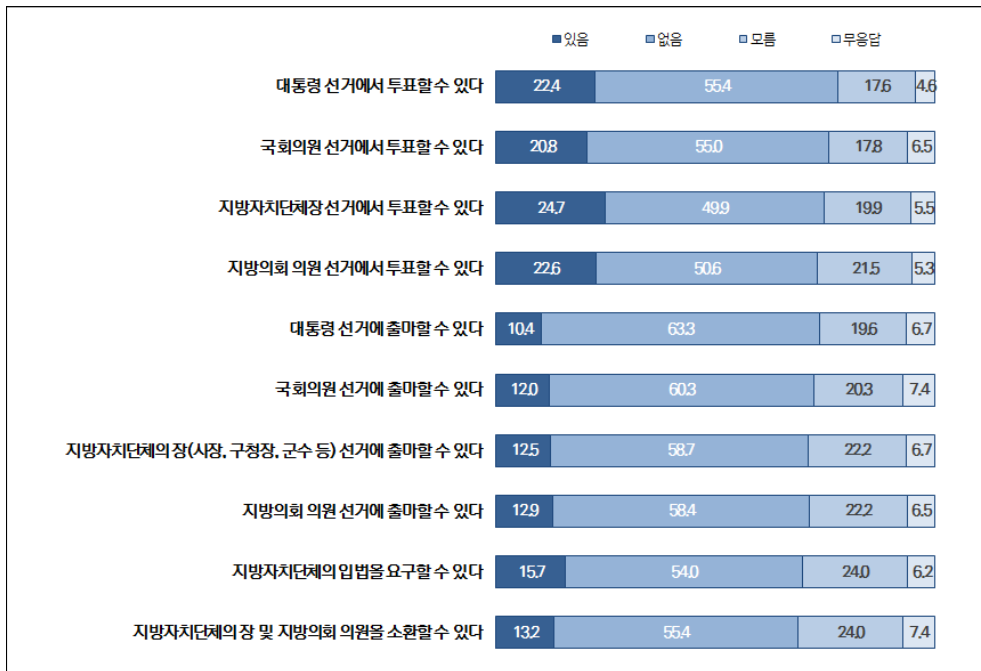
(1) 종합 평가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 인식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 회회원을 소환할 수 있다’ 24.7%,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2.6%,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5.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3.2%,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5%,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조사 항목에 예시된 권리는 귀화자와 F-5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보유한 경우에 인정되는 항목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있음’이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권리인식이 저조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림 III-15〉 [정치적 권리 인식] 종합

(단위 : %)



(2) 대통령 선거 투표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에 대해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음'은 22.4%, '없음'은 55.4%였고, '모름'은 17.6%, '무응답'은 4.6%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25.6%), '베트남'(25.0%), '캄보디아'(18.6%), '태국'(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출신국가별 체류형태(귀화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로서, 출신국가별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닐 수 있다. 투표권이 인정되는 귀화자의 경우 '베트남'(47.8%), '필리핀'(25.4%), '중국'(14.9%), '캄보디아'(7.5%) 순임을 감안하면, 출신국가별 체류형태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귀화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자신이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92.5%로, 매우 높은 권리인식 정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F-2(거주)'(20.0%), 'F-5(영주)'(15.2%), 'F-6(결혼이민)'(14.2%), '난민'(13.3%), '미등록체류자'(6.7%), 'D-2, D-4(유학생)'(4.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가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사 대상자 중 귀화자를 제외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상당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다만, E-9, D-2, D-4, 미등록체류자 등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의 권리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한국민의 경우에도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92.4%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F-2(거주)'(23.5%), '난민'(20.0%), 'F-5(영주)'(17.2%), 'F-6(결혼이민)'(14.9%), '미등록체류자'(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순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남성'은 '난민' 10.0%,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0%) 등의 순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남녀 모두 'E-9'의 경우 권리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가 '40대'가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3.3%), '30대'(28.4%), '20대 이하'(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4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8.8%), '전일제'(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6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8.5%), '6년-10년'(25.0%), '3년-5년'(8.3%), '1년-2년'(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2.4	55.4	17.6	4.6	-
출신 국가	태국	(27)	3.7	77.8	18.5	0.0	$x^2=20.015,$ $p=0.067$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베트남	(144)	25.0	54.2	16.7	4.2	
	필리핀	(82)	25.6	41.5	25.6	7.3	
	캄보디아	(59)	18.6	59.3	18.6	3.4	
	기타	(54)	18.5	59.3	16.7	5.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	65.6	28.0	2.4	$x^2=247.305,$ $p=0.000$
	F-6(결혼이민)	(106)	14.2	63.2	20.8	1.9	
	F-5(영주)	(33)	15.2	66.7	9.1	9.1	
	F-2(거주)	(20)	20.0	65.0	10.0	5.0	
	D-2, D-4(유학생)	(23)	4.3	78.3	17.4	0.0	
	귀화자	(67)	92.5	1.5	0.0	6.0	
	미등록체류자	(15)	6.7	66.7	13.3	13.3	
	난민	(15)	13.3	46.7	26.7	13.3	
	기타 거주자	(21)	4.8	76.2	9.5	9.5	
무응답	(8)	12.5	50.0	25.0	12.5		
성별	여성	(271)	32.5	48.0	14.4	5.2	$x^2=44.471,$ $p=0.000$
	남성	(150)	4.7	70.0	22.0	3.3	
	무응답	(12)	16.7	41.7	33.3	8.3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연령별	20대 이하	(147)	8.8	68.0	19.7	3.4	$x^2=27.441,$ $p=0.000$
	30대	(194)	28.4	52.1	16.0	3.6	
	40대	(53)	34.0	47.2	11.3	7.5	
	50대 이상	(15)	33.3	33.3	20.0	13.3	
	무응답	(24)	25.0	37.5	29.2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8.8	57.1	17.3	6.8	$x^2=17.778,$ $p=0.001$
	전일제	(207)	17.9	60.9	18.4	2.9	
	시간제	(77)	40.3	41.6	14.3	3.9	
	무응답	(16)	25.0	37.5	25.0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3.9	59.2	30.3	6.6	$x^2=96.398,$ $p=0.000$
	3년-5년	(121)	8.3	73.6	15.7	2.5	
	6년-10년	(116)	25.0	55.2	16.4	3.4	
	11년-15년	(68)	48.5	36.8	10.3	4.4	
	16년 이상	(31)	64.5	19.4	9.7	6.5	
	무응답	(21)	9.5	52.4	23.8	14.3	

〈표 III-31〉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2.5	48.0	14.4	5.2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61.1	27.8	5.6	$x^2=158.510,$ $p=0.000$
	F-6(결혼이민)	(101)	14.9	62.4	20.8	2.0	
	F-5(영주)	(29)	17.2	62.1	10.3	10.3	
	F-2(거주)	(17)	23.5	64.7	11.8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92.4	1.5	0.0	6.1	
	미등록체류자	(10)	10.0	5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60.0	40.0	0.0	

〈표 III-32〉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7	70.0	22.0	3.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3.0	68.7	26.3	2.0	x ² =8.608, p=0.855
	F-6(결혼이민)	(5)	0.0	80.0	20.0	0.0	
	F-5(영주)	(4)	0.0	100.0	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66.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20.0	10.0	
	기타 거주자	(10)	10.0	70.0	1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3)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0.8%, ‘없음’은 55.0%였고, ‘모름’은 17.8%, ‘무응답’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출신국가별 체류형태(귀화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23.2%), ‘베트남’(20.8%), ‘캄보디아’(20.3%), ‘태국’(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권이 인정되는 귀화자의 경우 ‘베트남’(47.8%), ‘필리핀’(25.4%), ‘중국’(14.9%), ‘캄보디아’(7.5%) 순임을 감안하면, 이는 출신국가별 체류형태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귀화자가 한명도 없음에도, 자신이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83.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도, ‘F-2(거주)’, ‘난민’(각 20.0%), ‘F-5(영주)’(15.2%), ‘F-6(결혼이민)’(14.2%), ‘미등록체류자’(6.7%), ‘D-2, D-4(유학생)’(4.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4%)의 순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역시 조사 대상자 중 귀화자를 제외하면, 투표할 권리를 가진 경우는 없다. E-9의 경우에는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2.4%에 불과하여 권리인식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등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식 정도가 낮음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선거권이 있는 '귀화자'의 83.3%만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선거권이 없는 경우에도 '난민'(40.0%), 'F-2(거주)'(23.5%), 'F-5(영주)'(17.2%), 'F-6(결혼이민)'(14.9%), '미등록체류자'(10.0%)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난민' 10.0%,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0%)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남녀 모두에서 E-9의 경우에는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2.1%), '30대'(25.3%), '20대 이하'(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9.5%), '전일제'(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6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1.2%), '6년-10년'(24.1%), '3년-5년'(6.6%), '1년-2년'(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0.8	55.0	17.8	6.5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5.2	11.1	0.0	$\chi^2=15.855,$ $p=0.198$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베트남	(144)	20.8	54.9	16.7	7.6	
	필리핀	(82)	23.2	43.9	24.4	8.5	
	캄보디아	(59)	20.3	55.9	16.9	6.8	
	중국	(64)	28.1	53.1	14.1	4.7	
	기타	(54)	18.5	57.4	18.5	5.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4	65.6	25.6	6.4	$\chi^2=215.815,$ $p=0.000$
	F-6(결혼이민)	(106)	14.2	63.2	19.8	2.8	
	F-5(영주)	(33)	15.2	54.5	21.2	9.1	
	F-2(거주)	(20)	20.0	65.0	10.0	5.0	
	D-2, D-4(유학생)	(23)	4.3	78.3	17.4	0.0	
	귀화자	(67)	83.6	6.0	1.5	9.0	
	미등록체류자	(15)	6.7	66.7	13.3	13.3	
	난민	(15)	20.0	46.7	26.7	6.7	
	기타 거주자	(21)	4.8	76.2	9.5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성별	여성	(271)	30.3	48.3	14.4	7.0	$\chi^2=39.817,$ $p=0.000$
	남성	(150)	4.7	67.3	22.7	5.3	
	무응답	(12)	8.3	50.0	33.3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9.5	66.7	18.4	5.4	$\chi^2=22.274,$ $p=0.001$
	30대	(194)	25.3	51.5	18.6	4.6	
	40대	(53)	32.1	49.1	11.3	7.5	
	50대 이상	(15)	33.3	33.3	13.3	20.0	
	무응답	(24)	20.8	37.5	25.0	16.7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9.5	55.6	18.0	6.8	$\chi^2=13.271,$ $p=0.010$
	전일제	(207)	16.4	60.4	18.4	4.8	
	시간제	(77)	35.1	42.9	14.3	7.8	
	무응답	(16)	18.8	37.5	25.0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5.3	56.6	30.3	7.9	$\chi^2=88.983,$ $p=0.000$
	3년~5년	(121)	6.6	73.6	17.4	2.5	
	6년~10년	(116)	24.1	55.2	15.5	5.2	
	11년~15년	(68)	41.2	36.8	14.7	7.4	
	16년 이상	(31)	64.5	22.6	6.5	6.5	
	무응답	(21)	9.5	47.6	14.3	28.6	

〈표 III-34〉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0.3	48.3	14.4	7.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66.7	16.7	16.7	$\chi^2=134.245,$ $p=0.000$
	F-6(결혼이민)	(101)	14.9	62.4	19.8	3.0	
	F-5(영주)	(29)	17.2	58.6	13.8	10.3	
	F-2(거주)	(17)	23.5	64.7	11.8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83.3	6.1	1.5	9.1	
	미등록체류자	(10)	10.0	50.0	20.0	20.0	
	난민	(5)	40.0	20.0	40.0	0.0	
	기타 거주자	(9)	0.0	66.7	22.2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35〉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7	67.3	22.7	5.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3.0	66.7	25.3	5.1	x ² =14.277, p=0.429
	F-6(결혼이민)	(5)	0.0	80.0	20.0	0.0	
	F-5(영주)	(4)	0.0	25.0	7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66.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20.0	10.0	
	기타 거주자	(10)	10.0	80.0	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4.7%, ‘없음’은 49.9%였고, ‘모름’은 19.9%, ‘무응답’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위 대통령 투표권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26.8%), ‘베트남’(24.3%), ‘캄보디아’(20.3%), ‘태국’(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화자의 경우 ‘베트남’(47.8%), ‘필리핀’(25.4%), ‘중국’(14.9%), ‘캄보디아’(7.5%)이고, F-5(영주)는 ‘중국’ 78.8%, ‘베트남’(9.1%), ‘필리핀’(6.1%), ‘태국’(3%)의 순임을 감안하면, 이는 출신국가별 체류형태의 순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질적 선거권 보유 실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85.1%, ‘F-5(영주)’(42.4%)만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권이 없는 경우인 ‘F-6(결혼이민)’(20.8%), ‘F-2(거주)’(20.0%), ‘난민’(13.3%), ‘미등록체류자’(6.7%), ‘D-2, D-4(유학생)’(4.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2%)도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 등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 인식 실태는 귀화자, 고용허가제, 단순노무자, 유학생 등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볼 때 이주민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표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나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선거권이 전면 인정되는 '귀화자'의 84.8%만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F-5(영주)'는 41.4%만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F-2(거주)'(23.5%), '난민'(20.0%), 'F-6(결혼이민)'(19.8%), '미등록체류자'(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 등의 순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F-5(영주)'가 50.0%만이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선거권이 없는 'F-6(결혼이민)'(40.0%), '난민'(10.0%),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0%)도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에서 선거권 보유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경우는 E-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2%만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들 입국 시부터 자신이 가진 권리의 정도에 대해 일정한 인식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3.3%), '30대'(28.9%), '20대 이하'(10.2%)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3.3%), '전일제'(20.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6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1.5%), '6년-10년'(30.2%), '3년-5년'(7.4%), '1년-2년'(6.6%) 등의 순이다.

〈표 III-3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4.7	49.9	19.9	5.5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5.2	11.1	0.0	x ² =21.520, p=0.043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베트남	(144)	24.3	50.0	20.1	5.6	
	필리핀	(82)	26.8	42.7	23.2	7.3	
	캄보디아	(59)	20.3	55.9	18.6	5.1	
	중국	(64)	37.5	37.5	20.3	4.7	
기타	(54)	24.1	50.0	18.5	7.4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2	66.4	25.6	4.8	$\chi^2=205.617,$ $p=0.000$
	F-6(결혼이민)	(106)	20.8	51.9	25.5	1.9	
	F-5(영주)	(33)	42.4	30.3	24.2	3.0	
	F-2(거주)	(20)	20.0	55.0	20.0	5.0	
	D-2, D-4(유학생)	(23)	4.3	78.3	17.4	0.0	
	귀화자	(67)	85.1	3.0	3.0	9.0	
	미등록체류자	(15)	6.7	66.7	13.3	13.3	
	난민	(15)	13.3	46.7	26.7	13.3	
	기타 거주자	(21)	4.8	81.0	4.8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성별	여성	(271)	35.1	41.0	18.5	5.5	$\chi^2=44.317,$ $p=0.000$
	남성	(150)	6.7	66.7	21.3	5.3	
	무응답	(12)	16.7	41.7	33.3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0.2	63.9	21.1	4.8	$\chi^2=34.781,$ $p=0.000$
	30대	(194)	28.9	49.0	18.6	3.6	
	40대	(53)	45.3	30.2	17.0	7.5	
	50대 이상	(15)	33.3	33.3	13.3	20.0	
	무응답	(24)	29.2	25.0	33.3	12.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3.3	45.1	25.6	6.0	$\chi^2=15.634,$ $p=0.004$
	전일제	(207)	20.3	58.0	18.4	3.4	
	시간제	(77)	37.7	41.6	13.0	7.8	
	무응답	(16)	31.3	25.0	25.0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6.6	55.3	28.9	9.2	$\chi^2=93.459,$ $p=0.000$
	3년-5년	(121)	7.4	69.4	20.7	2.5	
	6년-10년	(116)	30.2	46.6	19.8	3.4	
	11년-15년	(68)	51.5	30.9	13.2	4.4	
	16년 이상	(31)	64.5	19.4	6.5	9.7	
	무응답	(21)	14.3	42.9	23.8	19.0	

〈표 III-3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5.1	41.0	18.5	5.5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66.7	22.2	5.6	$\chi^2 = 124.080,$ $p = 0.000$
	F-6(결혼이민)	(101)	19.8	52.5	25.7	2.0	
	F-5(영주)	(29)	41.4	34.5	20.7	3.4	
	F-2(거주)	(17)	23.5	52.9	23.5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84.8	3.0	3.0	9.1	
	미등록체류자	(10)	10.0	5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3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6.7	66.7	21.3	5.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2.0	68.7	24.2	5.1	$\chi^2 = 34.548,$ $p = 0.002$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50.0	0.0	5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66.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20.0	10.0	
	기타 거주자	(10)	10.0	80.0	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5) 지방의회의원 선거 투표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2.6%, '없음'은 50.6%였고, '모름'은 21.5%, '무응답'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앞서 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24.4%), '베트남'(21.5%), '캄보디아'(20.3%), '태국'(3.7%) 등의 순이다. 이 역시 귀화자의 경우 '베트남'(47.8%), '필리'

핀'(25.4%), '중국'(14.9%), '캄보디아'(7.5%) 순이고, F-5(영주)는 '중국' 78.8%, '베트남'(9.1%), '필리핀'(6.1%), '태국'(3%)의 순임을 감안하면, 출신국가별 체류형태의 순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류형태에 따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투표권이 인정되는 '귀화자'의 81.8%만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F-5(영주)'는 34.5%만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F-2(거주)'(23.5%), '난민'(20.0%), 'F-6(결혼이민)'(16.8%), '미등록체류자'(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가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E-9, 미등록체류자 등에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은 'F-5(영주)'가 50.0%가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F-6(결혼이민)'(40.0%),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0%)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성의 경우 귀화자의 경우에도 18.2%가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도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가 낮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서 E-9 단순노무자를 제외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표권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6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8.5%), '6년-10년'(27.6%), '3년-5년'(5.8%), '1년-2년'(3.9%) 등의 순이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길수록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2.6	50.6	21.5	5.3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8.9	7.4	0.0	$\chi^2=23.377,$ $p=0.025$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베트남	(144)	21.5	51.4	21.5	5.6	
	필리핀	(82)	24.4	43.9	24.4	7.3	
	캄보디아	(59)	20.3	55.9	20.3	3.4	
	중국	(64)	34.4	35.9	25.0	4.7	
	기타	(54)	22.2	50.0	20.4	7.4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체류 기간	1년-2년	(76)	3.9	57.9	30.3	7.9	$\chi^2=103.475,$ $p=0.000$
	3년-5년	(121)	5.8	71.1	20.7	2.5	
	6년-10년	(116)	27.6	46.6	20.7	5.2	
	11년-15년	(68)	48.5	29.4	19.1	2.9	
	16년 이상	(31)	67.7	16.1	9.7	6.5	
	무응답	(21)	9.5	47.6	23.8	19.0	

〈표 Ⅲ-4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2.5	42.1	19.9	5.5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66.7	22.2	5.6	$\chi^2=125.168,$ $p=0.000$
	F-6(결혼이민)	(101)	16.8	54.5	26.7	2.0	
	F-5(영주)	(29)	34.5	34.5	24.1	6.9	
	F-2(거주)	(17)	23.5	58.8	17.6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81.8	3.0	7.6	7.6	
	미등록체류자	(10)	10.0	40.0	3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Ⅲ-41〉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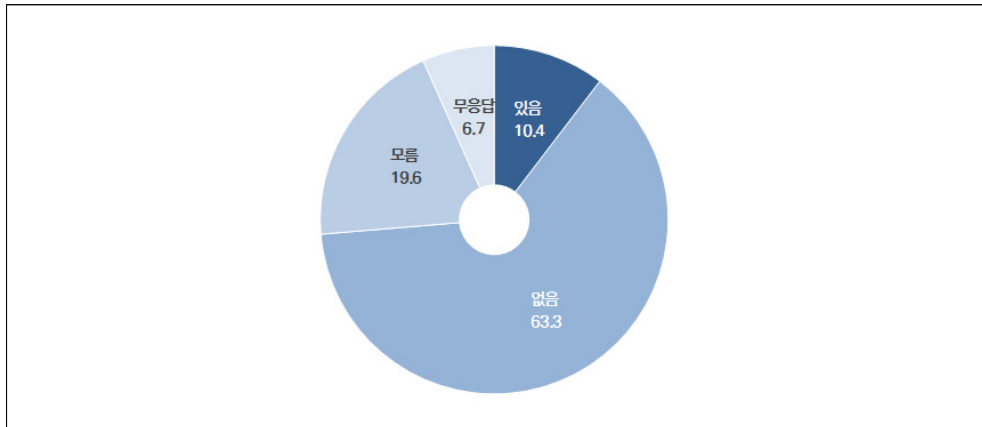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6.0	66.0	23.3	4.7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2.0	67.7	25.3	5.1	$\chi^2=38.149,$ $p=0.000$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50.0	0.0	50.0	0.0	
	F-2(거주)	(3)	0.0	66.7	33.3	0.0	
	D-2, D-4(유학생)	(12)	0.0	66.7	33.3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20.0	10.0	
	기타 거주자	(10)	10.0	80.0	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6) 대통령 선거 출마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0.4%, ‘없음’은 63.3%, ‘모름’은 19.6%, ‘무응답’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자를 제외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권이 없음에도, ‘있음’이 10.4%, ‘모름’이 19.6%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권리인식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Ⅲ-16〉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이를 성별과 체류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 50.0%가 출마권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고, ‘F-2(거주)’(11.8%), ‘F-6(결혼이민)’(6.9%)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은 ‘F-6(결혼이민)’이 2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0%)만이 권리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권리인식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권은 귀화자를 제외한 이주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없음’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다만, 권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무응답의 비중이 모두 36.7%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42〉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15.5	60.5	18.1	5.9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7.8	16.7	5.6	$\chi^2=94.697,$ $p=0.000$
	F-6(결혼이민)	(101)	6.9	67.3	23.8	2.0	
	F-5(영주)	(29)	0.0	79.3	10.3	10.3	
	F-2(거주)	(17)	11.8	76.5	11.8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50.0	27.3	15.2	7.6	
	미등록체류자	(10)	0.0	60.0	20.0	20.0	
	난민	(5)	0.0	4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43〉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2.0	69.3	20.7	8.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1.0	68.7	22.2	8.1	$\chi^2=16.242,$ $p=0.299$
	F-6(결혼이민)	(5)	20.0	60.0	20.0	0.0	
	F-5(영주)	(4)	0.0	75.0	2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0.0	66.7	33.3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0.0	60.0	20.0	20.0	
	기타 거주자	(10)	0.0	80.0	1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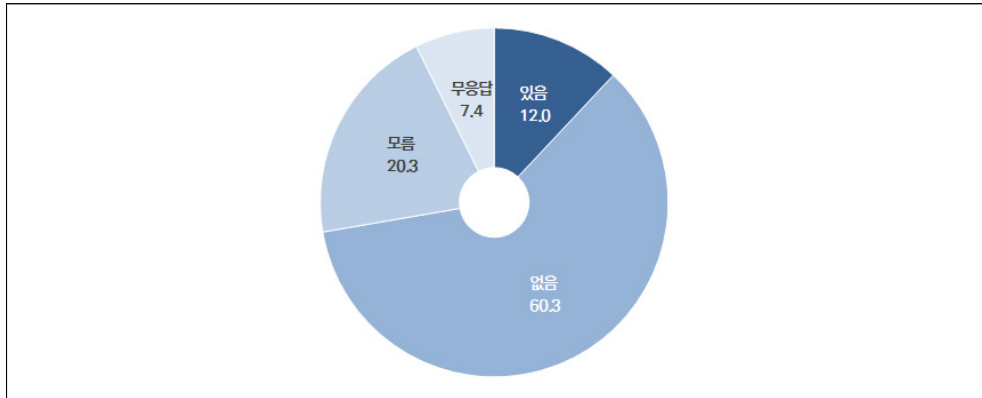
(7) 국회의원 선거 출마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2.0%, ‘없음’은 60.3%였고, ‘모름’은 20.3%, ‘무응답’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귀화자를 제외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권이 없음에도, ‘모름’이 20.3%, ‘무응답’ 7.4%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리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17〉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이를 성별, 체류형태별로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0.0%만이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F-2(거주)’(23.5%), ‘난민’(20.0%), ‘F-6(결혼이민)’(7.9%), ‘F-5(영주)’(3.4%)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F-6(결혼이민)’이 20.0%,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0%)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4〉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17.3	55.7	19.6	7.4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2.2	16.7	11.1	x ² =87.024, p=0.000
	F-6(결혼이민)	(101)	7.9	63.4	25.7	3.0	
	F-5(영주)	(29)	3.4	72.4	13.8	10.3	
	F-2(거주)	(17)	23.5	64.7	11.8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50.0	22.7	16.7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6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45〉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3.3	69.3	20.0	7.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2.0	68.7	22.2	7.1	$\chi^2 = 12.954,$ $p = 0.530$
	F-6(결혼이민)	(5)	20.0	60.0	20.0	0.0	
	F-5(영주)	(4)	0.0	75.0	2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0.0	66.7	33.3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10.0	20.0	
	기타 거주자	(10)	0.0	80.0	1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8)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2.5%, '없음'은 58.7%였고, '모름'은 22.2%, '무응답'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13.9%), '필리핀'(11.0%) 등의 순이다.

이를 체류형태와 성별로 결과를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1.5%만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F-2(거주)'(23.5%), '난민'(20.0%), 'F-5(영주)'(13.8%), 'F-6(결혼이민)'(5.9%)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F-5(영주)' 25.0%, 'F-6(결혼이민)'(20.0%), '난민'(10.0%), 'D-2, D-4(유학생)'(8.3%)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20.0%), '30대'(14.9%), '20대 이하'(4.8%)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1.3%), '전일제'(10.6%)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2.1%), '6년-10년'(18.1%), '3년-5년'(3.3%) 등의 순이다.

〈표 III-46〉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2.5	58.7	22.2	6.7	-
출신 국가	태국	(27)	0.0	96.3	3.7	0.0	$\chi^2=38.171,$ $p=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0.0	0.0	
	베트남	(144)	13.9	59.0	20.8	6.3	
	필리핀	(82)	11.0	50.0	31.7	7.3	
	캄보디아	(59)	0.0	69.5	22.0	8.5	
	중국	(64)	23.4	46.9	23.4	6.3	
	기타	(54)	18.5	51.9	20.4	9.3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0	68.0	25.6	6.4	$\chi^2=137.603,$ $p=0.000$
	F-6(결혼이민)	(106)	6.6	67.0	24.5	1.9	
	F-5(영주)	(33)	15.2	45.5	27.3	12.1	
	F-2(거주)	(20)	20.0	65.0	10.0	5.0	
	D-2, D-4(유학생)	(23)	4.3	78.3	17.4	0.0	
	귀화자	(67)	50.7	19.4	22.4	7.5	
	미등록체류자	(15)	0.0	73.3	13.3	13.3	
	난민	(15)	13.3	46.7	20.0	20.0	
	기타 거주자	(21)	0.0	85.7	4.8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성별	여성	(271)	18.1	53.5	22.1	6.3	$\chi^2=20.293,$ $p=0.000$
	남성	(150)	3.3	68.7	20.7	7.3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4.8	70.1	19.0	6.1	$\chi^2=21.078,$ $p=0.002$
	30대	(194)	14.9	58.2	22.2	4.6	
	40대	(53)	24.5	45.3	22.6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무응답	(24)	8.3	37.5	41.7	12.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1.3	55.6	26.3	6.8	$\chi^2=9.881,$ $p=0.042$
	전일제	(207)	10.6	65.7	19.3	4.3	
	시간제	(77)	20.8	49.4	19.5	10.4	
	무응답	(16)	6.3	37.5	37.5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0.0	61.8	26.3	11.8	$\chi^2=68.443,$ $p=0.000$
	3년-5년	(121)	3.3	75.2	18.2	3.3	
	6년-10년	(116)	18.1	58.6	19.8	3.4	
	11년-15년	(68)	22.1	45.6	26.5	5.9	
	16년 이상	(31)	45.2	22.6	19.4	12.9	
	무응답	(21)	0.0	47.6	33.3	19.0	

〈표 III-47〉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18.1	53.5	22.1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2.2	22.2	5.6	$\chi^2=88.234,$ $p=0.000$
	F-6(결혼이민)	(101)	5.9	67.3	24.8	2.0	
	F-5(영주)	(29)	13.8	44.8	27.6	13.8	
	F-2(거주)	(17)	23.5	64.7	11.8	0.0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51.5	19.7	21.2	7.6	
	미등록체류자	(10)	0.0	6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48〉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3.3	68.7	20.7	7.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0.0	68.7	24.2	7.1	$\chi^2=22.992,$ $p=0.060$
	F-6(결혼이민)	(5)	20.0	60.0	20.0	0.0	
	F-5(영주)	(4)	25.0	50.0	2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66.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60.0	10.0	20.0	
	기타 거주자	(10)	0.0	80.0	1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9)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권

응답자의 정치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2.5%, ‘없음’은 58.7%였고, ‘모름’은 22.2%, ‘무응답’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53.7%가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여 나머지

46.3%와 'F-2(거주)'(25.0%), '난민'(13.3%), 'F-5(영주)'(12.1%), 'F-6(결혼이민)'(7.5%)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과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4.5%만이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F-2(거주)'(29.4%), '난민'(20.0%), 'F-5(영주)'(10.3%), 'F-6(결혼이민)'(5.9%)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F-6(결혼이민)'이 40.0%, 'F-5(영주)'(25.0%), '난민'(10.0%)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20.0%), '30대'(14.9%), '20대 이하'(4.8%)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12.6%), '활동안함'(9.8%)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0.6%), '6년-10년'(18.1%), '3년-5년'(4.1%) 등의 순이다.

〈표 III-49〉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2.9	58.4	22.2	6.5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0	70.4	23.2	6.4	$\chi^2=148.672,$ $p=0.000$
	F-6(결혼이민)	(106)	7.5	60.4	29.2	2.8	
	F-5(영주)	(33)	12.1	54.5	24.2	9.1	
	F-2(거주)	(20)	25.0	60.0	10.0	5.0	
	D-2, D-4(유학생)	(23)	0.0	82.6	17.4	0.0	
	귀화자	(67)	53.7	19.4	19.4	7.5	
	미등록체류자	(15)	0.0	66.7	20.0	13.3	
	난민	(15)	13.3	53.3	2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85.7	4.8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성별	여성	(271)	18.8	51.7	23.2	6.3	$\chi^2=24.743,$ $p=0.000$
	남성	(150)	3.3	71.3	18.7	6.7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4.8	67.3	21.8	6.1	$\chi^2=23.534,$ $p=0.001$
	30대	(194)	14.9	60.3	20.6	4.1	
	40대	(53)	28.3	43.4	20.8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경제 활동 여부	무응답	(24)	8.3	37.5	41.7	12.5	$\chi^2 = 13.942,$ $p = 0.007$
	활동안함	(133)	9.8	54.1	29.3	6.8	
	전일제	(207)	12.6	66.2	16.9	4.3	
	시간제	(77)	20.8	49.4	20.8	9.1	
체류 기간	무응답	(16)	6.3	37.5	37.5	18.8	$\chi^2 = 68.668,$ $p = 0.000$
	1년-2년	(76)	0.0	60.5	27.6	11.8	
	3년-5년	(121)	4.1	75.2	17.4	3.3	
	6년-10년	(116)	18.1	57.8	20.7	3.4	
	11년-15년	(68)	20.6	47.1	26.5	5.9	
	16년 이상	(31)	48.4	25.8	16.1	9.7	
무응답	(21)	4.8	42.9	33.3	19.0		

〈표 III-50〉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5.4	50.2	9.6	4.8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83.3	11.1	0.0	$\chi^2 = 94.675,$ $p = 0.000$
	F-6(결혼이민)	(101)	14.9	74.3	5.9	5.0	
	F-5(영주)	(29)	34.5	44.8	20.7	0.0	
	F-2(거주)	(17)	23.5	58.8	5.9	11.8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93.9	1.5	1.5	3.0	
	미등록체류자	(10)	10.0	40.0	20.0	30.0	
	난민	(5)	60.0	20.0	20.0	0.0	
	기타 거주자	(9)	0.0	55.6	44.4	0.0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51〉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0	73.3	17.3	5.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2.0	78.8	15.2	4.0	$\chi^2 = 40.618,$ $p = 0.000$
	F-6(결혼이민)	(5)	40.0	60.0	0.0	0.0	
	F-5(영주)	(4)	25.0	25.0	50.0	0.0	
	F-2(거주)	(3)	0.0	66.7	33.3	0.0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D-2, D-4(유학생)	(12)	0.0	58.3	41.7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40.0	10.0	40.0	
기타 거주자	(10)	0.0	80.0	20.0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 지방자치단체 입법 요구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5.7%, ‘없음’은 54.0%였고, ‘모름’은 24.0%, ‘무응답’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8%), ‘베트남’(17.4%), ‘필리핀’(17.1%), ‘캄보디아’(6.8%) 등의 순이다.

이를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의 55.2% 정도만이 권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귀화자의 44.8%, ‘F-2(거주)’(20.0%), ‘D-2, D-4(유학생)’(17.4%), ‘F-6(결혼이민)’(14.2%), ‘난민’(13.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2%)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과 체류자격을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6.1%만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2(거주)’(23.5%), ‘난민’(20.0%), ‘D-2, D-4(유학생)’(18.2%), ‘F-6(결혼이민)’(12.9%)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F-6(결혼이민)’ 40.0%, ‘F-5(영주)’(25.0%), ‘D-2, D-4(유학생)’(16.7%),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20.0%), ‘30대’(19.6%), ‘20대 이하’(7.5%)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15.5%), ‘활동안함’(14.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5.0%), ‘6년-10년’(19.0%), ‘3년-5년’(8.3%), ‘1년-2년’(1.3%) 등의 순이다.

〈표 III-52〉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5.7	54.0	24.0	6.2	-
출신 국가	태국	(27)	0.0	92.6	7.4	0.0	$\chi^2 = 29.041,$ $p = 0.004$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베트남	(144)	17.4	52.8	22.9	6.9	
	필리핀	(82)	17.1	46.3	29.3	7.3	
	캄보디아	(59)	6.8	66.1	20.3	6.8	
	중국	(64)	18.8	42.2	34.4	4.7	
	기타	(54)	22.2	50.0	20.4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2	68.0	23.2	5.6	$\chi^2 = 133.167,$ $p = 0.000$
	F-6(결혼이민)	(106)	14.2	55.7	27.4	2.8	
	F-5(영주)	(33)	3.0	39.4	48.5	9.1	
	F-2(거주)	(20)	20.0	60.0	15.0	5.0	
	D-2, D-4(유학생)	(23)	17.4	69.6	13.0	0.0	
	귀화자	(67)	55.2	14.9	22.4	7.5	
	미등록체류자	(15)	0.0	73.3	13.3	13.3	
	난민	(15)	13.3	53.3	2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81.0	9.5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성별	여성	(271)	21.0	47.2	25.5	6.3	$\chi^2 = 19.161,$ $p = 0.000$
	남성	(150)	7.3	66.7	20.0	6.0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7.5	68.0	19.0	5.4	$\chi^2 = 21.066,$ $p = 0.002$
	30대	(194)	19.6	51.0	25.3	4.1	
	40대	(53)	24.5	39.6	28.3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무응답	(24)	12.5	37.5	37.5	12.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4.3	52.6	26.3	6.8	$\chi^2 = 9.359,$ $p = 0.053$
	전일제	(207)	15.5	61.4	19.3	3.9	
	시간제	(77)	20.8	40.3	29.9	9.1	
	무응답	(16)	6.3	37.5	37.5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1.3	57.9	30.3	10.5	$\chi^2 = 63.772,$ $p = 0.000$
	3년-5년	(121)	8.3	72.7	15.7	3.3	
	6년-10년	(116)	19.0	50.9	26.7	3.4	
	11년-15년	(68)	25.0	38.2	30.9	5.9	
	16년 이상	(31)	48.4	25.8	16.1	9.7	
	무응답	(21)	14.3	42.9	23.8	19.0	

〈표 III-53〉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1.0	47.2	25.5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2.2	22.2	5.6	x ² =90.500, p=0.000
	F-6(결혼이민)	(101)	12.9	56.4	27.7	3.0	
	F-5(영주)	(29)	0.0	44.8	44.8	10.3	
	F-2(거주)	(17)	23.5	58.8	17.6	0.0	
	D-2, D-4(유학생)	(11)	18.2	72.7	9.1	0.0	
	귀화자	(66)	56.1	15.2	21.2	7.6	
	미등록체류자	(10)	0.0	6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54〉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7.3	66.7	20.0	6.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4.0	68.7	21.2	6.1	x ² =25.143, p=0.033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25.0	0.0	7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16.7	66.7	16.7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70.0	1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11)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소환권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3.2%, ‘없음’은 55.4%였고, ‘모름’은 24.0%, ‘무응답’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7.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필리핀’(15.9%), ‘베트남’(14.6%), ‘캄보디아’(3.4%)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20.0%), ‘F-6(결혼이민)’(13.2%), ‘D-2, D-4(유학생)’(13.0%), ‘난민’(6.7%), ‘F-5(영주)’(3.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0.8%)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과 체류자격을 교차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48.5%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F-2(거주)’(23.5%), ‘난민’(20.0%), ‘D-2, D-4(유학생)’(18.2%), ‘F-6(결혼이민)’(10.9%)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F-6(결혼이민)’이 60.0%, ‘F-5(영주)’(25.0%),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0%)의 순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20.0%), ‘30대’(17.0%), ‘20대 이하’(5.4%)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12.6%), ‘활동안함’(12.0%)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19.1%), ‘6년-10년’(18.1%), ‘3년-5년’(5.0%), ‘1년-2년’(1.3%) 등의 순이다.

〈표 III-55〉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3.2	55.4	24.0	7.4	-
출신 국가	태국	(27)	0.0	92.6	7.4	0.0	$x^2 = 28.454,$ $p = 0.005$
	인도네시아	(3)	0.0	100.0	0.0	0.0	
	베트남	(144)	14.6	56.3	22.2	6.9	
	필리핀	(82)	15.9	47.6	29.3	7.3	
	캄보디아	(59)	3.4	64.4	22.0	10.2	
	중국	(64)	17.2	43.8	32.8	6.3	
	기타	(54)	18.5	48.1	22.2	11.1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0.8	68.8	23.2	7.2	$x^2 = 120.525,$ $p = 0.000$
	F-6(결혼이민)	(106)	13.2	57.5	26.4	2.8	
	F-5(영주)	(33)	3.0	42.4	42.4	12.1	
	F-2(거주)	(20)	20.0	60.0	15.0	5.0	
	D-2, D-4(유학생)	(23)	13.0	73.9	13.0	0.0	
	귀화자	(67)	47.8	17.9	26.9	7.5	
	미등록체류자	(15)	0.0	73.3	13.3	13.3	
	난민	(15)	6.7	46.7	20.0	26.7	
	기타 거주자	(21)	0.0	81.0	9.5	9.5	
무응답	(8)	12.5	37.5	25.0	25.0		
성별	여성	(271)	18.5	49.4	25.1	7.0	$x^2 = 19.555,$ $p = 0.000$
	남성	(150)	4.7	66.7	20.7	8.0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5.4	68.0	19.7	6.8	$x^2 = 19.587,$ $p = 0.003$
	30대	(194)	17.0	53.1	24.7	5.2	
	40대	(53)	20.8	43.4	28.3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무응답	(24)	8.3	37.5	37.5	16.7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2.0	52.6	27.8	7.5	$x^2 = 12.777,$ $p = 0.012$
	전일제	(207)	12.6	63.8	18.4	5.3	
	시간제	(77)	18.2	40.3	31.2	10.4	
	무응답	(16)	6.3	43.8	31.3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1.3	57.9	27.6	13.2	$x^2 = 68.710,$ $p = 0.000$
	3년-5년	(121)	5.0	76.0	15.7	3.3	
	6년-10년	(116)	18.1	51.7	25.9	4.3	
	11년-15년	(68)	19.1	39.7	35.3	5.9	
	16년 이상	(31)	45.2	29.0	12.9	12.9	
	무응답	(21)	9.5	38.1	28.6	23.8	

〈표 III-56〉 여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18.5	49.4	25.1	7.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2.2	16.7	11.1	$\chi^2 = 77.084,$ $p = 0.000$
	F-6(결혼이민)	(101)	10.9	59.4	26.7	3.0	
	F-5(영주)	(29)	0.0	48.3	37.9	13.8	
	F-2(거주)	(17)	23.5	58.8	17.6	0.0	
	D-2, D-4(유학생)	(11)	18.2	72.7	9.1	0.0	
	귀화자	(66)	48.5	18.2	25.8	7.6	
	미등록체류자	(10)	0.0	60.0	20.0	20.0	
	난민	(5)	20.0	20.0	40.0	20.0	
	기타 거주자	(9)	0.0	88.9	0.0	11.1	
무응답	(5)	0.0	40.0	40.0	20.0		

〈표 III-57〉 남성 - [정치적 권리 인식]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7	66.7	20.7	8.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1.0	69.7	22.2	7.1	$\chi^2 = 55.268,$ $p = 0.000$
	F-6(결혼이민)	(5)	60.0	20.0	20.0	0.0	
	F-5(영주)	(4)	25.0	0.0	75.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75.0	16.7	0.0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0.0	60.0	10.0	3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5)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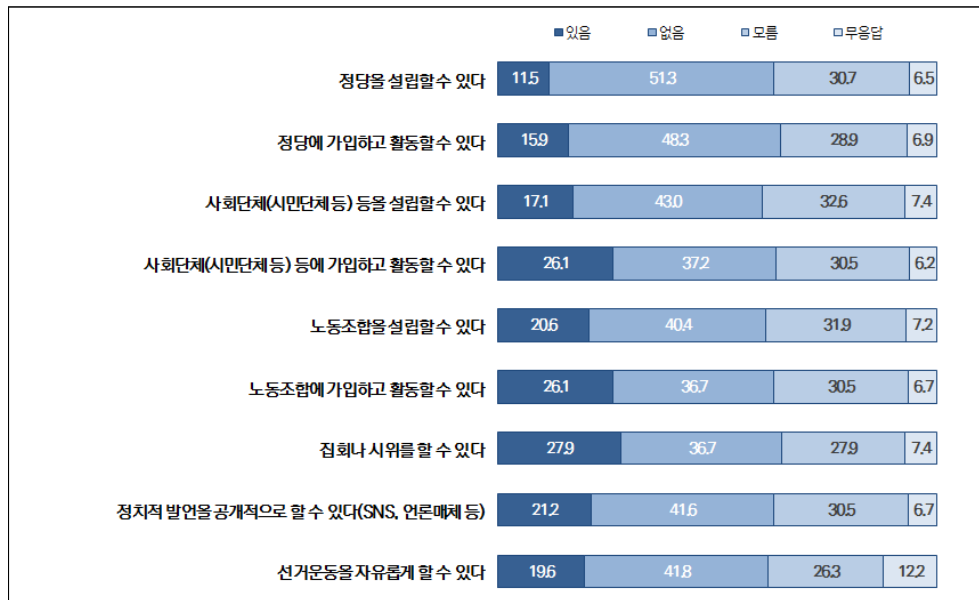
(1) 종합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이주민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과 관련하여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27.9%,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각 26.1%,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21.2%,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9.6%,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7.1%,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5.9%,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11.5%로 나타났다.

이들 조사대상 항목 전체에서 권리보유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모름’이나 ‘무응답’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주민의 권리 인식 실태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종합

(단위 : %)



(2) 정당 설립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1.5%, ‘없음’은 51.3%였고, ‘모름’은 30.7%, ‘무응답’은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 설립에 대한 권리는 과반수 정도만이 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의 41.8%만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귀화자’(58.2%), ‘난민’(26.7%), ‘F-2(거주)’(10.0%), ‘F-6(결혼이민)’(8.5%), ‘F-5(영주)’(6.1%), ‘D-2, D-4(유학생)’(4.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4%)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과 체류자격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의 경우 ‘난민’의 60.0%가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귀화자’(42.4%), ‘F-2(거주)’(11.8%), ‘F-6(결혼이민)’(7.9%), ‘F-5(영주)’(6.9%)의 순으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은 ‘F-6(결혼이민)’의 20.0%, ‘난민’(10.0%),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0%) 등의 순으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17.0%), ‘30대’(14.9%), ‘20대 이하’(5.4%)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9.7%), ‘활동안함’(9.0%)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14.7%), ‘6년-10년’(12.1%), ‘3년-5년’(6.6%), ‘1년-2년’(3.9%) 등의 순이다.

〈표 III-58〉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1.5	51.3	30.7	6.5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4	56.0	35.2	6.4	$\chi^2 = 107.284,$ $p = 0.000$
	F-6(결혼이민)	(106)	8.5	56.6	34.0	0.9	
	F-5(영주)	(33)	6.1	39.4	48.5	6.1	
	F-2(거주)	(20)	10.0	60.0	20.0	10.0	
	D-2, D-4(유학생)	(23)	4.3	73.9	17.4	4.3	
	귀화자	(67)	41.8	20.9	25.4	11.9	
	미등록체류자	(15)	0.0	53.3	33.3	13.3	
	난민	(15)	26.7	60.0	6.7	6.7	
	기타 거주자	(21)	0.0	76.2	14.3	9.5	
	무응답	(8)	12.5	37.5	37.5	12.5	
성별	여성	(271)	15.9	48.0	29.9	6.3	$\chi^2 = 12.116,$ $p = 0.002$
	남성	(150)	4.7	58.0	30.7	6.7	
	무응답	(12)	0.0	41.7	50.0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5.4	57.8	32.0	4.8	$\chi^2 = 12.512,$ $p = 0.051$
	30대	(194)	14.9	51.5	27.3	6.2	
	40대	(53)	17.0	41.5	34.0	7.5	
	50대 이상	(15)	20.0	33.3	26.7	20.0	
	무응답	(24)	4.2	41.7	45.8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9.0	50.4	33.8	6.8	$\chi^2 = 9.868,$ $p = 0.043$
	전일제	(207)	9.7	55.1	30.9	4.3	
	시간제	(77)	20.8	44.2	24.7	10.4	
	무응답	(16)	12.5	43.8	31.3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3.9	47.4	42.1	6.6	$\chi^2 = 51.151,$ $p = 0.000$
	3년-5년	(121)	6.6	66.9	23.1	3.3	
	6년-10년	(116)	12.1	50.9	31.0	6.0	
	11년-15년	(68)	14.7	44.1	35.3	5.9	
	16년 이상	(31)	41.9	25.8	19.4	12.9	
	무응답	(21)	9.5	38.1	33.3	19.0	

〈표 III-59〉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15.9	48.0	29.9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66.7	22.2	11.1	$\chi^2 = 77.435,$ $p = 0.000$
	F-6(결혼이민)	(101)	7.9	56.4	34.7	1.0	
	F-5(영주)	(29)	6.9	44.8	41.4	6.9	
	F-2(거주)	(17)	11.8	58.8	23.5	5.9	
	D-2, D-4(유학생)	(11)	0.0	90.9	9.1	0.0	
	귀화자	(66)	42.4	21.2	24.2	12.1	
	미등록체류자	(10)	0.0	30.0	50.0	20.0	
	난민	(5)	60.0	20.0	20.0	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60.0	40.0	0.0		

〈표 III-60〉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4.7	58.0	30.7	6.7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3.0	55.6	35.4	6.1	$\chi^2 = 23.153,$ $p = 0.058$
	F-6(결혼이민)	(5)	20.0	60.0	20.0	0.0	
	F-5(영주)	(4)	0.0	0.0	10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58.3	25.0	8.3	
	미등록체류자	(5)	0.0	100.0	0.0	0.0	
	난민	(10)	10.0	8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0.0	50.0	0.0	

(3) 정당 가입/활동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5.9%, '없음'은 48.3%였고, '모름'은 28.9%, '무응답'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18.8%), '필리핀'(18.3%), '베트남'(14.6%), '캄보디아'(13.6%)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26.7%), 'F-2(거주)'(15.0%), 'D-2, D-4(유학생)'(13.0%), 'F-6(결혼이민)'(12.3%), 'F-5(영주)'(12.1%),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의 경우 '난민'의 60.0%가 정당설립과 마찬가지로 정당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귀화자'는 54.5%만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F-2(거주)'(17.6%), 'F-5(영주)'(13.8%), 'F-6(결혼이민)'(11.9%), 'D-2, D-4(유학생)'(9.1%)의 순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F-6(결혼이민)'의 20.0%, 'D-2, D-4(유학생)'(16.7%),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1%) 등의 순으로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20.8%), '50대 이상'(20.0%), '20대 이하'(8.2%)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5.8%), '전일제'(13.0%)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19.1%), '6년-10년'(18.1%), '3년-5년'(9.9%), '1년-2년'(5.3%) 등의 순이다.

〈표 III-61〉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5.9	48.3	28.9	6.9	-	
출신 국가	태국	(27)	0.0	92.6	3.7	3.7	$x^2 = 26.939,$ $p = 0.008$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14.6	44.4	32.6	8.3	
	필리핀	(82)	18.3	40.2	32.9	8.5	
	캄보디아	(59)	13.6	47.5	30.5	8.5	
	중국	(64)	18.8	48.4	29.7	3.1	
	기타	(54)	22.2	50.0	22.2	5.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	56.0	31.2	8.8	$x^2 = 121.161,$ $p = 0.000$
	F-6(결혼이민)	(106)	12.3	50.9	34.9	1.9	
	F-5(영주)	(33)	12.1	33.3	48.5	6.1	
	F-2(거주)	(20)	15.0	65.0	15.0	5.0	
	D-2, D-4(유학생)	(23)	13.0	65.2	17.4	4.3	
	귀화자	(67)	53.7	14.9	20.9	10.4	
	미등록체류자	(15)	0.0	53.3	33.3	13.3	
	난민	(15)	26.7	60.0	6.7	6.7	
	기타 거주자	(21)	0.0	76.2	14.3	9.5	
	무응답	(8)	12.5	37.5	37.5	12.5	
성별	여성	(271)	21.8	43.9	28.0	6.3	$x^2 = 16.756,$ $p = 0.000$
	남성	(150)	6.7	56.7	28.7	8.0	
	무응답	(12)	0.0	41.7	50.0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8.2	55.8	29.9	6.1	$x^2 = 12.805,$ $p = 0.046$
	30대	(194)	21.6	45.4	27.8	5.2	
	40대	(53)	20.8	43.4	28.3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무응답	(24)	4.2	45.8	37.5	12.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5.8	44.4	33.8	6.0	$x^2 = 10.448,$ $p = 0.034$
	전일제	(207)	13.0	55.1	26.6	5.3	
	시간제	(77)	24.7	39.0	24.7	11.7	
	무응답	(16)	12.5	37.5	37.5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5.3	44.7	40.8	9.2	$x^2 = 63.551,$ $p = 0.000$
	3년-5년	(121)	9.9	67.8	19.0	3.3	
	6년-10년	(116)	18.1	44.8	31.9	5.2	
	11년-15년	(68)	19.1	38.2	36.8	5.9	
	16년 이상	(31)	51.6	25.8	9.7	12.9	
	무응답	(21)	14.3	33.3	28.6	23.8	

〈표 III-62〉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1.8	43.9	28.0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0.0	72.2	11.1	16.7	$\chi^2=87.702,$ $p=0.000$
	F-6(결혼이민)	(101)	11.9	50.5	35.6	2.0	
	F-5(영주)	(29)	13.8	37.9	41.4	6.9	
	F-2(거주)	(17)	17.6	64.7	17.6	0.0	
	D-2, D-4(유학생)	(11)	9.1	81.8	9.1	0.0	
	귀화자	(66)	54.5	15.2	19.7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60.0	20.0	20.0	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40.0	60.0	0.0		

〈표 III-63〉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6.7	56.7	28.7	8.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5.1	54.5	32.3	8.1	$\chi^2=20.688,$ $p=0.110$
	F-6(결혼이민)	(5)	20.0	60.0	20.0	0.0	
	F-5(영주)	(4)	0.0	0.0	10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16.7	50.0	25.0	8.3	
	미등록체류자	(5)	0.0	80.0	20.0	0.0	
	난민	(10)	10.0	8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4) 사회단체 설립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7.1%, '없음'은 43.0%였고, '모름'은 32.6%, '무응답'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28.1%), '필리핀'(17.1%), '베트남'(14.6%), '캄보디아'(8.5%), '태국'(7.4%)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의 49.3%만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F-2(거주)'(30.0%), 'F-5(영주)'(21.2%), '난민'(20.0%), 'D-2, D-4(유학생)'(17.4%), 'F-6(결혼이민)'(13.2%),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 등의 순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40.0%), 'F-5(영주)'(24.1%), 'F-2(거주)'(23.5%), 'F-6(결혼이민)'(12.9%), 'D-2, D-4(유학생)'(9.1%),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순이고, '남성'은 'F-2(거주)'가 66.7%, 'D-2, D-4(유학생)'(25.0%), 'F-6(결혼이민)'(20.0%),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0.6%), '50대 이상'(20.0%), '20대 이하'(8.8%)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6.5%), '전일제'(14.5%)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3.5%), '6년-10년'(17.2%), '3년-5년'(9.9%), '1년-2년'(9.2%) 등의 순이다.

〈표 III-64〉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7.1	43.0	32.6	7.4	-
출신 국가	태국	(27)	7.4	85.2	3.7	3.7	$\chi^2 = 34.234,$ $p = 0.001$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14.6	41.0	35.4	9.0	
	필리핀	(82)	17.1	43.9	31.7	7.3	
	캄보디아	(59)	8.5	40.7	47.5	3.4	
	중국	(64)	28.1	37.5	31.3	3.1	
	기타	(54)	24.1	35.2	25.9	14.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	52.8	36.8	6.4	$\chi^2 = 104.168,$ $p = 0.000$
	F-6(결혼이민)	(106)	13.2	45.3	37.7	3.8	
	F-5(영주)	(33)	21.2	24.2	48.5	6.1	
	F-2(거주)	(20)	30.0	50.0	20.0	0.0	
	D-2, D-4(유학생)	(23)	17.4	43.5	26.1	13.0	
	귀화자	(67)	49.3	13.4	25.4	11.9	
	미등록체류자	(15)	0.0	60.0	26.7	13.3	
	난민	(15)	20.0	60.0	6.7	13.3	
	기타 거주자	(21)	0.0	76.2	14.3	9.5	
	무응답	(8)	25.0	12.5	50.0	12.5	
성별	여성	(271)	22.5	38.7	31.7	7.0	$\chi^2 = 13.494,$ $p = 0.001$
	남성	(150)	8.7	50.0	33.3	8.0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8.8	46.9	36.7	7.5	$\chi^2 = 15.555,$ $p = 0.016$
	30대	(194)	20.6	42.8	30.4	6.2	
	40대	(53)	30.2	35.8	26.4	7.5	
	50대 이상	(15)	20.0	33.3	20.0	26.7	
	무응답	(24)	8.3	41.7	45.8	4.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6.5	37.6	38.3	7.5	$\chi^2 = 10.874,$ $p = 0.028$
	전일제	(207)	14.5	49.8	31.4	4.3	
	시간제	(77)	26.0	35.1	26.0	13.0	
	무응답	(16)	12.5	37.5	31.3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9.2	42.1	39.5	9.2	$\chi^2 = 62.523,$ $p = 0.000$
	3년-5년	(121)	9.9	62.0	24.0	4.1	
	6년-10년	(116)	17.2	37.9	40.5	4.3	
	11년-15년	(68)	23.5	32.4	36.8	7.4	
	16년 이상	(31)	54.8	25.8	6.5	12.9	
	무응답	(21)	9.5	23.8	38.1	28.6	

〈표 III-65〉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2.5	38.7	31.7	7.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66.7	22.2	5.6	$\chi^2 = 65.226,$ $p = 0.000$
	F-6(결혼이민)	(101)	12.9	45.5	38.6	3.0	
	F-5(영주)	(29)	24.1	27.6	41.4	6.9	
	F-2(거주)	(17)	23.5	52.9	23.5	0.0	
	D-2, D-4(유학생)	(11)	9.1	63.6	18.2	9.1	
	귀화자	(66)	50.0	13.6	24.2	12.1	
	미등록체류자	(10)	0.0	50.0	30.0	20.0	
	난민	(5)	40.0	20.0	20.0	2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20.0	80.0	0.0		

〈표 III-66〉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8.7	50.0	33.3	8.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4.0	50.5	38.4	7.1	$\chi^2 = 40.479,$ $p = 0.000$
	F-6(결혼이민)	(5)	20.0	40.0	20.0	20.0	
	F-5(영주)	(4)	0.0	0.0	100.0	0.0	
	F-2(거주)	(3)	66.7	33.3	0.0	0.0	
	D-2, D-4(유학생)	(12)	25.0	25.0	33.3	16.7	
	미등록체류자	(5)	0.0	80.0	20.0	0.0	
	난민	(10)	10.0	8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100.0	0.0	0.0	0.0	

(5) 사회단체 가입/활동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6.1%, '없음'은 37.2%였고, '모름'은 30.5%, '무응답'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3.3%), '베트남'(21.5%), '필리핀'(20.7%), '캄보디아'(20.3%), '태국'(3.7%)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5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42.4%), 'F-2(거주)'(40.0%), 'D-2, D-4(유학생)'(34.8%), 'F-6(결혼이민)'(27.4%), '난민'(26.7%),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8.8%)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41.4%), 'F-2(거주)'(41.2%), '난민'(40.0%), 'D-2, D-4(유학생)'(36.4%), 'F-6(결혼이민)'(26.7%),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순이고, '남성'은 'F-5(영주)'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6(결혼이민)'(40.0%), 'F-2(거주)', 'D-2, D-4(유학생)'(각 33.3%), '난민'(2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40.0%), '30대'(29.4%), '20대 이하'(17.7%)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8.6%), '전일제'(20.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6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33.8%), '6년-10년'(31.0%), '1년-2년'(17.1%), '3년-5년'(15.7%) 등의 순이다.

〈표 III-67〉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6.1	37.2	30.5	6.2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5.2	7.4	3.7	$x^2 = 51.508,$ $p = 0.000$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21.5	36.1	34.0	8.3	
	필리핀	(82)	20.7	39.0	32.9	7.3	
	캄보디아	(59)	20.3	37.3	39.0	3.4	
	중국	(64)	50.0	21.9	25.0	3.1	
	기타	(54)	35.2	31.5	25.9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8.8	50.4	36.0	4.8	$x^2 = 92.042,$ $p = 0.000$
	F-6(결혼이민)	(106)	27.4	33.0	35.8	3.8	
	F-5(영주)	(33)	42.4	21.2	33.3	3.0	
	F-2(거주)	(20)	40.0	40.0	15.0	5.0	
	D-2, D-4(유학생)	(23)	34.8	39.1	21.7	4.3	
	귀화자	(67)	55.2	9.0	25.4	10.4	
	미등록체류자	(15)	0.0	53.3	33.3	13.3	
	난민	(15)	26.7	53.3	6.7	13.3	
	기타 거주자	(21)	4.8	71.4	14.3	9.5	
	무응답	(8)	12.5	25.0	50.0	12.5	
성별	여성	(271)	33.2	29.9	30.6	6.3	$x^2 = 22.140,$ $p = 0.000$
	남성	(150)	15.3	50.0	28.7	6.0	
	무응답	(12)	0.0	41.7	50.0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7	43.5	34.0	4.8	$x^2 = 16.782,$ $p = 0.010$
	30대	(194)	29.4	35.6	29.4	5.7	
	40대	(53)	41.5	30.2	20.8	7.5	
	50대 이상	(15)	40.0	26.7	13.3	20.0	
	무응답	(24)	8.3	33.3	50.0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8.6	30.1	34.6	6.8	$x^2 = 18.800,$ $p = 0.001$
	전일제	(207)	20.3	46.4	30.0	3.4	
	시간제	(77)	39.0	26.0	23.4	11.7	
	무응답	(16)	18.8	31.3	37.5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17.1	36.8	36.8	9.2	$x^2 = 50.159,$ $p = 0.000$
	3년-5년	(121)	15.7	57.0	24.0	3.3	
	6년-10년	(116)	31.0	31.9	33.6	3.4	
	11년-15년	(68)	33.8	26.5	33.8	5.9	
	16년 이상	(31)	61.3	19.4	9.7	9.7	
	무응답	(21)	14.3	14.3	47.6	23.8	

〈표 III-68〉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3.2	29.9	30.6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55.6	33.3	5.6	$\chi^2 = 48.011,$ $p = 0.000$
	F-6(결혼이민)	(101)	26.7	33.7	35.6	4.0	
	F-5(영주)	(29)	41.4	24.1	31.0	3.4	
	F-2(거주)	(17)	41.2	41.2	17.6	0.0	
	D-2, D-4(유학생)	(11)	36.4	45.5	18.2	0.0	
	귀화자	(66)	56.1	9.1	24.2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40.0	20.0	20.0	20.0	
	기타 거주자	(9)	0.0	66.7	22.2	11.1	
무응답	(5)	0.0	20.0	80.0	0.0		

〈표 III-69〉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사회단체(시민단체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15.3	50.0	28.7	6.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10.1	50.5	34.3	5.1	$\chi^2 = 24.644,$ $p = 0.038$
	F-6(결혼이민)	(5)	40.0	20.0	40.0	0.0	
	F-5(영주)	(4)	50.0	0.0	50.0	0.0	
	F-2(거주)	(3)	33.3	33.3	0.0	33.3	
	D-2, D-4(유학생)	(12)	33.3	33.3	25.0	8.3	
	미등록체류자	(5)	0.0	80.0	20.0	0.0	
	난민	(10)	20.0	7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10.0	70.0	1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6) 노동조합 설립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0.6%, ‘없음’은 40.4%였고, ‘모름’은 31.9%, ‘무응답’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4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3.3%), ‘중국’(26.6%), ‘캄보디아’(16.9%), ‘베트남’(16.0%), ‘필리핀’(15.9%)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4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26.7%), ‘F-2(거주)’(25.0%), ‘F-5(영주)’(21.2%), ‘F-6(결혼이민)’(19.8%), ‘D-2, D-4(유학생)’(17.4%),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1.2%), ‘미등록체류자’(6.7%)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난민’이 6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45.5%),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3%), ‘F-5(영주)’(24.1%), ‘F-2(거주)’(23.5%), ‘F-6(결혼이민)’(18.8%), ‘D-2, D-4(유학생)’(9.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F-6(결혼이민)’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33.3%), ‘D-2, D-4(유학생)’(25.0%), ‘미등록체류자’(20.0%), ‘난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3.7%), ‘50대 이상’(20.0%), ‘20대 이하’(15.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19.3%), ‘활동안함’(17.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6.5%), ‘6년-10년’(22.4%), ‘3년-5년’(16.5%), ‘1년-2년’(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이주민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상 근로자인 경우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로 분류되는 E-9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그 권리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인식은 출신국가, 체류형태, 성별, 연령, 경제활동여부, 체류기간 등에 관계없이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표 III-70〉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0.6	40.4	31.9	7.2	-	
출신 국가	태국	(27)	44.4	51.9	0.0	3.7	$\chi^2 = 24.559,$ $p = 0.017$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16.0	40.3	35.4	8.3	
	필리핀	(82)	15.9	41.5	35.4	7.3	
	캄보디아	(59)	16.9	37.3	39.0	6.8	
	중국	(64)	26.6	34.4	32.8	6.3	
	기타	(54)	24.1	44.4	24.1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1.2	45.6	36.0	7.2	$\chi^2 = 72.180,$ $p = 0.000$
	F-6(결혼이민)	(106)	19.8	39.6	37.7	2.8	
	F-5(영주)	(33)	21.2	21.2	42.4	15.2	
	F-2(거주)	(20)	25.0	55.0	15.0	5.0	
	D-2, D-4(유학생)	(23)	17.4	65.2	17.4	0.0	
	귀화자	(67)	44.8	14.9	31.3	9.0	
	미등록체류자	(15)	6.7	46.7	33.3	13.3	
	난민	(15)	26.7	60.0	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76.2	14.3	9.5	
	무응답	(8)	37.5	12.5	37.5	12.5	
성별	여성	(271)	26.2	34.3	32.5	7.0	$\chi^2 = 16.451,$ $p = 0.000$
	남성	(150)	12.0	51.3	29.3	7.3	
	무응답	(12)	0.0	41.7	50.0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5.0	46.3	34.0	4.8	$\chi^2 = 8.401,$ $p = 0.210$
	30대	(194)	23.7	38.7	31.4	6.2	
	40대	(53)	30.2	34.0	28.3	7.5	
	50대 이상	(15)	20.0	33.3	13.3	33.3	
	무응답	(24)	8.3	37.5	41.7	12.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7.3	39.1	36.8	6.8	$\chi^2 = 8.321,$ $p = 0.081$
	전일제	(207)	19.3	44.4	30.9	5.3	
	시간제	(77)	29.9	35.1	23.4	11.7	
	무응답	(16)	18.8	25.0	43.8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6.6	46.1	38.2	9.2	$\chi^2 = 41.226,$ $p = 0.000$
	3년-5년	(121)	16.5	58.7	21.5	3.3	
	6년-10년	(116)	22.4	33.6	37.1	6.9	
	11년-15년	(68)	26.5	27.9	38.2	7.4	
	16년 이상	(31)	41.9	22.6	22.6	12.9	
	무응답	(21)	33.3	19.0	33.3	14.3	

〈표 III-71〉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6.2	34.3	32.5	7.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33.3	27.8	27.8	11.1	x ² =48.874, p=0.000
	F-6(결혼이민)	(101)	18.8	39.6	38.6	3.0	
	F-5(영주)	(29)	24.1	24.1	37.9	13.8	
	F-2(거주)	(17)	23.5	58.8	17.6	0.0	
	D-2, D-4(유학생)	(11)	9.1	72.7	18.2	0.0	
	귀화자	(66)	45.5	15.2	30.3	9.1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60.0	20.0	0.0	2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20.0	20.0	60.0	0.0		

〈표 III-72〉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12.0	51.3	29.3	7.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8.1	49.5	35.4	7.1	x ² =25.194, p=0.033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0.0	0.0	75.0	25.0	
	F-2(거주)	(3)	33.3	33.3	0.0	33.3	
	D-2, D-4(유학생)	(12)	25.0	58.3	16.7	0.0	
	미등록체류자	(5)	20.0	60.0	20.0	0.0	
	난민	(10)	10.0	8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100.0	0.0	0.0	0.0	

(7) 노동조합 가입/활동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6.1%, '없음'은 36.7%였고, '모름'은 30.5%, '무응답'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 활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주민의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5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9.1%), '인도네시아'(33.3%), '베트남'(22.2%), '캄보디아'(20.3%), '필리핀'(17.1%)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5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46.7%), 'F-5(영주)'(30.3%), 'F-2(거주)'(30.0%), 'F-6(결혼이민)'(25.5%), 'D-2, D-4(유학생)'(17.4%), '미등록체류자'(13.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2.8%)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난민'이 8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57.6%),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3%), 'F-2(거주)'(29.4%), 'F-5(영주)'(27.6%), 'F-6(결혼이민)'(24.8%), 'D-2, D-4(유학생)'(9.1%) 등의 순이고, '남성'은 'F-5(영주)'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6(결혼이민)', '미등록체류자'(각 40.0%), 'F-2(거주)'(33.3%), '난민'(30.0%), 'D-2, D-4(유학생)'(25.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0.1%) 등의 순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다른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난민의 경우 여성의 80%가 그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남성 30%에 비해 상당히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기보다 권리의 요구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3.3%), '30대'(29.9%), '20대 이하'(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24.6%), '활동안함'(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의 경우 시간제 등에서보다 권리 인식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사 결과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35.3%), '6년-10년'(26.7%), '3년-5년'(21.5%), '1년-2년'(14.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정치적 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3〉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6.1	36.7	30.5	6.7	-
출신 국가	태국	(27)	51.9	40.7	3.7	3.7	$\chi^2 = 25.139,$ $p = 0.014$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22.2	35.4	33.3	9.0	
	필리핀	(82)	17.1	40.2	35.4	7.3	
	캄보디아	(59)	20.3	37.3	37.3	5.1	
	중국	(64)	39.1	29.7	28.1	3.1	
	기타	(54)	27.8	40.7	24.1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2.8	44.0	36.0	7.2	$\chi^2 = 81.857,$ $p = 0.000$
	F-6(결혼이민)	(106)	25.5	37.7	34.9	1.9	
	F-5(영주)	(33)	30.3	21.2	39.4	9.1	
	F-2(거주)	(20)	30.0	50.0	15.0	5.0	
	D-2, D-4(유학생)	(23)	17.4	56.5	26.1	0.0	
	귀화자	(67)	56.7	9.0	23.9	10.4	
	미등록체류자	(15)	13.3	46.7	26.7	13.3	
	난민	(15)	46.7	40.0	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66.7	23.8	9.5	
무응답	(8)	37.5	12.5	37.5	12.5		
성별	여성	(271)	32.5	31.4	29.5	6.6	$\chi^2 = 15.136,$ $p = 0.001$
	남성	(150)	16.7	46.7	30.0	6.7	
	무응답	(12)	0.0	33.3	58.3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20.4	44.2	29.9	5.4	$\chi^2 = 9.757,$ $p = 0.135$
	30대	(194)	29.9	33.0	30.9	6.2	
	40대	(53)	35.8	30.2	28.3	5.7	
	50대 이상	(15)	33.3	26.7	13.3	26.7	
	무응답	(24)	4.2	41.7	45.8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3.3	35.3	35.3	6.0	$\chi^2 = 8.918,$ $p = 0.063$
	전일제	(207)	24.6	41.1	30.0	4.3	
	시간제	(77)	36.4	28.6	22.1	13.0	
	무응답	(16)	18.8	31.3	37.5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14.5	42.1	34.2	9.2	$\chi^2 = 34.396,$ $p = 0.000$
	3년-5년	(121)	21.5	51.2	24.0	3.3	
	6년-10년	(116)	26.7	32.8	35.3	5.2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11년-15년	(68)	35.3	23.5	35.3	5.9	
16년 이상	(31)	51.6	19.4	16.1	12.9	
무응답	(21)	23.8	23.8	33.3	19.0	

〈표 III-74〉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2.5	31.4	29.5	6.6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33.3	38.9	16.7	11.1	$\chi^2=58.565,$ $p=0.000$
	F-6(결혼이민)	(101)	24.8	37.6	35.6	2.0	
	F-5(영주)	(29)	27.6	24.1	37.9	10.3	
	F-2(거주)	(17)	29.4	52.9	17.6	0.0	
	D-2, D-4(유학생)	(11)	9.1	63.6	27.3	0.0	
	귀화자	(66)	57.6	9.1	22.7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80.0	0.0	0.0	20.0	
	기타 거주자	(9)	0.0	66.7	22.2	11.1	
무응답	(5)	20.0	20.0	60.0	0.0		

〈표 III-75〉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16.7	46.7	30.0	6.7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10.1	45.5	37.4	7.1	$\chi^2=24.636,$ $p=0.038$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50.0	0.0	50.0	0.0	
	F-2(거주)	(3)	33.3	33.3	0.0	33.3	
	D-2, D-4(유학생)	(12)	25.0	50.0	25.0	0.0	
	미등록체류자	(5)	40.0	60.0	0.0	0.0	
	난민	(10)	30.0	6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100.0	0.0	0.0	0.0		

(8) 집회/시위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7.9%, ‘없음’은 36.7%였고, ‘모름’은 27.9%, ‘무응답’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 ‘인도네시아’(각 33.3%), ‘캄보디아’(30.5%), ‘베트남’(24.3%), ‘필리핀’(18.3%)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의 62.7%만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F-2(거주)’(50.0%), ‘F-5(영주)’(39.4%), ‘난민’(26.7%), ‘D-2, D-4(유학생)’(26.1%), ‘F-6(결혼이민)’(25.5%), ‘미등록체류자’(13.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2.8%) 등의 순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6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60.0%), ‘F-2(거주)’(47.1%), ‘F-5(영주)’(37.9%),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7.8%), ‘F-6(결혼이민)’(24.8%), ‘D-2, D-4(유학생)’(18.2%)의 순이고, ‘남성’은 ‘F-2(거주)’가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50.0%), ‘F-6(결혼이민)’, ‘미등록체류자’(각 40.0%), ‘D-2, D-4(유학생)’(33.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11.1%), ‘난민’(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5.8%), ‘30대’(31.4%), ‘20대 이하’(21.1%) 등의 순이다. 연령에 따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6.3%), ‘전일제’(25.1%) 등의 순이다. 특히, 전일제의 경우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2.6%), ‘6년-10년’(35.3%), ‘3년-5년’(18.2%), ‘1년-2년’(1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7.9	36.7	27.9	7.4	-	
출신 국가	태국	(27)	33.3	55.6	7.4	3.7	$x^2 = 20.650,$ $p = 0.056$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24.3	36.8	31.3	7.6	
	필리핀	(82)	18.3	41.5	32.9	7.3	
	캄보디아	(59)	30.5	32.2	27.1	10.2	
	중국	(64)	43.8	25.0	28.1	3.1	
	기타	(54)	27.8	38.9	22.2	11.1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2.8	45.6	32.0	9.6	$x^2 = 92.957,$ $p = 0.000$
	F-6(결혼이민)	(106)	25.5	34.9	35.8	3.8	
	F-5(영주)	(33)	39.4	27.3	30.3	3.0	
	F-2(거주)	(20)	50.0	35.0	10.0	5.0	
	D-2, D-4(유학생)	(23)	26.1	52.2	21.7	0.0	
	귀화자	(67)	62.7	7.5	19.4	10.4	
	미등록체류자	(15)	13.3	46.7	26.7	13.3	
	난민	(15)	26.7	60.0	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66.7	23.8	9.5	
	무응답	(8)	12.5	25.0	50.0	12.5	
성별	여성	(271)	35.4	30.3	27.3	7.0	$x^2 = 20.776,$ $p = 0.000$
	남성	(150)	16.7	48.7	26.7	8.0	
	무응답	(12)	0.0	33.3	58.3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21.1	46.3	27.9	4.8	$x^2 = 11.331,$ $p = 0.079$
	30대	(194)	31.4	34.0	26.3	8.2	
	40대	(53)	35.8	28.3	28.3	7.5	
	50대 이상	(15)	40.0	26.7	13.3	20.0	
	무응답	(24)	16.7	25.0	50.0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6.3	32.3	33.8	7.5	$x^2 = 13.953,$ $p = 0.007$
	전일제	(207)	25.1	43.0	26.1	5.8	
	시간제	(77)	41.6	28.6	19.5	10.4	
	무응답	(16)	12.5	31.3	43.8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15.8	42.1	34.2	7.9	$x^2 = 35.156,$ $p = 0.000$
	3년-5년	(121)	18.2	52.1	24.8	5.0	
	6년-10년	(116)	35.3	31.0	27.6	6.0	
	11년-15년	(68)	42.6	22.1	29.4	5.9	
	16년 이상	(31)	45.2	22.6	22.6	9.7	
	무응답	(21)	14.3	28.6	28.6	28.6	

〈표 III-77〉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35.4	30.3	27.3	7.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27.8	44.4	16.7	11.1	$\chi^2 = 59.958,$ $p = 0.000$
	F-6(결혼이민)	(101)	24.8	34.7	36.6	4.0	
	F-5(영주)	(29)	37.9	31.0	27.6	3.4	
	F-2(거주)	(17)	47.1	35.3	11.8	5.9	
	D-2, D-4(유학생)	(11)	18.2	63.6	18.2	0.0	
	귀화자	(66)	63.6	7.6	18.2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60.0	20.0	0.0	20.0	
	기타 거주자	(9)	0.0	66.7	22.2	11.1	
무응답	(5)	0.0	20.0	80.0	0.0		

〈표 III-78〉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16.7	48.7	26.7	8.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11.1	46.5	32.3	10.1	$\chi^2 = 27.539,$ $p = 0.016$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50.0	0.0	50.0	0.0	
	F-2(거주)	(3)	66.7	33.3	0.0	0.0	
	D-2, D-4(유학생)	(12)	33.3	41.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40.0	60.0	0.0	0.0	
	난민	(10)	10.0	8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9) 공개적 정치적 발언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에 대해 '있음'은 21.2%, '없음'은 41.6%였고, '모름'은 30.5%, '무응답'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3.3%), '캄보디아'(16.9%), '베트남'(16.7%), '필리핀'(15.9%), '태국'(3.7%)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4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34.8%), '난민'(33.3%), 'F-5(영주)'(30.3%), 'F-2(거주)'(25.0%), 'F-6(결혼이민)'(21.7%), '미등록체류자'(6.7%),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4%)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난민'이 6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47.0%), 'D-2, D-4(유학생)'(36.4%), 'F-5(영주)'(34.5%), 'F-2(거주)'(29.4%), 'F-6(결혼이민)'(20.8%),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F-6(결혼이민)'이 4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33.3%), '미등록체류자', '난민'(각 2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26.7%), '30대'(23.2%), '20대 이하'(15.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3.3%), '전일제'(15.5%)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26.7%), '11년-15년'(26.5%), '3년-5년'(14.0%), '1년-2년'(11.8%) 등의 순으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79〉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21.2	41.6	30.5	6.7	-	
출신 국가	태국	(27)	3.7	88.9	3.7	3.7	$x^2=48.437$, $p=0.000$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베트남	(144)	16.7	41.0	34.0	8.3	
	필리핀	(82)	15.9	40.2	36.6	7.3	
	캄보디아	(59)	16.9	44.1	32.2	6.8	
	중국	(64)	42.2	25.0	29.7	3.1	
	기타	(54)	29.6	38.9	24.1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6.4	56.0	30.4	7.2	$x^2=88.621$, $p=0.000$
	F-6(결혼이민)	(106)	21.7	35.8	40.6	1.9	
	F-5(영주)	(33)	30.3	24.2	36.4	9.1	
	F-2(거주)	(20)	25.0	60.0	10.0	5.0	
	D-2, D-4(유학생)	(23)	34.8	47.8	17.4	0.0	
	귀화자	(67)	46.3	11.9	31.3	10.4	
	미등록체류자	(15)	6.7	53.3	26.7	13.3	
	난민	(15)	33.3	53.3	0.0	13.3	
	기타 거주자	(21)	0.0	71.4	19.0	9.5	
	무응답	(8)	12.5	25.0	50.0	12.5	
성별	여성	(271)	27.7	35.4	30.6	6.3	$x^2=19.485$, $p=0.000$
	남성	(150)	11.3	53.3	28.0	7.3	
	무응답	(12)	0.0	33.3	58.3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5.0	50.3	29.3	5.4	$x^2=13.526$, $p=0.035$
	30대	(194)	23.2	38.7	32.0	6.2	
	40대	(53)	35.8	34.0	24.5	5.7	
	50대 이상	(15)	26.7	26.7	20.0	26.7	
	무응답	(24)	8.3	37.5	45.8	8.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3.3	34.6	36.1	6.0	$x^2=22.749$, $p=0.000$
	전일제	(207)	15.5	51.7	28.0	4.8	
	시간제	(77)	35.1	28.6	24.7	11.7	
	무응답	(16)	12.5	31.3	43.8	12.5	
체류 기간	1년-2년	(76)	11.8	43.4	34.2	10.5	$x^2=36.322$, $p=0.000$
	3년-5년	(121)	14.0	59.5	23.1	3.3	
	6년-10년	(116)	26.7	36.2	31.9	5.2	
	11년-15년	(68)	26.5	27.9	39.7	5.9	
	16년 이상	(31)	41.9	19.4	25.8	12.9	
	무응답	(21)	19.0	38.1	28.6	14.3	

〈표 III-80〉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7.7	35.4	30.6	6.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77.8	11.1	5.6	$\chi^2 = 63.643,$ $p = 0.000$
	F-6(결혼이민)	(101)	20.8	35.6	41.6	2.0	
	F-5(영주)	(29)	34.5	27.6	27.6	10.3	
	F-2(거주)	(17)	29.4	58.8	11.8	0.0	
	D-2, D-4(유학생)	(11)	36.4	54.5	9.1	0.0	
	귀화자	(66)	47.0	12.1	30.3	10.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60.0	20.0	0.0	20.0	
	기타 거주자	(9)	0.0	77.8	11.1	11.1	
무응답	(5)	0.0	40.0	60.0	0.0		

〈표 III-81〉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11.3	53.3	28.0	7.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7.1	53.5	31.3	8.1	$\chi^2 = 30.060,$ $p = 0.007$
	F-6(결혼이민)	(5)	40.0	40.0	20.0	0.0	
	F-5(영주)	(4)	0.0	0.0	10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33.3	41.7	25.0	0.0	
	미등록체류자	(5)	20.0	80.0	0.0	0.0	
	난민	(10)	20.0	7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0.0	50.0	0.0	

(10) 선거운동

응답자의 정치적 활동 자유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19.6%, '없음'은 41.8%였고, '모름'은 26.3%, '무응답'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권리인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1.3%, 다음으로 '캄보디아'(27.1%), '필리핀'(20.7%), '베트남'(13.2%), '태국'(7.4%) 등의 순으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5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27.3%), '난민'(26.7%), 'F-6(결혼이민)'(17.0%), 'D-2, D-4(유학생)'(13.0%), 'F-2(거주)'(1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4%)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교차 분석해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40.0%), 'F-5(영주)'(31.0%), 'D-2, D-4(유학생)'(18.2%), 'F-6(결혼이민)'(16.8%), 'F-2(거주)'(11.8%),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6%)의 순이고, '남성'은 'F-6(결혼이민)', '난민'이 각 2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8.3%),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7.1%)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하는 경우가 '40대' 34.0%, '50대 이상'(26.7%), '30대'(22.2%), '20대 이하'(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2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18.0%), '전일제'(17.4%)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6년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26.5%), '6년-10년'(25.0%), '3년-5년'(9.9%), '1년-2년'(9.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82〉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19.6	41.8	26.3	12.2	-
출신 국가	태국	(27)	7.4	81.5	7.4	3.7	$\chi^2 = 27.126,$ $p = 0.007$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베트남	(144)	13.2	40.3	21.5	25.0	
	필리핀	(82)	20.7	42.7	29.3	7.3	
	캄보디아	(59)	27.1	33.9	33.9	5.1	
	중국	(64)	31.3	32.8	31.3	4.7	
	기타	(54)	20.4	44.4	27.8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6.4	54.4	29.6	9.6	$\chi^2 = 110.950,$ $p = 0.000$
	F-6(결혼이민)	(106)	17.0	40.6	27.4	15.1	
	F-5(영주)	(33)	27.3	21.2	39.4	12.1	
	F-2(거주)	(20)	10.0	60.0	15.0	15.0	
	D-2, D-4(유학생)	(23)	13.0	52.2	34.8	0.0	
	귀화자	(67)	58.2	10.4	17.9	13.4	
	미등록체류자	(15)	0.0	53.3	26.7	20.0	
	난민	(15)	26.7	53.3	6.7	13.3	
	기타 거주자	(21)	0.0	66.7	23.8	9.5	
	무응답	(8)	25.0	25.0	25.0	25.0	
성별	여성	(271)	26.9	34.3	25.5	13.3	$\chi^2 = 26.526,$ $p = 0.000$
	남성	(150)	8.0	54.7	26.7	10.7	
	무응답	(12)	0.0	50.0	41.7	8.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1.6	51.0	27.9	9.5	$\chi^2 = 18.139,$ $p = 0.006$
	30대	(194)	22.2	41.2	24.2	12.4	
	40대	(53)	34.0	26.4	28.3	11.3	
	50대 이상	(15)	26.7	26.7	20.0	26.7	
	무응답	(24)	12.5	33.3	33.3	20.8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8.0	38.3	32.3	11.3	$\chi^2 = 15.947,$ $p = 0.003$
	전일제	(207)	17.4	50.2	23.2	9.2	
	시간제	(77)	29.9	26.0	23.4	20.8	
	무응답	(16)	12.5	37.5	31.3	18.8	
체류 기간	1년-2년	(76)	9.2	44.7	34.2	11.8	$\chi^2 = 52.422,$ $p = 0.000$
	3년-5년	(121)	9.9	61.2	20.7	8.3	
	6년-10년	(116)	25.0	35.3	26.7	12.9	
	11년-15년	(68)	26.5	27.9	30.9	14.7	
	16년 이상	(31)	51.6	22.6	12.9	12.9	
	무응답	(21)	14.3	28.6	33.3	23.8	

〈표 III-83〉 여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271)	26.9	34.3	25.5	13.3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5.6	61.1	27.8	5.6	$x^2=66.527,$ $p=0.000$
	F-6(결혼이민)	(101)	16.8	39.6	28.7	14.9	
	F-5(영주)	(29)	31.0	24.1	31.0	13.8	
	F-2(거주)	(17)	11.8	58.8	17.6	11.8	
	D-2, D-4(유학생)	(11)	18.2	63.6	18.2	0.0	
	귀화자	(66)	59.1	10.6	16.7	13.6	
	미등록체류자	(10)	0.0	40.0	40.0	20.0	
	난민	(5)	40.0	20.0	20.0	20.0	
	기타 거주자	(9)	0.0	55.6	33.3	11.1	
무응답	(5)	20.0	20.0	40.0	20.0		

〈표 III-84〉 남성 -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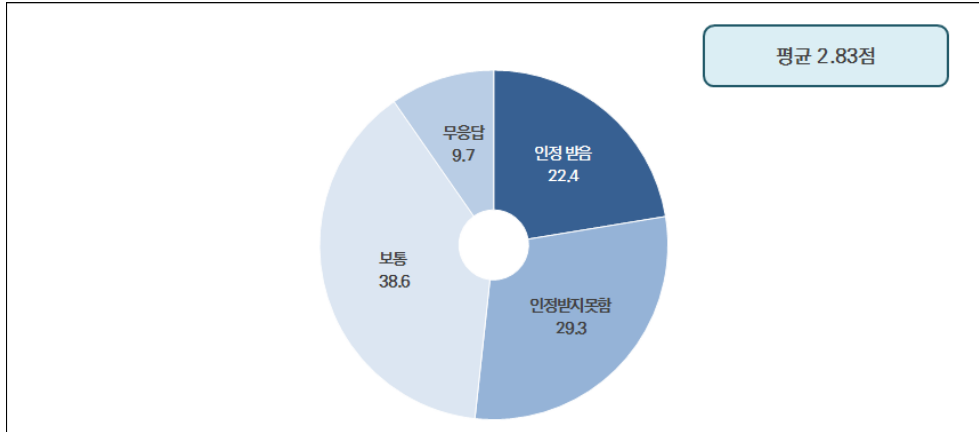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50)	8.0	54.7	26.7	10.7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7.1	53.5	28.3	11.1	$x^2=24.585,$ $p=0.039$
	F-6(결혼이민)	(5)	20.0	60.0	0.0	20.0	
	F-5(영주)	(4)	0.0	0.0	100.0	0.0	
	F-2(거주)	(3)	0.0	66.7	0.0	33.3	
	D-2, D-4(유학생)	(12)	8.3	41.7	50.0	0.0	
	미등록체류자	(5)	0.0	80.0	0.0	20.0	
	난민	(10)	20.0	70.0	0.0	10.0	
	기타 거주자	(10)	0.0	70.0	20.0	10.0	
	무응답	(2)	50.0	50.0	0.0	0.0	

6)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인식은 22.4%,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29.3%였으며, 평균은 2.83점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19〉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단위 : %)



※인정받지 못함:①+②, 보통:③, 인정받음:④+⑤

이를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3.00점), ‘태국’(2.93점), ‘필리핀’(2.82점), ‘인도네시아’(2.67점), ‘캄보디아’(2.48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귀화자’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3.06점), ‘F-6(결혼이민)’(2.93점), ‘F-5(영주)’(2.88점), ‘D-2, D-4(유학생)’(2.59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50점), ‘난민’(2.36점), ‘미등록체류자’(2.2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귀화자’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3.13점), ‘F-6(결혼이민)’, ‘F-5(영주)’(각 2.97점), ‘난민’(2.75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60점), ‘D-2, D-4(유학생)’(2.40점), ‘미등록체류자’(2.33점)의 순이고, ‘남성’은 ‘D-2, D-4(유학생)’이 2.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52점), ‘F-2(거주)’(2.50점), ‘F-5(영주)’(2.25점), ‘F-6(결혼이민)’, ‘난민’(각 2.20점), ‘미등록체류자’(2.00점)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92점), ‘50대 이상’(2.83점), ‘20대 이하’(2.67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3.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2.93점), ‘전일제’(2.70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6년 이상’(3.07점), ‘11년-15년’(2.85점), ‘1년-2년’(2.69점), ‘3년-5년’(2.60점) 등의 순이다.

〈표 III-8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인정받지 못함 ①+②	보통 ③	인정 받음 ④+⑤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433)	29.3	38.6	22.4	9.7	2.83	-
출신 국가	태국	(27)	3.7	48.1	3.7	44.4	2.93	F=4.111, p=0.001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2.67	
	베트남	(144)	22.2	48.6	22.9	6.3	3.00	
	필리핀	(82)	35.4	30.5	24.4	9.8	2.82	
	캄보디아	(59)	39.0	32.2	16.9	11.9	2.48	
	중국	(64)	23.4	40.6	34.4	1.6	3.16	
	기타	(54)	48.1	22.2	20.4	9.3	2.33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5.2	37.6	14.4	12.8	2.50	F=5.189, p=0.000
	F-6(결혼이민)	(106)	28.3	40.6	25.5	5.7	2.93	
	F-5(영주)	(33)	27.3	54.5	18.2	0.0	2.88	
	F-2(거주)	(20)	20.0	40.0	30.0	10.0	3.06	
	D-2, D-4(유학생)	(23)	43.5	26.1	26.1	4.3	2.59	
	귀화자	(67)	14.9	38.8	43.3	3.0	3.46	
	미등록체류자	(15)	40.0	20.0	0.0	40.0	2.22	
	난민	(15)	46.7	26.7	20.0	6.7	2.36	
	기타 거주자	(21)	28.6	47.6	4.8	19.0	2.59	
	무응답	(8)	12.5	25.0	12.5	50.0	3.25	
성별	여성	(271)	23.2	39.5	27.7	9.6	3.04	F=21.147, p=0.000
	남성	(150)	40.0	36.0	14.0	10.0	2.50	
	무응답	(12)	33.3	50.0	8.3	8.3	2.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9.3	43.5	17.0	10.2	2.67	F=1.644, p=0.179
	30대	(194)	29.4	38.1	25.3	7.2	2.92	
	40대	(53)	34.0	24.5	30.2	11.3	3.00	
	50대 이상	(15)	26.7	33.3	20.0	20.0	2.83	
	무응답	(24)	20.8	45.8	16.7	16.7	2.8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8.6	40.6	25.6	5.3	2.93	F=3.050, p=0.049
	전일제	(207)	34.3	34.8	18.4	12.6	2.70	
	시간제	(77)	18.2	45.5	28.6	7.8	3.04	
	무응답	(16)	25.0	37.5	18.8	18.8	2.69	
체류 기간	1년-2년	(76)	31.6	40.8	21.1	6.6	2.69	F=3.413, p=0.009
	3년-5년	(121)	34.7	39.7	16.5	9.1	2.60	
	6년-10년	(116)	24.1	38.8	31.9	5.2	3.10	
	11년-15년	(68)	30.9	36.8	19.1	13.2	2.85	
	16년 이상	(31)	22.6	38.7	25.8	12.9	3.07	
	무응답	(21)	23.8	28.6	14.3	33.3	2.79	

〈표 III-86〉 여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인정받지 못함 ①+②	보통 ③	인정 받음 ④+⑤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271)	23.2	39.5	27.7	9.6	3.04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8)	22.2	22.2	11.1	44.4	2.60	F=2.600, p=0.010
	F-6(결혼이민)	(101)	26.7	40.6	26.7	5.9	2.97	
	F-5(영주)	(29)	20.7	58.6	20.7	0.0	2.97	
	F-2(거주)	(17)	17.6	41.2	35.3	5.9	3.13	
	D-2, D-4(유학생)	(11)	45.5	18.2	27.3	9.1	2.40	
	귀화자	(66)	15.2	37.9	43.9	3.0	3.47	
	미등록체류자	(10)	30.0	30.0	0.0	40.0	2.33	
	난민	(5)	20.0	40.0	20.0	20.0	2.75	
	기타 거주자	(9)	33.3	55.6	11.1	0.0	2.67	
	무응답	(5)	20.0	20.0	0.0	60.0	2.50	

〈표 III-87〉 남성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인정받지 못함 ①+②	보통 ③	인정 받음 ④+⑤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150)	40.0	36.0	14.0	10.0	2.50	-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99)	36.4	40.4	15.2	8.1	2.52	F=0.357, p=0.925
	F-6(결혼이민)	(5)	60.0	40.0	0.0	0.0	2.20	
	F-5(영주)	(4)	75.0	25.0	0.0	0.0	2.25	
	F-2(거주)	(3)	33.3	33.3	0.0	33.3	2.50	
	D-2, D-4(유학생)	(12)	41.7	33.3	25.0	0.0	2.75	
	미등록체류자	(5)	60.0	0.0	0.0	40.0	2.00	
	난민	(10)	60.0	20.0	20.0	0.0	2.20	
	기타 거주자	(10)	30.0	30.0	0.0	40.0	2.33	
	무응답	(2)	0.0	50.0	50.0	0.0	4.00	

다.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1)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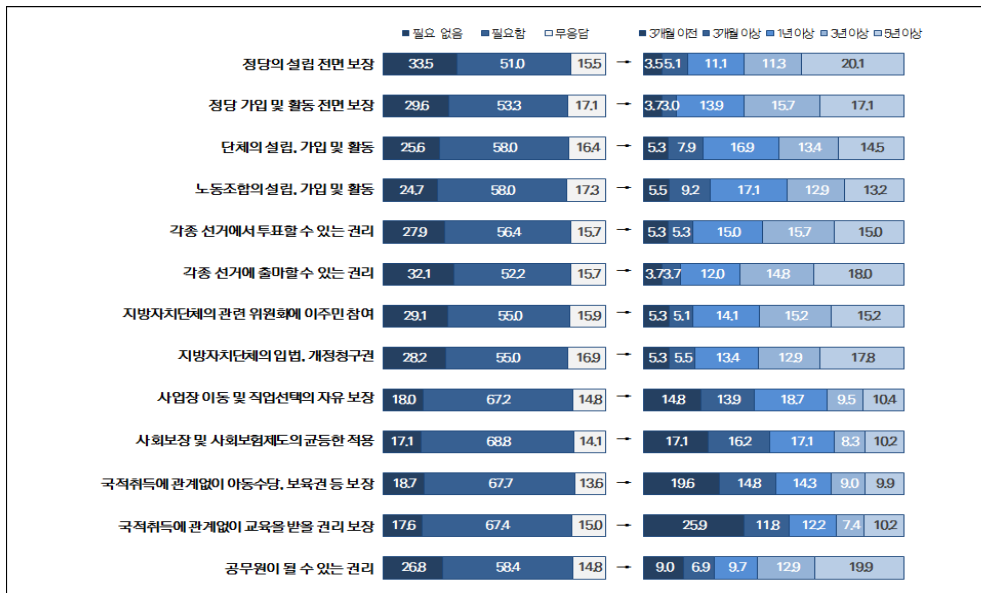
(1) 종합

응답자의 정치적 권리보장의 인식 수준은 낮은 반면에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각 55.0%,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53.3%,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52.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51.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질문에서 모두가 절반 이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단위 : %)



특히,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사회보장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제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체 및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자유권, 노동권), 공무담임권도 그 요구도가 높다.

(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1.0%, '필요 없다'는 인식은 33.5%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2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1.3%), '1년 이상'(11.1%), '3개월 이상'(5.1%), '3개월 이전'(3.5%) 등의 순이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캄보디아'가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67.2%), '베트남'(47.9%), '필리핀'(40.2%), '태국'(37.0%), '인도네시아'(33.3%)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5(영주)'가 7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70.0%), '귀화자'(61.2%), 'F-6(결혼이민)'(59.4%), 'D-2, D-4(유학생)'(43.5%),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3.2%), '기타 거주자'(33.3%), '미등록체류자'(13.3%), '난민'(6.7%) 등의 순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필요함'이 필요인식은 '여성'이 53.5%로 '남성'(4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31%), 남성(38%)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권리 존부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인식에 대해 남성의 비율이 48.7%로 나타나고 있어, 앞의 권리인식에서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의 정도는 '20대 이하'가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3.1%), '40대'(52.8%),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5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53.2%), '활동안함'(46.6%)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6년-10년'이 5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55.4%), '11년-15년'(50.0%), '1년-2년'(46.1%), '16년 이상'(41.9%) 등의 순이다.

〈표 III-8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33.5	51.0	3.5	5.1	11.1	11.3	20.1	15.5	-	
출신 국가	태국	(27)	48.1	37.0	3.7	25.9	3.7	0.0	3.7	14.8	$\chi^2=87.083,$ $p=0.000$
	인도네시아	(3)	66.7	33.3	0.0	0.0	33.3	0.0	0.0	0.0	
	베트남	(144)	31.3	47.9	4.9	1.4	9.0	13.2	19.4	20.8	
	필리핀	(82)	36.6	40.2	0.0	4.9	3.7	11.0	20.7	23.2	
	캄보디아	(59)	28.8	67.8	8.5	8.5	30.5	5.1	15.3	3.4	
	중국 기타	(64) (54)	28.1 37.0	67.2 46.3	1.6 1.9	0.0 7.4	14.1 5.6	20.3 9.3	31.3 22.2	4.7 1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8	43.2	6.4	5.6	16.8	1.6	12.8	16.0	$\chi^2=93.098,$ $p=0.000$
	F-6(결혼이민)	(106)	29.2	59.4	2.8	7.5	5.7	20.8	22.6	11.3	
	F-5(영주)	(33)	21.2	75.8	0.0	0.0	18.2	18.2	39.4	3.0	
	F-2(거주)	(20)	25.0	70.0	0.0	10.0	15.0	10.0	35.0	5.0	
	D-2, D-4(유학생)	(23)	43.5	43.5	0.0	0.0	13.0	8.7	21.7	13.0	
	귀화자	(67)	22.4	61.2	4.5	1.5	9.0	17.9	28.4	16.4	
	미등록체류자	(15)	40.0	13.3	0.0	0.0	6.7	0.0	6.7	46.7	
	난민	(15)	53.3	6.7	0.0	0.0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무응답	(21) (8)	52.4 12.5	33.3 50.0	0.0 12.5	19.0 0.0	4.8 12.5	9.5 0.0	0.0 25.0	14.3 37.5	
성별	여성	(271)	31.0	53.5	2.2	4.8	7.7	14.4	24.4	15.5	$\chi^2=23.205,$ $p=0.000$
	남성	(150)	38.0	48.7	5.3	6.0	17.3	6.0	14.0	13.3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8.3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32.7	53.7	5.4	7.5	16.3	7.5	17.0	13.6	$\chi^2=22.166,$ $p=0.104$
	30대	(194)	33.5	53.1	2.1	4.1	9.3	15.5	22.2	13.4	
	40대	(53)	32.1	52.8	3.8	1.9	7.5	11.3	28.3	15.1	
	50대 이상	(15)	46.7	20.0	0.0	0.0	6.7	6.7	6.7	33.3	
	무응답	(24)	33.3	33.3	4.2	8.3	4.2	4.2	12.5	33.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6.1	46.6	.8	2.3	8.3	15.0	20.3	17.3	$\chi^2=19.621,$ $p=0.033$
	전일제	(207)	34.8	53.6	5.8	7.7	13.0	7.2	19.8	11.6	
	시간제	(77)	29.9	53.2	2.6	2.6	10.4	14.3	23.4	16.9	
	무응답	(16)	12.5	43.8	0.0	6.3	12.5	18.8	6.3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7.6	46.1	3.9	6.6	11.8	7.9	15.8	26.3	$\chi^2=15.733,$ $p=0.733$
	3년-5년	(121)	37.2	55.4	4.1	6.6	15.7	12.4	16.5	7.4	
	6년-10년	(116)	31.9	56.0	.9	6.0	9.5	14.7	25.0	12.1	
	11년-15년	(68)	30.9	50.0	2.9	1.5	10.3	11.8	23.5	19.1	
	16년 이상 무응답	(31) (21)	38.7 42.9	41.9 33.3	6.5 9.5	0.0 4.8	6.5 0.0	9.7 0.0	19.4 19.0	19.4 23.8	

(3)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3.3%, '필요 없다'는 인식은 29.6%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5.7%), '1년 이상'(13.9%), '3개월 이전'(3.7%), '3개월 이상'(3.0%) 등의 순이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중국'이 7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6.7%), '캄보디아'(55.9%), '베트남'(51.4%), '필리핀'(43.9%), '태국'(37.0%)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5(영주)'가 8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80.0%), '귀화자'(65.7%), 'D-2, D-4(유학생)'(65.2%), 'F-6(결혼이민)'(60.4%),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9.2%), '기타 거주자'(33.3%), '난민'(20.0%), '미등록 체류자'(13.3%)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필요함'이 여성(57.9%)이고, 남성(47.3%)이며, '필요 없음'은 여성(24.0%), 남성(39.3%)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6.2%), '20대 이하'(54.4%), '50대 이상'(13.3%)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시간제'가 5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54.1%), '활동안함'(52.6%)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6년-10년'이 5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7.4%), '3년-5년'(57.0%), '16년 이상'(45.2%), '1년-2년'(43.4%) 등의 순이다.

〈표 III-8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 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9.6	53.3	3.7	3.0	13.9	15.7	17.1	17.1	-	
출신 국가	태국	(27)	55.6	37.0	18.5	0.0	11.1	7.4	0.0	7.4	$\chi^2=99.629,$ $p=0.000$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66.7	0.0	0.0	0.0	
	베트남	(144)	26.4	51.4	4.9	1.4	8.3	15.3	21.5	22.2	
	필리핀	(82)	31.7	43.9	1.2	4.9	7.3	17.1	13.4	24.4	
	캄보디아	(59)	32.2	55.9	0.0	8.5	37.3	5.1	5.1	11.9	
	중국 기타	(64) (54)	21.9 27.8	73.4 53.7	1.6 3.7	0.0 3.7	18.8 5.6	29.7 14.8	23.4 25.9	4.7 18.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4.8	39.2	4.0	3.2	20.8	2.4	8.8	16.0	$\chi^2=109.499,$ $p=0.000$
	F-6(결혼이민)	(106)	24.5	60.4	3.8	6.6	7.5	24.5	17.9	15.1	
	F-5(영주)	(33)	15.2	81.8	3.0	0.0	21.2	36.4	21.2	3.0	
	F-2(거주)	(20)	10.0	80.0	0.0	5.0	10.0	30.0	35.0	10.0	
	D-2, D-4(유학생)	(23)	21.7	65.2	0.0	0.0	17.4	8.7	39.1	13.0	
	귀화자	(67)	14.9	65.7	4.5	1.5	11.9	20.9	26.9	19.4	
	미등록체류자	(15)	46.7	13.3	0.0	0.0	6.7	0.0	6.7	40.0	
	난민	(15)	40.0	20.0	0.0	0.0	13.3	6.7	0.0	40.0	
	기타 거주자 무응답	(21) (8)	52.4 0.0	33.3 50.0	9.5 12.5	0.0 0.0	9.5 0.0	14.3 12.5	0.0 25.0	14.3 50.0	
성별	여성	(271)	24.0	57.9	3.0	3.3	10.0	21.0	20.7	18.1	$\chi^2=32.856,$ $p=0.000$
	남성	(150)	39.3	47.3	4.7	2.7	21.3	7.3	11.3	13.3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0.0	8.3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9.9	54.4	5.4	3.4	17.7	10.2	17.7	15.6	$\chi^2=18.568,$ $p=0.234$
	30대	(194)	29.4	56.2	3.1	3.6	12.4	19.6	17.5	14.4	
	40대	(53)	24.5	62.3	3.8	0.0	13.2	24.5	20.8	13.2	
	50대 이상	(15)	40.0	13.3	0.0	0.0	6.7	0.0	6.7	46.7	
	무응답	(24)	33.3	29.2	0.0	4.2	8.3	8.3	8.3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6.3	52.6	1.5	3.0	9.0	18.8	20.3	21.1	$\chi^2=15.697,$ $p=0.109$
	전일제	(207)	33.8	54.1	5.8	2.9	17.4	11.6	16.4	12.1	
	시간제	(77)	27.3	54.5	2.6	2.6	13.0	22.1	14.3	18.2	
	무응답	(16)	12.5	43.8	0.0	6.3	12.5	12.5	12.5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6.3	43.4	5.3	1.3	15.8	7.9	13.2	30.3	$\chi^2=27.397,$ $p=0.124$
	3년-5년	(121)	34.7	57.0	3.3	3.3	17.4	19.0	14.0	8.3	
	6년-10년	(116)	26.7	59.5	1.7	6.0	10.3	23.3	18.1	13.8	
	11년-15년	(68)	25.0	57.4	4.4	0.0	17.6	13.2	22.1	17.6	
	16년 이상	(31)	32.3	45.2	6.5	0.0	6.5	6.5	25.8	22.6	
	무응답	(21)	38.1	33.3	4.8	4.8	4.8	4.8	14.3	28.6	

(4)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8.0%, ‘필요 없다’는 인식은 25.6%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1년 이상’이 1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14.5%), ‘3년 이상’(13.4%), ‘3개월 이상’(7.9%), ‘3개월 이전’(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 필요인식은 ‘중국’이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 ‘인도네시아’(각 66.7%), ‘캄보디아’(59.3%), ‘베트남’(52.8%), ‘필리핀’(47.6%)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81.8%), ‘D-2, D-4(유학생)’(69.6%), ‘귀화자’(68.7%), ‘F-6(결혼이민)’(65.1%),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6.4%), ‘기타 거주자’(42.9%), ‘미등록체류자’, ‘난민’(각 20.0%)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필요함’은 ‘여성’이 62.0%로 ‘남성’(53.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6.8%), 남성(17%)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7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59.9%), ‘30대’(58.8%),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8.6%), ‘시간제’(54.5%)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6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63.2%), ‘6년-10년’(61.2%), ‘16년 이상’(54.8%), ‘1년-2년’(46.1%) 등의 순이다.

〈표 III-9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5.6	58.0	5.3	7.9	16.9	13.4	14.5	16.4	-	
출신 국가	태국	(27)	25.9	66.7	29.6	25.9	7.4	3.7	0.0	7.4	$\chi^2=97.167,$ $p=0.000$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66.7	0.0	0.0	0.0	
	베트남	(144)	25.0	52.8	6.3	4.2	11.8	11.8	18.8	22.2	
	필리핀	(82)	30.5	47.6	2.4	6.1	15.9	9.8	13.4	22.0	
	캄보디아	(59)	28.8	59.3	3.4	15.3	30.5	6.8	3.4	11.9	
	중국	(64)	17.2	79.7	0.0	4.7	26.6	26.6	21.9	3.1	
기타	(54)	25.9	55.6	3.7	7.4	7.4	20.4	16.7	18.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8.4	46.4	6.4	7.2	20.8	3.2	8.8	15.2	$\chi^2=94.164,$ $p=0.000$
	F-6(결혼이민)	(106)	21.7	65.1	4.7	12.3	16.0	17.0	15.1	13.2	
	F-5(영주)	(33)	15.2	81.8	3.0	9.1	27.3	24.2	18.2	3.0	
	F-2(거주)	(20)	5.0	85.0	0.0	5.0	15.0	30.0	35.0	10.0	
	D-2, D-4(유학생)	(23)	13.0	69.6	0.0	4.3	13.0	30.4	21.7	17.4	
	귀화자	(67)	13.4	68.7	4.5	7.5	16.4	17.9	22.4	17.9	
	미등록체류자	(15)	40.0	20.0	0.0	6.7	6.7	0.0	6.7	40.0	
	난민	(15)	40.0	20.0	13.3	0.0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21)	42.9	42.9	19.0	4.8	14.3	4.8	0.0	14.3		
무응답	(8)	12.5	37.5	0.0	0.0	0.0	12.5	25.0	50.0		
성별	여성	(271)	20.3	62.0	4.4	8.5	14.0	17.0	18.1	17.7	$\chi^2=23.903,$ $p=0.000$
	남성	(150)	34.7	53.3	6.7	7.3	22.7	7.3	9.3	12.0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8.3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5.2	59.9	8.8	7.5	20.4	10.9	12.2	15.0	$\chi^2=21.015,$ $p=0.136$
	30대	(194)	26.8	58.8	4.6	8.8	13.9	14.9	16.5	14.4	
	40대	(53)	17.0	73.6	1.9	9.4	20.8	22.6	18.9	9.4	
	50대 이상	(15)	40.0	20.0	0.0	0.0	13.3	0.0	6.7	40.0	
	무응답	(24)	29.2	29.2	0.0	4.2	12.5	4.2	8.3	41.7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3.3	58.6	2.3	6.0	14.3	19.5	16.5	18.0	$\chi^2=17.784,$ $p=0.059$
	전일제	(207)	28.5	59.9	8.7	8.7	18.8	8.7	15.0	11.6	
	시간제	(77)	24.7	54.5	2.6	9.1	16.9	14.3	11.7	20.8	
	무응답	(16)	12.5	43.8	0.0	6.3	12.5	18.8	6.3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3.7	46.1	6.6	5.3	17.1	9.2	7.9	30.3	$\chi^2=24.940,$ $p=0.204$
	3년-5년	(121)	30.6	63.6	9.1	6.6	21.5	14.0	12.4	5.8	
	6년-10년	(116)	24.1	61.2	.9	13.8	12.9	17.2	16.4	14.7	
	11년-15년	(68)	19.1	63.2	4.4	7.4	17.6	14.7	19.1	17.6	
	16년 이상	(31)	25.8	54.8	6.5	3.2	16.1	6.5	22.6	19.4	
	무응답	(21)	33.3	38.1	4.8	0.0	9.5	9.5	14.3	28.6	

(5)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8.0%, ‘필요 없다’는 인식은 24.7%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1년 이상’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13.2%), ‘3년 이상’(12.9%), ‘3개월 이상’(9.2%), ‘3개월 이전’(5.5%) 등의 순이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88.9%), ‘중국’(73.4%), ‘캄보디아’(61.0%), ‘베트남’(52.1%), ‘필리핀’(4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D-2, D-4(유학생)’(73.9%), ‘F-6(결혼이민)’(63.2%), ‘귀화자’(62.7%),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0.4%), ‘기타 거주자’(42.9%), ‘미등록체류자’(26.7%), ‘난민’(20.0%) 등의 순이다.

성별로 필요인식을 보면 ‘여성’이 62.7%로 ‘남성’(5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19.2%), 남성(34%)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6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61.2%), ‘30대’(59.3%),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6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8.6%), ‘시간제’(51.9%)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64.7%), ‘6년-10년’(61.2%), ‘1년-2년’(44.7%), ‘16년 이상’(41.9%) 등의 순이다.

〈표 III-91〉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4.7	58.0	5.5	9.2	17.1	12.9	13.2	17.3	-	
출신 국가	태국	(27)	7.4	88.9	18.5	51.9	14.8	3.7	0.0	3.7	$\chi^2=111.160$, $p=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0.0	33.3	33.3	0.0	33.3	0.0	
	베트남	(144)	25.7	52.1	6.3	4.9	11.8	11.8	17.4	22.2	
	필리핀	(82)	28.0	47.6	6.1	6.1	14.6	11.0	9.8	24.4	
	캄보디아	(59)	27.1	61.0	3.4	6.8	37.3	6.8	6.8	11.9	
	중국 기타	(64) (54)	21.9 27.8	73.4 50.0	1.6 3.7	4.7 11.1	20.3 9.3	31.3 9.3	15.6 16.7	4.7 22.2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4.4	50.4	7.2	9.6	20.8	3.2	9.6	15.2	$\chi^2=77.191$, $p=0.000$
	F-6(결혼이민)	(106)	22.6	63.2	2.8	11.3	17.0	17.9	14.2	14.2	
	F-5(영주)	(33)	18.2	78.8	6.1	9.1	27.3	21.2	15.2	3.0	
	F-2(거주)	(20)	10.0	80.0	0.0	5.0	10.0	30.0	35.0	10.0	
	D-2, D-4(유학생)	(23)	8.7	73.9	4.3	13.0	17.4	17.4	21.7	17.4	
	귀화자	(67)	16.4	62.7	7.5	3.0	16.4	20.9	14.9	20.9	
	미등록체류자	(15)	33.3	26.7	6.7	6.7	6.7	0.0	6.7	40.0	
	난민 기타 거주자 무응답	(15) (21) (8)	40.0 38.1 0.0	20.0 42.9 50.0	0.0 14.3 0.0	13.3 19.0 0.0	0.0 9.5 12.5	6.7 0.0 12.5	0.0 0.0 25.0	40.0 19.0 50.0	
성별	여성	(271)	19.2	62.7	5.9	9.6	15.1	17.3	14.8	18.1	$\chi^2=22.086$, $p=0.001$
	남성	(150)	34.0	52.0	4.7	9.3	21.3	5.3	11.3	14.0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8.3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1.8	61.2	6.8	8.8	22.4	8.8	14.3	17.0	$\chi^2=19.481$, $p=0.193$
	30대	(194)	26.3	59.3	5.7	10.3	15.5	14.9	12.9	14.4	
	40대	(53)	18.9	67.9	3.8	11.3	13.2	22.6	17.0	13.2	
	50대 이상	(15)	40.0	20.0	0.0	0.0	13.3	0.0	6.7	40.0	
	무응답	(24)	33.3	29.2	4.2	4.2	8.3	8.3	4.2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2.6	58.6	2.3	6.8	16.5	18.0	15.0	18.8	$\chi^2=15.160$, $p=0.126$
	전일제	(207)	27.1	61.4	8.7	12.1	17.4	9.2	14.0	11.6	
	시간제	(77)	24.7	51.9	3.9	6.5	18.2	13.0	10.4	23.4	
체류 기간	무응답	(16)	12.5	37.5	0.0	6.3	12.5	18.8	0.0	50.0	$\chi^2=23.119$, $p=0.283$
	1년-2년	(76)	21.1	44.7	7.9	6.6	15.8	7.9	6.6	34.2	
	3년-5년	(121)	26.4	67.8	5.8	11.6	24.0	14.0	12.4	5.8	
	6년-10년	(116)	24.1	61.2	2.6	13.8	14.7	16.4	13.8	14.7	
	11년-15년	(68)	19.1	64.7	5.9	7.4	14.7	14.7	22.1	16.2	
16년 이상 무응답	(31) (21)	32.3 38.1	41.9 33.3	9.7 4.8	0.0 0.0	9.7 14.3	12.9 0.0	9.7 14.3	25.8 28.6		

(6)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6.4%, ‘필요 없다’는 인식은 27.9%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년 이상’이 1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 ‘5년 이상’(각 15.0%),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각 5.3%)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 필요인식은 ‘중국’이 7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6.7%), ‘캄보디아’(57.6%), ‘베트남’(54.2%), ‘태국’(48.1%), ‘필리핀’(4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귀화자’(70.1%), ‘D-2, D-4(유학생)’(65.2%), ‘F-6(결혼이민)’(63.2%),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2.4%), ‘기타 거주자’(38.1%), ‘난민’(26.7%), ‘미등록 체류자’(20.0%) 등의 순이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60.9%로 ‘남성’(5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2.9%), 남성(36.7%)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6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8.2%), ‘20대 이하’(57.8%),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5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57.1%), ‘활동안함’(55.6%)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6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61.8%), ‘6년-10년’(58.6%), ‘16년 이상’(54.8%), ‘1년-2년’(46.1%) 등의 순이다.

〈표 III-92〉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7.9	56.4	5.3	5.3	15.0	15.7	15.0	15.7	-	
출신 국가	태국	(27)	51.9	48.1	11.1	22.2	11.1	3.7	0.0	0.0	$\chi^2=75.947$, p=0.000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0.0	0.0	66.7	0.0	
	베트남	(144)	24.3	54.2	6.9	1.4	13.9	14.6	17.4	21.5	
	필리핀	(82)	31.7	46.3	2.4	3.7	11.0	20.7	8.5	22.0	
	캄보디아	(59)	30.5	57.6	6.8	11.9	23.7	10.2	5.1	11.9	
	중국	(64)	20.3	76.6	3.1	3.1	23.4	28.1	18.8	3.1	
기타	(54)	25.9	55.6	3.7	5.6	7.4	9.3	29.6	18.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3.2	42.4	4.0	6.4	18.4	4.0	9.6	14.4	$\chi^2=113.200$, p=0.000
	F-6(결혼이민)	(106)	21.7	63.2	4.7	8.5	10.4	21.7	17.9	15.1	
	F-5(영주)	(33)	21.2	78.8	6.1	3.0	24.2	33.3	12.1	0.0	
	F-2(거주)	(20)	5.0	85.0	0.0	5.0	15.0	35.0	30.0	10.0	
	D-2, D-4(유학생)	(23)	21.7	65.2	0.0	0.0	13.0	4.3	47.8	13.0	
	귀화자	(67)	13.4	70.1	9.0	1.5	16.4	29.9	13.4	16.4	
	미등록체류자	(15)	40.0	20.0	6.7	0.0	6.7	0.0	6.7	40.0	
	난민	(15)	33.3	26.7	13.3	0.0	6.7	6.7	0.0	40.0	
기타 거주자	(21)	47.6	38.1	4.8	14.3	9.5	0.0	9.5	14.3		
무응답	(8)	12.5	50.0	12.5	0.0	25.0	0.0	12.5	37.5		
성별	여성	(271)	22.9	60.9	4.4	5.5	12.9	22.1	15.9	16.2	$\chi^2=26.199$, p=0.000
	남성	(150)	36.7	50.7	6.7	5.3	18.7	5.3	14.7	12.7	
	무응답	(12)	33.3	25.0	8.3	0.0	16.7	0.0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7.2	57.8	7.5	7.5	15.0	14.3	13.6	15.0	$\chi^2=20.004$, p=0.172
	30대	(194)	28.4	58.2	4.6	5.7	12.9	16.5	18.6	13.4	
	40대	(53)	22.6	66.0	5.7	0.0	22.6	24.5	13.2	11.3	
	50대 이상	(15)	46.7	20.0	0.0	6.7	6.7	0.0	6.7	33.3	
	무응답	(24)	29.2	33.3	0.0	0.0	20.8	8.3	4.2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5.6	55.6	2.3	4.5	11.3	19.5	18.0	18.8	$\chi^2=15.700$, p=0.109
	전일제	(207)	31.9	58.0	7.7	6.8	18.4	11.1	14.0	10.1	
	시간제	(77)	24.7	57.1	5.2	3.9	13.0	20.8	14.3	18.2	
	무응답	(16)	12.5	37.5	0.0	0.0	12.5	18.8	6.3	50.0	
체류 기간	1년-2년	(76)	22.4	46.1	3.9	10.5	13.2	7.9	10.5	31.6	$\chi^2=28.848$, p=0.091
	3년-5년	(121)	30.6	62.8	6.6	5.8	19.8	13.2	17.4	6.6	
	6년-10년	(116)	29.3	58.6	4.3	4.3	9.5	26.7	13.8	12.1	
	11년-15년	(68)	22.1	61.8	7.4	1.5	19.1	19.1	14.7	16.2	
	16년 이상	(31)	29.0	54.8	6.5	3.2	16.1	6.5	22.6	16.1	
무응답	(21)	42.9	28.6	0.0	4.8	9.5	0.0	14.3	28.6		

(7)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권리 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2.2%, '필요 없다'는 인식은 32.1%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1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4.8%), '1년 이상'(12.0%),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각 3.7%)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6.7%), '베트남'(51.4%), '캄보디아'(49.2%), '태국'(40.7%), '필리핀'(40.2%)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2.7%), '귀화자'(65.7%), 'D-2, D-4(유학생)'(65.2%), 'F-6(결혼이민)'(58.5%),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6.8%), '기타 거주자'(33.3%), '난민'(26.7%), '미등록 체류자'(20.0%)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7.2%로 '남성'(4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3.2%), 남성(40.7%)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5.2%), '20대 이하'(51.7%),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5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2.6%), '전일제'(51.7%)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5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56.9%), '11년-15년'(54.4%), '16년 이상'(48.4%), '1년-2년'(42.1%) 등의 순이다.

〈표 III-9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32.1	52.2	3.7	3.7	12.0	14.8	18.0	15.7	-	
출신 국가	태국	(27)	59.3	40.7	11.1	14.8	3.7	7.4	3.7	0.0	$\chi^2=64.147$, $p=0.000$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33.3	0.0	33.3	0.0	
	베트남	(144)	27.8	51.4	5.6	.7	11.8	14.6	18.8	20.8	
	필리핀	(82)	35.4	40.2	2.4	3.7	4.9	14.6	14.6	24.4	
	캄보디아	(59)	39.0	49.2	0.0	8.5	18.6	15.3	6.8	11.9	
	중국	(64)	21.9	75.0	0.0	3.1	21.9	23.4	26.6	3.1	
	기타	(54)	29.6	53.7	5.6	1.9	7.4	9.3	29.6	1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8.0	36.8	2.4	5.6	15.2	3.2	10.4	15.2	$\chi^2=100.365$, $p=0.000$
	F-6(결혼이민)	(106)	28.3	58.5	3.8	3.8	8.5	19.8	22.6	13.2	
	F-5(영주)	(33)	24.2	72.7	0.0	3.0	24.2	21.2	24.2	3.0	
	F-2(거주)	(20)	5.0	85.0	0.0	5.0	15.0	30.0	35.0	10.0	
	D-2, D-4(유학생)	(23)	21.7	65.2	0.0	0.0	13.0	13.0	39.1	13.0	
	귀화자	(67)	17.9	65.7	6.0	1.5	9.0	31.3	17.9	16.4	
	미등록체류자	(15)	40.0	20.0	6.7	0.0	6.7	0.0	6.7	40.0	
	난민	(15)	33.3	26.7	13.3	0.0	6.7	6.7	0.0	40.0	
	기타 거주자	(21)	52.4	33.3	9.5	4.8	4.8	0.0	14.3	14.3	
무응답	(8)	12.5	50.0	0.0	12.5	12.5	12.5	12.5	37.5		
성별	여성	(271)	27.3	57.2	3.3	3.3	9.2	20.3	21.0	15.5	$\chi^2=30.394$, $p=0.000$
	남성	(150)	40.7	45.3	4.0	4.7	18.0	4.7	14.0	14.0	
	무응답	(12)	33.3	25.0	8.3	0.0	0.0	16.7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32.7	51.7	4.8	3.4	12.2	13.6	17.7	15.6	$\chi^2=20.994$, $p=0.137$
	30대	(194)	32.5	55.2	3.1	4.6	10.3	14.4	22.7	12.4	
	40대	(53)	28.3	60.4	3.8	0.0	22.6	22.6	11.3	11.3	
	50대 이상	(15)	40.0	20.0	6.7	6.7	6.7	0.0	0.0	40.0	
	무응답	(24)	29.2	33.3	0.0	4.2	4.2	16.7	8.3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0.1	52.6	.8	2.3	9.8	19.5	20.3	17.3	$\chi^2=16.953$, $p=0.075$
	전일제	(207)	36.7	51.7	5.8	5.3	14.0	9.7	16.9	11.6	
	시간제	(77)	27.3	54.5	3.9	2.6	13.0	15.6	19.5	18.2	
	무응답	(16)	12.5	43.8	0.0	0.0	0.0	37.5	6.3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6.3	42.1	5.3	5.3	11.8	6.6	13.2	31.6	$\chi^2=16.867$, $p=0.662$
	3년-5년	(121)	36.4	57.9	3.3	4.1	15.7	16.5	18.2	5.8	
	6년-10년	(116)	31.9	56.9	1.7	3.4	8.6	19.8	23.3	11.2	
	11년-15년	(68)	27.9	54.4	4.4	1.5	13.2	17.6	17.6	17.6	
	16년 이상	(31)	29.0	48.4	9.7	3.2	12.9	9.7	12.9	22.6	
	무응답	(21)	47.6	28.6	0.0	4.8	4.8	4.8	14.3	23.8	

(8)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5.0%, ‘필요 없다’는 인식은 29.1%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년 이상’, ‘5년 이상’이 각 1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14.1%), ‘3개월 이전’(5.3%), ‘3개월 이상’(5.1%)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 필요인식은 ‘중국’이 7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6.7%), ‘캄보디아’(54.2%), ‘베트남’(53.5%), ‘필리핀’(48.8%), ‘태국’(40.7%)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5.8%), ‘귀화자’(68.7%), ‘F-6(결혼이민)’(66.0%), ‘D-2, D-4(유학생)’(56.5%),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0%), ‘기타 거주자’(38.1%), ‘난민’(26.7%), ‘미등록 체류자’(13.3%)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여성’이 60.5%로 ‘남성’(47.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3.2%), 남성(39.3%)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6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7.2%), ‘20대 이하’(54.4%), ‘50대 이상’(20.0%)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5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5.6%), ‘시간제’(53.2%)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 ‘6년-10년’이 각 5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8.8%), ‘16년 이상’(51.6%), ‘1년-2년’(44.7%) 등의 순이다.

〈표 III-94〉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9.1	55.0	5.3	5.1	14.1	15.2	15.2	15.9	-	
출신 국가	태국	(27)	59.3	40.7	14.8	3.7	7.4	7.4	7.4	0.0	$x^2=70.989$, $p=0.000$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33.3	0.0	33.3	0.0	
	베트남	(144)	25.7	53.5	7.6	2.1	14.6	11.1	18.1	20.8	
	필리핀	(82)	29.3	48.8	3.7	7.3	7.3	17.1	13.4	22.0	
	캄보디아	(59)	33.9	54.2	1.7	11.9	30.5	5.1	5.1	11.9	
	중국	(64)	18.8	78.1	1.6	4.7	14.1	31.3	26.6	3.1	
기타	(54)	29.6	48.1	5.6	3.7	7.4	20.4	11.1	22.2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5.6	40.0	4.0	4.8	17.6	3.2	10.4	14.4	$x^2=107.625$, $p=0.000$
	F-6(결혼이민)	(106)	20.8	66.0	5.7	10.4	13.2	15.1	21.7	13.2	
	F-5(영주)	(33)	21.2	75.8	0.0	3.0	21.2	39.4	12.1	3.0	
	F-2(거주)	(20)	5.0	85.0	5.0	5.0	15.0	30.0	30.0	10.0	
	D-2, D-4(유학생)	(23)	30.4	56.5	0.0	0.0	17.4	21.7	17.4	13.0	
	귀화자	(67)	13.4	68.7	7.5	3.0	10.4	25.4	22.4	17.9	
	미등록체류자	(15)	40.0	13.3	6.7	0.0	6.7	0.0	0.0	46.7	
	난민	(15)	33.3	26.7	20.0	0.0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21)	47.6	38.1	9.5	4.8	9.5	14.3	0.0	14.3		
무응답	(8)	25.0	37.5	0.0	0.0	12.5	12.5	12.5	37.5		
성별	여성	(271)	23.2	60.5	5.9	5.5	10.7	21.0	17.3	16.2	$x^2=31.467$, $p=0.000$
	남성	(150)	39.3	47.3	4.0	4.7	20.7	6.0	12.0	13.3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0.0	8.3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30.6	54.4	6.1	3.4	19.0	10.9	15.0	15.0	$x^2=22.341$, $p=0.099$
	30대	(194)	29.4	57.2	5.7	5.7	12.4	17.5	16.0	13.4	
	40대	(53)	20.8	67.9	5.7	3.8	13.2	24.5	20.8	11.3	
	50대 이상	(15)	40.0	20.0	0.0	13.3	6.7	0.0	0.0	40.0	
	무응답	(24)	29.2	33.3	0.0	8.3	4.2	12.5	8.3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5.6	55.6	2.3	6.0	12.0	21.1	14.3	18.8	$x^2=16.114$, $p=0.096$
	전일제	(207)	33.8	56.0	7.7	4.8	16.9	10.1	16.4	10.1	
	시간제	(77)	26.0	53.2	5.2	3.9	10.4	19.5	14.3	20.8	
	무응답	(16)	12.5	43.8	0.0	6.3	12.5	12.5	12.5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5.0	44.7	5.3	5.3	15.8	10.5	7.9	30.3	$x^2=19.049$, $p=0.519$
	3년-5년	(121)	34.7	59.5	5.8	4.1	18.2	14.0	17.4	5.8	
	6년-10년	(116)	27.6	59.5	5.2	6.0	12.1	24.1	12.1	12.9	
	11년-15년	(68)	23.5	58.8	4.4	4.4	14.7	14.7	20.6	17.6	
	16년 이상	(31)	29.0	51.6	9.7	6.5	6.5	6.5	22.6	19.4	
	무응답	(21)	38.1	33.3	0.0	4.8	4.8	4.8	19.0	28.6	

(9)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5.0%, ‘필요 없다’는 인식은 28.2%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1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13.4%), ‘3년 이상’(12.9%), ‘3개월 이상’(5.5%), ‘3개월 이전’(5.3%) 등의 순이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6.7%), ‘캄보디아’(59.3%), ‘베트남’(52.8%), ‘필리핀’(45.1%), ‘태국’(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5.8%), ‘귀화자’(67.2%), ‘D-2, D-4(유학생)’(60.9%), ‘F-6(결혼이민)’(60.4%),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4.8%), ‘기타 거주자’(38.1%), ‘난민’(26.7%), ‘미등록 체류자’(20.0%)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여성’이 57.9%로 ‘남성’(52.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4.7%), 남성(34%)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6.7%), ‘20대 이하’(55.1%), ‘50대 이상’(13.3%)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5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1.1%), ‘시간제’(50.6%)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 ‘11년-15년’이 각 6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57.8%), ‘16년 이상’(51.6%), ‘1년-2년’(44.7%) 등의 순이다.

〈표 III-95〉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 청구권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8.2	55.0	5.3	5.5	13.4	12.9	17.8	16.9	-	
출신 국가	태국	(27)	55.6	44.4	7.4	11.1	7.4	14.8	3.7	0.0	$\chi^2=47.426,$ $p=0.023$
	인도네시아	(3)	33.3	66.7	0.0	0.0	33.3	0.0	33.3	0.0	
	베트남	(144)	26.4	52.8	6.3	3.5	11.8	12.5	18.8	20.8	
	필리핀	(82)	28.0	45.1	3.7	6.1	8.5	13.4	13.4	26.8	
	캄보디아	(59)	28.8	59.3	8.5	8.5	27.1	8.5	6.8	11.9	
	중국	(64)	20.3	75.0	1.6	3.1	20.3	20.3	29.7	4.7	
	기타	(54)	27.8	51.9	5.6	7.4	3.7	9.3	25.9	20.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8	44.8	7.2	4.0	17.6	4.0	12.0	14.4	$\chi^2=80.455,$ $p=0.000$
	F-6(결혼이민)	(106)	24.5	60.4	4.7	9.4	9.4	14.2	22.6	15.1	
	F-5(영주)	(33)	21.2	75.8	0.0	3.0	30.3	24.2	18.2	3.0	
	F-2(거주)	(20)	5.0	80.0	5.0	5.0	20.0	20.0	30.0	15.0	
	D-2, D-4(유학생)	(23)	26.1	60.9	0.0	0.0	13.0	13.0	34.8	13.0	
	귀화자	(67)	14.9	67.2	6.0	6.0	7.5	23.9	23.9	17.9	
	미등록체류자	(15)	33.3	20.0	6.7	0.0	6.7	6.7	0.0	46.7	
	난민	(15)	33.3	26.7	6.7	13.3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21)	42.9	38.1	9.5	4.8	9.5	9.5	4.8	19.0	
무응답	(8)	25.0	37.5	0.0	0.0	12.5	12.5	12.5	37.5		
성별	여성	(271)	24.7	57.9	4.8	5.2	10.3	16.6	21.0	17.3	$\chi^2=19.477,$ $p=0.002$
	남성	(150)	34.0	52.0	6.0	6.7	19.3	6.7	13.3	14.0	
	무응답	(12)	33.3	25.0	8.3	0.0	8.3	8.3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8.6	55.1	7.5	5.4	17.0	8.2	17.0	16.3	$\chi^2=21.591,$ $p=0.119$
	30대	(194)	28.9	56.7	3.6	5.7	11.3	17.0	19.1	14.4	
	40대	(53)	18.9	71.7	9.4	5.7	17.0	17.0	22.6	9.4	
	50대 이상	(15)	40.0	13.3	0.0	6.7	6.7	0.0	0.0	46.7	
	무응답	(24)	33.3	29.2	0.0	4.2	4.2	8.3	12.5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7.8	51.1	1.5	3.8	10.5	17.3	18.0	21.1	$\chi^2=16.671,$ $p=0.082$
	전일제	(207)	29.0	59.9	9.2	6.8	15.9	9.7	18.4	11.1	
	시간제	(77)	29.9	50.6	2.6	5.2	10.4	14.3	18.2	19.5	
	무응답	(16)	12.5	43.8	0.0	6.3	18.8	12.5	6.3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2.4	44.7	6.6	2.6	13.2	7.9	14.5	32.9	$\chi^2=10.137,$ $p=0.966$
	3년-5년	(121)	33.1	60.3	5.8	5.0	18.2	14.0	17.4	6.6	
	6년-10년	(116)	28.4	57.8	4.3	6.9	11.2	17.2	18.1	13.8	
	11년-15년	(68)	22.1	60.3	4.4	5.9	14.7	16.2	19.1	17.6	
	16년 이상	(31)	25.8	51.6	9.7	6.5	9.7	6.5	19.4	22.6	
	무응답	(21)	42.9	33.3	0.0	9.5	0.0	0.0	23.8	23.8	

(10)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67.2%, ‘필요 없다’는 인식은 18.0%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1년 이상’이 1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 이전’(14.8%), ‘3개월 이상’(13.9%), ‘5년 이상’(10.4%), ‘3년 이상’(9.5%)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 필요인식은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85.2%), ‘중국’(81.3%), ‘캄보디아’(78.0%), ‘베트남’(63.9%), ‘필리핀’(53.7%)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D-2, D-4(유학생)’(78.3%), ‘F-6(결혼이민)’(73.6%), ‘귀화자’(73.1%),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2.4%), ‘기타 거주자’(57.1%), ‘미등록체류자’(33.3%), ‘난민’(26.7%) 등의 순이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70.1%로 ‘남성’(6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음’은 여성(15.5%), 남성(21.3%)이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 등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남성의 경우 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는 여전히 여성에게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7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2.2%), ‘20대 이하’(67.3%), ‘50대 이상’(33.3%)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7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5.4%), ‘시간제’(62.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7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73.5%), ‘6년-10년’(71.6%), ‘16년 이상’(58.1%), ‘1년-2년’(53.9%) 등의 순이다.

〈표 III-96〉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18.0	67.2	14.8	13.9	18.7	9.5	10.4	14.8	-	
출신 국가	태국	(27)	14.8	85.2	3.7	59.3	11.1	11.1	0.0	0.0	$\chi^2=76.346,$ $p=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33.3	0.0	33.3	0.0	33.3	0.0	
	베트남	(144)	17.4	63.9	16.0	6.9	15.3	10.4	15.3	18.8	
	필리핀	(82)	24.4	53.7	14.6	12.2	13.4	7.3	6.1	22.0	
	캄보디아	(59)	11.9	78.0	20.3	15.3	28.8	5.1	8.5	10.2	
	중국 기타	(64) (54)	14.1 24.1	81.3 57.4	17.2 7.4	9.4 16.7	11.1 11.1	11.1 11.1	11.1 11.1	18.5 4.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3.2	62.4	14.4	13.6	18.4	4.0	12.0	14.4	$\chi^2=44.301,$ $p=0.295$
	F-6(결혼이민)	(106)	17.0	73.6	17.0	14.2	19.8	11.3	11.3	9.4	
	F-5(영주)	(33)	18.2	78.8	9.1	15.2	30.3	12.1	12.1	3.0	
	F-2(거주)	(20)	5.0	85.0	15.0	15.0	25.0	15.0	15.0	10.0	
	D-2, D-4(유학생)	(23)	4.3	78.3	8.7	8.7	21.7	21.7	17.4	17.4	
	귀화자	(67)	10.4	73.1	19.4	13.4	17.9	13.4	9.0	16.4	
	미등록체류자	(15)	26.7	33.3	13.3	13.3	0.0	6.7	0.0	40.0	
	난민 기타 거주자	(15) (21)	33.3 28.6	26.7 57.1	6.7 19.0	13.3 19.0	0.0 14.3	6.7 4.8	0.0 0.0	40.0 14.3	
무응답	(8)	12.5	50.0	0.0	12.5	25.0	0.0	12.5	37.5		
성별	여성	(271)	15.5	70.1	14.4	14.8	19.6	12.2	9.2	14.4	$\chi^2=8.736,$ $p=0.120$
	남성	(150)	21.3	65.3	16.0	12.0	18.7	5.3	13.3	13.3	
	무응답	(12)	33.3	25.0	8.3	16.7	0.0	0.0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7	67.3	12.2	12.2	20.4	10.9	11.6	15.0	$\chi^2=13.636,$ $p=0.553$
	30대	(194)	16.5	72.2	19.1	13.4	18.0	9.8	11.9	11.3	
	40대	(53)	15.1	73.6	13.2	17.0	26.4	11.3	5.7	11.3	
	50대 이상	(15)	33.3	33.3	6.7	13.3	6.7	0.0	6.7	33.3	
	무응답	(24)	29.2	33.3	4.2	20.8	4.2	0.0	4.2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8.0	65.4	11.3	7.5	23.3	15.8	7.5	16.5	$\chi^2=20.726,$ $p=0.023$
	전일제	(207)	17.4	72.0	17.9	16.4	18.8	6.8	12.1	10.6	
	시간제	(77)	20.8	62.3	14.3	15.6	14.3	5.2	13.0	16.9	
체류 기간	무응답	(16)	12.5	43.8	6.3	25.0	0.0	12.5	0.0	43.8	$\chi^2=17.515,$ $p=0.619$
	1년-2년	(76)	14.5	53.9	13.2	6.6	19.7	6.6	7.9	31.6	
	3년-5년	(121)	19.0	75.2	19.0	13.2	22.3	12.4	8.3	5.8	
	6년-10년	(116)	18.1	71.6	12.9	16.4	20.7	12.1	9.5	10.3	
	11년-15년 16년 이상	(68) (31)	11.8 25.8	73.5 58.1	13.2 22.6	20.6 9.7	19.1 6.5	5.9 9.7	14.7 9.7	14.7 16.1	
무응답	(21)	33.3	38.1	0.0	14.3	0.0	0.0	23.8	28.6		

(1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8%, '필요 없다'는 인식은 17.1%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개월 이전', '1년 이상'이 각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 이상'(16.2%), '5년 이상'(10.2%), '3년 이상'(8.3%)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 필요인식은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84.4%), '태국'(81.5%), '캄보디아'(79.7%), '베트남'(65.3%), '필리핀'(56.1%)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D-2, D-4(유학생)'(78.3%), '귀화자'(77.6%), 'F-6(결혼이민)'(77.4%),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3.2%), '기타 거주자'(57.1%), '미등록체류자'(33.3%), '난민'(26.7%)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2.3%로 '남성'(66.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 없음'은 여성(14%), 남성(21.3%)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8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2.2%), '20대 이하'(69.4%), '50대 이상'(33.3%)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7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8.4%), '시간제'(62.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7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73.5%), '6년-10년'(72.4%), '16년 이상'(64.5%), '1년-2년'(53.9%) 등의 순이다.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는 다른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을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III-97>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17.1	68.8	17.1	16.2	17.1	8.3	10.2	14.1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81.5	14.8	59.3	7.4	0.0	0.0	$\chi^2 = 68.010,$ $p = 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33.3	0.0	0.0	33.3	33.3	
	베트남	(144)	16.0	65.3	15.3	11.1	15.3	9.0	14.6	
	필리핀	(82)	22.0	56.1	20.7	12.2	9.8	7.3	6.1	
	캄보디아	(59)	11.9	79.7	22.0	11.9	28.8	8.5	8.5	
	중국	(64)	12.5	84.4	18.8	14.1	29.7	9.4	12.5	
기타	(54)	24.1	59.3	9.3	22.2	11.1	9.3	7.4	1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2.4	63.2	18.4	13.6	17.6	3.2	10.4	$\chi^2 = 67.751,$ $p = 0.004$
	F-6(결혼이민)	(106)	13.2	77.4	21.7	17.9	17.9	7.5	12.3	
	F-5(영주)	(33)	21.2	78.8	6.1	12.1	36.4	9.1	15.2	
	F-2(거주)	(20)	5.0	85.0	15.0	25.0	15.0	10.0	20.0	
	D-2, D-4(유학생)	(23)	4.3	78.3	4.3	17.4	26.1	17.4	13.0	
	귀화자	(67)	9.0	77.6	20.9	17.9	11.9	19.4	7.5	
	미등록체류자	(15)	26.7	33.3	13.3	13.3	0.0	6.7	0.0	
	난민	(15)	33.3	26.7	6.7	13.3	0.0	6.7	0.0	
	기타 거주자	(21)	28.6	57.1	23.8	23.8	9.5	0.0	0.0	
무응답	(8)	25.0	37.5	0.0	0.0	25.0	0.0	12.5		
성별	여성	(271)	14.0	72.3	16.6	18.5	16.2	10.7	10.3	$\chi^2 = 10.042,$ $p = 0.074$
	남성	(150)	21.3	66.0	18.0	12.7	20.0	4.7	10.7	
	무응답	(12)	33.3	25.0	16.7	8.3	0.0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0	69.4	15.0	14.3	22.4	7.5	10.2	$\chi^2 = 18.216,$ $p = 0.251$
	30대	(194)	16.0	72.2	20.6	17.5	14.9	8.2	10.8	
	40대	(53)	11.3	81.1	17.0	18.9	17.0	11.3	7.5	
	50대 이상	(15)	33.3	33.3	0.0	13.3	13.3	0.0	6.7	
	무응답	(24)	29.2	33.3	12.5	12.5	4.2	0.0	4.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6.5	68.4	12.8	12.8	21.8	11.3	9.8	$\chi^2 = 10.547,$ $p = 0.394$
	전일제	(207)	16.9	73.4	20.8	19.3	15.5	6.3	11.6	
	시간제	(77)	19.5	62.3	15.6	14.3	14.3	9.1	9.1	
	무응답	(16)	12.5	43.8	12.5	12.5	12.5	6.3	0.0	
체류 기간	1년-2년	(76)	14.5	53.9	17.1	7.9	17.1	3.9	7.9	$\chi^2 = 25.866,$ $p = 0.170$
	3년-5년	(121)	16.5	76.9	19.0	16.5	23.1	9.9	8.3	
	6년-10년	(116)	17.2	72.4	15.5	20.7	16.4	9.5	10.3	
	11년-15년	(68)	13.2	73.5	10.3	23.5	17.6	7.4	14.7	
	16년 이상	(31)	22.6	64.5	32.3	6.5	3.2	16.1	6.5	
	무응답	(21)	33.3	47.6	14.3	9.5	4.8	0.0	19.0	

(12)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67.7%, ‘필요 없다’는 인식은 18.7%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개월 이전’이 1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 이상’(14.8%), ‘1년 이상’(14.3%), ‘5년 이상’(9.9%), ‘3년 이상’(9.0%)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85.2%), ‘중국’(82.8%), ‘캄보디아’(72.9%), ‘베트남’(66.0%), ‘필리핀’(56.1%)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81.8%), ‘F-6(결혼이민)’(76.4%), ‘귀화자’(76.1%), ‘D-2, D-4(유학생)’(73.9%),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0.0%), ‘기타 거주자’(57.1%), ‘미등록체류자’(33.3%), ‘난민’(26.7%)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여성’이 71.6%로 ‘남성’(6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15.5%), 남성(23.3%)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40대’가 8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0.1%), ‘20대 이하’(69.4%), ‘50대 이상’(26.7%) 등의 순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50대 이상에서 ‘필요 없음’에 대한 응답이 40%로 높게 나와 아동 및 보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연령대에서 관심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8.4%), ‘시간제’(62.3%)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73.3%), ‘11년-15년’(72.1%), ‘16년 이상’(61.3%), ‘1년-2년’(53.9%) 등의 순이다.

〈표 III-98〉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18.7	67.7	19.6	14.8	14.3	9.0	9.9	13.6	-	
출신 국가	태국	(27)	14.8	85.2	14.8	55.6	11.1	0.0	3.7	0.0	$\chi^2 = 70.296,$ $p = 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33.3	0.0	0.0	0.0	66.7	0.0	
	베트남	(144)	16.7	66.0	21.5	8.3	13.9	7.6	14.6	17.4	
	필리핀	(82)	22.0	56.1	19.5	15.9	7.3	8.5	4.9	22.0	
	캄보디아	(59)	18.6	72.9	16.9	11.9	27.1	6.8	10.2	8.5	
	중국 기타	(64) (54)	14.1 27.8	82.8 55.6	23.4 14.8	17.2 11.1	18.8 9.3	15.6 13.0	7.8 7.4	3.1 1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5.6	60.0	15.2	12.0	19.2	2.4	11.2	14.4	$\chi^2 = 68.035,$ $p = 0.004$
	F-6(결혼이민)	(106)	16.0	76.4	29.2	15.1	11.3	9.4	11.3	7.5	
	F-5(영주)	(33)	18.2	81.8	6.1	24.2	24.2	18.2	9.1	0.0	
	F-2(거주)	(20)	5.0	85.0	30.0	15.0	10.0	15.0	15.0	10.0	
	D-2, D-4(유학생)	(23)	8.7	73.9	8.7	13.0	13.0	17.4	21.7	17.4	
	귀화자	(67)	10.4	76.1	25.4	19.4	9.0	16.4	6.0	13.4	
	미등록체류자	(15)	26.7	33.3	13.3	6.7	6.7	6.7	0.0	40.0	
	난민	(15)	33.3	26.7	6.7	13.3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무응답	(21) (8)	28.6 12.5	57.1 50.0	23.8 0.0	14.3 0.0	19.0 25.0	0.0 0.0	0.0 25.0	14.3 37.5	
성별	여성	(271)	15.5	71.6	21.0	18.1	11.4	11.8	9.2	12.9	$\chi^2 = 21.438,$ $p = 0.001$
	남성	(150)	23.3	64.0	18.0	9.3	20.7	4.0	12.0	12.7	
	무응답	(12)	33.3	25.0	8.3	8.3	0.0	8.3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0	69.4	18.4	11.6	19.0	9.5	10.9	13.6	$\chi^2 = 21.107,$ $p = 0.133$
	30대	(194)	19.1	70.1	22.2	17.0	12.9	7.7	10.3	10.8	
	40대	(53)	11.3	81.1	24.5	17.0	13.2	17.0	9.4	7.5	
	50대 이상	(15)	40.0	26.7	6.7	13.3	6.7	0.0	0.0	33.3	
	무응답	(24)	29.2	33.3	4.2	12.5	4.2	4.2	8.3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6.5	68.4	18.8	12.8	14.3	13.5	9.0	15.0	$\chi^2 = 8.430,$ $p = 0.587$
	전일제	(207)	19.3	71.0	20.3	16.4	16.4	6.3	11.6	9.7	
	시간제	(77)	22.1	62.3	20.8	14.3	11.7	6.5	9.1	15.6	
	무응답	(16)	12.5	43.8	12.5	12.5	0.0	18.8	0.0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15.8	53.9	15.8	10.5	15.8	5.3	6.6	30.3	$\chi^2 = 24.167,$ $p = 0.235$
	3년-5년	(121)	19.8	74.4	23.1	11.6	19.8	10.7	9.1	5.8	
	6년-10년	(116)	16.4	73.3	20.7	18.1	12.1	12.1	10.3	10.3	
	11년-15년	(68)	14.7	72.1	14.7	22.1	16.2	4.4	14.7	13.2	
	16년 이상	(31)	25.8	61.3	32.3	12.9	3.2	12.9	0.0	12.9	
	무응답	(21)	38.1	42.9	4.8	9.5	0.0	4.8	23.8	19.0	

(13)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67.4%, ‘필요 없다’는 인식은 17.6%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개월 이전’이 2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12.2%), ‘3개월 이상’(11.8%), ‘5년 이상’(10.2%), ‘3년 이상’(7.4%)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84.7%), ‘중국’(82.8%), ‘태국’(70.4%), ‘베트남’(63.2%), ‘필리핀’(54.9%)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D-2, D-4(유학생)’(78.3%), ‘F-6(결혼이민)’(76.4%), ‘귀화자’(73.1%),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4.0%), ‘기타 거주자’(52.4%), ‘미등록체류자’(26.7%), ‘난민’(13.3%)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여성’이 70.1%로 ‘남성’(6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15.1%), 남성(20.7%)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40대’가 7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1.6%), ‘20대 이하’(67.3%), ‘50대 이상’(33.3%)의 순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50대 이상에서 ‘필요 없음’에 대한 응답이 33.3%로 높게 나와 자녀의 의무교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연령대에서 관심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전일제’가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9.2%), ‘시간제’(59.7%)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7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74.1%), ‘11년-15년’(69.1%), ‘16년 이상’(58.1%), ‘1년-2년’(55.3%) 등의 순이다.

〈표 III-99〉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17.6	67.4	25.9	11.8	12.2	7.4	10.2	15.0	-	
출신 국가	태국	(27)	25.9	70.4	18.5	44.4	7.4	0.0	0.0	3.7	$\chi^2 = 67.224,$ $p = 0.000$
	인도네시아	(3)	0.0	100.0	33.3	0.0	0.0	0.0	66.7	0.0	
	베트남	(144)	18.1	63.2	22.9	5.6	12.5	7.6	14.6	18.8	
	필리핀	(82)	23.2	54.9	19.5	13.4	8.5	8.5	4.9	22.0	
	캄보디아	(59)	5.1	84.7	39.0	10.2	16.9	8.5	10.2	10.2	
	중국 기타	(64) (54)	12.5 24.1	82.8 57.4	34.4 22.2	12.5 11.1	18.8 7.4	7.8 7.4	9.4 9.3	4.7 18.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1.6	64.0	19.2	12.0	16.8	4.8	11.2	14.4	$\chi^2 = 70.700,$ $p = 0.002$
	F-6(결혼이민)	(106)	14.2	76.4	38.7	10.4	7.5	7.5	12.3	9.4	
	F-5(영주)	(33)	18.2	78.8	18.2	15.2	21.2	12.1	12.1	3.0	
	F-2(거주)	(20)	5.0	85.0	40.0	10.0	15.0	5.0	15.0	10.0	
	D-2, D-4(유학생)	(23)	4.3	78.3	17.4	13.0	13.0	13.0	21.7	17.4	
	귀화자	(67)	10.4	73.1	29.9	16.4	9.0	11.9	6.0	16.4	
	미등록체류자	(15)	33.3	26.7	6.7	6.7	6.7	6.7	0.0	40.0	
	난민	(15)	46.7	13.3	6.7	0.0	0.0	6.7	0.0	40.0	
	기타 거주자 무응답	(21) (8)	28.6 12.5	52.4 50.0	33.3 0.0	4.8 25.0	14.3 12.5	0.0 0.0	0.0 12.5	19.0 37.5	
성별	여성	(271)	15.1	70.1	28.8	12.9	9.6	8.9	10.0	14.8	$\chi^2 = 11.564,$ $p = 0.041$
	남성	(150)	20.7	66.0	21.3	10.0	18.0	5.3	11.3	13.3	
	무응답	(12)	33.3	25.0	16.7	8.3	0.0	0.0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8.4	67.3	23.8	8.8	15.6	8.2	10.9	14.3	$\chi^2 = 17.543,$ $p = 0.287$
	30대	(194)	16.0	71.6	28.9	14.4	10.3	6.7	11.3	12.4	
	40대	(53)	11.3	77.4	34.0	11.3	13.2	11.3	7.5	11.3	
	50대 이상	(15)	33.3	33.3	6.7	13.3	13.3	0.0	0.0	33.3	
	무응답	(24)	29.2	33.3	8.3	8.3	4.2	4.2	8.3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5.0	69.2	28.6	8.3	13.5	8.3	10.5	15.8	$\chi^2 = 5.635,$ $p = 0.845$
	전일제	(207)	18.4	71.0	25.1	14.5	13.0	7.2	11.1	10.6	
	시간제	(77)	20.8	59.7	24.7	11.7	10.4	3.9	9.1	19.5	
	무응답	(16)	12.5	43.8	18.8	6.3	0.0	18.8	0.0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13.2	55.3	25.0	6.6	14.5	3.9	5.3	31.6	$\chi^2 = 34.274,$ $p = 0.024$
	3년-5년	(121)	19.0	74.4	30.6	8.3	19.0	8.3	8.3	6.6	
	6년-10년	(116)	15.5	74.1	26.7	14.7	9.5	11.2	12.1	10.3	
	11년-15년	(68)	14.7	69.1	19.1	22.1	10.3	2.9	14.7	16.2	
	16년 이상	(31)	25.8	58.1	35.5	6.5	3.2	12.9	0.0	16.1	
	무응답	(21)	33.3	42.9	4.8	9.5	0.0	0.0	28.6	23.8	

(14)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58.4%, ‘필요 없다’는 인식은 26.8%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2.9%), ‘1년 이상’(9.7%), ‘3개월 이전’(9.0%), ‘3개월 이상’(6.9%) 등의 순이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요인식은 ‘인도네시아’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81.3%), ‘캄보디아’(61.0%), ‘베트남’(58.3%), ‘필리핀’(43.9%), ‘태국’(40.7%)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 필요인식은 ‘F-2(거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78.8%), ‘F-6(결혼이민)’(72.6%), ‘귀화자’(70.1%), ‘D-2, D-4(유학생)’(69.6%), ‘기타 거주자’(42.9%),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0.8%), ‘미등록체류자’, ‘난민’(각 20.0%) 등의 순이다.

특히,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은 F-2(거주)가 가장 높았고, F-5(영주), F-6(결혼이민)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이들의 삶이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64.6%로 ‘남성’(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음’은 여성(21.4%), 남성(36%)이다. 따라서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40대’가 6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60.3%), ‘20대 이하’(59.2%), ‘50대 이상’(33.3%)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 필요인식은 ‘시간제’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9.4%), ‘전일제’(57.5%)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 필요인식은 ‘3년-5년’이 6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60.3%), ‘6년-10년’(58.6%), ‘16년 이상’(58.1%), ‘1년-2년’(50.0%) 등의 순이다.

〈표 III-100〉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433)	26.8	58.4	9.0	6.9	9.7	12.9	19.9	14.8	-	
출신 국가	태국	(27)	55.6	40.7	0.0	22.2	7.4	7.4	3.7	3.7	$\chi^2=55.833,$ $p=0.003$
	인도네시아	(3)	0.0	100.0	33.3	0.0	0.0	33.3	33.3	0.0	
	베트남	(144)	21.5	58.3	9.7	4.2	10.4	13.9	20.1	20.1	
	필리핀	(82)	34.1	43.9	11.0	4.9	0.0	11.0	17.1	22.0	
	캄보디아	(59)	28.8	61.0	8.5	6.8	16.9	8.5	20.3	10.2	
	중국 기타	(64) (54)	15.6 27.8	81.3 57.4	12.5 3.7	7.8 9.3	18.8 5.6	17.2 14.8	25.0 24.1	3.1 14.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4.0	40.8	4.8	5.6	15.2	4.0	11.2	15.2	$\chi^2=104.220,$ $p=0.000$
	F-6(결혼이민)	(106)	17.9	72.6	14.2	10.4	5.7	17.9	24.5	9.4	
	F-5(영주)	(33)	21.2	78.8	3.0	12.1	21.2	12.1	30.3	0.0	
	F-2(거주)	(20)	5.0	85.0	20.0	5.0	10.0	20.0	30.0	10.0	
	D-2, D-4(유학생)	(23)	13.0	69.6	4.3	0.0	8.7	21.7	34.8	17.4	
	귀화자	(67)	13.4	70.1	11.9	6.0	3.0	22.4	26.9	16.4	
	미등록체류자	(15)	40.0	20.0	6.7	0.0	0.0	6.7	6.7	40.0	
	난민	(15)	46.7	20.0	6.7	0.0	0.0	13.3	0.0	33.3	
	기타 거주자	(21)	38.1	42.9	9.5	14.3	9.5	4.8	4.8	19.0	
무응답	(8)	12.5	50.0	0.0	0.0	25.0	0.0	25.0	37.5		
성별	여성	(271)	21.4	64.6	10.3	8.1	5.2	17.0	24.0	14.0	$\chi^2=42.773,$ $p=0.000$
	남성	(150)	36.0	50.0	6.7	5.3	18.7	5.3	14.0	14.0	
	무응답	(12)	33.3	25.0	8.3	0.0	0.0	16.7	0.0	41.7	
연령별	20대 이하	(147)	25.9	59.2	6.1	7.5	12.2	14.3	19.0	15.0	$\chi^2=13.656,$ $p=0.552$
	30대	(194)	27.8	60.3	12.4	7.7	9.8	11.3	19.1	11.9	
	40대	(53)	22.6	67.9	9.4	5.7	5.7	17.0	30.2	9.4	
	50대 이상	(15)	33.3	33.3	6.7	6.7	13.3	0.0	6.7	33.3	
	무응답	(24)	29.2	33.3	0.0	0.0	0.0	16.7	16.7	37.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4.8	59.4	9.8	5.3	6.0	18.8	19.5	15.8	$\chi^2=16.301,$ $p=0.091$
	전일제	(207)	31.9	57.5	9.2	8.7	11.1	8.2	20.3	10.6	
	시간제	(77)	19.5	62.3	7.8	6.5	14.3	11.7	22.1	18.2	
	무응답	(16)	12.5	43.8	6.3	0.0	0.0	31.3	6.3	43.8	
체류 기간	1년-2년	(76)	21.1	50.0	11.8	7.9	11.8	9.2	9.2	28.9	$\chi^2=15.970,$ $p=0.718$
	3년-5년	(121)	28.1	65.3	8.3	7.4	14.0	16.5	19.0	6.6	
	6년-10년	(116)	30.2	58.6	7.8	6.9	6.0	12.9	25.0	11.2	
	11년-15년	(68)	22.1	60.3	8.8	5.9	10.3	14.7	20.6	17.6	
	16년 이상	(31)	25.8	58.1	16.1	3.2	6.5	9.7	22.6	16.1	
	무응답	(21)	38.1	42.9	0.0	9.5	0.0	4.8	28.6	19.0	

2)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응답자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태국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57.7%, 인도네시아(66.7%), 베트남(30.6%), 중국(31.0%)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필리핀은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32.8%, 캄보디아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0%)과 미등록체류자(27.3%)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3.0%, F-6(결혼이민)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24.2%, F-5(영주)(48.3%), D-2, D-4(유학생)(27.3%), 귀화자(39.3%)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48.3%, F-2(거주)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각 36.8%, 난민은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40.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31.3%, 남성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26.8%, 30대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각 28.3%, 40대는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31.9%, 50대 이상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50.0%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활동안함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33.3%, 전일제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29.0%, 시간제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각 28.6%로 가장 높았다.

체류기간별로 보면 1년-2년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각 23.9%, 3년-5년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3.3%, 6년-10년(29.0%), 11년-15년(31.1%)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16년 이상은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1〉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1)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인니까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374)	26.7	26.5	22.7	
출신 국가	태국	(26)	34.6	57.7	19.2
	인도네시아	(3)	66.7	0.0	33.3
	베트남	(124)	30.6	12.9	13.7
	필리핀	(64)	20.3	31.3	32.8
	캄보디아	(58)	13.8	36.2	27.6
	중국	(58)	31.0	22.4	29.3
	기타	(41)	29.3	34.1	19.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03)	14.6	33.0	25.2
	F-6(결혼이민)	(95)	22.1	22.1	23.2
	F-5(영주)	(29)	48.3	20.7	17.2
	F-2(거주)	(19)	36.8	15.8	26.3
	D-2, D-4(유학생)	(22)	27.3	22.7	18.2
	귀화자	(61)	39.3	24.6	26.2
	미등록체류자	(11)	18.2	27.3	0.0
	난민	(10)	10.0	20.0	40.0
	기타 거주자	(16)	37.5	50.0	12.5
	무응답	(8)	50.0	25.0	12.5
성별	여성	(240)	31.3	24.6	23.3
	남성	(126)	18.3	31.0	21.4
	무응답	(8)	25.0	12.5	25.0
연령별	20대 이하	(127)	26.8	24.4	21.3
	30대	(173)	28.3	28.3	20.8
	40대	(47)	25.5	27.7	31.9
	50대 이상	(10)	20.0	50.0	30.0
	무응답	(17)	17.6	5.9	23.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14)	33.3	23.7	16.7
	전일제	(183)	21.3	29.0	25.7
	시간제	(63)	28.6	28.6	27.0
	무응답	(14)	35.7	7.1	14.3
체류 기간	1년-2년	(67)	23.9	16.4	23.9
	3년-5년	(108)	24.1	33.3	18.5
	6년-10년	(100)	29.0	26.0	24.0
	11년-15년	(61)	31.1	26.2	24.6
	16년 이상	(24)	29.2	29.2	33.3
	무응답	(14)	21.4	21.4	14.3

〈표 III-102〉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 (2)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기타	무응답
전체		(374)	16.3	4.8	18.4
출신 국가	태국	(26)	3.8	0.0	0.0
	인도네시아	(3)	0.0	0.0	0.0
	베트남	(124)	17.7	6.5	29.8
	필리핀	(64)	7.8	1.6	20.3
	캄보디아	(58)	13.8	6.9	12.1
	중국	(58)	29.3	6.9	8.6
	기타	(41)	19.5	2.4	17.1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03)	5.8	7.8	22.3
	F-6(결혼이민)	(95)	24.2	2.1	21.1
	F-5(영주)	(29)	20.7	0.0	6.9
	F-2(거주)	(19)	36.8	15.8	5.3
	D-2, D-4(유학생)	(22)	22.7	9.1	18.2
	귀화자	(61)	18.0	1.6	13.1
	미등록체류자	(11)	0.0	18.2	36.4
	난민	(10)	0.0	0.0	30.0
	기타 거주자	(16)	18.8	0.0	12.5
	무응답	(8)	0.0	0.0	25.0
성별	여성	(240)	20.0	3.3	17.1
	남성	(126)	10.3	7.9	18.3
	무응답	(8)	0.0	0.0	62.5
연령별	20대 이하	(127)	13.4	6.3	17.3
	30대	(173)	17.9	4.6	15.0
	40대	(47)	25.5	2.1	19.1
	50대 이상	(10)	10.0	0.0	20.0
	무응답	(17)	0.0	5.9	58.8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14)	18.4	5.3	21.9
	전일제	(183)	13.7	5.5	15.8
	시간제	(63)	20.6	3.2	14.3
	무응답	(14)	14.3	0.0	42.9
체류 기간	1년-2년	(67)	10.4	3.0	28.4
	3년-5년	(108)	15.7	4.6	17.6
	6년-10년	(100)	17.0	6.0	13.0
	11년-15년	(61)	16.4	4.9	16.4
	16년 이상	(24)	29.2	4.2	16.7
	무응답	(14)	21.4	7.1	28.6

라.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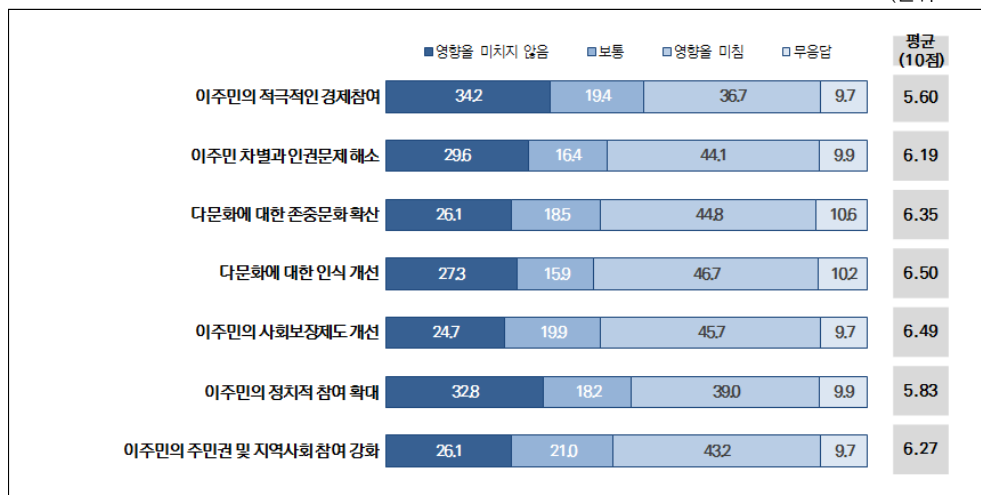
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1) 종합

응답자는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46.7%,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5.7%,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4.8%,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4.1%,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 사회 참여강화’ 43.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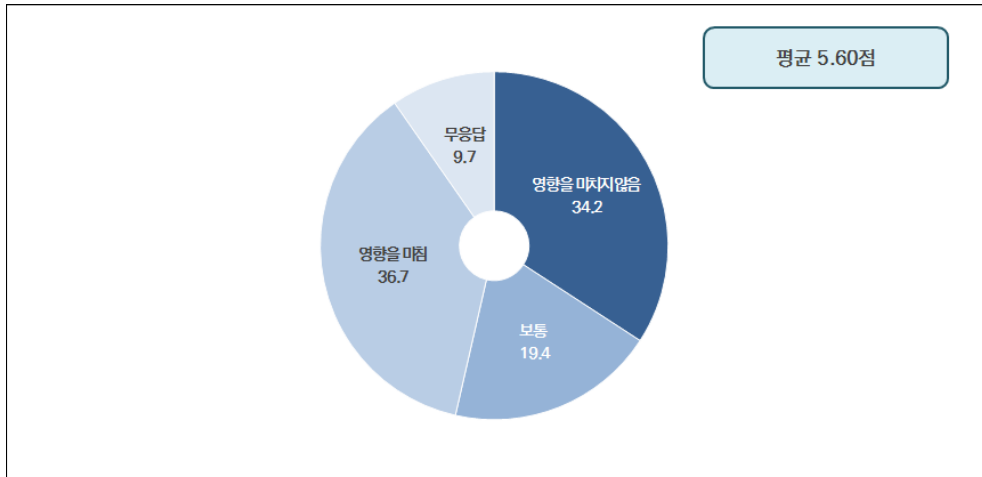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이들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4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서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36.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34.2%였으며, 평균은 5.60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7.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7.02점), '베트남'(6.37점), '캄보디아'(6.02점), '필리핀'(3.65점), '태국'(3.00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D-2, D-4(유학생)'이 6.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6.72점), 'F-2(거주)'(6.67점), 'F-5(영주)'(6.36점), 'F-6(결혼이민)'(5.8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96점), '미등록체류자'(2.78점), '난민'(2.25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78점으로 '남성'(5.4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7.7%)에 비해 남성(22.7%)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5.72점), '30대'(5.55점), '50대 이상'(4.82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6.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64점), '전일제'(5.34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6.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5.73점), '6년-10년'(5.46점), '16년 이상'(5.44점), '1년-2년'(5.39점) 등의 순이다.

〈표 III-10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 참여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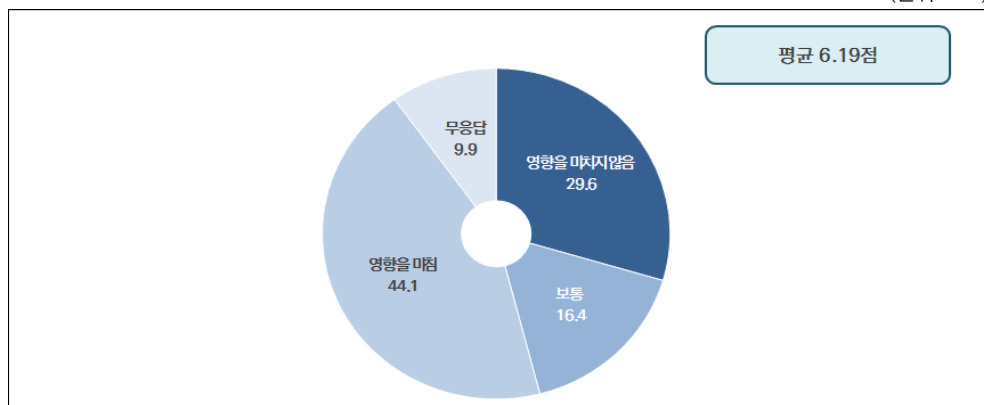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영향을 미침	무응답	평균	통계량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전체	(433)	34.2	19.4	36.7	9.7	5.60	-	
출신 국가	태국	(27)	81.5	11.1	7.4	0.0	3.00	F=14.320,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67	
	베트남	(144)	23.6	17.4	44.4	14.6	6.37	
	필리핀	(82)	64.6	18.3	7.3	9.8	3.65	
	캄보디아	(59)	22.0	30.5	40.7	6.8	6.02	
	중국	(64)	14.1	23.4	57.8	4.7	7.02	
	기타	(54)	31.5	13.0	44.4	11.1	5.69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1.6	22.4	27.2	8.8	4.96	F=6.005, p=0.000
	F-6(결혼이민)	(106)	36.8	17.0	39.6	6.6	5.81	
	F-5(영주)	(33)	18.2	36.4	45.5	0.0	6.36	
	F-2(거주)	(20)	25.0	10.0	55.0	10.0	6.67	
	D-2, D-4(유학생)	(23)	17.4	17.4	60.9	4.3	6.82	
	귀화자	(67)	19.4	16.4	53.7	10.4	6.72	
	미등록체류자	(15)	46.7	13.3	0.0	40.0	2.78	
	난민	(15)	73.3	0.0	6.7	20.0	2.25	
	기타 거주자	(21)	38.1	23.8	23.8	14.3	4.78	
무응답	(8)	37.5	25.0	12.5	25.0	4.50		
성별	여성	(271)	33.6	17.7	39.5	9.2	5.78	F=1.284, p=0.258
	남성	(150)	33.3	22.7	33.3	10.7	5.40	
	무응답	(12)	58.3	16.7	16.7	8.3	3.91	
연령별	20대 이하	(147)	32.0	17.7	38.1	12.2	5.72	F=0.502, p=0.681
	30대	(194)	34.5	22.2	36.6	6.7	5.55	
	40대	(53)	32.1	20.8	39.6	7.5	5.96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4.82	
	무응답	(24)	45.8	16.7	25.0	12.5	4.81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4.6	17.3	39.1	9.0	5.64	F=2.816, p=0.061
	전일제	(207)	37.2	21.3	31.9	9.7	5.34	
	시간제	(77)	23.4	20.8	48.1	7.8	6.37	
	무응답	(16)	43.8	6.3	25.0	25.0	4.67	
체류 기간	1년-2년	(76)	31.6	25.0	30.3	13.2	5.39	F=0.531, p=0.713
	3년-5년	(121)	34.7	19.0	39.7	6.6	5.73	
	6년-10년	(116)	36.2	22.4	35.3	6.0	5.46	
	11년-15년	(68)	30.9	14.7	48.5	5.9	6.05	
	16년 이상	(31)	35.5	12.9	32.3	19.4	5.44	
	무응답	(21)	38.1	9.5	19.0	33.3	4.79	

(3)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이주민의 참정권과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으로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4.1%,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9.6%였으며, 평균은 6.19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Ⅲ-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7.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33점), ‘베트남’(6.97점), ‘태국’(6.78점), ‘캄보디아’(6.24점), ‘필리핀’(3.81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귀화자’가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7.05점), ‘F-2(거주)’(6.78점), ‘F-6(결혼이민)’(6.52점), ‘F-5(영주)’(6.3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76점), ‘미등록체류자’(3.78점), ‘난민’(2.46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57점으로 ‘남성’(5.7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2.2%)에 비해 남성(23.3%)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6.28점), ‘20대 이하’(6.18점), ‘50대 이상’(4.82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6.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14점), ‘전일제’(6.06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6.27점), ‘3년-5년’(6.19점), ‘1년-2년’(5.97점), ‘16년 이상’(5.88점)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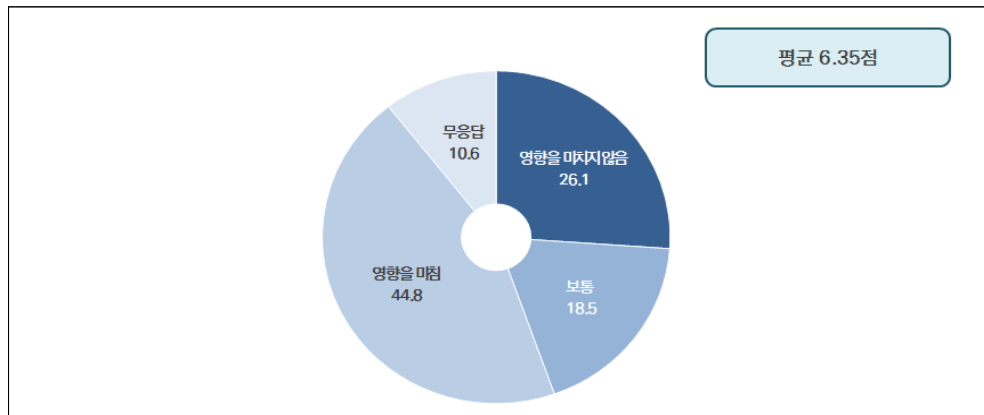
〈표 III-10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 문제해소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9.6	16.4	44.1	9.9	6.19	-	
출신 국가	태국	(27)	25.9	25.9	48.1	0.0	6.78	F=12.711,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33	
	베트남	(144)	19.4	13.9	50.7	16.0	6.97	
	필리핀	(82)	63.4	17.1	9.8	9.8	3.81	
	캄보디아	(59)	25.4	23.7	44.1	6.8	6.24	
	중국	(64)	9.4	15.6	70.3	4.7	7.61	
	기타	(54)	37.0	9.3	44.4	9.3	5.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2.8	23.2	34.4	9.6	5.76	F=4.621, p=0.000
	F-6(결혼이민)	(106)	31.1	12.3	50.0	6.6	6.52	
	F-5(영주)	(33)	24.2	21.2	51.5	3.0	6.31	
	F-2(거주)	(20)	20.0	15.0	55.0	10.0	6.78	
	D-2, D-4(유학생)	(23)	17.4	13.0	65.2	4.3	7.05	
	귀화자	(67)	17.9	11.9	59.7	10.4	7.13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78	
	난민	(15)	80.0	0.0	6.7	13.3	2.46	
	기타 거주자	(21)	23.8	23.8	38.1	14.3	6.17	
무응답	(8)	25.0	25.0	25.0	25.0	5.83		
성별	여성	(271)	27.3	12.2	50.9	9.6	6.57	F=6.471, p=0.011
	남성	(150)	30.7	23.3	35.3	10.7	5.72	
	무응답	(12)	66.7	25.0	0.0	8.3	3.5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7.9	18.4	42.2	11.6	6.18	F=1.350, p=0.258
	30대	(194)	29.4	16.5	46.4	7.7	6.28	
	40대	(53)	22.6	15.1	54.7	7.5	6.84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4.82	
	무응답	(24)	50.0	16.7	20.8	12.5	4.71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3.1	11.3	45.9	9.8	6.14	F=1.907, p=0.150
	전일제	(207)	30.4	19.8	40.1	9.7	6.06	
	시간제	(77)	18.2	16.9	57.1	7.8	6.90	
	무응답	(16)	43.8	12.5	18.8	25.0	4.50	
체류 기간	1년-2년	(76)	27.6	19.7	39.5	13.2	5.97	F=0.661, p=0.619
	3년-5년	(121)	31.4	18.2	44.6	5.8	6.19	
	6년-10년	(116)	29.3	17.2	44.8	8.6	6.27	
	11년-15년	(68)	26.5	10.3	57.4	5.9	6.77	
	16년 이상	(31)	29.0	12.9	38.7	19.4	5.88	
	무응답	(21)	38.1	14.3	19.0	28.6	4.67	

(4)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인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4.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6.1%였으며, 평균은 6.35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Ⅲ-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7.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33점), ‘태국’(7.19점), ‘캄보디아’(6.81점), ‘베트남’(6.80점), ‘필리핀’(4.04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F-2(거주)’가 7.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7.08점), ‘D-2, D-4(유학생)’(7.05점), ‘F-5(영주)’(6.9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33점), ‘F-6(결혼이민)’(6.15점), ‘미등록체류자’(3.44점), ‘난민’(2.38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55점으로 ‘남성’(6.1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6.2%)에 비해 남성(23.3%)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6.41점), ‘20대 이하’(6.27점), ‘50대 이상’(5.09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6.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6.49점), ‘활동안함’(6.11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6.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6.47점), ‘6년-10년’(6.26점), ‘1년-2년’(6.05점), ‘16년 이상’(6.00점)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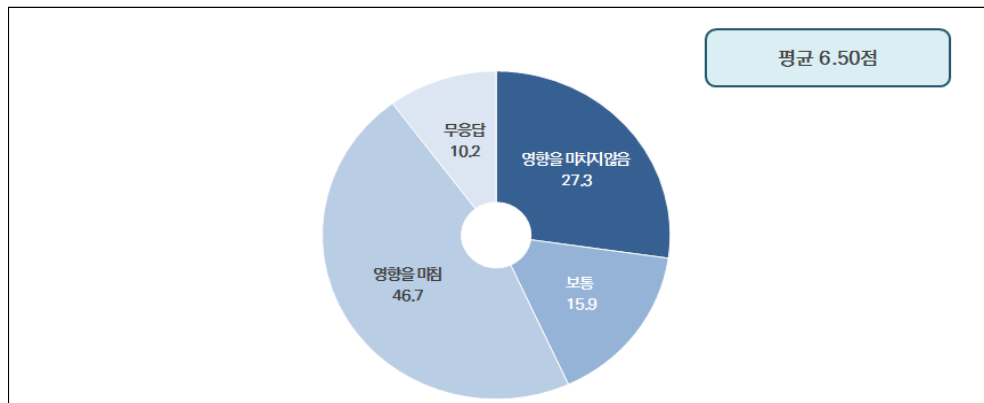
〈표 III-10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6.1	18.5	44.8	10.6	6.35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22.2	59.3	0.0	7.19	F=11.826,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33	
	베트남	(144)	20.8	14.6	50.0	14.6	6.80	
	필리핀	(82)	59.8	18.3	12.2	9.8	4.04	
	캄보디아	(59)	10.2	30.5	49.2	10.2	6.81	
	중국	(64)	7.8	21.9	65.6	4.7	7.79	
체류 형태	기타	(54)	33.3	9.3	42.6	14.8	5.91	F=4.997, p=0.000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2.4	24.8	41.6	11.2	6.33	
	F-6(결혼이민)	(106)	32.1	17.0	43.4	7.5	6.15	
	F-5(영주)	(33)	21.2	21.2	57.6	0.0	6.91	
	F-2(거주)	(20)	20.0	10.0	60.0	10.0	7.28	
	D-2, D-4(유학생)	(23)	17.4	17.4	56.5	8.7	7.05	
	귀화자	(67)	16.4	17.9	53.7	11.9	7.08	
	미등록체류자	(15)	53.3	0.0	6.7	40.0	3.44	
	난민	(15)	80.0	0.0	6.7	13.3	2.38	
	기타 거주자	(21)	14.3	19.0	57.1	9.5	6.84	
무응답	(8)	25.0	25.0	25.0	25.0	6.00		
성별	여성	(271)	25.5	16.2	48.3	10.0	6.55	F=1.410, p=0.236
	남성	(150)	24.7	23.3	40.0	12.0	6.15	
	무응답	(12)	58.3	8.3	25.0	8.3	4.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3.8	18.4	44.2	13.6	6.27	F=1.515, p=0.210
	30대	(194)	26.8	20.6	45.9	6.7	6.41	
	40대	(53)	18.9	18.9	52.8	9.4	7.08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5.09	
	무응답	(24)	41.7	12.5	29.2	16.7	5.3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1.6	14.3	43.6	10.5	6.11	F=0.868, p=0.421
	전일제	(207)	22.7	21.3	45.4	10.6	6.49	
	시간제	(77)	22.1	20.8	49.4	7.8	6.68	
	무응답	(16)	43.8	6.3	25.0	25.0	4.83	
체류 기간	1년-2년	(76)	25.0	21.1	38.2	15.8	6.05	F=0.910, p=0.458
	3년-5년	(121)	24.8	19.0	48.8	7.4	6.47	
	6년-10년	(116)	28.4	22.4	44.0	5.2	6.26	
	11년-15년	(68)	25.0	10.3	57.4	7.4	6.97	
	16년 이상	(31)	29.0	16.1	35.5	19.4	6.00	
	무응답	(21)	23.8	14.3	23.8	38.1	5.31	

(5)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6.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7.3%였으며, 평균은 6.50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67점), '캄보디아'(7.15점), '태국'(7.08점), '베트남'(7.02점), '필리핀'(4.04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7.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7.32점), '귀화자'(7.13점), 'F-5(영주)'(7.00점), 'F-6(결혼이민)'(6.58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26점), '미등록체류자'(3.67점), '난민'(2.6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75점으로 '남성'(6.2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4.8%)에 비해 남성(18.7%)로 높게 나타났고, '무응답'에서 남성(25%)은 여성(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남성의 경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6.54점), '30대'(6.47점), '50대 이상'(5.18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 보면 '시간제'가 6.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6.46점), '활동안함'(6.45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7.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6.65점), '6년-10년'(6.44점), '1년-2년'(6.14점), '16년 이상'(5.88점) 등의 순이다.

〈표 III-10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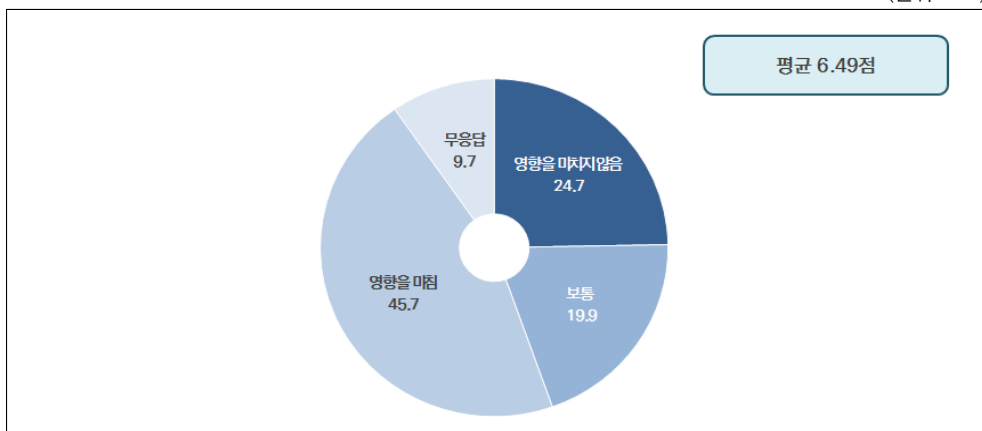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7.3	15.9	46.7	10.2	6.50	-	
출신 국가	태국	(27)	29.6	7.4	59.3	3.7	7.08	F=12.693,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67	
	베트남	(144)	20.1	14.6	51.4	13.9	7.02	
	필리핀	(82)	61.0	17.1	12.2	9.8	4.04	
	캄보디아	(59)	11.9	22.0	55.9	10.2	7.15	
	중국	(64)	7.8	20.3	67.2	4.7	7.90	
	기타	(54)	35.2	9.3	44.4	11.1	6.0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8.0	19.2	40.8	12.0	6.26	F=4.468, p=0.000
	F-6(결혼이민)	(106)	28.3	17.0	48.1	6.6	6.58	
	F-5(영주)	(33)	21.2	21.2	57.6	0.0	7.00	
	F-2(거주)	(20)	25.0	5.0	65.0	5.0	7.32	
	D-2, D-4(유학생)	(23)	17.4	13.0	65.2	4.3	7.36	
	귀화자	(67)	17.9	16.4	55.2	10.4	7.13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67	
	난민	(15)	80.0	0.0	6.7	13.3	2.62	
	기타 거주자	(21)	28.6	4.8	52.4	14.3	6.56	
무응답	(8)	0.0	37.5	37.5	25.0	7.17		
성별	여성	(271)	25.5	14.8	50.2	9.6	6.75	F=2.606, p=0.107
	남성	(150)	28.0	18.7	42.0	11.3	6.20	
	무응답	(12)	58.3	8.3	25.0	8.3	4.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3.8	17.0	43.5	15.6	6.54	F=1.522, p=0.209
	30대	(194)	28.9	16.5	49.0	5.7	6.47	
	40대	(53)	18.9	18.9	54.7	7.5	7.24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5.18	
	무응답	(24)	45.8	8.3	37.5	8.3	5.5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8.6	13.5	48.9	9.0	6.45	F=0.793, p=0.453
	전일제	(207)	28.0	16.4	45.4	10.1	6.46	
	시간제	(77)	19.5	20.8	50.6	9.1	6.99	
	무응답	(16)	43.8	6.3	25.0	25.0	4.75	
체류 기간	1년~2년	(76)	25.0	19.7	39.5	15.8	6.14	F=1.118, p=0.347
	3년~5년	(121)	25.6	15.7	52.1	6.6	6.65	
	6년~10년	(116)	30.2	17.2	46.6	6.0	6.44	
	11년~15년	(68)	23.5	13.2	57.4	5.9	7.11	
	16년 이상	(31)	29.0	16.1	35.5	19.4	5.88	
	무응답	(21)	38.1	4.8	23.8	33.3	5.64	

(6)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5.7%,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4.7%였으며, 평균은 6.49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Ⅲ-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7.70점), ‘태국’(7.56점), ‘캄보디아’(7.11점), ‘베트남’(6.93점), ‘필리핀’(4.09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귀화자’가 7.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7.22점), ‘D-2, D-4(유학생)’(7.14점), ‘F-6(결혼이민)’(6.54점), ‘F-5(영주)’(6.42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6.39점), ‘미등록체류자’(3.56점), ‘난민’(2.69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70점으로 ‘남성’(6.2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6.6%)에 비해 남성(26.7%)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6.53점), ‘20대 이하’(6.52점), ‘50대 이상’(5.27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6.51점), ‘활동안함’(6.32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7.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6.60점), ‘1년-2년’(6.45점), ‘6년-10년’(6.32점), ‘16년 이상’(6.04점) 등의 순이다.

〈표 III-10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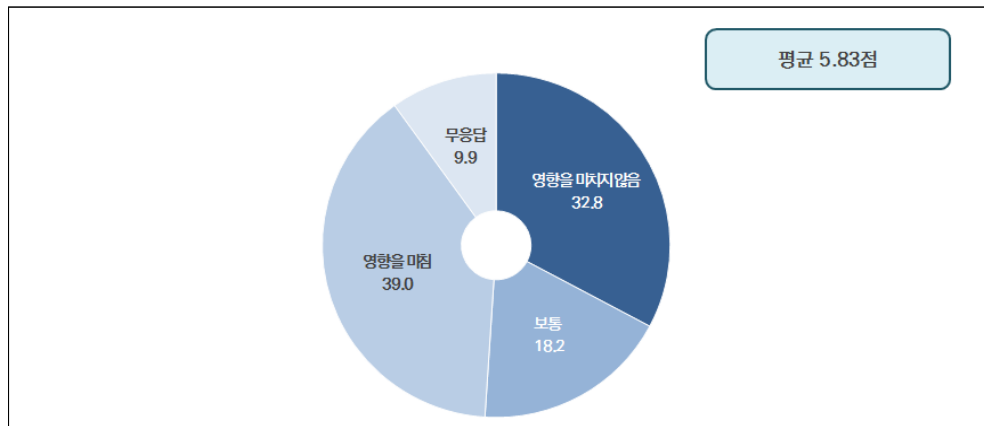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4.7	19.9	45.7	9.7	6.49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22.2	59.3	0.0	7.56	F=12.476,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8.00	
	베트남	(144)	19.4	16.0	50.0	14.6	6.93	
	필리핀	(82)	58.5	19.5	12.2	9.8	4.09	
	캄보디아	(59)	10.2	28.8	54.2	6.8	7.11	
	중국	(64)	9.4	20.3	65.6	4.7	7.70	
	기타	(54)	25.9	18.5	44.4	11.1	6.0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3.2	25.6	41.6	9.6	6.39	F=4.641, p=0.000
	F-6(결혼이민)	(106)	27.4	17.9	48.1	6.6	6.54	
	F-5(영주)	(33)	24.2	24.2	51.5	0.0	6.42	
	F-2(거주)	(20)	20.0	10.0	60.0	10.0	7.22	
	D-2, D-4(유학생)	(23)	13.0	26.1	56.5	4.3	7.14	
	귀화자	(67)	16.4	16.4	56.7	10.4	7.35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56	
	난민	(15)	80.0	0.0	6.7	13.3	2.69	
	기타 거주자	(21)	19.0	19.0	47.6	14.3	6.44	
무응답	(8)	0.0	37.5	37.5	25.0	7.50		
성별	여성	(271)	24.7	16.6	49.1	9.6	6.70	F=1.658, p=0.199
	남성	(150)	22.0	26.7	41.3	10.0	6.27	
	무응답	(12)	58.3	8.3	25.0	8.3	4.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1.1	21.8	44.9	12.2	6.52	F=0.902, p=0.440
	30대	(194)	25.3	21.1	46.9	6.7	6.53	
	40대	(53)	20.8	18.9	52.8	7.5	6.94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5.27	
	무응답	(24)	41.7	12.5	33.3	12.5	5.5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7.8	15.8	46.6	9.8	6.32	F=1.264, p=0.284
	전일제	(207)	23.7	23.2	44.0	9.2	6.51	
	시간제	(77)	18.2	20.8	53.2	7.8	7.04	
	무응답	(16)	43.8	6.3	25.0	25.0	4.67	
체류 기간	1년-2년	(76)	21.1	25.0	40.8	13.2	6.45	F=0.669, p=0.614
	3년-5년	(121)	23.1	21.5	49.6	5.8	6.60	
	6년-10년	(116)	28.4	19.8	45.7	6.0	6.32	
	11년-15년	(68)	23.5	13.2	55.9	7.4	7.00	
	16년 이상	(31)	29.0	16.1	35.5	19.4	6.04	
	무응답	(21)	23.8	19.0	23.8	33.3	5.57	

(7)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이주민의 정치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18.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70.4%였으며, 평균은 3.70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2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이를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7.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7.20점), '캄보디아'(6.47점), '베트남'(6.35점), '기타'(6.22점), '필리핀'(3.82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7.28점), '귀화자'(7.20점), 'F-5(영주)'(6.03점), 'F-6(결혼이민)'(5.97점), '미등록체류자'(2.78점), '난민'(2.71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16점으로 '남성'(5.3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6.2%)에 비해 남성(22%)이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6.04점), '30대'(5.69점), '50대 이상'(4.82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01점), '전일제'(5.44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2년'이 6.1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6.11점), '3년-5년'(5.83점), '16년 이상'(5.80점), '6년-10년'(5.51점) 등의 순이다.

〈표 III-10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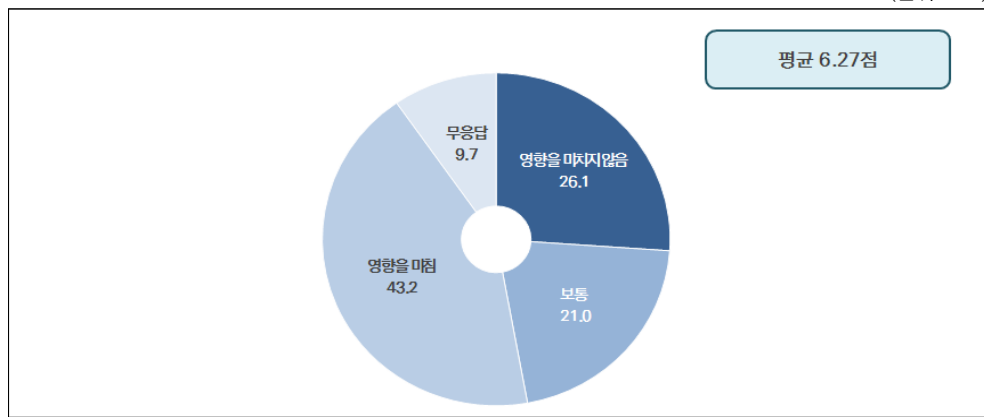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32.8	18.2	39.0	9.9	5.83	-	
출신 국가	태국	(27)	70.4	11.1	18.5	0.0	3.70	F=11.140,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33	
	베트남	(144)	25.0	16.7	43.1	15.3	6.35	
	필리핀	(82)	62.2	17.1	11.0	9.8	3.82	
	캄보디아	(59)	16.9	25.4	47.5	10.2	6.47	
	중국	(64)	14.1	23.4	57.8	4.7	7.20	
	기타	(54)	31.5	13.0	48.1	7.4	6.22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7.6	23.2	28.0	11.2	5.00	F=6.824, p=0.000
	F-6(결혼이민)	(106)	34.9	17.9	39.6	7.5	5.97	
	F-5(영주)	(33)	27.3	30.3	42.4	0.0	6.03	
	F-2(거주)	(20)	25.0	0.0	65.0	10.0	7.28	
	D-2, D-4(유학생)	(23)	13.0	21.7	60.9	4.3	7.45	
	귀화자	(67)	17.9	14.9	56.7	10.4	7.20	
	미등록체류자	(15)	53.3	6.7	0.0	40.0	2.78	
	난민	(15)	80.0	0.0	13.3	6.7	2.71	
	기타 거주자	(21)	38.1	9.5	42.9	9.5	5.68	
무응답	(8)	12.5	37.5	25.0	25.0	6.00		
성별	여성	(271)	31.0	16.2	43.5	9.2	6.16	F=5.893, p=0.016
	남성	(150)	34.0	22.0	32.7	11.3	5.32	
	무응답	(12)	58.3	16.7	16.7	8.3	4.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7.9	21.1	37.4	13.6	6.04	F=1.050, p=0.370
	30대	(194)	35.6	17.0	41.2	6.2	5.69	
	40대	(53)	28.3	18.9	45.3	7.5	6.35	
	50대 이상	(15)	40.0	0.0	33.3	26.7	4.82	
	무응답	(24)	45.8	20.8	20.8	12.5	5.1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2.3	15.0	42.9	9.8	6.01	F=4.530, p=0.011
	전일제	(207)	36.7	19.3	33.8	10.1	5.44	
	시간제	(77)	20.8	20.8	51.9	6.5	6.76	
	무응답	(16)	43.8	18.8	12.5	25.0	4.42	
체류 기간	1년-2년	(76)	26.3	21.1	38.2	14.5	6.12	F=0.513, p=0.726
	3년-5년	(121)	31.4	21.5	40.5	6.6	5.83	
	6년-10년	(116)	38.8	19.0	36.2	6.0	5.51	
	11년-15년	(68)	33.8	13.2	47.1	5.9	6.11	
	16년 이상	(31)	29.0	16.1	35.5	19.4	5.80	
	무응답	(21)	33.3	4.8	28.6	33.3	5.64	

(8)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3.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6.1%였으며, 평균은 6.27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2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8.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67점), ‘베트남’(6.76점), ‘캄보디아’(6.60점), ‘태국’(5.22점), ‘필리핀’(4.12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7.42점), ‘귀화자’(7.17점), ‘F-5(영주)’(6.79점), ‘F-6(결혼이민)’(6.45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71점), ‘미등록체류자’(3.11점), ‘난민’(2.85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54점으로 ‘남성’(5.9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8.1%)에 비해 남성(27.3%)이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대’가 7.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6.26점), ‘30대’(6.23점), ‘50대 이상’(5.70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6.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6.41점), ‘전일제’(6.03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6.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2년’(6.56점), ‘3년-5년’(6.27점), ‘6년-10년’(6.03점), ‘16년 이상’(5.84점) 등의 순이다.

〈표 III-10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6.1	21.0	43.2	9.7	6.27	-	
출신 국가	태국	(27)	29.6	48.1	22.2	0.0	5.22	F=12.451,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67	
	베트남	(144)	18.8	19.4	46.5	15.3	6.76	
	필리핀	(82)	59.8	18.3	12.2	9.8	4.12	
	캄보디아	(59)	15.3	27.1	50.8	6.8	6.60	
	중국	(64)	6.3	18.8	70.3	4.7	8.02	
	기타	(54)	29.6	11.1	50.0	9.3	6.2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8.0	28.8	33.6	9.6	5.71	F=5.699, p=0.000
	F-6(결혼이민)	(106)	29.2	18.9	45.3	6.6	6.45	
	F-5(영주)	(33)	21.2	24.2	54.5	0.0	6.79	
	F-2(거주)	(20)	20.0	5.0	70.0	5.0	7.42	
	D-2, D-4(유학생)	(23)	8.7	21.7	65.2	4.3	7.45	
	귀화자	(67)	16.4	16.4	53.7	13.4	7.17	
	미등록체류자	(15)	46.7	13.3	0.0	40.0	3.11	
	난민	(15)	73.3	0.0	13.3	13.3	2.85	
	기타 거주자	(21)	19.0	23.8	47.6	9.5	6.32	
무응답	(8)	12.5	37.5	25.0	25.0	6.50		
성별	여성	(271)	25.1	18.1	47.2	9.6	6.54	F=3.469, p=0.063
	남성	(150)	25.3	27.3	37.3	10.0	5.93	
	무응답	(12)	58.3	8.3	25.0	8.3	4.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24.5	20.4	42.2	12.9	6.26	F=1.116, p=0.343
	30대	(194)	26.8	22.7	44.3	6.2	6.23	
	40대	(53)	18.9	22.6	50.9	7.5	7.04	
	50대 이상	(15)	33.3	0.0	33.3	33.3	5.70	
	무응답	(24)	41.7	20.8	29.2	8.3	5.3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7.1	15.0	47.4	10.5	6.41	F=2.491, p=0.084
	전일제	(207)	27.1	25.6	38.6	8.7	6.03	
	시간제	(77)	18.2	20.8	53.2	7.8	6.97	
	무응답	(16)	43.8	12.5	18.8	25.0	4.58	
체류 기간	1년-2년	(76)	17.1	25.0	44.7	13.2	6.56	F=0.855, p=0.491
	3년-5년	(121)	26.4	24.0	44.6	5.0	6.27	
	6년-10년	(116)	31.9	18.1	43.1	6.9	6.03	
	11년-15년	(68)	23.5	17.6	51.5	7.4	6.78	
	16년 이상	(31)	29.0	19.4	32.3	19.4	5.84	
	무응답	(21)	28.6	19.0	19.0	33.3	5.36	

2)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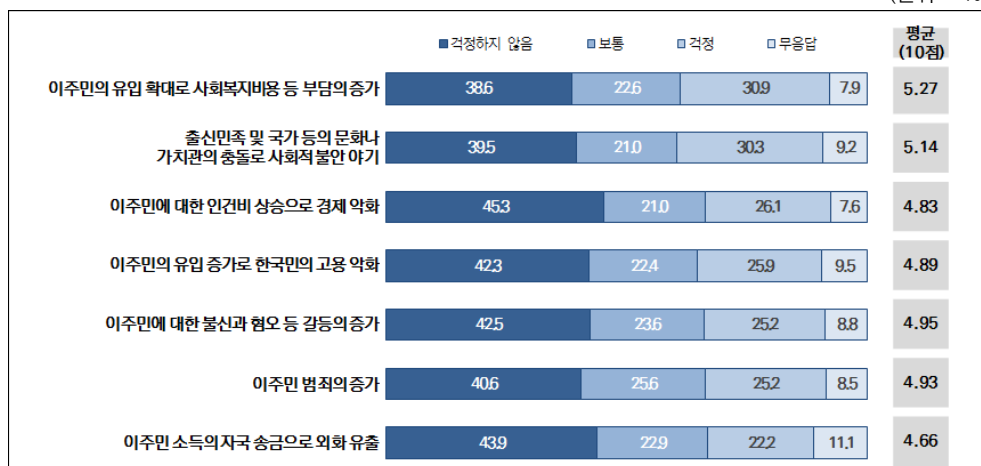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45.3%,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3.9%,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42.5%,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민의 고용악화’ 42.3%, ‘이주민 범죄의 증가’ 40.6%,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39.5%,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3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점수로 볼 때, 걱정한다는 응답은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5.27점,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5.14점, ‘이주민 범죄의 증가’ 4.93점,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민의 고용악화’ 4.89점,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4.95점,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66점,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4.8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권리보장으로 한국인이 우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은 모두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29〉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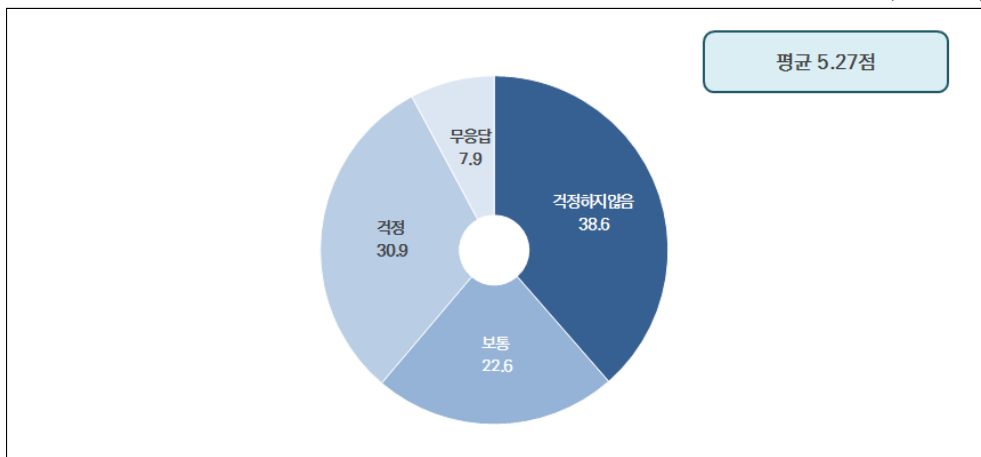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2)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과 관련하여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30.9%,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38.6%로 응답했으며, 평균은 5.27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Ⅲ-3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6.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6.23점), ‘인도네시아’(5.67점), ‘베트남’(5.41점), ‘태국’(5.26점), ‘필리핀’(3.35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6.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5.64점), ‘F-6(결혼이민)’(5.50점), ‘F-2(거주)’(5.37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03점), ‘귀화자’(4.92점), ‘미등록체류자’(3.67점), ‘난민’(3.4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5.47점으로 ‘남성’(5.0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41점), ‘40대’(5.16점), ‘50대 이상’(3.45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5.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5.40점), ‘전일제’(5.12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2년’이 5.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49점), ‘6년-10년’(5.41점), ‘3년-5년’(5.08점), ‘16년 이상’(3.92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0〉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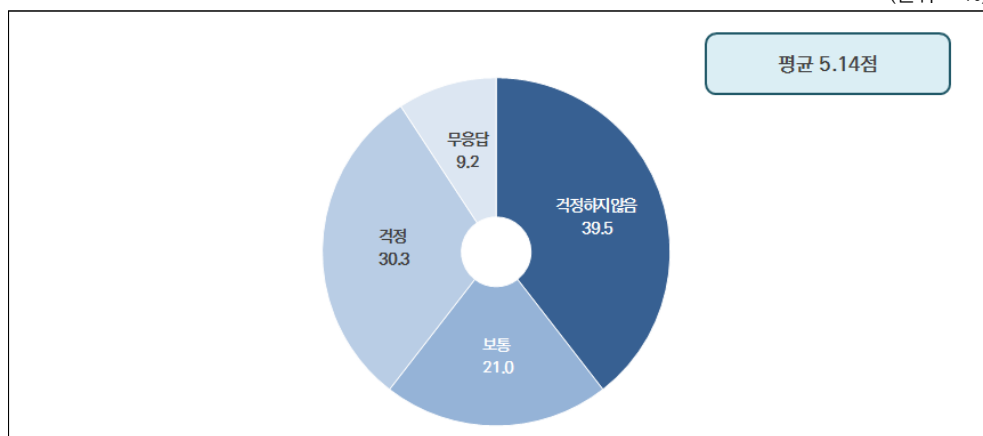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38.6	22.6	30.9	7.9	5.27	-
출신 국가	태국	(27)	33.3	51.9	14.8	0.0	5.26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5.67
	베트남	(144)	34.0	20.8	34.0	11.1	5.41
	필리핀	(82)	76.8	8.5	4.9	9.8	3.35
	캄보디아	(59)	16.9	30.5	47.5	5.1	6.36
	중국	(64)	21.9	29.7	43.8	4.7	6.23
	기타	(54)	38.9	18.5	35.2	7.4	5.3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8	26.4	24.0	8.8	5.03
	F-6(결혼이민)	(106)	39.6	18.9	37.7	3.8	5.50
	F-5(영주)	(33)	33.3	30.3	36.4	0.0	5.64
	F-2(거주)	(20)	40.0	20.0	35.0	5.0	5.37
	D-2, D-4(유학생)	(23)	13.0	30.4	56.5	0.0	6.91
	귀화자	(67)	43.3	16.4	32.8	7.5	4.92
	미등록체류자	(15)	40.0	13.3	6.7	40.0	3.67
	난민	(15)	60.0	13.3	6.7	20.0	3.42
	기타 거주자	(21)	23.8	33.3	33.3	9.5	5.95
	무응답	(8)	37.5	25.0	12.5	25.0	4.83
성별	여성	(271)	36.9	20.7	35.1	7.4	5.47
	남성	(150)	38.7	27.3	25.3	8.7	5.02
	무응답	(12)	75.0	8.3	8.3	8.3	3.64
연령별	20대 이하	(147)	34.7	22.4	32.0	10.9	5.42
	30대	(194)	37.6	23.7	34.0	4.6	5.41
	40대	(53)	39.6	24.5	30.2	5.7	5.16
	50대 이상	(15)	46.7	20.0	6.7	26.7	3.45
	무응답	(24)	62.5	12.5	16.7	8.3	4.3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8.3	18.8	36.1	6.8	5.40
	전일제	(207)	40.6	23.7	28.5	7.2	5.12
	시간제	(77)	29.9	28.6	32.5	9.1	5.66
	무응답	(16)	56.3	12.5	12.5	18.8	4.08
체류 기간	1년~2년	(76)	31.6	22.4	34.2	11.8	5.58
	3년~5년	(121)	42.1	24.8	28.9	4.1	5.08
	6년~10년	(116)	40.5	19.0	33.6	6.9	5.41
	11년~15년	(68)	29.4	33.8	32.4	4.4	5.49
	16년 이상	(31)	54.8	12.9	16.1	16.1	3.92
	무응답	(21)	38.1	9.5	33.3	19.0	5.65

(3)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이 우려하는 것으로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30.3%,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39.5%였으며, 평균은 5.14점이다.(10점 만점)

〈그림 Ⅲ-3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태국’이 7.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6.72점), ‘인도네시아’(6.33점), ‘중국’(5.26점), ‘베트남’(5.23점), ‘필리핀’(3.22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5.96점으로 가장 많았고, ‘F-6(결혼이민)’(5.43점), ‘F-2(거주)’(5.33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20점), ‘귀화자’(4.71점), ‘F-5(영주)’(4.67점), ‘미등록체류자’(3.67점), ‘난민’(3.1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30점으로 ‘남성’(4.9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5.19점), ‘40대’(4.96점), ‘50대 이상’(3.36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5.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5.18점), ‘시간제’(5.03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2년’이 5.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5.23점), ‘11년-15년’(5.14점), ‘6년-10년’(5.07점), ‘16년 이상’(4.23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1〉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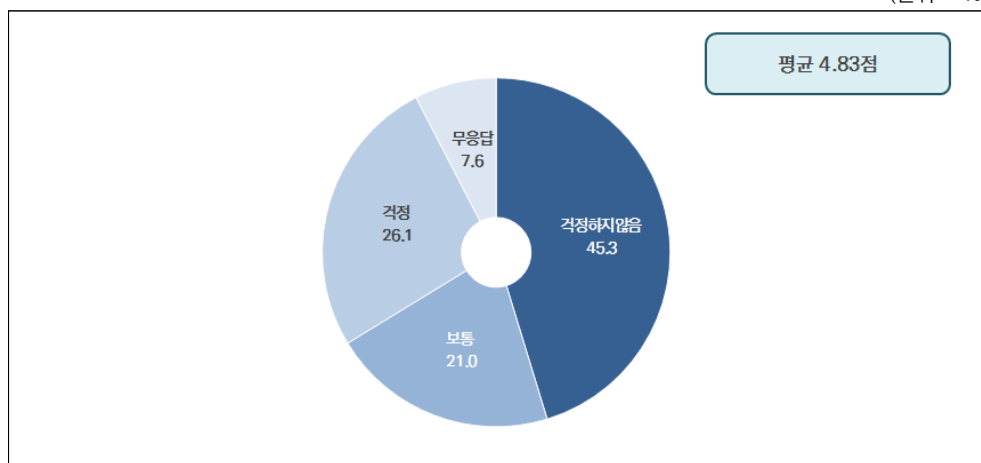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39.5	21.0	30.3	9.2	5.14	-	
출신 국가	태국	(27)	7.4	48.1	44.4	0.0	7.00	F=11.380, p=0.000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6.33	
	베트남	(144)	35.4	20.1	33.3	11.1	5.23	
	필리핀	(82)	78.0	6.1	4.9	11.0	3.22	
	캄보디아	(59)	13.6	18.6	52.5	15.3	6.72	
	중국	(64)	34.4	32.8	28.1	4.7	5.26	
	기타	(54)	42.6	22.2	29.6	5.6	4.8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5.2	25.6	28.0	11.2	5.20	F=2.303, p=0.020
	F-6(결혼이민)	(106)	42.5	16.0	34.9	6.6	5.43	
	F-5(영주)	(33)	48.5	24.2	27.3	0.0	4.67	
	F-2(거주)	(20)	30.0	35.0	25.0	10.0	5.33	
	D-2, D-4(유학생)	(23)	30.4	26.1	43.5	0.0	5.96	
	귀화자	(67)	44.8	14.9	32.8	7.5	4.71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67	
	난민	(15)	66.7	13.3	6.7	13.3	3.15	
	기타 거주자	(21)	14.3	28.6	47.6	9.5	6.53	
무응답	(8)	37.5	25.0	12.5	25.0	4.50		
성별	여성	(271)	39.5	18.8	33.6	8.1	5.30	F=1.001, p=0.318
	남성	(150)	36.7	26.7	25.3	11.3	4.98	
	무응답	(12)	75.0	0.0	16.7	8.3	3.36	
연령별	20대 이하	(147)	34.0	21.8	32.7	11.6	5.42	F=1.846, p=0.138
	30대	(194)	40.2	20.6	33.0	6.2	5.19	
	40대	(53)	41.5	26.4	24.5	7.5	4.96	
	50대 이상	(15)	40.0	26.7	6.7	26.7	3.36	
	무응답	(24)	62.5	4.2	20.8	12.5	4.24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43.6	15.8	33.8	6.8	5.29	F=0.181, p=0.834
	전일제	(207)	37.2	23.2	29.5	10.1	5.18	
	시간제	(77)	33.8	27.3	29.9	9.1	5.03	
	무응답	(16)	62.5	6.3	12.5	18.8	3.69	
체류 기간	1년~2년	(76)	32.9	21.1	30.3	15.8	5.33	F=0.750, p=0.559
	3년~5년	(121)	38.0	23.1	33.9	5.0	5.23	
	6년~10년	(116)	44.8	19.0	29.3	6.9	5.07	
	11년~15년	(68)	38.2	23.5	30.9	7.4	5.14	
	16년 이상	(31)	45.2	19.4	19.4	16.1	4.23	
	무응답	(21)	38.1	14.3	28.6	19.0	5.53	

(4)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이 우려하는 것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26.1%,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5.3%였으며, 평균은 4.83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32〉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태국’이 6.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5.82점), ‘인도네시아’(5.67점), ‘중국’(5.02점), ‘베트남’(4.88점), ‘필리핀’(3.09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 5.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5.28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03점), ‘F-6(결혼이민)’(4.98점), ‘귀화자’(4.19점), ‘F-5(영주)’(4.00점), ‘미등록체류자’(3.67점), ‘난민’(2.9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87점으로 ‘남성’(4.8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4.80점), ‘30대’(4.68점), ‘50대 이상’(3.36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4.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4.93점), ‘시간제’(4.57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년-2년’이 5.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5.16점), ‘11년-15년’(5.05점), ‘6년-10년’(4.37점), ‘16년 이상’(3.58점)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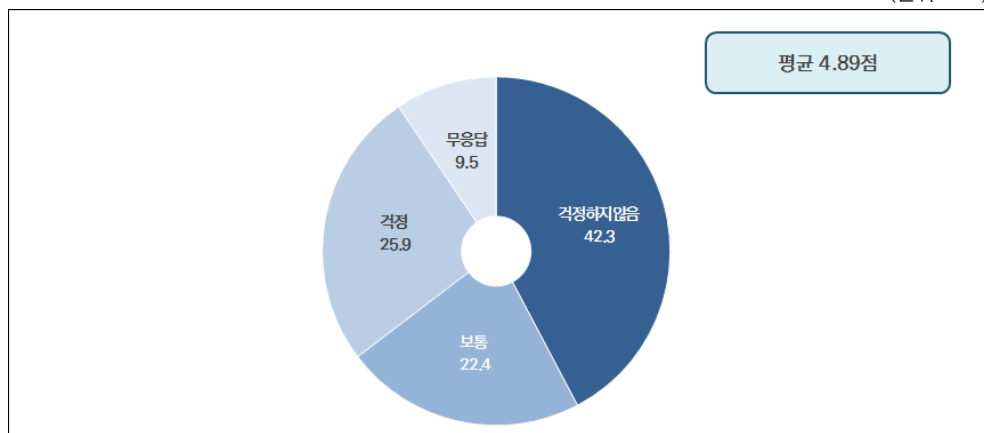
〈표 III-112〉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45.3	21.0	26.1	7.6	4.83	-	
출신 국가	태국	(27)	22.2	33.3	44.4	0.0	6.85	F=8.495, p=0.000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5.67	
	베트남	(144)	41.7	22.9	24.3	11.1	4.88	
	필리핀	(82)	78.0	7.3	4.9	9.8	3.09	
	캄보디아	(59)	32.2	16.9	44.1	6.8	5.82	
	중국	(64)	34.4	32.8	28.1	4.7	5.02	
	기타	(54)	44.4	22.2	29.6	3.7	4.7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3.2	21.6	27.2	8.0	5.03	F=2.600, p=0.009
	F-6(결혼이민)	(106)	47.2	19.8	29.2	3.8	4.98	
	F-5(영주)	(33)	54.5	30.3	15.2	0.0	4.00	
	F-2(거주)	(20)	25.0	35.0	30.0	10.0	5.28	
	D-2, D-4(유학생)	(23)	26.1	26.1	47.8	0.0	5.87	
	귀화자	(67)	56.7	14.9	20.9	7.5	4.19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67	
	난민	(15)	80.0	0.0	6.7	13.3	2.92	
	기타 거주자	(21)	19.0	33.3	38.1	9.5	6.05	
무응답	(8)	25.0	25.0	25.0	25.0	5.83		
성별	여성	(271)	45.8	20.3	26.9	7.0	4.87	F=0.007, p=0.932
	남성	(150)	42.0	24.0	25.3	8.7	4.85	
	무응답	(12)	75.0	0.0	16.7	8.3	3.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39.5	19.7	30.6	10.2	5.27	F=2.082, p=0.102
	30대	(194)	47.4	24.7	23.7	4.1	4.68	
	40대	(53)	45.3	18.9	30.2	5.7	4.80	
	50대 이상	(15)	46.7	20.0	6.7	26.7	3.36	
	무응답	(24)	62.5	4.2	20.8	12.5	4.19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45.1	18.0	30.1	6.8	4.96	F=0.475, p=0.622
	전일제	(207)	45.4	18.8	28.0	7.7	4.93	
	시간제	(77)	41.6	33.8	18.2	6.5	4.57	
	무응답	(16)	62.5	12.5	6.3	18.8	3.38	
체류 기간	1년-2년	(76)	38.2	19.7	28.9	13.2	5.30	F=2.847, p=0.024
	3년-5년	(121)	42.1	22.3	31.4	4.1	5.16	
	6년-10년	(116)	53.4	19.0	22.4	5.2	4.37	
	11년-15년	(68)	36.8	30.9	27.9	4.4	5.05	
	16년 이상	(31)	61.3	12.9	9.7	16.1	3.58	
	무응답	(21)	47.6	9.5	23.8	19.0	4.65	

(5)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의 우려하는 것으로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25.9%,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2.3%로 응답했으며, 평균은 4.89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3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태국’이 6.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6.06점), ‘중국’(5.25점), ‘베트남’(4.86점), ‘필리핀’(3.08점), ‘인도네시아’(3.00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5.70점으로 가장 높았고, ‘F-2(거주)’(5.44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10점), ‘F-6(결혼이민)’(5.07점), ‘귀화자’(4.44점), ‘F-5(영주)’(4.24점), ‘미등록체류자’(3.67점), ‘난민’(2.9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95점으로 ‘남성’(4.9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이하’(5.01점), ‘40대’(4.88점), ‘50대 이상’(3.50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4.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4.93점), ‘활동안함’(4.90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5.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5.15점), ‘1년-2년’(4.89점), ‘6년-10년’(4.81점), ‘16년 이상’(3.81점)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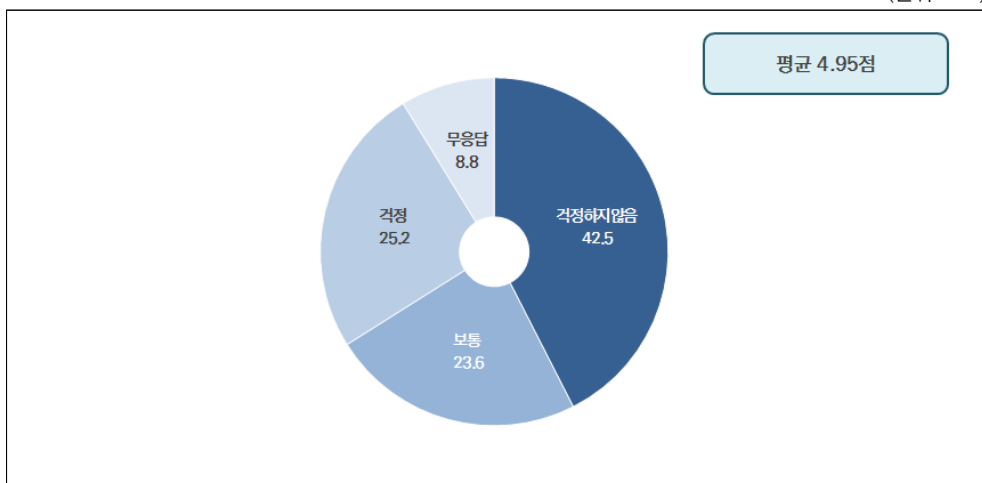
〈표 III-113〉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의 유입증가로 한국인의 고용악화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42.3	22.4	25.9	9.5	4.89	-	
출신 국가	태국	(27)	22.2	33.3	44.4	0.0	6.48	F=8.714, p=0.000
	인도네시아	(3)	100.0	0.0	0.0	0.0	3.00	
	베트남	(144)	38.9	22.2	25.0	13.9	4.86	
	필리핀	(82)	78.0	7.3	4.9	9.8	3.08	
	캄보디아	(59)	22.0	27.1	42.4	8.5	6.06	
	중국	(64)	32.8	32.8	29.7	4.7	5.25	
	기타	(54)	37.0	24.1	29.6	9.3	5.1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8.4	24.0	26.4	11.2	5.10	F=1.746, p=0.086
	F-6(결혼이민)	(106)	45.3	22.6	27.4	4.7	5.07	
	F-5(영주)	(33)	57.6	24.2	18.2	0.0	4.24	
	F-2(거주)	(20)	30.0	25.0	35.0	10.0	5.44	
	D-2, D-4(유학생)	(23)	30.4	30.4	39.1	0.0	5.70	
	귀화자	(67)	44.8	19.4	28.4	7.5	4.44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67	
	난민	(15)	60.0	20.0	0.0	20.0	2.92	
	기타 거주자	(21)	33.3	19.0	28.6	19.0	5.35	
무응답	(8)	25.0	25.0	25.0	25.0	5.83		
성별	여성	(271)	43.2	21.0	28.0	7.7	4.95	F=0.021, p=0.884
	남성	(150)	38.0	26.7	23.3	12.0	4.90	
	무응답	(12)	75.0	0.0	8.3	16.7	3.20	
연령별	20대 이하	(147)	39.5	22.4	27.2	10.9	5.01	F=0.857, p=0.463
	30대	(194)	40.7	24.7	27.8	6.7	5.02	
	40대	(53)	47.2	20.8	26.4	5.7	4.88	
	50대 이상	(15)	33.3	26.7	6.7	33.3	3.50	
	무응답	(24)	66.7	4.2	12.5	16.7	3.6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43.6	19.5	27.1	9.8	4.90	F=0.013, p=0.987
	전일제	(207)	42.0	21.7	27.1	9.2	4.93	
	시간제	(77)	36.4	32.5	23.4	7.8	4.97	
	무응답	(16)	62.5	6.3	12.5	18.8	3.77	
체류 기간	1년-2년	(76)	40.8	19.7	22.4	17.1	4.89	F=1.265, p=0.283
	3년-5년	(121)	37.2	28.1	28.9	5.8	5.15	
	6년-10년	(116)	48.3	19.0	25.9	6.9	4.81	
	11년-15년	(68)	38.2	22.1	33.8	5.9	5.17	
	16년 이상	(31)	41.9	29.0	12.9	16.1	3.81	
	무응답	(21)	57.1	9.5	14.3	19.0	4.24	

(6)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이 우려하는 것으로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25.2%,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2.5%로 응답했으며, 평균은 4.95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34〉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 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국’(5.56점), ‘중국’(5.54점), ‘베트남’(5.14점), ‘필리핀’(3.15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5.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5.87점), ‘F-6(결혼이민)’(5.06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95점), ‘F-5(영주)’(4.88점), ‘귀화자’(4.68점), ‘난민’(3.08점), ‘미등록체류자’(3.00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02점으로 ‘여성’(4.9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4.88점), ‘30대’(4.84점), ‘50대 이상’(3.60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5.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4.96점), ‘시간제’(4.93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3년-5년’이 5.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26점), ‘1년-2년’(4.80점), ‘6년-10년’(4.75점), ‘16년 이상’(3.46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4〉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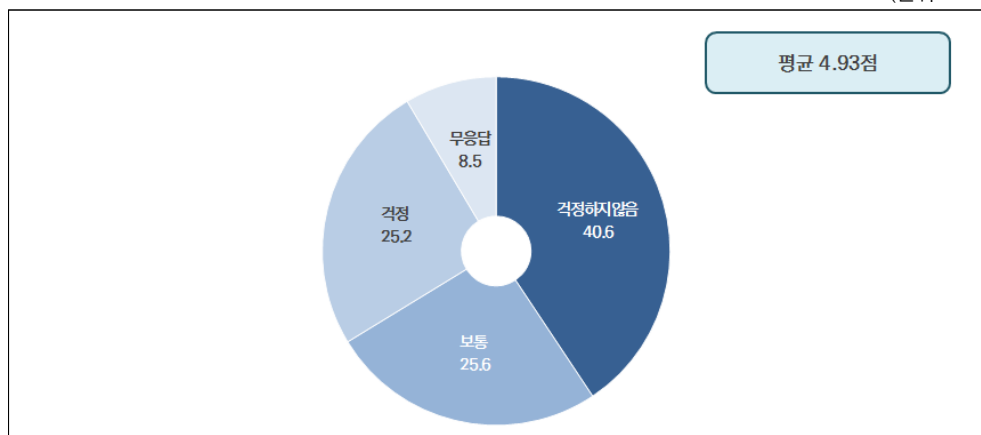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42.5	23.6	25.2	8.8	4.95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51.9	29.6	0.0	5.56	F=7.766, p=0.000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6.00	
	베트남	(144)	40.3	20.1	27.8	11.8	5.14	
	필리핀	(82)	76.8	7.3	4.9	11.0	3.15	
	캄보디아	(59)	23.7	30.5	37.3	8.5	6.00	
	중국	(64)	32.8	32.8	29.7	4.7	5.54	
	기타	(54)	40.7	24.1	27.8	7.4	4.8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8.4	28.0	22.4	11.2	4.95	F=2.127, p=0.033
	F-6(결혼이민)	(106)	49.1	18.9	28.3	3.8	5.06	
	F-5(영주)	(33)	48.5	27.3	24.2	0.0	4.88	
	F-2(거주)	(20)	25.0	20.0	45.0	10.0	5.89	
	D-2, D-4(유학생)	(23)	30.4	34.8	34.8	0.0	5.87	
	귀화자	(67)	47.8	19.4	25.4	7.5	4.68	
	미등록체류자	(15)	46.7	13.3	0.0	40.0	3.00	
	난민	(15)	53.3	26.7	0.0	20.0	3.08	
	기타 거주자	(21)	28.6	23.8	38.1	9.5	5.84	
무응답	(8)	37.5	25.0	12.5	25.0	4.17		
성별	여성	(271)	44.6	20.7	27.3	7.4	4.98	F=0.013, p=0.908
	남성	(150)	36.0	30.7	22.0	11.3	5.02	
	무응답	(12)	75.0	0.0	16.7	8.3	3.64	
연령별	20대 이하	(147)	37.4	24.5	27.2	10.9	5.30	F=1.539, p=0.204
	30대	(194)	45.4	24.2	25.3	5.2	4.84	
	40대	(53)	43.4	24.5	26.4	5.7	4.88	
	50대 이상	(15)	33.3	26.7	6.7	33.3	3.60	
	무응답	(24)	54.2	8.3	20.8	16.7	4.6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44.4	18.0	30.1	7.5	5.11	F=0.142, p=0.868
	전일제	(207)	40.6	25.6	24.6	9.2	4.96	
	시간제	(77)	40.3	29.9	22.1	7.8	4.93	
	무응답	(16)	62.5	12.5	6.3	18.8	3.54	
체류 기간	1년-2년	(76)	42.1	22.4	21.1	14.5	4.80	F=2.980, p=0.019
	3년-5년	(121)	38.0	25.6	31.4	5.0	5.39	
	6년-10년	(116)	47.4	21.6	24.1	6.9	4.75	
	11년-15년	(68)	36.8	27.9	30.9	4.4	5.26	
	16년 이상	(31)	54.8	22.6	6.5	16.1	3.46	
	무응답	(21)	42.9	14.3	19.0	23.8	5.00	

(7) 이주민 범죄의 증가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이 우려하는 것으로 ‘이주민 범죄의 증가’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25.2%,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0.6%로 응답했으며, 평균은 4.93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35〉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7.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6.22점), ‘베트남’(5.37점), ‘중국’(4.93점), ‘태국’(4.74점), ‘필리핀’(3.19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5.91점으로 가장 높았고, ‘F-2(거주)’(5.89점), ‘F-6(결혼이민)’(5.29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5.01점), ‘귀화자’(4.48점), ‘F-5(영주)’(4.22점), ‘미등록체류자’(3.44점), ‘난민’(2.7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97점으로 ‘남성’(4.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4.94점), ‘40대’(4.38점), ‘50대 이상’(3.80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5.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5.06점), ‘전일제’(4.86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3년-5년’이 5.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5.05점), ‘1년-2년’(4.88점), ‘6년-10년’(4.82점), ‘16년 이상’(3.27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5〉 [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범죄의 증가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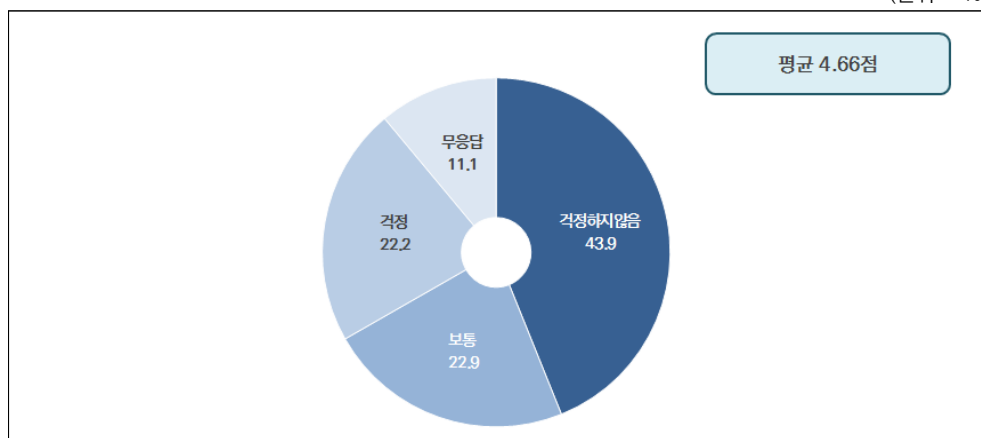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40.6	25.6	25.2	8.5	4.93	-	
출신 국가	태국	(27)	25.9	70.4	3.7	0.0	4.74	F=8.195,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7.00	
	베트남	(144)	35.4	20.1	33.3	11.1	5.37	
	필리핀	(82)	73.2	13.4	3.7	9.8	3.19	
	캄보디아	(59)	22.0	25.4	45.8	6.8	6.22	
	중국	(64)	40.6	31.3	21.9	6.3	4.93	
	기타	(54)	35.2	29.6	25.9	9.3	4.92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8.4	28.0	24.8	8.8	5.01	F=2.532, p=0.011
	F-6(결혼이민)	(106)	41.5	22.6	32.1	3.8	5.29	
	F-5(영주)	(33)	57.6	24.2	15.2	3.0	4.22	
	F-2(거주)	(20)	25.0	25.0	40.0	10.0	5.89	
	D-2, D-4(유학생)	(23)	21.7	43.5	34.8	0.0	5.91	
	귀화자	(67)	47.8	20.9	23.9	7.5	4.48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44	
	난민	(15)	60.0	13.3	0.0	26.7	2.73	
	기타 거주자	(21)	23.8	38.1	28.6	9.5	5.32	
무응답	(8)	25.0	50.0	0.0	25.0	3.83		
성별	여성	(271)	41.7	23.6	26.9	7.7	4.97	F=0.006, p=0.937
	남성	(150)	36.0	31.3	22.7	10.0	4.95	
	무응답	(12)	75.0	0.0	16.7	8.3	3.64	
연령별	20대 이하	(147)	33.3	27.2	28.6	10.9	5.30	F=1.890, p=0.131
	30대	(194)	43.3	25.8	25.8	5.2	4.94	
	40대	(53)	47.2	26.4	20.8	5.7	4.38	
	50대 이상	(15)	26.7	33.3	6.7	33.3	3.80	
	무응답	(24)	58.3	8.3	20.8	12.5	4.3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40.6	21.8	30.1	7.5	5.11	F=0.319, p=0.727
	전일제	(207)	41.5	26.6	23.7	8.2	4.86	
	시간제	(77)	33.8	32.5	24.7	9.1	5.06	
	무응답	(16)	62.5	12.5	6.3	18.8	3.54	
체류 기간	1년-2년	(76)	40.8	22.4	21.1	15.8	4.88	F=2.997, p=0.019
	3년-5년	(121)	34.7	28.9	32.2	4.1	5.34	
	6년-10년	(116)	44.0	23.3	25.9	6.9	4.82	
	11년-15년	(68)	39.7	30.9	25.0	4.4	5.05	
	16년 이상	(31)	51.6	25.8	6.5	16.1	3.27	
	무응답	(21)	42.9	14.3	23.8	19.0	5.06	

(8)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응답자는 이주민 기본권 보장시 한국인의 우려하는 것으로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에 대해 '걱정한다'는 인식은 22.2%, '걱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43.9%였으며, 평균은 4.66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II-3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단위 : %)



※걱정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걱정:⑦+⑧+⑨+⑩

출신국가별로는 '태국'이 6.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6.33점), '캄보디아'(5.40점), '중국'(4.82점), '베트남'(4.56점), '필리핀'(3.31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5.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5.50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88점), 'F-6(결혼이민)'(4.51점), 'F-5(영주)'(4.24점), '귀화자'(4.15점), '미등록체류자'(3.78점), '난민'(3.25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72점으로 '여성'(4.6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4.8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4.69점), '40대'(4.16점), '50대 이상'(3.70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4.9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일제'(4.70점), '활동안함'(4.55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4.8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4.81점), '11년-15년'(4.68점), '1년-2년'(4.59점), '16년 이상'(2.96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6〉 [이주민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이주민 소득의 자국송금으로 외화유출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걱정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걱정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43.9	22.9	22.2	11.1	4.66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40.7	40.7	0.0	6.74	F=6.262,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6.33	
	베트남	(144)	41.7	22.2	20.1	16.0	4.56	
	필리핀	(82)	70.7	12.2	4.9	12.2	3.31	
	캄보디아	(59)	32.2	20.3	40.7	6.8	5.40	
	중국	(64)	43.8	26.6	25.0	4.7	4.82	
	기타	(54)	37.0	29.6	18.5	14.8	4.65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0	25.6	23.2	11.2	4.88	F=1.805, p=0.075
	F-6(결혼이민)	(106)	50.0	19.8	21.7	8.5	4.51	
	F-5(영주)	(33)	57.6	24.2	18.2	0.0	4.24	
	F-2(거주)	(20)	30.0	25.0	35.0	10.0	5.83	
	D-2, D-4(유학생)	(23)	21.7	39.1	26.1	13.0	5.50	
	귀화자	(67)	50.7	16.4	23.9	9.0	4.15	
	미등록체류자	(15)	46.7	6.7	6.7	40.0	3.78	
	난민	(15)	60.0	13.3	6.7	20.0	3.25	
	기타 거주자	(21)	23.8	38.1	23.8	14.3	5.67	
무응답	(8)	25.0	25.0	25.0	25.0	5.67		
성별	여성	(271)	46.5	19.9	24.0	9.6	4.64	F=0.064, p=0.800
	남성	(150)	37.3	29.3	19.3	14.0	4.72	
	무응답	(12)	66.7	8.3	16.7	8.3	4.55	
연령별	20대 이하	(147)	38.1	22.4	23.1	16.3	4.89	F=1.114, p=0.343
	30대	(194)	45.4	25.3	23.2	6.2	4.69	
	40대	(53)	50.9	22.6	18.9	7.5	4.16	
	50대 이상	(15)	33.3	26.7	6.7	33.3	3.70	
	무응답	(24)	58.3	4.2	25.0	12.5	4.81	
경제 활동 여부	활동인함	(133)	45.1	21.1	21.8	12.0	4.55	F=0.482, p=0.618
	전일제	(207)	44.0	24.2	22.2	9.7	4.70	
	시간제	(77)	36.4	24.7	27.3	11.7	4.99	
	무응답	(16)	68.8	12.5	0.0	18.8	3.62	
체류 기간	1년-2년	(76)	46.1	19.7	18.4	15.8	4.59	F=2.303, p=0.058
	3년-5년	(121)	39.7	27.3	24.8	8.3	4.81	
	6년-10년	(116)	44.0	22.4	26.7	6.9	4.84	
	11년-15년	(68)	45.6	25.0	22.1	7.4	4.68	
	16년 이상	(31)	54.8	19.4	3.2	22.6	2.96	
	무응답	(21)	38.1	9.5	23.8	28.6	5.27	

3)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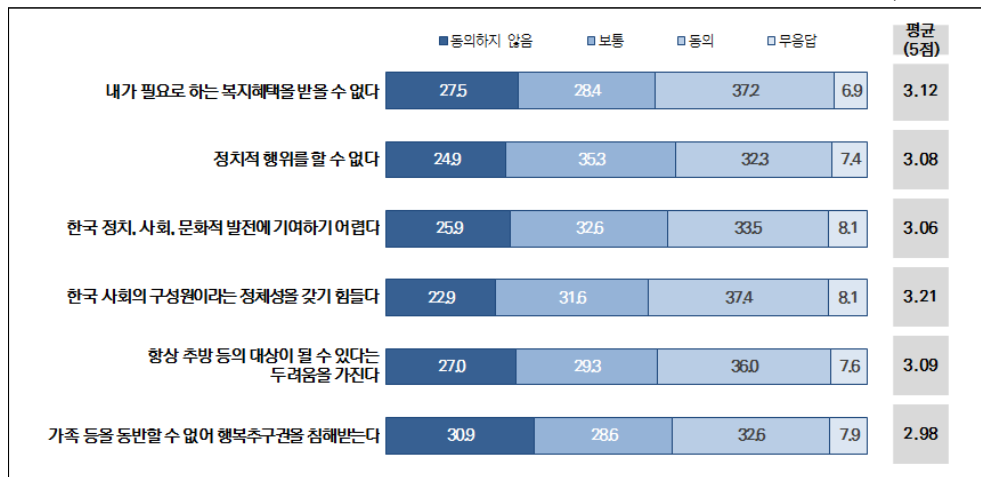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37.4%,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37.2%,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36.0%,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33.5%,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 32.6%,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32.3%로 나타났다.

동의 정도를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3.12점,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3.09점,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3.08점,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3.06점,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 2.9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혜택이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 외에도, 이주민이 가지는 공포 중 하나는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는 가족동반 불허 등과 같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보다 그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3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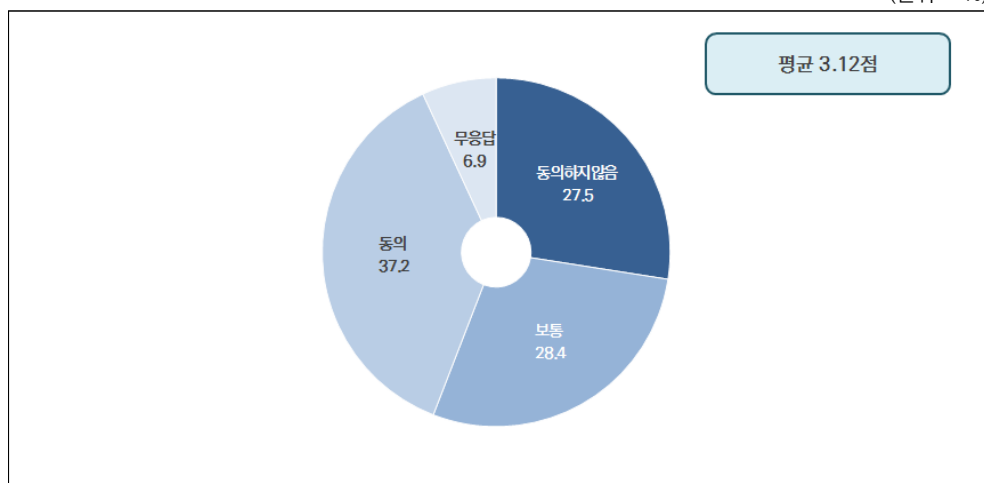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2)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7.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27.5%였으며, 평균은 3.12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3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67점), '캄보디아'(3.23점), '베트남'(3.04점), '태국'(2.89점), '필리핀'(2.85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 보면 'D-2, D-4(유학생)'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3.64점), 'F-2(거주)'(3.50점), 'F-6(결혼이민)'(3.2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98점), '귀화자'(2.87점), '미등록체류자'(2.67점), '난민'(2.50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21점으로 '남성'(2.9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48점), '20대 이하'(3.06점), '30대'(3.05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15점), '전일제'(3.07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3.15점), '3년-5년'(3.09점), '16년 이상'(3.08점), '1년-2년'(3.06점) 등의 순이다.

〈표 Ⅲ-117〉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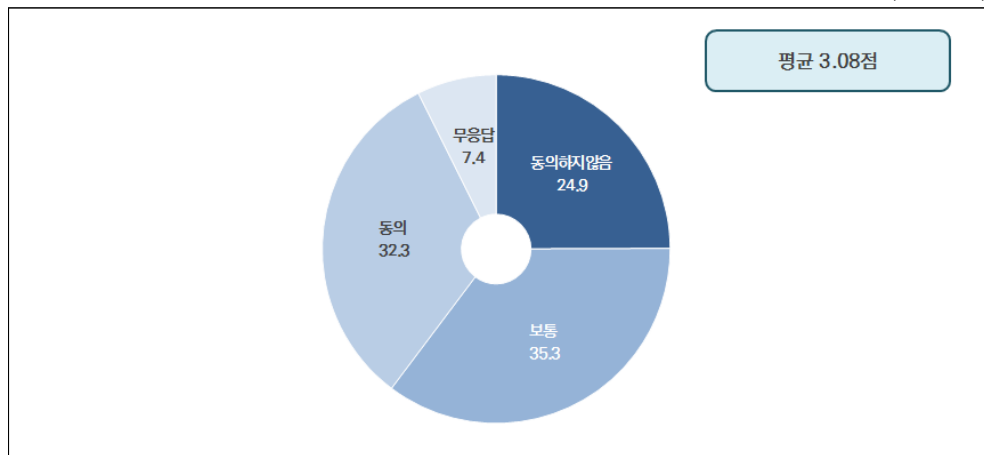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7.5	28.4	37.2	6.9	3.12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63.0	18.5	0.0	2.89	F=3.740, p=0.001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3.67	
	베트남	(144)	31.9	25.0	34.7	8.3	3.04	
	필리핀	(82)	34.1	15.9	39.0	11.0	2.85	
	캄보디아	(59)	20.3	39.0	37.3	3.4	3.23	
	중국	(64)	12.5	28.1	54.7	4.7	3.80	
	기타	(54)	37.0	27.8	27.8	7.4	2.8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8.0	32.8	32.0	7.2	2.98	F=2.481, p=0.012
	F-6(결혼이민)	(106)	27.4	28.3	40.6	3.8	3.21	
	F-5(영주)	(33)	18.2	33.3	48.5	0.0	3.64	
	F-2(거주)	(20)	25.0	15.0	60.0	0.0	3.50	
	D-2, D-4(유학생)	(23)	13.0	17.4	69.6	0.0	3.78	
	귀화자	(67)	38.8	19.4	35.8	6.0	2.87	
	미등록체류자	(15)	20.0	26.7	13.3	40.0	2.67	
	난민	(15)	40.0	26.7	13.3	20.0	2.50	
	기타 거주자	(21)	23.8	42.9	19.0	14.3	2.83	
무응답	(8)	12.5	50.0	25.0	12.5	3.14		
성별	여성	(271)	26.6	26.6	40.6	6.3	3.21	F=2.810, p=0.094
	남성	(150)	29.3	32.7	31.3	6.7	2.97	
	무응답	(12)	25.0	16.7	33.3	25.0	2.89	
연령별	20대 이하	(147)	28.6	28.6	34.7	8.2	3.06	F=2.225, p=0.085
	30대	(194)	30.4	30.4	35.6	3.6	3.05	
	40대	(53)	18.9	26.4	49.1	5.7	3.48	
	50대 이상	(15)	13.3	0.0	53.3	33.3	3.80	
	무응답	(24)	25.0	33.3	29.2	12.5	3.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9.3	19.5	42.1	9.0	3.21	F=0.408, p=0.665
	전일제	(207)	27.1	33.3	34.8	4.8	3.07	
	시간제	(77)	26.0	32.5	35.1	6.5	3.15	
	무응답	(16)	25.0	18.8	37.5	18.8	3.00	
체류 기간	1년~2년	(76)	26.3	28.9	32.9	11.8	3.06	F=0.131, p=0.971
	3년~5년	(121)	27.3	31.4	37.2	4.1	3.09	
	6년~10년	(116)	27.6	26.7	39.7	6.0	3.19	
	11년~15년	(68)	29.4	30.9	38.2	1.5	3.15	
	16년 이상	(31)	25.8	19.4	38.7	16.1	3.08	
	무응답	(21)	28.6	23.8	33.3	14.3	3.06	

(3)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집회·시위, 정치적 표현, 투표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2.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24.9%였으며, 평균은 3.08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3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56점), '베트남'(3.21점), '캄보디아'(2.95점), '태국'(2.85점), '필리핀'(2.64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D-2, D-4(유학생)'(3.57점), 'F-5(영주)'(3.42점), 'F-6(결혼이민)'(3.28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85점), '귀화자'(2.81점), '난민'(2.58점), '미등록체류자'(2.56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14점으로 '남성'(2.9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12점), '20대 이하'(3.07점), '30대'(3.03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30점), '전일제'(2.88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5년', '6년-10년'(각 3.09점), '1년-2년'(2.98점), '16년 이상'(2.69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8〉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장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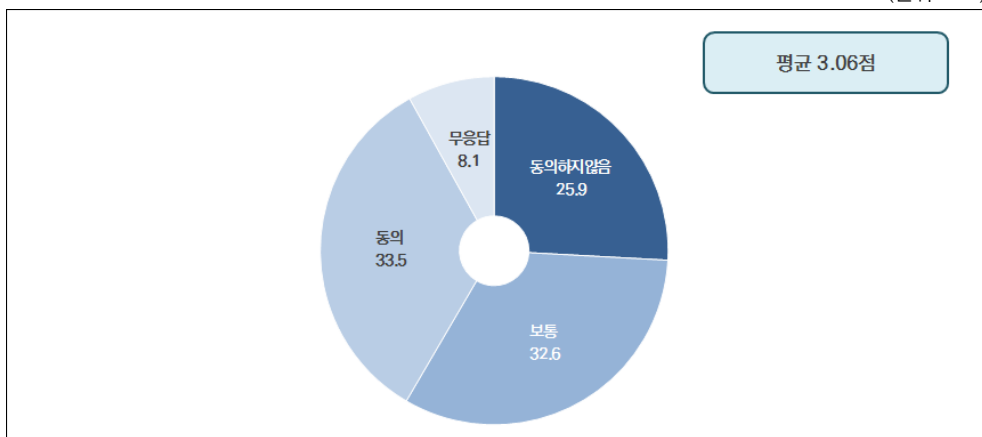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4.9	35.3	32.3	7.4	3.08	-	
출신 국가	태국	(27)	18.5	66.7	14.8	0.0	2.85	F=3.629, p=0.002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4.00	
	베트남	(144)	19.4	40.3	31.3	9.0	3.21	
	필리핀	(82)	39.0	24.4	25.6	11.0	2.64	
	캄보디아	(59)	28.8	33.9	30.5	6.8	2.95	
	중국	(64)	14.1	29.7	51.6	4.7	3.56	
	기타	(54)	29.6	33.3	31.5	5.6	3.0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8.0	43.2	21.6	7.2	2.85	F=2.717, p=0.006
	F-6(결혼이민)	(106)	22.6	33.0	39.6	4.7	3.28	
	F-5(영주)	(33)	12.1	42.4	45.5	0.0	3.42	
	F-2(거주)	(20)	15.0	20.0	60.0	5.0	3.63	
	D-2, D-4(유학생)	(23)	21.7	26.1	52.2	0.0	3.57	
	귀화자	(67)	35.8	28.4	29.9	6.0	2.81	
	미등록체류자	(15)	20.0	33.3	6.7	40.0	2.56	
	난민	(15)	33.3	33.3	13.3	20.0	2.58	
	기타 거주자	(21)	19.0	33.3	33.3	14.3	3.22	
무응답	(8)	12.5	50.0	25.0	12.5	3.14		
성별	여성	(271)	24.4	33.6	35.8	6.3	3.14	F=1.127, p=0.289
	남성	(150)	26.0	39.3	26.7	8.0	2.99	
	무응답	(12)	25.0	25.0	25.0	25.0	3.00	
연령별	20대 이하	(147)	25.9	37.4	27.9	8.8	3.07	F=1.446, p=0.229
	30대	(194)	26.3	36.6	33.5	3.6	3.03	
	40대	(53)	24.5	34.0	35.8	5.7	3.12	
	50대 이상	(15)	6.7	13.3	46.7	33.3	3.90	
	무응답	(24)	20.8	29.2	33.3	16.7	3.2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2.6	28.6	39.8	9.0	3.31	F=5.284, p=0.005
	전일제	(207)	29.5	39.1	25.1	6.3	2.88	
	시간제	(77)	16.9	36.4	41.6	5.2	3.30	
	무응답	(16)	25.0	37.5	18.8	18.8	2.85	
체류 기간	1년~2년	(76)	21.1	42.1	22.4	14.5	2.98	F=0.973, p=0.422
	3년~5년	(121)	25.6	36.4	33.9	4.1	3.09	
	6년~10년	(116)	26.7	31.9	36.2	5.2	3.09	
	11년~15년	(68)	22.1	32.4	42.6	2.9	3.26	
	16년 이상	(31)	32.3	35.5	16.1	16.1	2.69	
	무응답	(21)	23.8	33.3	28.6	14.3	3.28	

(4)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3.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25.9%였으며, 평균은 3.06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48점), '베트남'(3.19점), '태국'(3.11점), '캄보디아'(2.84점), '필리핀'(2.71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3.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3.36점), 'D-2, D-4(유학생)'(3.35점), 'F-6(결혼이민)'(3.32점), '귀화자'(2.89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69점), '미등록체류자'(2.67점), '난민'(2.58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17점으로 '남성'(2.8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29점), '20대 이하'(3.10점), '30대'(2.95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17점), '전일제'(2.91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3.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14점), '3년-5년'(3.10점), '1년-2년'(2.94점), '16년 이상'(2.69점) 등의 순이다.

〈표 III-119〉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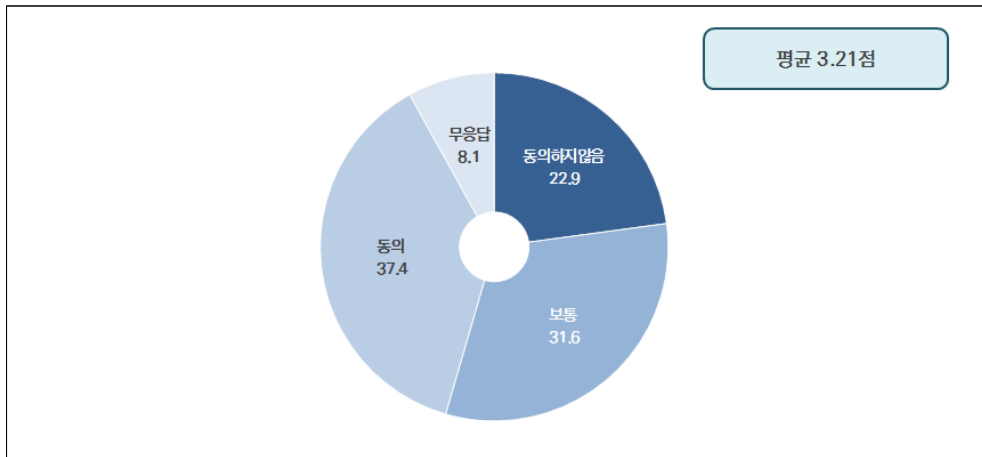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5.9	32.6	33.5	8.1	3.06	-	
출신 국가	태국	(27)	14.8	51.9	33.3	0.0	3.11	F=2.498, p=0.022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3.67	
	베트남	(144)	22.9	29.9	36.8	10.4	3.19	
	필리핀	(82)	34.1	29.3	25.6	11.0	2.71	
	캄보디아	(59)	28.8	42.4	22.0	6.8	2.84	
	중국	(64)	17.2	31.3	46.9	4.7	3.48	
	기타	(54)	33.3	27.8	31.5	7.4	2.9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3.6	36.0	21.6	8.8	2.69	F=2.771, p=0.005
	F-6(결혼이민)	(106)	19.8	33.0	40.6	6.6	3.32	
	F-5(영주)	(33)	15.2	45.5	39.4	0.0	3.36	
	F-2(거주)	(20)	20.0	30.0	50.0	0.0	3.40	
	D-2, D-4(유학생)	(23)	26.1	17.4	56.5	0.0	3.35	
	귀화자	(67)	34.3	26.9	32.8	6.0	2.89	
	미등록체류자	(15)	20.0	26.7	13.3	40.0	2.67	
	난민	(15)	33.3	33.3	13.3	20.0	2.58	
	기타 거주자	(21)	14.3	28.6	42.9	14.3	3.44	
무응답	(8)	0.0	37.5	50.0	12.5	4.00		
성별	여성	(271)	23.2	32.5	37.3	7.0	3.17	F=5.652, p=0.018
	남성	(150)	32.0	32.0	27.3	8.7	2.84	
	무응답	(12)	8.3	41.7	25.0	25.0	3.33	
연령별	20대 이하	(147)	25.9	29.3	36.1	8.8	3.10	F=1.659, p=0.176
	30대	(194)	28.4	36.1	30.4	5.2	2.95	
	40대	(53)	20.8	30.2	41.5	7.5	3.29	
	50대 이상	(15)	13.3	13.3	40.0	33.3	3.70	
	무응답	(24)	25.0	41.7	20.8	12.5	3.0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5.6	21.8	42.9	9.8	3.25	F=2.641, p=0.073
	전일제	(207)	29.5	34.8	29.0	6.8	2.91	
	시간제	(77)	18.2	42.9	32.5	6.5	3.17	
	무응답	(16)	18.8	43.8	18.8	18.8	3.00	
체류 기간	1년~2년	(76)	25.0	34.2	27.6	13.2	2.94	F=0.817, p=0.515
	3년~5년	(121)	28.1	28.9	38.0	5.0	3.10	
	6년~10년	(116)	22.4	34.5	36.2	6.9	3.14	
	11년~15년	(68)	23.5	36.8	35.3	4.4	3.15	
	16년 이상	(31)	35.5	29.0	19.4	16.1	2.69	
	무응답	(21)	28.6	28.6	28.6	14.3	3.06	

(5)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7.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22.9%였으며, 평균은 3.21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Ⅲ-4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67점), '태국'(3.52점), '베트남'(3.20점), '캄보디아'(3.09점), '필리핀'(2.81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 'F-2(거주)'(각 3.53점), 'F-6(결혼이민)'(3.38점), '귀화자'(3.03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97점), '미등록체류자'(2.67점), '난민'(2.46점) 등의 순이다.

2성별로는 '여성'이 3.30점으로 '남성'(3.03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65점), '20대 이하'(3.19점), '30대'(3.07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27점), '전일제'(3.11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24점), '3년-5년'(3.18점), '1년-2년'(3.12점), '16년 이상'(3.04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0〉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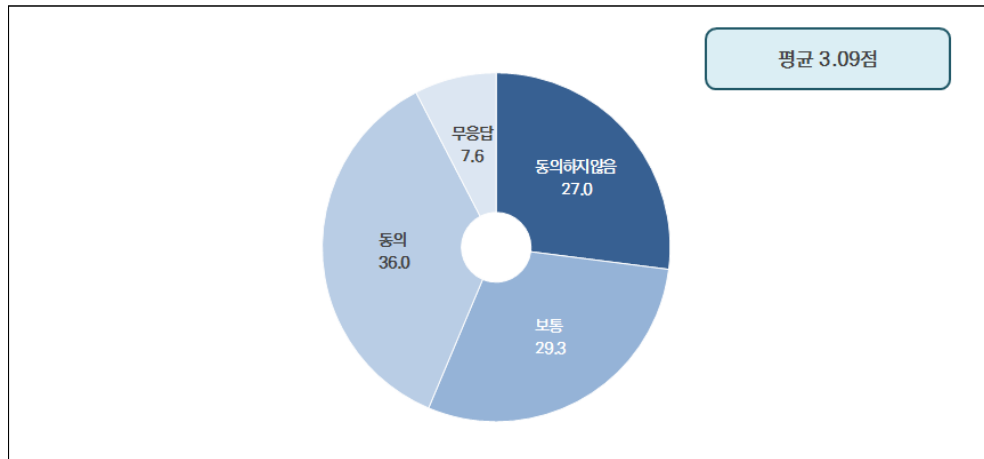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2.9	31.6	37.4	8.1	3.21	-	
출신 국가	태국	(27)	7.4	37.0	55.6	0.0	3.52	F=3.677, p=0.001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3.67	
	베트남	(144)	22.2	34.7	34.0	9.0	3.20	
	필리핀	(82)	34.1	23.2	31.7	11.0	2.81	
	캄보디아	(59)	22.0	35.6	32.2	10.2	3.09	
	중국	(64)	12.5	25.0	56.3	6.3	3.78	
	기타	(54)	29.6	35.2	29.6	5.6	3.0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7.2	34.4	30.4	8.0	2.97	F=2.433, p=0.014
	F-6(결혼이민)	(106)	20.8	31.1	41.5	6.6	3.38	
	F-5(영주)	(33)	12.1	42.4	42.4	3.0	3.53	
	F-2(거주)	(20)	20.0	20.0	55.0	5.0	3.53	
	D-2, D-4(유학생)	(23)	13.0	34.8	52.2	0.0	3.61	
	귀화자	(67)	31.3	22.4	40.3	6.0	3.03	
	미등록체류자	(15)	20.0	26.7	13.3	40.0	2.67	
	난민	(15)	33.3	40.0	13.3	13.3	2.46	
	기타 거주자	(21)	9.5	38.1	38.1	14.3	3.56	
무응답	(8)	12.5	25.0	50.0	12.5	3.71		
성별	여성	(271)	21.8	29.9	40.6	7.7	3.30	F=3.674, p=0.056
	남성	(150)	26.0	34.7	32.0	7.3	3.03	
	무응답	(12)	8.3	33.3	33.3	25.0	3.44	
연령별	20대 이하	(147)	19.0	38.1	34.0	8.8	3.19	F=3.011, p=0.030
	30대	(194)	29.4	29.9	36.1	4.6	3.07	
	40대	(53)	15.1	22.6	52.8	9.4	3.65	
	50대 이상	(15)	13.3	13.3	46.7	26.7	3.73	
	무응답	(24)	16.7	37.5	29.2	16.7	3.2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3.3	26.3	40.6	9.8	3.33	F=1.107, p=0.332
	전일제	(207)	24.6	32.4	36.7	6.3	3.11	
	시간제	(77)	18.2	37.7	36.4	7.8	3.27	
	무응답	(16)	18.8	37.5	25.0	18.8	3.08	
체류 기간	1년-2년	(76)	19.7	38.2	28.9	13.2	3.12	F=0.284, p=0.888
	3년-5년	(121)	24.8	33.1	37.2	5.0	3.18	
	6년-10년	(116)	23.3	28.4	40.5	7.8	3.24	
	11년-15년	(68)	22.1	29.4	45.6	2.9	3.30	
	16년 이상	(31)	29.0	19.4	35.5	16.1	3.04	
	무응답	(21)	14.3	42.9	28.6	14.3	3.33	

(6)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6.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27.0%였으며, 평균은 3.09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Ⅲ-4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33점), '베트남'(3.19점), '캄보디아'(3.06점), '필리핀'(2.83점), '태국'(2.33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D-2, D-4(유학생)'(3.39점), 'F-5(영주)'(3.33점), 'F-6(결혼이민)'(3.25점), '귀화자'(3.10점), '난민'(2.86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83점), '미등록체류자'(2.44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17점으로 '남성'(2.9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47점), '20대 이하'(3.16점), '30대'(2.89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3.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13점), '전일제'(2.97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11점), '3년-5년', '1년-2년'(각 3.06점), '11년-15년'(2.95점) 등의 순이다.

〈표 Ⅲ-121〉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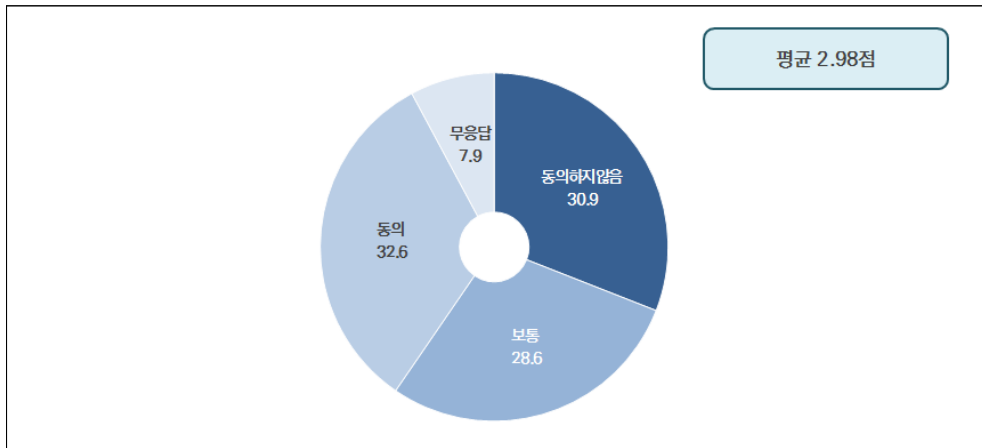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7.0	29.3	36.0	7.6	3.09	-	
출신 국가	태국	(27)	55.6	14.8	29.6	0.0	2.33	F=3.047, p=0.006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3.33	
	베트남	(144)	22.9	34.0	34.7	8.3	3.19	
	필리핀	(82)	36.6	18.3	32.9	12.2	2.83	
	캄보디아	(59)	18.6	42.4	28.8	10.2	3.06	
	중국	(64)	15.6	29.7	50.0	4.7	3.56	
	기타	(54)	31.5	27.8	37.0	3.7	3.0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2.0	31.2	28.0	8.8	2.83	F=1.467, p=0.168
	F-6(결혼이민)	(106)	21.7	34.0	39.6	4.7	3.25	
	F-5(영주)	(33)	24.2	36.4	39.4	0.0	3.33	
	F-2(거주)	(20)	15.0	30.0	50.0	5.0	3.53	
	D-2, D-4(유학생)	(23)	26.1	17.4	56.5	0.0	3.39	
	귀화자	(67)	28.4	25.4	38.8	7.5	3.10	
	미등록체류자	(15)	26.7	20.0	13.3	40.0	2.44	
	난민	(15)	40.0	20.0	33.3	6.7	2.86	
	기타 거주자	(21)	28.6	23.8	33.3	14.3	2.89	
무응답	(8)	25.0	25.0	37.5	12.5	3.29		
성별	여성	(271)	25.5	28.4	39.1	7.0	3.17	F=3.068, p=0.081
	남성	(150)	31.3	30.0	31.3	7.3	2.91	
	무응답	(12)	8.3	41.7	25.0	25.0	3.33	
연령별	20대 이하	(147)	22.4	32.0	36.7	8.8	3.16	F=2.887, p=0.036
	30대	(194)	34.5	28.9	32.5	4.1	2.89	
	40대	(53)	22.6	18.9	50.9	7.5	3.47	
	50대 이상	(15)	13.3	20.0	40.0	26.7	3.55	
	무응답	(24)	12.5	45.8	25.0	16.7	3.2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27.8	27.1	36.8	8.3	3.13	F=1.135, p=0.322
	전일제	(207)	30.0	29.5	33.8	6.8	2.97	
	시간제	(77)	22.1	29.9	41.6	6.5	3.25	
	무응답	(16)	6.3	43.8	31.3	18.8	3.46	
체류 기간	1년-2년	(76)	23.7	31.6	32.9	11.8	3.06	F=0.261, p=0.903
	3년-5년	(121)	26.4	33.9	34.7	5.0	3.06	
	6년-10년	(116)	29.3	24.1	39.7	6.9	3.11	
	11년-15년	(68)	30.9	32.4	33.8	2.9	2.95	
	16년 이상	(31)	25.8	19.4	38.7	16.1	3.27	
	무응답	(21)	19.0	28.6	38.1	14.3	3.44	

(7)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인식은 32.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30.9%였으며, 평균은 2.98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Ⅲ-43〉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

(단위 : %)



※동의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동의: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2.99점), '필리핀'(2.94점), '캄보디아'(2.87점), '인도네시아'(2.67점), '태국'(2.00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2(거주)'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3.24점), 'D-2, D-4(유학생)'(3.14점), 'F-6(결혼이민)'(3.11점), '난민'(3.07점), '귀화자'(3.00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72점), '미등록체류자'(2.44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05점으로 '남성'(2.8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43점), '20대 이하'(3.01점), '30대'(2.78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08점), '전일제'(2.86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3.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02점), '3년-5년'(2.97점), '11년-15년'(2.94점), '1년-2년'(2.84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2〉 [이주민 권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다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동의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30.9	28.6	32.6	7.9	2.98	-	
출신 국가	태국	(27)	70.4	14.8	14.8	0.0	2.00	F=3.939, p=0.001
	인도네시아	(3)	33.3	33.3	33.3	0.0	2.67	
	베트남	(144)	31.3	28.5	30.6	9.7	2.99	
	필리핀	(82)	29.3	25.6	32.9	12.2	2.94	
	캄보디아	(59)	30.5	33.9	28.8	6.8	2.87	
	중국	(64)	17.2	28.1	50.0	4.7	3.54	
	기타	(54)	29.6	35.2	29.6	5.6	2.9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7.6	28.8	26.4	7.2	2.72	F=1.499, p=0.156
	F-6(결혼이민)	(106)	28.3	29.2	35.8	6.6	3.11	
	F-5(영주)	(33)	21.2	42.4	36.4	0.0	3.24	
	F-2(거주)	(20)	15.0	20.0	55.0	10.0	3.67	
	D-2, D-4(유학생)	(23)	30.4	21.7	43.5	4.3	3.14	
	귀화자	(67)	31.3	28.4	34.3	6.0	3.00	
	미등록체류자	(15)	26.7	20.0	13.3	40.0	2.44	
	난민	(15)	26.7	33.3	33.3	6.7	3.07	
	기타 거주자	(21)	38.1	23.8	23.8	14.3	2.78	
무응답	(8)	37.5	25.0	25.0	12.5	2.71		
성별	여성	(271)	28.8	29.2	34.3	7.7	3.05	F=1.730, p=0.189
	남성	(150)	35.3	28.7	29.3	6.7	2.85	
	무응답	(12)	25.0	16.7	33.3	25.0	3.11	
연령별	20대 이하	(147)	27.2	32.0	32.0	8.8	3.01	F=3.994, p=0.008
	30대	(194)	39.2	27.8	28.9	4.1	2.78	
	40대	(53)	22.6	22.6	47.2	7.5	3.43	
	50대 이상	(15)	6.7	20.0	40.0	33.3	3.80	
	무응답	(24)	20.8	33.3	29.2	16.7	3.1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30.1	24.1	36.1	9.8	3.09	F=1.280, p=0.279
	전일제	(207)	35.3	28.5	30.0	6.3	2.86	
	시간제	(77)	23.4	36.4	33.8	6.5	3.08	
	무응답	(16)	18.8	31.3	31.3	18.8	3.23	
체류 기간	1년-2년	(76)	32.9	25.0	30.3	11.8	2.84	F=0.192, p=0.943
	3년-5년	(121)	30.6	32.2	32.2	5.0	2.97	
	6년-10년	(116)	33.6	22.4	37.1	6.9	3.02	
	11년-15년	(68)	32.4	32.4	30.9	4.4	2.94	
	16년 이상	(31)	25.8	32.3	25.8	16.1	3.04	
	무응답	(21)	14.3	38.1	33.3	14.3	3.44	

마.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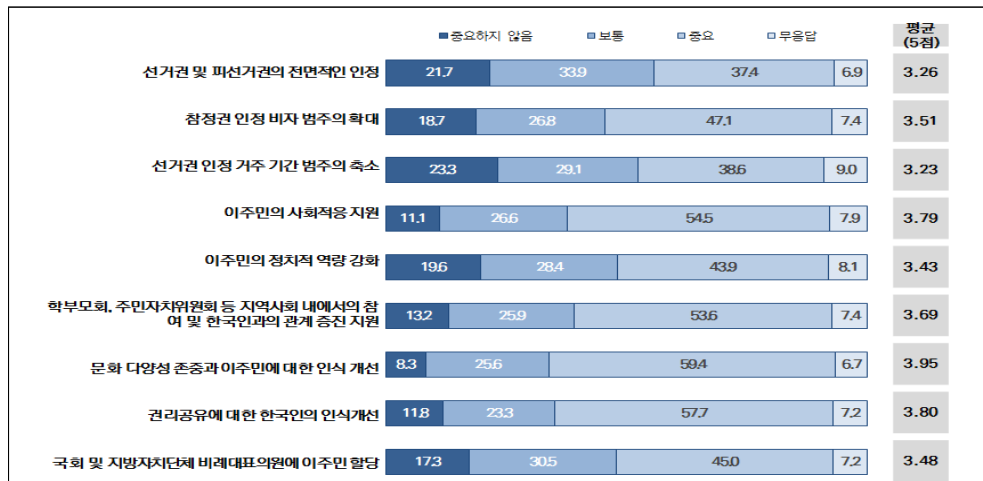
(1) 종합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7.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45.0%,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43.9%,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8.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7.4%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점수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3.95점,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3.80점,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3.79점,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3.69점,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3.51점,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3.48점,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3.43점,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23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26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4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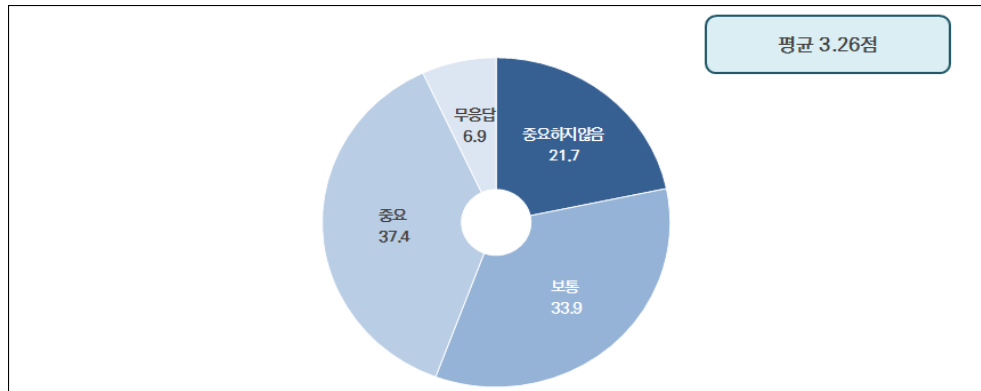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따라서 이주민이 원하는 개선방안으로는,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권리공유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주민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인식이 부족하므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37.4%,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21.7%였으며, 평균은 3.26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3.6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3.58점), ‘필리핀’(3.29점), ‘인도네시아’(3.00점), ‘캄보디아’(2.88점), ‘태국’(2.04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5(영주)’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6(결혼이민)’(3.83점), ‘귀화자’(3.71점), ‘D-2, D-4(유학생)’(3.59점), ‘F-2(거주)’(3.42점), ‘난민’(2.62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51점), ‘미등록체류자’(2.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57점으로 ‘남성’(2.7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29점), ‘50대 이상’(3.17점), ‘20대 이하’(3.15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60점), ‘전일제’(2.89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6년 이상’(3.48점), ‘11년-15년’(3.33점), ‘1년-2년’(3.23점), ‘3년-5년’(2.90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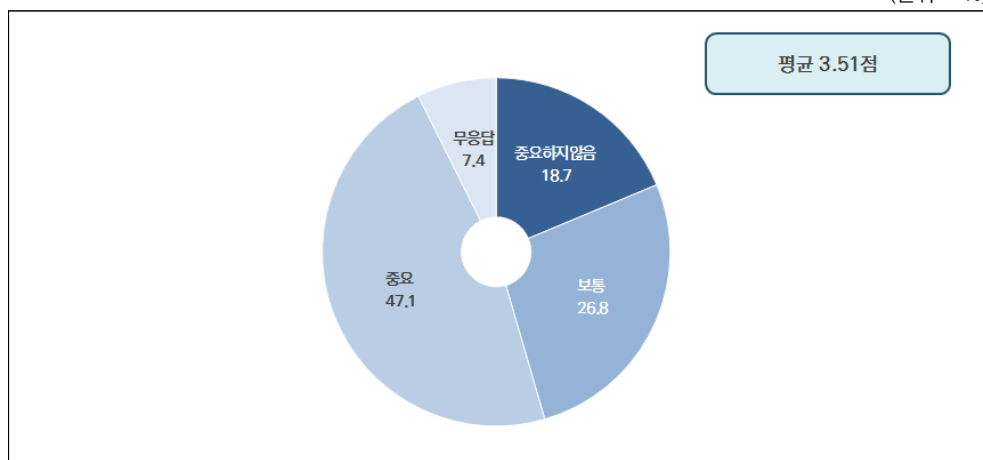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1.7	33.9	37.4	6.9	3.26	-	
출신 국가	태국	(27)	63.0	18.5	18.5	0.0	2.04	F=8.320, p=0.000
	인도네시아	(3)	66.7	0.0	33.3	0.0	3.00	
	베트남	(144)	11.8	31.9	46.5	9.7	3.58	
	필리핀	(82)	20.7	32.9	37.8	8.5	3.29	
	캄보디아	(59)	28.8	45.8	20.3	5.1	2.88	
	중국	(64)	9.4	39.1	48.4	3.1	3.66	
	기타	(54)	33.3	31.5	27.8	7.4	2.9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8	37.6	14.4	7.2	2.51	F=13.170, p=0.000
	F-6(결혼이민)	(106)	7.5	31.1	56.6	4.7	3.83	
	F-5(영주)	(33)	6.1	39.4	54.5	0.0	3.85	
	F-2(거주)	(20)	25.0	15.0	55.0	5.0	3.42	
	D-2, D-4(유학생)	(23)	13.0	43.5	39.1	4.3	3.59	
	귀화자	(67)	10.4	29.9	53.7	6.0	3.71	
	미등록체류자	(15)	26.7	26.7	6.7	40.0	2.33	
	난민	(15)	26.7	53.3	6.7	13.3	2.62	
	기타 거주자	(21)	33.3	38.1	23.8	4.8	2.70	
무응답	(8)	37.5	12.5	37.5	12.5	2.86		
성별	여성	(271)	14.0	31.4	48.3	6.3	3.57	F=42.866, p=0.000
	남성	(150)	35.3	38.0	18.7	8.0	2.70	
	무응답	(12)	25.0	41.7	25.0	8.3	3.09	
연령별	20대 이하	(147)	20.4	41.5	29.3	8.8	3.15	F=0.995, p=0.395
	30대	(194)	24.2	28.9	42.3	4.6	3.29	
	40대	(53)	17.0	28.3	49.1	5.7	3.52	
	50대 이상	(15)	20.0	26.7	33.3	20.0	3.17	
	무응답	(24)	20.8	45.8	25.0	8.3	3.09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5.0	30.1	47.4	7.5	3.60	F=16.194, p=0.000
	전일제	(207)	30.4	36.2	27.5	5.8	2.89	
	시간제	(77)	10.4	32.5	49.4	7.8	3.68	
	무응답	(16)	18.8	43.8	25.0	12.5	3.14	
체류 기간	1년-2년	(76)	18.4	38.2	30.3	13.2	3.23	F=4.351, p=0.002
	3년-5년	(121)	30.6	41.3	24.8	3.3	2.90	
	6년-10년	(116)	19.0	19.8	56.0	5.2	3.59	
	11년-15년	(68)	19.1	36.8	41.2	2.9	3.33	
	16년 이상	(31)	6.5	45.2	35.5	12.9	3.48	
	무응답	(21)	28.6	28.6	23.8	19.0	3.00	

(3)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47.1%,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8.7%였으며, 평균은 3.51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77점), '베트남'(3.71점), '필리핀'(3.55점), '캄보디아'(3.38점), '태국'(2.56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5(영주)'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귀화자'(4.02점), 'F-6(결혼이민)'(3.92점), 'F-2(거주)'(3.61점), 'D-2, D-4(유학생)'(3.59점), '난민'(3.3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85점), '미등록체류자'(2.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77점으로 '남성'(3.0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53점), '50대 이상'(3.45점), '20대 이하'(3.41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73점), '전일제'(3.24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3.71점), '6년-10년'(3.64점), '3년-5년'(3.35점), '1년-2년'(3.21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4〉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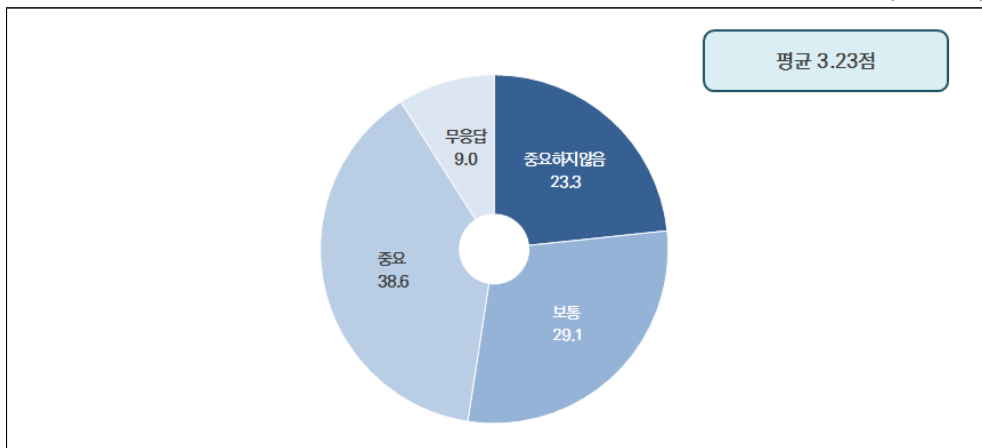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8.7	26.8	47.1	7.4	3.51	-	
출신 국가	태국	(27)	48.1	18.5	33.3	0.0	2.56	F=4.091, p=0.001
	인도네시아	(3)	0.0	0.0	100.0	0.0	4.33	
	베트남	(144)	11.8	28.5	49.3	10.4	3.71	
	필리핀	(82)	19.5	23.2	48.8	8.5	3.55	
	캄보디아	(59)	16.9	40.7	37.3	5.1	3.38	
	중국	(64)	14.1	26.6	54.7	4.7	3.77	
	기타	(54)	29.6	18.5	44.4	7.4	3.22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3.6	33.6	24.8	8.0	2.85	F=9.134, p=0.000
	F-6(결혼이민)	(106)	10.4	23.6	61.3	4.7	3.92	
	F-5(영주)	(33)	6.1	24.2	69.7	0.0	4.06	
	F-2(거주)	(20)	25.0	10.0	55.0	10.0	3.61	
	D-2, D-4(유학생)	(23)	13.0	26.1	56.5	4.3	3.59	
	귀화자	(67)	6.0	26.9	61.2	6.0	4.02	
	미등록체류자	(15)	26.7	26.7	6.7	40.0	2.33	
	난민	(15)	20.0	33.3	33.3	13.3	3.31	
	기타 거주자	(21)	28.6	23.8	42.9	4.8	3.05	
	무응답	(8)	12.5	12.5	62.5	12.5	3.86	
성별	여성	(271)	13.7	23.6	56.1	6.6	3.77	F=28.379, p=0.000
	남성	(150)	28.0	32.0	31.3	8.7	3.04	
	무응답	(12)	16.7	33.3	41.7	8.3	3.45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0	32.7	40.8	9.5	3.41	F=0.865, p=0.459
	30대	(194)	20.1	24.7	50.0	5.2	3.53	
	40대	(53)	18.9	18.9	58.5	3.8	3.76	
	50대 이상	(15)	13.3	20.0	40.0	26.7	3.45	
	무응답	(24)	20.8	29.2	41.7	8.3	3.32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5.0	18.0	59.4	7.5	3.80	F=8.061, p=0.000
	전일제	(207)	24.6	29.5	39.1	6.8	3.24	
	시간제	(77)	10.4	31.2	50.6	7.8	3.73	
	무응답	(16)	12.5	43.8	31.3	12.5	3.43	
체류 기간	1년-2년	(76)	22.4	31.6	32.9	13.2	3.21	F=2.107, p=0.079
	3년-5년	(121)	21.5	31.4	42.1	5.0	3.35	
	6년-10년	(116)	20.7	15.5	57.8	6.0	3.64	
	11년-15년	(68)	13.2	30.9	52.9	2.9	3.71	
	16년 이상	(31)	9.7	29.0	48.4	12.9	3.74	
	무응답	(21)	9.5	28.6	47.6	14.3	3.72	

(4)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38.6%,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23.3%였으며, 평균은 3.23 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3.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3.58점), '인도네시아'(3.33점), '필리핀'(3.05점), '캄보디아'(2.98점), '태국'(2.26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6(결혼이민)'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3.79점), '귀화자'(3.51점), 'F-2(거주)'(3.37점), 'D-2, D-4(유학생)'(3.32점), '난민'(2.82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57점), '미등록체류자'(2.44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50점으로 '남성'(2.7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40점), '30대'(3.28점), '20대 이하'(3.09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55점), '전일제'(2.92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 '11년-15년'이 각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6년 이상'(3.30점), '3년-5년'(3.14점), '1년-2년'(3.13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5〉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선거권 인정 거주기간 범주의 축소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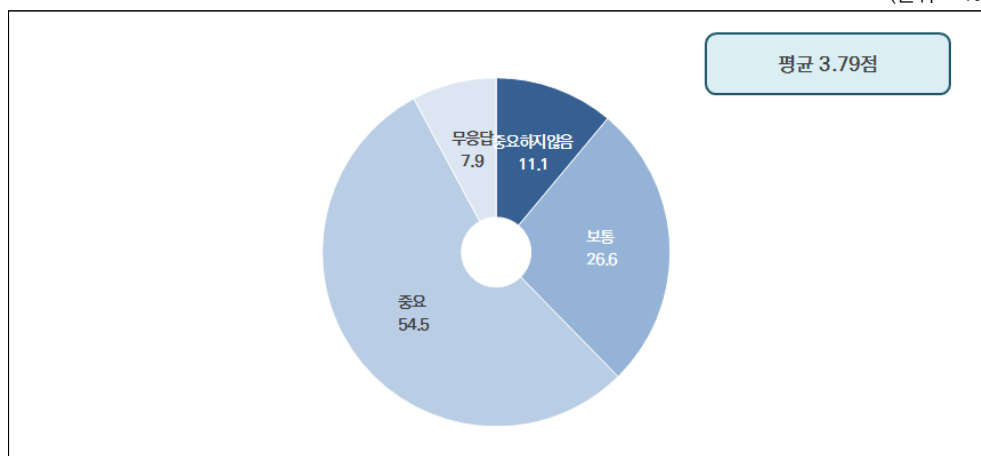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23.3	29.1	38.6	9.0	3.23	-
출신 국가	태국	(27)	63.0	7.4	29.6	0.0	2.26	F=5.976, p=0.000
	인도네시아	(3)	0.0	66.7	33.3	0.0	3.33	
	베트남	(144)	11.8	30.6	45.1	12.5	3.58	
	필리핀	(82)	29.3	26.8	34.1	9.8	3.05	
	캄보디아	(59)	22.0	47.5	23.7	6.8	2.98	
	중국	(64)	18.8	26.6	48.4	6.3	3.60	
	기타	(54)	33.3	20.4	37.0	9.3	2.9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9.2	32.8	19.2	8.8	2.57	F=9.450, p=0.000
	F-6(결혼이민)	(106)	9.4	27.4	53.8	9.4	3.83	
	F-5(영주)	(33)	9.1	33.3	57.6	0.0	3.79	
	F-2(거주)	(20)	35.0	10.0	50.0	5.0	3.37	
	D-2, D-4(유학생)	(23)	13.0	39.1	43.5	4.3	3.32	
	귀화자	(67)	13.4	34.3	46.3	6.0	3.51	
	미등록체류자	(15)	26.7	20.0	13.3	40.0	2.44	
	난민	(15)	33.3	20.0	20.0	26.7	2.82	
	기타 거주자	(21)	42.9	14.3	38.1	4.8	2.75	
무응답	(8)	25.0	25.0	37.5	12.5	3.00		
성별	여성	(271)	17.0	28.0	46.9	8.1	3.50	F=29.921, p=0.000
	남성	(150)	34.0	31.3	24.0	10.7	2.75	
	무응답	(12)	33.3	25.0	33.3	8.3	2.91	
연령별	20대 이하	(147)	23.1	35.4	30.6	10.9	3.09	F=1.366, p=0.253
	30대	(194)	22.2	28.9	41.8	7.2	3.28	
	40대	(53)	26.4	15.1	54.7	3.8	3.51	
	50대 이상	(15)	13.3	20.0	33.3	33.3	3.40	
	무응답	(24)	33.3	29.2	29.2	8.3	2.91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6.5	27.1	44.4	12.0	3.55	F=11.634, p=0.000
	전일제	(207)	32.4	29.0	31.9	6.8	2.92	
	시간제	(77)	11.7	29.9	49.4	9.1	3.59	
	무응답	(16)	18.8	43.8	25.0	12.5	3.07	
체류 기간	1년-2년	(76)	19.7	31.6	30.3	18.4	3.13	F=0.495, p=0.740
	3년-5년	(121)	25.6	31.4	37.2	5.8	3.14	
	6년-10년	(116)	24.1	23.3	45.7	6.9	3.33	
	11년-15년	(68)	20.6	35.3	41.2	2.9	3.33	
	16년 이상	(31)	22.6	25.8	38.7	12.9	3.30	
	무응답	(21)	28.6	23.8	28.6	19.0	3.06	

(5)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54.5%,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1.1%였으며, 평균은 3.79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4.08점), ‘인도네시아’(4.00점), ‘캄보디아’(3.65점), ‘필리핀’(3.48점), ‘태국’(3.26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귀화자’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6(결혼이민)’(4.07점), ‘F-5(영주)’(4.06점), ‘F-2(거주)’(4.05점), ‘D-2, D-4(유학생)’(3.86점), ‘난민’(3.71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3점), ‘미등록체류자’(2.88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95점으로 ‘남성’(3.54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85점), ‘50대 이상’(3.73점), ‘20대 이하’(3.64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96점), ‘전일제’(3.57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1년-15년’이 3.9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92점), ‘16년 이상’(3.89점), ‘3년-5년’(3.70점), ‘1년-2년’(3.55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6〉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사회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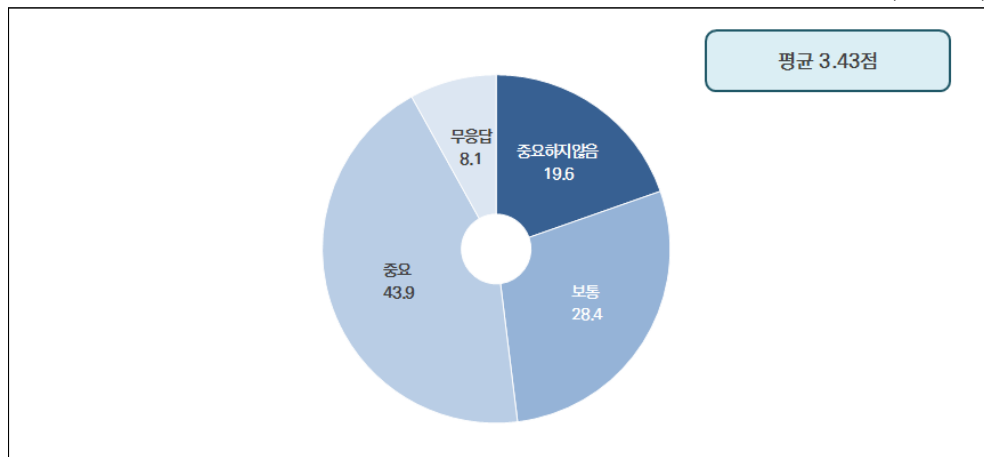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1.1	26.6	54.5	7.9	3.79	-	
출신 국가	태국	(27)	25.9	40.7	33.3	0.0	3.26	F=4.645,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4.00	
	베트남	(144)	4.9	26.4	59.0	9.7	4.08	
	필리핀	(82)	15.9	30.5	42.7	11.0	3.48	
	캄보디아	(59)	8.5	39.0	45.8	6.8	3.65	
	중국	(64)	4.7	15.6	75.0	4.7	4.15	
	기타	(54)	24.1	13.0	55.6	7.4	3.48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9.2	35.2	36.8	8.8	3.33	F=4.453, p=0.000
	F-6(결혼이민)	(106)	3.8	27.4	62.3	6.6	4.07	
	F-5(영주)	(33)	6.1	21.2	72.7	0.0	4.06	
	F-2(거주)	(20)	10.0	10.0	75.0	5.0	4.05	
	D-2, D-4(유학생)	(23)	4.3	30.4	60.9	4.3	3.86	
	귀화자	(67)	6.0	20.9	67.2	6.0	4.13	
	미등록체류자	(15)	13.3	26.7	13.3	46.7	2.88	
	난민	(15)	26.7	13.3	53.3	6.7	3.71	
	기타 거주자	(21)	23.8	19.0	52.4	4.8	3.55	
무응답	(8)	0.0	25.0	62.5	12.5	4.00		
성별	여성	(271)	7.4	25.5	60.1	7.0	3.95	F=10.531, p=0.001
	남성	(150)	17.3	27.3	46.0	9.3	3.54	
	무응답	(12)	16.7	41.7	33.3	8.3	3.2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3.6	29.3	49.0	8.2	3.64	F=2.387, p=0.069
	30대	(194)	10.3	26.3	57.2	6.2	3.85	
	40대	(53)	5.7	20.8	67.9	5.7	4.16	
	50대 이상	(15)	13.3	13.3	46.7	26.7	3.73	
	무응답	(24)	12.5	33.3	41.7	12.5	3.4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9.0	23.3	59.4	8.3	3.96	F=7.264, p=0.001
	전일제	(207)	15.5	30.4	46.9	7.2	3.57	
	시간제	(77)	3.9	18.2	70.1	7.8	4.14	
	무응답	(16)	6.3	43.8	37.5	12.5	3.57	
체류 기간	1년-2년	(76)	14.5	28.9	47.4	9.2	3.55	F=1.610, p=0.171
	3년-5년	(121)	14.0	28.9	52.1	5.0	3.70	
	6년-10년	(116)	6.9	23.3	61.2	8.6	3.92	
	11년-15년	(68)	7.4	30.9	57.4	4.4	3.98	
	16년 이상	(31)	12.9	19.4	54.8	12.9	3.89	
	무응답	(21)	14.3	19.0	47.6	19.0	3.71	

(6)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43.9%,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9.6%였으며, 평균은 3.43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4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3.95점), '베트남'(3.67점), '필리핀'(3.31점), '캄보디아'(3.09점), '태국'(2.85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5(영주)'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귀화자'(3.94점), 'F-6(결혼이민)'(3.90점), 'F-2(거주)'(3.74점), 'D-2, D-4(유학생)'(3.61점), '난민'(3.00점), '미등록체류자'(2.78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57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75점으로 '남성'(2.8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46점), '20대 이하'(3.35점), '50대 이상'(3.27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3.75점), '전일제'(3.10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 '16년 이상'(각 3.56점), '3년-5년'(3.34점), '1년-2년'(3.12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7〉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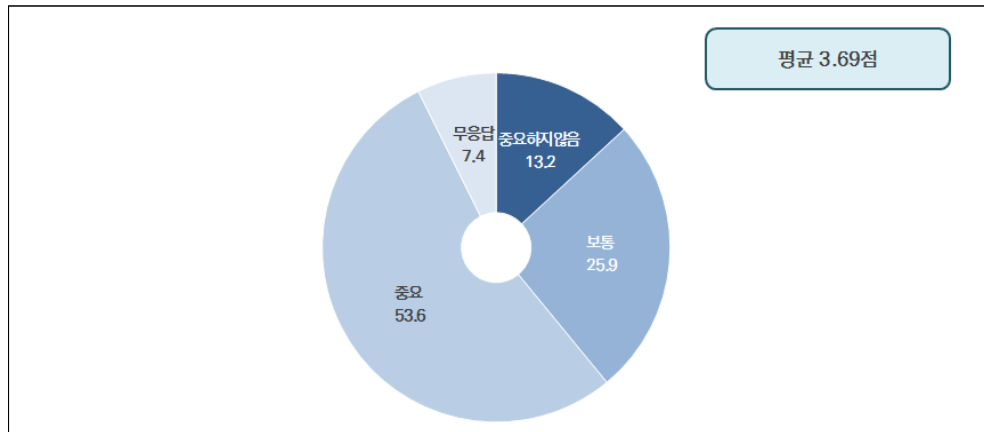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9.6	28.4	43.9	8.1	3.43	-
출신 국가	태국	(27)	48.1	3.7	48.1	0.0	2.85	F=5.535, p=0.000
	인도네시아	(3)	0.0	0.0	100.0	0.0	4.67	
	베트남	(144)	10.4	33.3	46.5	9.7	3.67	
	필리핀	(82)	24.4	25.6	40.2	9.8	3.31	
	캄보디아	(59)	22.0	47.5	23.7	6.8	3.09	
	중국	(64)	7.8	23.4	62.5	6.3	3.95	
	기타	(54)	35.2	18.5	37.0	9.3	2.9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0.0	33.6	18.4	8.0	2.57	F=12.245, p=0.000
	F-6(결혼이민)	(106)	7.5	31.1	54.7	6.6	3.90	
	F-5(영주)	(33)	3.0	27.3	63.6	6.1	4.10	
	F-2(거주)	(20)	20.0	15.0	60.0	5.0	3.74	
	D-2, D-4(유학생)	(23)	13.0	30.4	56.5	0.0	3.61	
	귀화자	(67)	9.0	22.4	62.7	6.0	3.94	
	미등록체류자	(15)	20.0	20.0	20.0	40.0	2.78	
	난민	(15)	33.3	26.7	26.7	13.3	3.00	
	기타 거주자	(21)	19.0	23.8	47.6	9.5	3.37	
	무응답	(8)	12.5	25.0	50.0	12.5	3.57	
성별	여성	(271)	11.8	26.9	53.9	7.4	3.75	F=43.652, p=0.000
	남성	(150)	34.0	30.0	26.7	9.3	2.85	
	무응답	(12)	16.7	41.7	33.3	8.3	3.2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9.0	35.4	38.1	7.5	3.35	F=0.778, p=0.507
	30대	(194)	21.6	23.7	48.5	6.2	3.46	
	40대	(53)	15.1	22.6	50.9	11.3	3.68	
	50대 이상	(15)	20.0	20.0	33.3	26.7	3.27	
	무응답	(24)	16.7	41.7	33.3	8.3	3.2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2.8	27.8	51.1	8.3	3.75	F=11.924, p=0.000
	전일제	(207)	27.1	29.5	35.7	7.7	3.10	
	시간제	(77)	13.0	23.4	55.8	7.8	3.77	
	무응답	(16)	12.5	43.8	31.3	12.5	3.36	
체류 기간	1년-2년	(76)	23.7	34.2	31.6	10.5	3.12	F=1.635, p=0.165
	3년-5년	(121)	21.5	29.8	43.0	5.8	3.34	
	6년-10년	(116)	19.0	20.7	51.7	8.6	3.59	
	11년-15년	(68)	16.2	32.4	48.5	2.9	3.56	
	16년 이상	(31)	16.1	25.8	45.2	12.9	3.56	
	무응답	(21)	14.3	33.3	33.3	19.0	3.47	

(7)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53.6%,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3.2%였으며, 평균은 3.69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Ⅲ-5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증진지원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4.33점), ‘베트남’(3.89점), ‘캄보디아’, ‘필리핀’(각 3.45점), ‘태국’(2.67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5(영주)’가 4.39점으로 가장 높았고, ‘F-6(결혼이민)’(4.10점), ‘귀화자’(4.08점), ‘F-2(거주)’(4.05점), ‘D-2, D-4(유학생)’(3.96점), ‘난민’(3.77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95점), ‘미등록체류자’(2.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97점으로 ‘남성’(3.2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73점), ‘30대’(3.71점), ‘20대 이하’(3.54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97점), ‘전일제’(3.36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3.84점), ‘16년 이상’(3.63점), ‘1년-2년’(3.54점), ‘3년-5년’(3.53점) 등의 순이다.

〈표 Ⅲ-128〉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증진지원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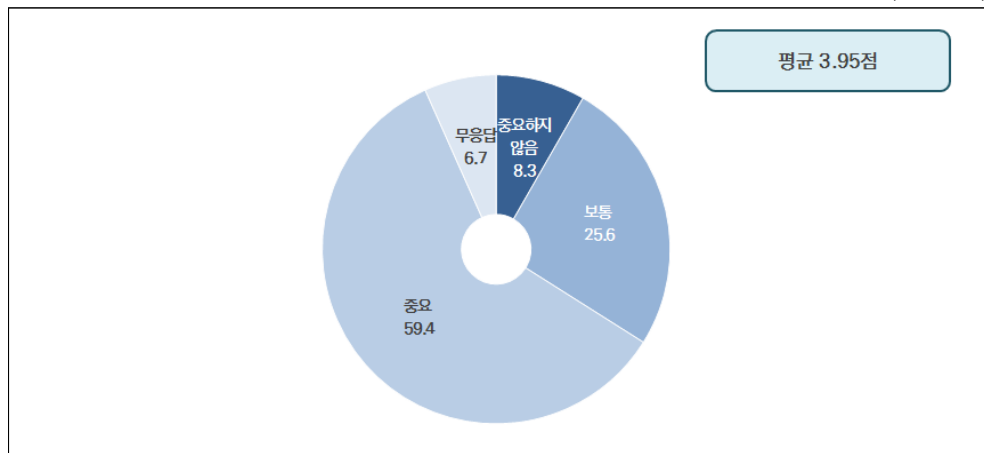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3.2	25.9	53.6	7.4	3.69	-
출신 국가	태국	(27)	51.9	3.7	44.4	0.0	2.67	F=8.143,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4.33	
	베트남	(144)	5.6	31.3	54.2	9.0	3.89	
	필리핀	(82)	13.4	31.7	43.9	11.0	3.45	
	캄보디아	(59)	13.6	40.7	39.0	6.8	3.45	
	중국	(64)	3.1	12.5	78.1	6.3	4.38	
	기타	(54)	25.9	13.0	57.4	3.7	3.4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7.2	36.0	29.6	7.2	2.95	F=11.697, p=0.000
	F-6(결혼이민)	(106)	3.8	25.5	63.2	7.5	4.10	
	F-5(영주)	(33)	0.0	21.2	78.8	0.0	4.39	
	F-2(거주)	(20)	10.0	10.0	75.0	5.0	4.05	
	D-2, D-4(유학생)	(23)	8.7	13.0	78.3	0.0	3.96	
	귀화자	(67)	6.0	20.9	67.2	6.0	4.08	
	미등록체류자	(15)	26.7	20.0	13.3	40.0	2.33	
	난민	(15)	13.3	26.7	46.7	13.3	3.77	
	기타 거주자	(21)	14.3	23.8	57.1	4.8	3.75	
무응답	(8)	25.0	25.0	37.5	12.5	3.00		
성별	여성	(271)	7.7	22.1	63.1	7.0	3.97	F=32.995, p=0.000
	남성	(150)	23.3	30.7	38.0	8.0	3.21	
	무응답	(12)	8.3	50.0	33.3	8.3	3.36	
연령별	20대 이하	(147)	15.6	28.6	48.3	7.5	3.54	F=2.413, p=0.066
	30대	(194)	13.4	25.8	54.6	6.2	3.71	
	40대	(53)	7.5	15.1	71.7	5.7	4.12	
	50대 이상	(15)	13.3	13.3	46.7	26.7	3.73	
	무응답	(24)	8.3	41.7	41.7	8.3	3.45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5.3	21.1	65.4	8.3	4.08	F=14.376, p=0.000
	전일제	(207)	21.3	28.0	44.4	6.3	3.36	
	시간제	(77)	6.5	23.4	62.3	7.8	3.97	
	무응답	(16)	6.3	50.0	31.3	12.5	3.43	
체류 기간	1년-2년	(76)	13.2	31.6	44.7	10.5	3.54	F=1.832, p=0.122
	3년-5년	(121)	17.4	28.9	49.6	4.1	3.53	
	6년-10년	(116)	10.3	15.5	67.2	6.9	3.93	
	11년-15년	(68)	10.3	27.9	55.9	5.9	3.84	
	16년 이상	(31)	12.9	29.0	45.2	12.9	3.63	
무응답	(21)	14.3	33.3	38.1	14.3	3.44		

(8)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59.4%,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8.3%였으며, 평균은 3.95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5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4.19점), '인도네시아'(4.00점), '필리핀', '태국'(각 3.74점), '캄보디아'(3.47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D-2, D-4(유학생)'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2(거주)', 'F-6(결혼이민)'(각 4.26점), '귀화자'(4.25점), 'F-5(영주)'(4.24점), '난민'(4.07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3.36점), '미등록체류자'(2.56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18점으로 '남성'(3.58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4.00점), '20대 이하'(3.82점), '50대 이상'(3.73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4.22점), '전일제'(3.70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1년-15년'(4.00점), '16년 이상'(3.93점), '1년-2년'(3.85점), '3년-5년'(3.82점) 등의 순이다.

〈표 III-129〉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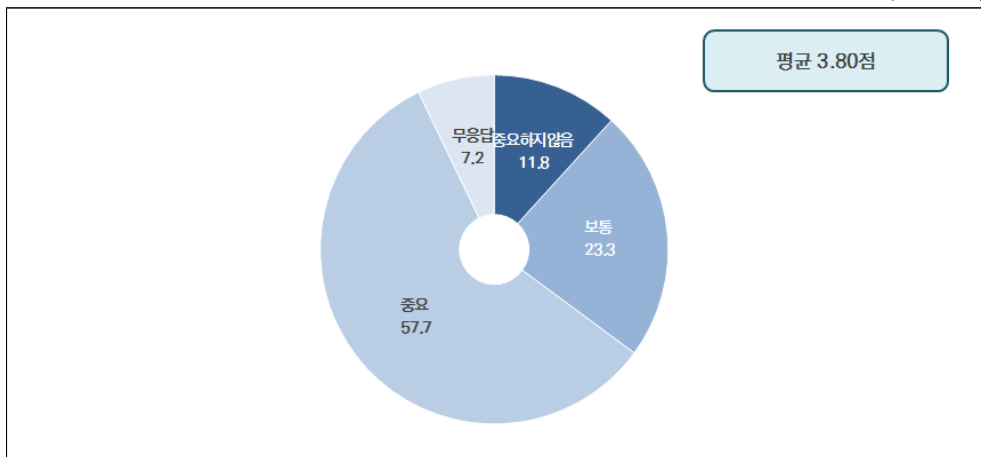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8.3	25.6	59.4	6.7	3.95	-	
출신 국가	태국	(27)	7.4	44.4	48.1	0.0	3.74	F=5.033, p=0.000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4.00	
	베트남	(144)	2.1	25.0	63.9	9.0	4.19	
	필리핀	(82)	12.2	26.8	51.2	9.8	3.74	
	캄보디아	(59)	10.2	42.4	40.7	6.8	3.47	
	중국	(64)	3.1	14.1	79.7	3.1	4.40	
	기타	(54)	22.2	13.0	61.1	3.7	3.67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14.4	40.8	37.6	7.2	3.36	F=7.984, p=0.000
	F-6(결혼이민)	(106)	2.8	20.8	69.8	6.6	4.26	
	F-5(영주)	(33)	3.0	24.2	72.7	0.0	4.24	
	F-2(거주)	(20)	10.0	5.0	80.0	5.0	4.26	
	D-2, D-4(유학생)	(23)	8.7	8.7	82.6	0.0	4.35	
	귀화자	(67)	4.5	17.9	71.6	6.0	4.25	
	미등록체류자	(15)	20.0	26.7	13.3	40.0	2.56	
	난민	(15)	13.3	20.0	60.0	6.7	4.07	
	기타 거주자	(21)	9.5	28.6	61.9	0.0	4.00	
무응답	(8)	0.0	25.0	62.5	12.5	4.14		
성별	여성	(271)	5.2	20.7	67.5	6.6	4.18	F=23.740, p=0.000
	남성	(150)	14.0	32.0	47.3	6.7	3.58	
	무응답	(12)	8.3	58.3	25.0	8.3	3.2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0.2	28.6	54.4	6.8	3.82	F=2.531, p=0.057
	30대	(194)	7.7	24.7	62.4	5.2	4.00	
	40대	(53)	3.8	15.1	75.5	5.7	4.34	
	50대 이상	(15)	13.3	20.0	40.0	26.7	3.73	
	무응답	(24)	8.3	41.7	41.7	8.3	3.50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6.8	16.5	70.7	6.0	4.22	F=10.035, p=0.000
	전일제	(207)	11.6	31.9	50.2	6.3	3.70	
	시간제	(77)	2.6	19.5	70.1	7.8	4.24	
	무응답	(16)	6.3	50.0	31.3	12.5	3.43	
체류 기간	1년~2년	(76)	7.9	27.6	53.9	10.5	3.85	F=1.262, p=0.284
	3년~5년	(121)	12.4	27.3	57.9	2.5	3.82	
	6년~10년	(116)	5.2	19.8	68.1	6.9	4.16	
	11년~15년	(68)	7.4	27.9	60.3	4.4	4.00	
	16년 이상	(31)	9.7	25.8	51.6	12.9	3.93	
	무응답	(21)	4.8	33.3	47.6	14.3	3.67	

(9)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51.9%,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37.0%였으며, 평균은 3.22 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II-52〉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4.33점), '베트남'(3.95점), '필리핀'(3.74점), '기타'(3.54점), '캄보디아'(3.44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F-5(영주)'가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난민'(4.27점), '귀화자'(4.26점), 'F-2(거주)'(4.21점), 'F-6(결혼이민)'(4.02점), 'D-2, D-4(유학생)'(3.83점), '미등록체류자'(2.3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3점으로 '남성'(3.4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85점), '50대 이상'(3.73점), '20대 이하'(3.62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시간제'가 4.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안함'(4.07점), '전일제'(3.52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6년-10년'이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6년 이상'(3.93점), '11년-15년'(3.92점), '3년-5년'(3.66점), '1년-2년'(3.53점) 등의 순이다.

〈표 III-130〉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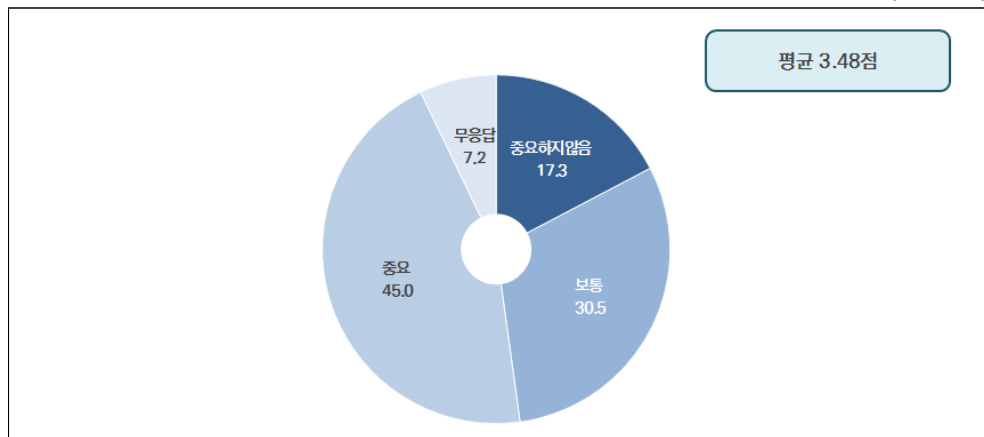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1.8	23.3	57.7	7.2	3.80	-
출신 국가	태국	(27)	37.0	11.1	51.9	0.0	3.22	F=4.669, p=0.000
	인도네시아	(3)	0.0	33.3	66.7	0.0	4.33	
	베트남	(144)	4.2	27.8	58.3	9.7	3.95	
	필리핀	(82)	12.2	25.6	52.4	9.8	3.74	
	캄보디아	(59)	15.3	39.0	39.0	6.8	3.44	
	중국	(64)	3.1	14.1	78.1	4.7	4.36	
	기타	(54)	25.9	7.4	63.0	3.7	3.5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22.4	32.8	37.6	7.2	3.22	F=8.249, p=0.000
	F-6(결혼이민)	(106)	5.7	24.5	63.2	6.6	4.02	
	F-5(영주)	(33)	3.0	21.2	75.8	0.0	4.33	
	F-2(거주)	(20)	10.0	5.0	80.0	5.0	4.21	
	D-2, D-4(유학생)	(23)	8.7	26.1	65.2	0.0	3.83	
	귀화자	(67)	3.0	16.4	73.1	7.5	4.26	
	미등록체류자	(15)	26.7	20.0	13.3	40.0	2.33	
	난민	(15)	13.3	6.7	80.0	0.0	4.27	
	기타 거주자	(21)	14.3	19.0	61.9	4.8	3.80	
	무응답	(8)	12.5	12.5	50.0	25.0	3.67	
성별	여성	(271)	7.4	20.3	65.3	7.0	4.03	F=22.596, p=0.000
	남성	(150)	20.0	28.0	44.7	7.3	3.40	
	무응답	(12)	8.3	33.3	50.0	8.3	3.73	
연령별	20대 이하	(147)	12.2	30.6	49.7	7.5	3.62	F=2.538, p=0.056
	30대	(194)	11.9	21.6	61.3	5.2	3.85	
	40대	(53)	9.4	13.2	71.7	5.7	4.18	
	50대 이상	(15)	13.3	13.3	46.7	26.7	3.73	
	무응답	(24)	12.5	20.8	54.2	12.5	3.71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8.3	16.5	68.4	6.8	4.07	F=10.726, p=0.000
	전일제	(207)	17.9	27.5	47.8	6.8	3.52	
	시간제	(77)	2.6	19.5	71.4	6.5	4.15	
	무응답	(16)	6.3	43.8	31.3	18.8	3.54	
체류 기간	1년~2년	(76)	11.8	35.5	44.7	7.9	3.53	F=2.486, p=0.043
	3년~5년	(121)	14.9	27.3	54.5	3.3	3.66	
	6년~10년	(116)	8.6	16.4	68.1	6.9	4.06	
	11년~15년	(68)	11.8	17.6	64.7	5.9	3.92	
	16년 이상	(31)	9.7	25.8	51.6	12.9	3.93	
	무응답	(21)	14.3	9.5	52.4	23.8	3.69	

(10)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에 대해 ‘중요하다’는 인식은 45.0%,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7.3%였으며, 평균은 3.48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Ⅲ-53〉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할당

(단위 : %)



※중요하지 않음:①+②, 보통:③, 중요:④+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67점), ‘베트남’(3.61점), ‘필리핀’(3.50점), ‘캄보디아’(3.13점), ‘태국’(2.46점) 등의 순이다.

체류형태별로는 ‘난민’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귀화자’(3.98점), ‘F-5(영주)’(3.97점), ‘F-6(결혼이민)’(3.79점), ‘F-2(거주)’(3.74점), ‘D-2, D-4(유학생)’(3.57점),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2.76점), ‘미등록체류자’(2.2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3.69점으로 ‘남성’(3.0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47점), ‘50대 이상’(3.45점), ‘20대 이하’(3.35점) 등의 순이다.

경제활동여부별로는 ‘활동안함’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간제’(3.74점), ‘전일제’(3.19점) 등의 순이다.

체류기간별로는 ‘16년 이상’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년-10년’(3.61점), ‘11년-15년’(3.59점), ‘3년-5년’(3.35점), ‘1년-2년’(3.30점) 등의 순이다.

〈표 III-131〉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할당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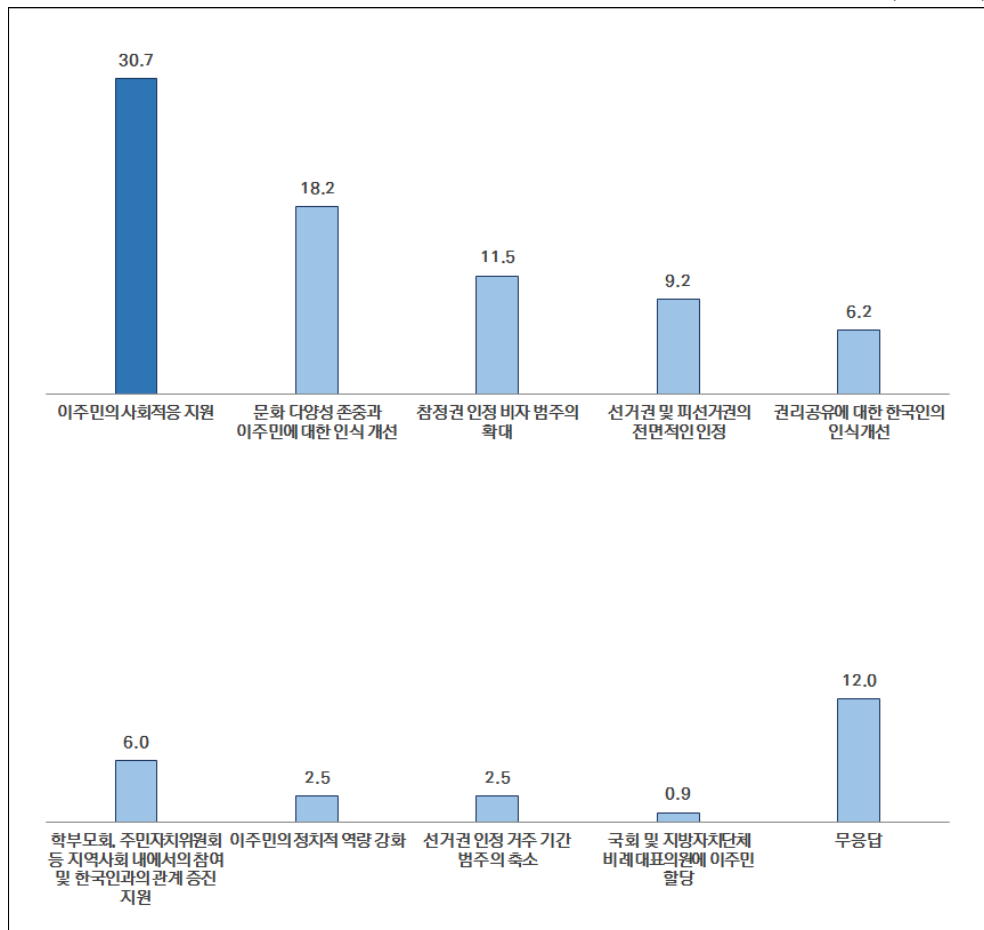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중요하지 않음 ①+②	보통 ③	중요 ④+⑤	무응답	평균	통계량	
전체	(433)	17.3	30.5	45.0	7.2	3.48	-	
출신 국가	태국	(27)	48.1	22.2	25.9	3.7	2.46	F=5.964, p=0.000
	인도네시아	(3)	33.3	0.0	66.7	0.0	3.67	
	베트남	(144)	12.5	31.3	46.5	9.7	3.61	
	필리핀	(82)	14.6	31.7	43.9	9.8	3.50	
	캄보디아	(59)	22.0	42.4	28.8	6.8	3.13	
	중국	(64)	3.1	31.3	60.9	4.7	4.05	
	기타	(54)	29.6	18.5	50.0	1.9	3.30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35.2	32.8	25.6	6.4	2.76	F=9.654, p=0.000
	F-6(결혼이민)	(106)	8.5	34.0	50.9	6.6	3.79	
	F-5(영주)	(33)	6.1	33.3	60.6	0.0	3.97	
	F-2(거주)	(20)	10.0	35.0	50.0	5.0	3.74	
	D-2, D-4(유학생)	(23)	21.7	17.4	60.9	0.0	3.57	
	귀화자	(67)	4.5	28.4	59.7	7.5	3.98	
	미등록체류자	(15)	26.7	26.7	6.7	40.0	2.22	
	난민	(15)	13.3	13.3	73.3	0.0	4.00	
	기타 거주자	(21)	14.3	33.3	47.6	4.8	3.55	
무응답	(8)	12.5	12.5	37.5	37.5	3.40		
성별	여성	(271)	11.1	31.0	50.9	7.0	3.69	F=21.328, p=0.000
	남성	(150)	29.3	29.3	34.0	7.3	3.06	
	무응답	(12)	8.3	33.3	50.0	8.3	3.64	
연령별	20대 이하	(147)	17.7	34.0	40.1	8.2	3.35	F=1.850, p=0.138
	30대	(194)	19.6	29.9	45.9	4.6	3.47	
	40대	(53)	9.4	24.5	60.4	5.7	3.86	
	50대 이상	(15)	13.3	26.7	33.3	26.7	3.45	
	무응답	(24)	16.7	29.2	41.7	12.5	3.43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0.5	27.8	54.9	6.8	3.78	F=9.666, p=0.000
	전일제	(207)	25.1	31.4	36.7	6.8	3.19	
	시간제	(77)	10.4	29.9	53.2	6.5	3.74	
	무응답	(16)	6.3	43.8	31.3	18.8	3.38	
체류 기간	1년-2년	(76)	14.5	42.1	35.5	7.9	3.30	F=1.175, p=0.321
	3년-5년	(121)	21.5	28.1	46.3	4.1	3.35	
	6년-10년	(116)	18.1	25.0	50.0	6.9	3.61	
	11년-15년	(68)	14.7	30.9	48.5	5.9	3.59	
	16년 이상	(31)	9.7	32.3	45.2	12.9	3.70	
	무응답	(21)	19.0	28.6	33.3	19.0	3.35	

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사회통합 개선사항’(1순위 기준)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18.2%),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11.5%),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9.2%),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6.2%),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6.0%),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각 2.5%),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0.9%) 등의 순이다.

〈그림 III-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단위 : %)



출신국가별로 태국(77.8%), 인도네시아(66.7%), 베트남(28.5%), 필리핀(19.5%), 캄보디아(28.8%)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중국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각 31.3%로 가장 높았다.

체류형태별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44.8%), 'F-5(영주)'(42.4%), 'F-2(거주)'(30.0%), '미등록체류자(20.0%)', '난민(26.7%)'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F-6(결혼이민)'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25.5%, D-2, D-4(유학생)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34.8%, 귀화자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26.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여성(25.8%)'과 '남성(40.0%)' 모두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이하(34.0%)', '30대(29.4%)'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40대'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32.1%, '50대 이상'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각 20.0%로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여부별로 활동안함(30.8%), 전일제(34.3%), 시간제(22.1%) 모두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1년-2년(36.8%)', '3년-5년(34.7%)', '6년-10년(28.4%)', '11년-15년(29.4%)'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16년 이상'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25.8%로 가장 높았다.

〈표 III-13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1)

(단위 : %, 1순위)

구분	사례수	이주민의 사회적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통계량	
전체	(433)	30.7	18.2	11.5	9.2	6.2	-	
출신 국가	태국	(27)	77.8	0.0	14.8	0.0	3.7	$\chi^2=95.145,$ $p=0.000$
	인도네시아	(3)	66.7	33.3	0.0	0.0	0.0	
	베트남	(144)	28.5	13.2	13.2	13.2	0.7	
	필리핀	(82)	19.5	18.3	13.4	7.3	14.6	
	캄보디아	(59)	28.8	18.6	10.2	6.8	6.8	
	중국	(64)	31.3	31.3	7.8	9.4	7.8	
	기타	(54)	29.6	24.1	9.3	9.3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4.8	12.0	14.4	4.8	6.4	$\chi^2=115.617,$ $p=0.000$
	F-6(결혼이민)	(106)	21.7	25.5	8.5	11.3	6.6	
	F-5(영주)	(33)	42.4	21.2	6.1	9.1	3.0	
	F-2(거주)	(20)	30.0	10.0	20.0	0.0	15.0	
	D-2, D-4(유학생)	(23)	30.4	34.8	8.7	13.0	0.0	
	귀화자	(67)	11.9	26.9	10.4	19.4	7.5	
	미등록체류자	(15)	20.0	0.0	0.0	13.3	0.0	
	난민	(15)	26.7	6.7	6.7	0.0	20.0	
	기타 거주자	(21)	52.4	4.8	23.8	0.0	0.0	
성별	무응답	(8)	12.5	0.0	25.0	12.5	0.0	$\chi^2=19.528,$ $p=0.012$
	여성	(271)	25.8	21.4	9.2	11.4	7.0	
	남성	(150)	40.0	12.0	14.7	6.0	4.7	
연령별	무응답	(12)	25.0	25.0	25.0	0.0	8.3	$\chi^2=23.481,$ $p=0.492$
	20대 이하	(147)	34.0	15.6	7.5	9.5	6.1	
	30대	(194)	29.4	17.0	14.9	8.2	7.7	
	40대	(53)	30.2	32.1	7.5	11.3	3.8	
	50대 이상	(15)	13.3	20.0	6.7	20.0	0.0	
경제 활동 여부	무응답	(24)	33.3	12.5	20.8	4.2	4.2	$\chi^2=23.325,$ $p=0.105$
	활동안함	(133)	30.8	24.8	8.3	11.3	2.3	
	전일제	(207)	34.3	14.5	13.0	8.2	7.2	
	시간제	(77)	22.1	16.9	13.0	10.4	9.1	
체류 기간	무응답	(16)	25.0	18.8	12.5	0.0	12.5	$\chi^2=27.605,$ $p=0.689$
	1년-2년	(76)	36.8	11.8	5.3	9.2	3.9	
	3년-5년	(121)	34.7	16.5	15.7	5.8	7.4	
	6년-10년	(116)	28.4	21.6	12.9	10.3	5.2	
	11년-15년	(68)	29.4	22.1	8.8	8.8	5.9	
	16년 이상	(31)	16.1	25.8	6.5	16.1	12.9	
무응답	(21)	23.8	9.5	19.0	14.3	4.8		

〈표 III-13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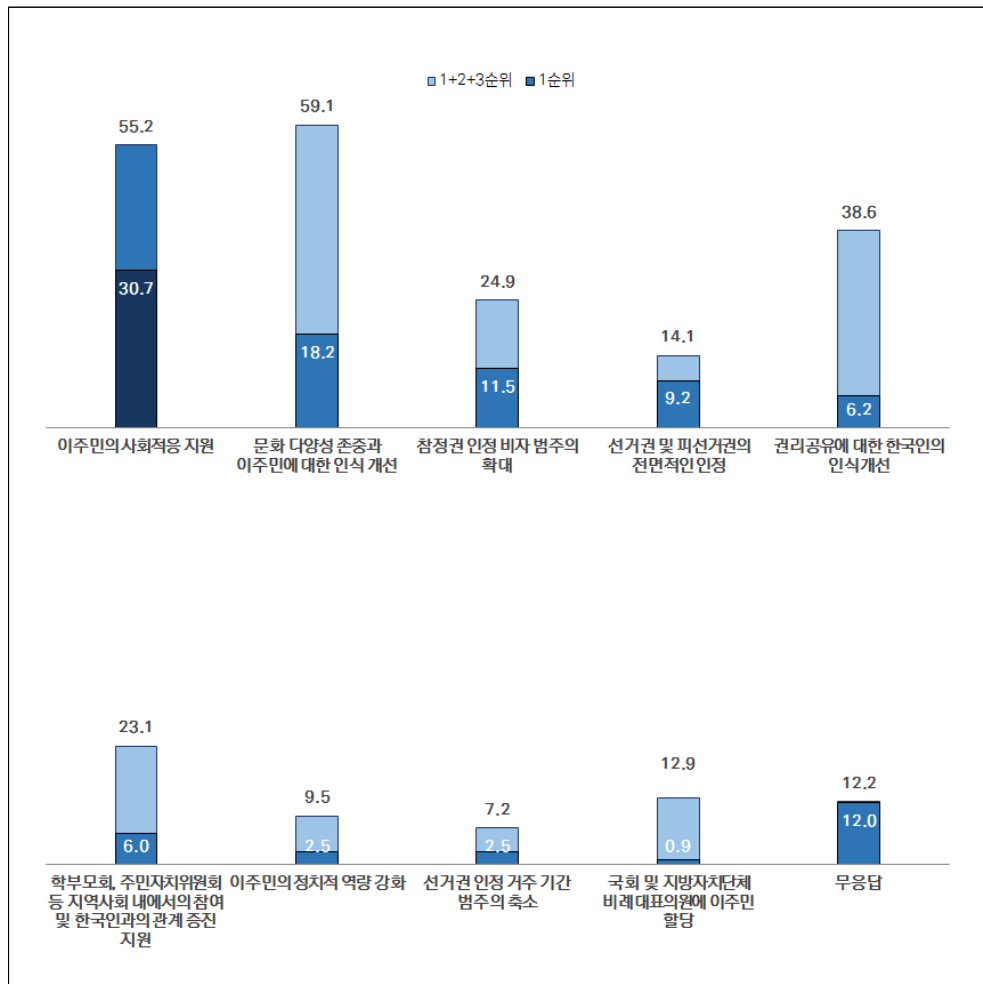
(단위 : %, 1순위)

구분	사례수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에 이주민 할당	무응답	통계량
전체	(433)	6.0	2.5	2.5	0.9	12.0	-
출신 국가	태국	(27)	0.0	0.0	3.7	0.0	0.0
	인도네시아	(3)	0.0	0.0	0.0	0.0	0.0
	베트남	(144)	6.9	4.9	1.4	0.7	17.4
	필리핀	(82)	6.1	0.0	0.0	0.0	20.7
	캄보디아	(59)	5.1	0.0	10.2	3.4	10.2
	중국	(64)	7.8	1.6	0.0	1.6	1.6
	기타	(54)	5.6	5.6	3.7	0.0	5.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4.8	0.0	1.6	0.8	10.4
	F-6(결혼이민)	(106)	3.8	4.7	1.9	1.9	14.2
	F-5(영주)	(33)	9.1	3.0	0.0	0.0	6.1
	F-2(거주)	(20)	10.0	5.0	10.0	0.0	0.0
	D-2, D-4(유학생)	(23)	8.7	0.0	0.0	0.0	4.3
	귀화자	(67)	7.5	1.5	4.5	1.5	9.0
	미등록체류자	(15)	6.7	0.0	0.0	0.0	60.0
	난민	(15)	0.0	20.0	6.7	0.0	13.3
	기타 거주자	(21)	9.5	0.0	4.8	0.0	4.8
무응답	(8)	12.5	0.0	0.0	0.0	37.5	
성별	여성	(271)	5.9	3.3	3.0	1.1	11.8
	남성	(150)	6.7	1.3	2.0	0.7	12.0
	무응답	(12)	0.0	0.0	0.0	0.0	16.7
연령별	20대 이하	(147)	6.8	3.4	3.4	0.7	12.9
	30대	(194)	5.7	2.1	2.6	1.5	10.8
	40대	(53)	5.7	1.9	0.0	0.0	7.5
	50대 이상	(15)	6.7	6.7	0.0	0.0	26.7
	무응답	(24)	4.2	0.0	4.2	0.0	16.7
경제 활동 여부	활동인합	(133)	6.0	3.8	2.3	1.5	9.0
	전일제	(207)	5.8	0.5	2.4	0.5	13.5
	시간제	(77)	7.8	5.2	3.9	1.3	10.4
	무응답	(16)	0.0	6.3	0.0	0.0	25.0
체류 기간	1년-2년	(76)	7.9	3.9	5.3	1.3	14.5
	3년-5년	(121)	4.1	3.3	2.5	0.8	9.1
	6년-10년	(116)	6.9	2.6	2.6	0.9	8.6
	11년-15년	(68)	5.9	1.5	1.5	1.5	14.7
	16년 이상	(31)	6.5	0.0	0.0	0.0	16.1
	무응답	(21)	4.8	0.0	0.0	0.0	23.8

‘사회통합 개선사항’(1+2+3순위 기준)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55.2%), ‘권리 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38.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24.9%),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23.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14.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12.9%),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단위 : %)



출신국가별로 태국(88.9%), 베트남(56.9%)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88.9%, 인도네시아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각 66.7%, 필리핀은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8.8%, 캄보디아(61.0%), 중국(78.1%)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가장 높았다.

체류형태별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각 64.0%, F-6(결혼이민)(59.4%), F-2(거주)(70.0%), D-2, D-4(유학생)(69.6%), 귀화자(56.7%)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F-5(영주)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72.7%, 미등록체류자는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60.0%, 난민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각 46.7%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여성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9.0%, 남성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각 58.0%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20대 이하(57.1%), 30대(60.8%), 50대 이상(53.3%)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40대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별로 활동안함(63.9%), 시간제(55.8%)는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전일제는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류기간별로 1년-2년(59.2%), 11년-15년(61.8%)은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3년-5년(57.9%), 6-10년(65.5%), 16년 이상(54.8%)은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1)

(단위 : %, 1+2+3순위)

구분	사례수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전체	(433)	59.1	55.2	38.6	24.9	23.1	
출신 국가	태국	(27)	74.1	88.9	51.9	48.1	0.0
	인도네시아	(3)	66.7	66.7	66.7	33.3	33.3
	베트남	(144)	55.6	56.9	27.1	27.8	18.8
	필리핀	(82)	46.3	45.1	48.8	20.7	24.4
	캄보디아	(59)	61.0	47.5	37.3	22.0	10.2
	중국	(64)	78.1	62.5	43.8	17.2	46.9
	기타	(54)	55.6	48.1	40.7	24.1	29.6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64.0	64.0	47.2	28.0	14.4
	F-6(결혼이민)	(106)	59.4	48.1	31.1	21.7	24.5
	F-5(영주)	(33)	66.7	72.7	42.4	18.2	45.5
	F-2(거주)	(20)	70.0	60.0	40.0	30.0	40.0
	D-2, D-4(유학생)	(23)	69.6	56.5	39.1	21.7	30.4
	귀화자	(67)	56.7	46.3	37.3	25.4	26.9
	미등록체류자	(15)	6.7	20.0	20.0	6.7	6.7
	난민	(15)	46.7	46.7	46.7	26.7	6.7
	기타 거주자	(21)	61.9	66.7	33.3	42.9	23.8
성별	무응답	(8)	25.0	50.0	25.0	25.0	12.5
	여성	(271)	59.0	54.2	35.8	22.9	27.3
	남성	(150)	58.0	58.0	43.3	28.0	16.7
연령별	무응답	(12)	75.0	41.7	41.7	33.3	8.3
	20대 이하	(147)	57.1	53.7	38.1	21.8	18.4
	30대	(194)	60.8	56.7	36.1	29.9	26.3
	40대	(53)	62.3	64.2	54.7	15.1	30.2
	50대 이상	(15)	53.3	33.3	13.3	26.7	20.0
경제 활동 여부	무응답	(24)	54.2	45.8	41.7	25.0	12.5
	활동안함	(133)	63.9	56.4	28.6	22.6	30.8
	전일제	(207)	57.5	58.0	43.5	27.1	16.9
	시간제	(77)	55.8	49.4	41.6	23.4	28.6
체류 기간	무응답	(16)	56.3	37.5	43.8	25.0	12.5
	1년-2년	(76)	57.9	59.2	34.2	18.4	14.5
	3년-5년	(121)	57.9	56.2	38.0	33.9	21.5
	6년-10년	(116)	65.5	52.6	38.8	26.7	29.3
	11년-15년	(68)	60.3	61.8	45.6	19.1	23.5
	16년 이상	(31)	54.8	48.4	35.5	16.1	29.0
무응답	(21)	38.1	38.1	38.1	19.0	19.0	

〈표 III-13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사항 1+2+3순위 (2)

(단위 : %, 1+2+3순위)

구분	사례수	학부모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국회 및 지방자치 단체 비례대표 의원에 이주민 할당	무응답	
전체	(433)	14.1	12.9	9.5	7.2	12.2	
출신 국가	태국	(27)	7.4	7.4	3.7	3.7	0.0
	인도네시아	(3)	0.0	0.0	33.3	0.0	0.0
	베트남	(144)	18.1	10.4	7.6	8.3	17.4
	필리핀	(82)	11.0	14.6	4.9	8.5	20.7
	캄보디아	(59)	8.5	13.6	15.3	0.0	10.2
	중국	(64)	15.6	10.9	10.9	3.1	1.6
	기타	(54)	16.7	22.2	14.8	16.7	7.4
체류 형태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125)	5.6	12.8	7.2	1.6	10.4
	F-6(결혼이민)	(106)	17.0	12.3	10.4	11.3	14.2
	F-5(영주)	(33)	15.2	9.1	6.1	6.1	6.1
	F-2(거주)	(20)	5.0	0.0	20.0	5.0	0.0
	D-2, D-4(유학생)	(23)	21.7	26.1	8.7	8.7	8.7
	귀화자	(67)	26.9	13.4	10.4	9.0	9.0
	미등록체류자	(15)	20.0	6.7	6.7	13.3	60.0
	난민	(15)	0.0	20.0	6.7	20.0	13.3
	기타 거주자	(21)	9.5	14.3	19.0	4.8	4.8
무응답	(8)	25.0	25.0	0.0	0.0	37.5	
성별	여성	(271)	18.5	11.1	8.9	8.5	12.2
	남성	(150)	7.3	16.7	9.3	5.3	12.0
	무응답	(12)	0.0	8.3	25.0	0.0	16.7
연령별	20대 이하	(147)	13.6	12.9	8.8	7.5	12.9
	30대	(194)	13.4	16.5	9.8	6.2	11.3
	40대	(53)	17.0	3.8	9.4	7.5	7.5
	50대 이상	(15)	26.7	13.3	0.0	20.0	26.7
	무응답	(24)	8.3	4.2	16.7	4.2	16.7
경제 활동 여부	활동안함	(133)	17.3	13.5	9.8	9.0	9.8
	전일제	(207)	11.1	12.1	8.7	3.4	13.5
	시간제	(77)	19.5	15.6	10.4	13.0	10.4
	무응답	(16)	0.0	6.3	12.5	12.5	25.0
체류 기간	1년-2년	(76)	14.5	17.1	6.6	7.9	15.8
	3년-5년	(121)	8.3	15.7	11.6	8.3	9.1
	6년-10년	(116)	18.1	9.5	8.6	6.9	8.6
	11년-15년	(68)	13.2	13.2	8.8	5.9	14.7
	16년 이상	(31)	22.6	9.7	12.9	6.5	16.1
	무응답	(21)	14.3	4.8	9.5	4.8	23.8

3. 요약 및 시사점

이주민 당사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1) 조사 결과

‘지방선거권 보유여부’에 대해 ‘있음’은 23.8%, ‘없음’은 58.2%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 투표여부’에 대해 ‘예’는 86.5%, ‘아니오’는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투표 미행사 이유’에 대해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시간이 없어서’(25.0%),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가 각 12.5% 등의 순이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식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24.7%,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22.6%,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4%,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5.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3.2%,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5%,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정치적 활동 자유 인식 관련하여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27.9%,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각 26.1%,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21.2%,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9.6%,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7.1%,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15.9%,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11.5%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인식은 22.4%,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29.3%였으며, 평균은 2.83점이다.(5점 만점 기준)

2) 분석 및 평가

① 선거권 보유와 관련된 질문에서, 현행법상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 1.5%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각각 1.5%와 3.0%이다. 또한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름' 24.2%에 달했다. 이는 선거권이 있음에도 제대로 교육 또는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②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해석에서, 체류형태별 성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귀화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100%이고, 영주자격 체류자나 결혼이주민 등에서도 여성이 대다수이다. 남성은 체류형태가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D-2, D-4(유학생), 난민 등 선거권이 없는 단기체류의 비중이 높다.

③ 체류형태별 투표경험은 '귀화자'가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F-5(영주)'(63.6%) 순으로 나타났다. 귀화자의 투표율은 지방선거 국내 전체 투표율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어, 투표권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④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성별 투표경험도 성별로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여성'이 87.5%로 투표를 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0.0%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성의 체류형태는 귀화자, F-6(결혼이민), F-5(영주) 등 선거권이 있는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고, 남성은 체류형태가 E-9(고용허가제, 단순노무), D-2, D-4(유학생), 난민 등 선거권이 없는 단기체류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5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37.5%),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31.3%), '시간이 없어서'(25.0%),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찍

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가 각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53.8%)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⑦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에 포함된 권리는 일정 자격을 보유한 이주민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들에서 '있음'이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 등에게도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인식 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한국민의 경우에도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모색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⑧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틀린 답변을 선택하거나 '모름'이나 '무응답'을 선택하여 답변을 유보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볼 때, 대체적으로 이주민 당사자는 권리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미 확립되어 있는 노동권 등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거나 모름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나.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1) 조사 결과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관련하여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각 55.0%,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53.3%,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52.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51.0% 등으로 나타났다.

'권리 필요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2) 분석 및 평가

① 권리보장의 인식 수준이 상당히 저조함에 비해,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사 대상 질문에서 모두가 절반 이상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의 제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단체 및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자유권, 노동권), 공무담임권도 그 요구도가 높다.

② 전체적으로 이들 질문에 대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근거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여성의 경우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본국으로의 송환 가능성 없이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이주민에게 권리가 필요한 이유에서, 성별로 여성은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31.3%, 남성은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남이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의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는 다른 권리에 대한 요구 정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체류자격, 성별, 연령 등을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된다.

④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요구정도에서 성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성’이 70.1%로 ‘남성’(6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 등 E-9의 체류자격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아, 이동의 자유의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남성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은 F-2(거주)가 가장 높았고, F-5(영주), F-6(결혼이민)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6%로 ‘남성’(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류형태 등에 기초한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권리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1) 조사 결과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46.7%,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5.7%,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4.8%,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4.1%,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43.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6.7%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개선사항’(1순위 기준)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이 3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18.2%),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11.5%)순이고, ‘사회통합 개선사항’(1+2+3순위 기준)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55.2%),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38.6%) 등의 순이다.

2) 분석 및 평가

①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40%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을 선택한 경우는 여성(17.7%)에 비해 남성(22.7%)로 높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 이러한 인식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 시 한국인의 우려수준 관련하여 걱정하는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걱정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이 모든 질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권리보장으로 한국인이 우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은 모두 절반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1) 조사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와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7.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45.0%,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43.9%,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8.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7.4% 등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및 평가

이주민이 원하는 권리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권리 공유'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주민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최하위 순위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소결

이주민 당사자는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

주민 관계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정도는 귀화자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무자를 제외하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정도는 체류자격별로 장기적인 체류를 전제한 자격의 경우에는 기본권적인 보장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등과 같이 단기 체류를 전제한 자격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및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민이 생각하는 한국과 한국민의 수용성 정도는 긍정적인 편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에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보다는 사회보장이나 실질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주민의 경우 정치적 권리 등에 대한 인식과 요구정도가 낮은 것은 본국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크고, 기본권을 자신의 체류자격에 기초한 현행법의 범주 내에서 인정되는 소극적인 권리로 인식하면서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주민 당사자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에서 여성은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는 정도가 남성의 경우보다 강한데, 이는 여성의 경우 귀화나 영주, 거주, 결혼 이민 등과 같이 종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자격 체류를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대다수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단순노무자들이 많아, 장기체류에 대한 권리와 기타 정치적 권리가 없음을 미리 인지하고 체류자격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권리 등의 요구에서 보다 사회보장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보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아동보육의 범주를 벗어나는 연령대인 50대 이상에서는 '필요 없음'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주민 당사자는 자신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치적인 권리 등에 대한 요구보다는 오히려, 사회보장이나 경제적인 안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거나 현실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등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한다.

IV

이주민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표로 한다.

나. 조사 개요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는 팩스와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사의 지역은 전국을 안배하였으며, 응답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는 109명이 회수되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실시되었다.

〈표 IV-1〉 조사 개요

구분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
조사 방법	팩스/이메일 조사
조사 지역	전국
분석 사례수	109명
조사 기간	2018. 9.

다. 조사 항목

이주민 관계자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인적사항은 앞선 응답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연령, 성별, 근무기

관, 직무 수행과정에서 이주민을 접할 기회 및 빈도, 이주민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이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이다.

이주민 관계자가 생각하는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인식정도와 인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정도, 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리 및 인정시점,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특히,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이주민 관계자가 생각하는 영향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IV-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관계자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응답자 인적사항	- 연령 - 성별 - 근무기관 - 직무수행과정중 이주민을 접할 기회 - 이주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이유 - 총 근무한 재직 연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지(9문항) -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정도 - 이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및 인정시점(13문항) -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권리 보장 정도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미칠 영향(14문항) -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

2. 설문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1) 성별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78.0%, ‘남성’은 22.0%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성’ 100.0%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 98.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유사한 수준이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여성’ 100.0%,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58.1%, ‘남성’이 41.9%이며, 중앙정부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각 50.0%로 조사되었다.

〈표 IV-3〉 성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여성	남성
전체		(109)	78.0	22.0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10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98.0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45.5	54.5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100.0	0.0
	중앙정부	(8)	50.0	50.0
	지방자치단체	(31)	58.1	41.9

2) 연령

응답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9.4%), ‘50대 이상’(26.6%), ‘20대’(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대’와 ‘40대’가 각 50%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0대’ 31.4%, ‘40대’와 ‘50대’가 각각 27.5%, 20대가 9.8%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30대’ 45.5%, ‘40대’가 36.4%, ‘50대 이상’이 18.2%이다.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40대’ 50.0%,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5%이다. 중앙정부는 ‘40대’ 75.0%, ‘20’대와 ‘50대’ 이상이 각 25%이며, 지방자치단체는 ‘40대’, ‘50대

이상' 각 35.5%, 30대가 29%이다.

이들 연령 분포는 각각의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기관별 연령대에 따른 특성을 특정 짓기는 어렵다.

〈표 IV-4〉 연령

(단위 : %)

구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전체	(109)	6.4	29.4	35.8	26.6	1.8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9.8	31.4	27.5	27.5	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45.5	36.4	18.2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0.0	50.0	25.0	0.0
	중앙정부	(8)	12.5	0.0	75.0	12.5	0.0
	지방자치단체	(31)	0.0	29.0	35.5	35.5	0.0

3)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

응답자의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이 2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22.9%), '10년 이상'(20.2%), '5-10년 미만'(19.3%), '3-5년 미만'(7.3%) 등의 순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년 이상' 50.0%, '1년 미만'과 '5~10년'이 각 25%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3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 29.4%, '10년 이상'이 17.6%, '1년 미만'이 11.8%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0년 이상' 54.5%이고, '5~10년 미만'이 27.3%이며, '1~3년 미만'과 '3~5년 미만'이 각 9.1%이다.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10년 이상'이 50.0%, '1~3년 미만'과 '3~5년'이 각 25%이다. 중앙정부는 '1년 미만', '10년 이상' 각 37.5%, 3~5년 미만이 25%이다. 지방자치단체는 '1년 미만' 67.7%, '1~3년 미만'이 25.8%, '5~10년 미만'이 3.2%이다.

〈표 IV-5〉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

(단위 : %)

구분		사례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무응답
전체		(109)	28.4	22.9	7.3	19.3	20.2	1.8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0.0	0.0	25.0	5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1.8	29.4	9.8	29.4	17.6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9.1	9.1	27.3	54.5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25.0	0.0	25.0	50.0	0.0
	중앙정부	(8)	37.5	0.0	25.0	0.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67.7	25.8	0.0	3.2	0.0	3.2

4) 이주민 접촉 빈도

응답자의 이주민 접촉빈도는 ‘거의 매일’이 5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16.5%), ‘거의 만날 기회 없음’(11.9%), ‘1주일에 3-4회 이상’(7.3%), ‘1주일에 1-2회’(4.6%) 등의 순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주일에 3-4회 이상’, ‘거의 매일’ 각 50.0%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거의 매일’ 90.2%, ‘1주일에 3-4회 이상’이 5.9%, ‘1주일에 1-2회’와 ‘거의 만날 기회 없음’이 각 2%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거의 매일’이 90.9%, ‘1주일에 3~4회 이상’이 9.1%이다.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거의 매일’ 50.0%, ‘1달에 1~2회’와 ‘1주일에 1~2회’가 각 25%이다. 중앙정부는 ‘거의 만날 기회 없음’, ‘한 달에 1-2회’ 각 37.5%, ‘1주일에 1~2회’와 ‘거의 매일’이 각 12.5%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에 1-2회’ 45.2%, ‘거의 만날 기회 없음’이 29%, ‘거의 매일’이 12.9%, ‘1주일에 1~2회’와 ‘1주일에 3~4회’가 각 6.5%이다.

〈표 IV-6〉 이주민 접촉 빈도

(단위 : %)

구분	사례수	거의 만날 기회 없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이상	거의 매일	
전체	(109)	11.9	16.5	4.6	7.3	59.6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0.0	0.0	50.0	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0	0.0	2.0	5.9	90.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0.0	9.1	90.9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25.0	25.0	0.0	50.0
	중앙정부	(8)	37.5	37.5	12.5	0.0	12.5
	지방자치단체	(31)	29.0	45.2	6.5	6.5	12.9

5)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응답자는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는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이 6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45.0%),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30.3%),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관련’이 23.9%, ‘노동, 인권 문제 상담’이 22.9%,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이 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유로 방문하는 경우도 17.4% 등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 75.0%,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이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 98.0%,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이 58.8%,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이 43.1%,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 관련’ 41.2%,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 25.5%, ‘기타’ 5.9%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 인권 문제 상담’ 100.0%,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과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이 각 72.7%이며,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이 63.6%,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 관련’과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이 각 9.1%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노동, 인권 문제 상담’이 50.0%,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관련’이 25%,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 관련’ 50.0%, ‘기타’ 25.0% 등의 순이다.

중앙정부는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이 25.0%, ‘노동, 인권문제 상담’과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이 12.5%,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 관련’ 25.0%, ‘기타’ 25.0%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 35.5%,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이 19.4%,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이 9.7%, ‘노동, 인권 문제 상담’이 6.5%,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 3.2%, ‘기타’가 41.9% 등의 순이다.

이들 업무는 각 기관이 가진 특성에 따라 분포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7〉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1)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	노동, 인권 문제 상담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	
전체	(109)	45.0	22.9	66.1	30.3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5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58.8	17.6	98.0	43.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72.7	100.0	63.6	72.7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50.0	25.0	0.0
	중앙정부	(8)	25.0	12.5	12.5	0.0
	지방자치단체	(31)	19.4	6.5	35.5	9.7

〈표 IV-8〉 이주민이 해당기관 방문이유 (2)

(단위 : %, 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관련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	기타	무응답	
전체	(109)	23.9	13.8	17.4	2.8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0.0	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41.2	25.5	5.9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1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50.0	0.0	25.0	0.0
	중앙정부	(8)	25.0	0.0	25.0	0.0
	지방자치단체	(31)	0.0	3.2	41.9	9.7

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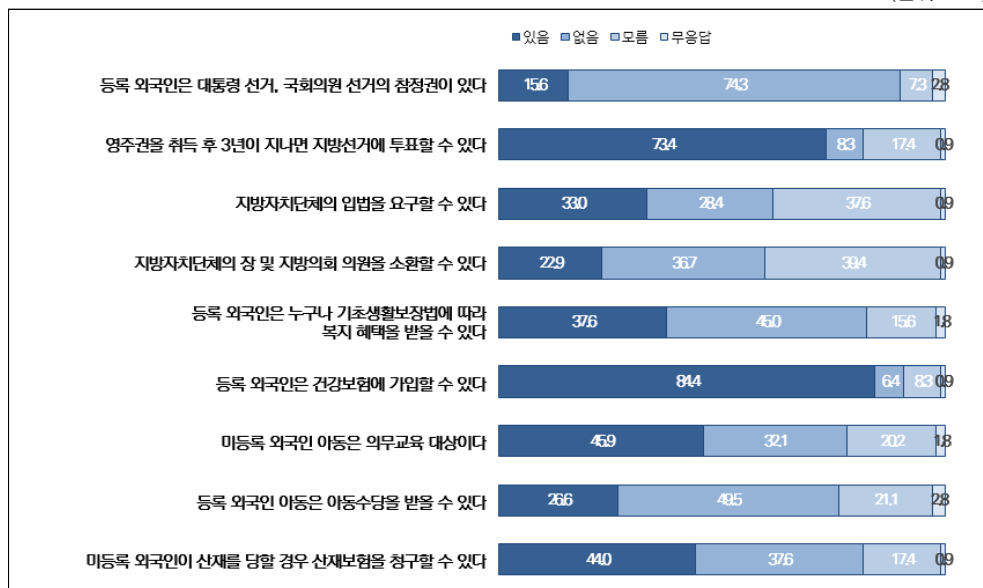
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1) 종합

이주민의 권리 보유와 관련한 질문으로 ‘등록 외국인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는 ‘있음’ 15.6%, ‘없음’ 74.3%이고,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있음’ 73.4%, ‘없음’ 8.3%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있음’ 33.0%, ‘없음’ 36.7%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있음’ 22.9%, ‘없음’이 36.7%이다. ‘등록 외국인인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이 37.6%, ‘없음’이 45%이다. ‘등록 외국인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있음’이 84.4%, ‘없음’이 6.4%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는 ‘이다’가 45.9%, ‘아니다’가 32.1%이다.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이 26.6%, ‘없음’이 49.5%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있음’이 44.0%, ‘없음’이 37.6%이다.

〈그림 IV-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종합

(단위 : %)



(2) 등록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참정권

응답자는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에 대해 ‘있음’은 15.6%, ‘없음’은 74.3%였고, ‘모름’은 7.3%, ‘무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권리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5%), ‘지방자치단체’(9.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1%)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에서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7.6%가 ‘있다’고 보는 반면, ‘남성’(8.3%)만이 ‘있다’로 응답하여, 남성이 현행 제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2.9%, ‘30대’(28.1%), ‘40대’(7.7%), ‘50대 이상’(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권리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권리인식은 ‘5-10년 미만’이 19.0%, ‘1년 미만’(16.1%), ‘1-3년 미만’(16.0%), ‘3-5년 미만’(12.5%), ‘10년 이상’(9.1%) 등의 순이다. 따라서 근무연수가 길수록 권리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15.6	74.3	7.3	2.8	-
근무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0.0	0.0	$\chi^2=15.947,$ $p=0.1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3.5	70.6	2.0	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0.0	
	중앙정부	(8)	0.0	75.0	25.0	0.0	
	지방자치단체	(31)	9.7	71.0	16.1	3.2	
성별	여성	(85)	17.6	72.9	7.1	2.4	$\chi^2=1.186,$ $p=0.553$
	남성	(24)	8.3	79.2	8.3	4.2	
연령별	20대	(7)	42.9	57.1	0.0	0.0	$\chi^2=13.188,$ $p=0.040$
	30대	(32)	28.1	62.5	9.4	0.0	
	40대	(39)	7.7	84.6	7.7	0.0	
	50대 이상	(29)	3.4	79.3	6.9	10.3	
	무응답	(2)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	1년 미만	(31)	16.1	54.8	25.8	3.2	$-\chi^2=22.966,$ $p=0.003$
	1-3년 미만	(25)	16.0	84.0	0.0	0.0	
	3-5년 미만	(8)	12.5	87.5	0.0	0.0	
	5-10년 미만	(21)	19.0	76.2	0.0	4.8	
	10년 이상	(22)	9.1	86.4	0.0	4.5	
	무응답	(2)	50.0	50.0	0.0	0.0	

(3)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시 지방선거 투표권

응답자 중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73.4%, ‘없음’은 8.3%였고, ‘모름’은 17.4%, ‘무응답’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8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각 75.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72.7%), ‘지방자치단체’(67.7%), ‘중앙정부’(50.0%) 등의 순이다. 따라서 정부기관보다 비정부기관의 인식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6.5%로 ‘남성’(62.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8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6.9%), ‘50대 이상’(75.9%), ‘30대’(65.6%)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 보면, ‘10년 이상’이 9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90.5%), ‘1-3년 미만’(76.0%), ‘3-5년 미만’(62.5%), ‘1년 미만’(5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무연수가 길수록 권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V-10〉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73.4	8.3	17.4	0.9	-	
근무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0.0	$\chi^2=9.491,$ $p=0.48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80.4	9.8	9.8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72.7	0.0	27.3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75.0	25.0	0.0	0.0	
	중앙정부	(8)	50.0	12.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67.7	6.5	22.6	3.2	
성별	여성	(85)	76.5	8.2	15.3	0.0	$\chi^2=1.513,$ $p=0.469$
	남성	(24)	62.5	8.3	25.0	4.2	
연령별	20대	(7)	85.7	0.0	14.3	0.0	$\chi^2=5.659,$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30대	(32)	65.6	9.4	25.0	0.0	p=0.462
	40대	(39)	76.9	5.1	17.9	0.0	
	50대 이상	(29)	75.9	13.8	6.9	3.4	
	무응답	(2)	50.0	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51.6	9.7	35.5	3.2	x ² =20.673, p=0.008
	1-3년 미만	(25)	76.0	12.0	12.0	0.0	
	3-5년 미만	(8)	62.5	0.0	37.5	0.0	
	5-10년 미만	(21)	90.5	4.8	4.8	0.0	
	10년 이상	(22)	95.5	4.5	0.0	0.0	
	무응답	(2)	0.0	50.0	50.0	0.0	

(4) 지방자치단체 입법 요구권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33.0%, ‘없음’은 28.4%였고, ‘모름’은 37.6%, ‘무응답’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법 요구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무기관별 ‘있음’에 대한 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3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37.3%), ‘지방자치단체’(29.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8.2%)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3.3%로 ‘여성’(32.9%)에 비해 다소 높게 ‘있음’을 선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8.5%), ‘50대 이상’(31.0%), ‘30대’(25.0%)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권리인식은 ‘3-5년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45.5%), ‘5-10년 미만’(42.9%), ‘1년 미만’(29.0%), ‘1-3년 미만’(16.0%) 등의 순이다.

〈표 IV-11〉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33.0	28.4	37.6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0.0	$\chi^2=12.113,$ $p=0.27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7.3	31.4	31.4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18.2	36.4	45.5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75.0	25.0	0.0	
	중앙정부	(8)	37.5	25.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9.0	19.4	48.4	3.2	
성별	여성	(85)	32.9	30.6	36.5	0.0	$\chi^2=0.746,$ $p=0.689$
	남성	(24)	33.3	20.8	41.7	4.2	
연령별	20대	(7)	57.1	0.0	42.9	0.0	$\chi^2=8.985,$ $p=0.174$
	30대	(32)	25.0	25.0	50.0	0.0	
	40대	(39)	38.5	25.6	35.9	0.0	
	50대 이상	(29)	31.0	41.4	24.1	3.4	
	무응답	(2)	0.0	5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9.0	16.1	51.6	3.2	$\chi^2=14.887,$ $p=0.061$
	1-3년 미만	(25)	16.0	40.0	44.0	0.0	
	3-5년 미만	(8)	50.0	12.5	37.5	0.0	
	5-10년 미만	(21)	42.9	23.8	33.3	0.0	
	10년 이상	(22)	45.5	40.9	13.6	0.0	
	무응답	(2)	0.0	50.0	50.0	0.0	

(5)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소환권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2.9%, '없음'은 36.7%였고, '모름'은 39.4%, '무응답'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소환권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있음'을 선택한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7.5%), '지방자치단체'(22.6%), '중앙정부'(12.5%) 등의 순이다.

성별 권리인식은 '남성'이 25.0%로 '여성'(2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권리인식은 '20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5.0%), '40대'(23.1%), '50대 이상'(20.7%)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권리인식은 '5-10년 미만'이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27.3%), '3-5년 미만'(25.0%), '1-3년 미만'(16.0%), '1년 미만'(12.9%) 등의 순이다.

<표 IV-12>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22.9	36.7	39.4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0.0	$\chi^2=17.271,$ $p=0.06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7.5	39.2	33.3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54.5	45.5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75.0	25.0	0.0	
	중앙정부	(8)	12.5	50.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2.6	22.6	51.6	3.2	
성별	여성	(85)	22.4	37.6	40.0	0.0	$\chi^2=0.153,$ $p=0.927$
	남성	(24)	25.0	33.3	37.5	4.2	
연령별	20대	(7)	28.6	14.3	57.1	0.0	$\chi^2=2.156,$ $p=0.905$
	30대	(32)	25.0	34.4	40.6	0.0	
	40대	(39)	23.1	38.5	38.5	0.0	
	50대 이상	(29)	20.7	41.4	34.5	3.4	
	무응답	(2)	0.0	5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2.9	32.3	51.6	3.2	$\chi^2=11.897,$ $p=0.156$
	1-3년 미만	(25)	16.0	36.0	48.0	0.0	
	3-5년 미만	(8)	25.0	25.0	50.0	0.0	
	5-10년 미만	(21)	42.9	33.3	23.8	0.0	
	10년 이상	(22)	27.3	50.0	22.7	0.0	
	무응답	(2)	0.0	50.0	50.0	0.0	

(6) 등록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 혜택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37.6%, ‘없음’은 45.0%였고, ‘모름’은 15.6%, ‘무응답’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에 대한 인식이 45%라는 점에서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있음’과 ‘모름’의 비율이 총 53.2%임을 감안하면, 권리인식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있다’로 응답하여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66.7%),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25.0%), ‘중앙정부’(12.5%), ‘지방자치단체’(6.5%) 등의 순이다. 따라서 권리 인식정도는 각 기관별 담당 업무에 따라 인식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련 업무만을 주로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7.1%가 ‘있음’으로 답한 반면, ‘남성’은 4.2%만이 ‘있음’으로 답해, 여성보다 남성의 권리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0대’가 7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44.8%), ‘30대’(34.4%), ‘40대’(25.6%) 등의 순이다. 따라서 40대, 30대, 50대 이상, 20대 순으로 권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년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48.0%), ‘10년 이상’(45.5%), ‘5-10년 미만’(38.1%), ‘1년 미만’(22.6%) 등의 순이다. 따라서 1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3년 미만의 순으로 권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3〉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37.6	45.0	15.6	1.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25.0	0.0	0.0	$\chi^2 = 52.866,$ $p = 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66.7	29.4	3.9	0.0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81.8	9.1	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75.0	0.0	0.0	
	중앙정부	(8)	12.5	37.5	50.0	0.0	
	지방자치단체	(31)	6.5	58.1	32.3	3.2	
성별	여성	(85)	47.1	40.0	12.9	0.0	$\chi^2=13.534,$ $p=0.001$
	남성	(24)	4.2	62.5	25.0	8.3	
연령별	20대	(7)	71.4	28.6	0.0	0.0	$\chi^2=7.192,$ $p=0.303$
	30대	(32)	34.4	46.9	15.6	3.1	
	40대	(39)	25.6	53.8	20.5	0.0	
	50대 이상	(29)	44.8	37.9	13.8	3.4	
	무응답	(2)	10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2.6	35.5	38.7	3.2	$\chi^2=21.462,$ $p=0.006$
	1-3년 미만	(25)	48.0	36.0	12.0	4.0	
	3-5년 미만	(8)	50.0	37.5	12.5	0.0	
	5-10년 미만	(21)	38.1	61.9	0.0	0.0	
	10년 이상	(22)	45.5	50.0	4.5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7) 등록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권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84.4%, '없음'은 6.4%였고, '모름'은 8.3%, '무응답'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권리인식은 종합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96.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81.8%), '출입국관리사무소'(75.0%), '지방자치단체'(71.0%), '중앙정부'(62.5%)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4.7%로 '남성'(83.3%)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9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84.4%), '40대'(82.1%), '20대'(5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대별로도 권리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특이할 만한 점은 20대의 경우 57.1%만이 '있음'으로 답해, 관련 권리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92.0%), '3-5년 미만'(87.5%), '10년 이상'(86.4%), '1년 미만'(6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속년수별 권리인식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경우에는 67.7%만이 '있음'으로 답해, 관련 권리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84.4	6.4	8.3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0.0	$\chi^2=17.560,$ $p=0.0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96.1	2.0	2.0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81.8	18.2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100.0	0.0	0.0	0.0	
	중앙정부	(8)	62.5	12.5	25.0	0.0	
	지방자치단체	(31)	71.0	9.7	16.1	3.2	
성별	여성	(85)	84.7	5.9	9.4	0.0	$\chi^2=0.789,$ $p=0.674$
	남성	(24)	83.3	8.3	4.2	4.2	
연령별	20대	(7)	57.1	28.6	14.3	0.0	$\chi^2=10.677,$ $p=0.099$
	30대	(32)	84.4	3.1	12.5	0.0	
	40대	(39)	82.1	7.7	10.3	0.0	
	50대 이상	(29)	93.1	3.4	0.0	3.4	
	무응답	(2)	10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7.7	6.5	22.6	3.2	$\chi^2=15.207,$ $p=0.055$
	1-3년 미만	(25)	92.0	4.0	4.0	0.0	
	3-5년 미만	(8)	87.5	12.5	0.0	0.0	
	5-10년 미만	(21)	100.0	0.0	0.0	0.0	
	10년 이상	(22)	86.4	9.1	4.5	0.0	
	무응답	(2)	50.0	50.0	0.0	0.0	

(8) 미등록 외국인(미등록 체류자) 아동 의무교육 대상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에 대해 ‘있음’은 45.9%, ‘없음’은 32.1%였고, ‘모름’은 20.2%, ‘무응답’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대상 인지 여부에 대한 인지 여부는 ‘없음’이 32.1%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75.0%가 ‘있음’으로 답해 권리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60.8%),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중앙정부’(각 5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7.3%), ‘지방자치단체’(22.6%) 등의 순으로 권리인식 정도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32.9%가, ‘남성’은 29.2%가 ‘없음’으로 답해, 여성의 인식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은 ‘있음’에 49.4%가, 남성은 ‘33.3%’만이 답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없음’으로 답한 경우는 ‘30대’ 37.5%, ‘50대 이상’이 34.5%, ‘20대’와 ‘40대’는 각 28.6%, 28.2%로 나타났고, ‘있음’에 답한 경우는 ‘50대 이상’이 4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46.2%), ‘30대’(43.8%), ‘20대’(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권리인식 정도는 30대, 50대, 20대와 40대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없음’에 답한 경우는 ‘1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각 38.7%와 33.3%이며, ‘1~3년 미만’ 28%, ‘10년 이상’ 27.3%, ‘3~5년 미만’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45.9	32.1	20.2	1.8	-	
근무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0.0	$\chi^2=23.484,$ $p=0.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60.8	27.5	11.8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27.3	63.6	0.0	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50.0	25.0	25.0	0.0	
	중앙정부	(8)	50.0	12.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2.6	38.7	35.5	3.2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성별	여성	(85)	49.4	32.9	17.6	0.0	$\chi^2 = 2.350$, $p = 0.309$
	남성	(24)	33.3	29.2	29.2	8.3	
연령별	20대	(7)	28.6	28.6	42.9	0.0	$\chi^2 = 4.188$, $p = 0.651$
	30대	(32)	43.8	37.5	15.6	3.1	
	40대	(39)	46.2	28.2	25.6	0.0	
	50대 이상	(29)	48.3	34.5	13.8	3.4	
	무응답	(2)	10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6.1	38.7	41.9	3.2	$\chi^2 = 28.968$, $p = 0.000$
	1-3년 미만	(25)	40.0	28.0	28.0	4.0	
	3-5년 미만	(8)	87.5	12.5	0.0	0.0	
	5-10년 미만	(21)	66.7	33.3	0.0	0.0	
	10년 이상	(22)	63.6	27.3	9.1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9) 등록 외국인의 아동수당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26.6%, ‘없음’은 49.5%였고, ‘모름’은 21.1%, ‘무응답’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수당에 대한 권리인식 정도는 49.5%로 절반 정도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있음’과 ‘모름’에 대한 응답이 모두 47.7%로 나타나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없음’으로 답한 경우가 81.8%이며, ‘있음’으로 답한 경우는 0%로 나타나, 아동수당과 관련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없음’으로 답한 경우가 각 50.0%와 47.1%로 답해 아동수당과 관련한 인식이 비정부기관의 경우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각 37.5%와 48.4%, 25.0%로 답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보다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보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 보면, ‘없음’에 답한 경우가 ‘여성’ 48.2%이고, ‘남성’ 54.2%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권리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없음’에 답한 경우가 ‘20대’ 28.6%로 가장 저조하고, ‘30대’는 59.4%

로 가장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 보면, '3-5년 미만'이 87.5%가 '없음'에 대해 권리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63.6%, '5-10년 미만'이 42.9%, '1-3년 미만'이 40%, '1년 미만' 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26.6	49.5	21.1	2.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25.0	25.0	0.0	$\chi^2=17.313,$ $p=0.0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2	47.1	13.7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81.8	9.1	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50.0	25.0	0.0	
	중앙정부	(8)	25.0	37.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12.9	48.4	32.3	6.5	
성별	여성	(85)	31.8	48.2	18.8	1.2	$\chi^2=5.058,$ $p=0.080$
	남성	(24)	8.3	54.2	29.2	8.3	
연령별	20대	(7)	14.3	28.6	57.1	0.0	$\chi^2=13.970,$ $p=0.030$
	30대	(32)	21.9	59.4	15.6	3.1	
	40대	(39)	17.9	53.8	25.6	2.6	
	50대 이상	(29)	44.8	41.4	10.3	3.4	
	무응답	(2)	50.0	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38.7	35.5	6.5	$\chi^2=22.379,$ $p=0.004$
	1-3년 미만	(25)	20.0	40.0	36.0	4.0	
	3-5년 미만	(8)	12.5	87.5	0.0	0.0	
	5-10년 미만	(21)	52.4	42.9	4.8	0.0	
	10년 이상	(22)	27.3	63.6	9.1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 미등록 외국인(미등록 체류자) 산재 시 산재보험 청구권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보유 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 '있음'은 44.0%, '없음'은 37.6%였고, '모름'은 17.4%, '무응답'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보면,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75.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72.7%), '중앙정부'(6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39.2%), '지방자치단체'(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5.8%로 '여성'(43.5%)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권리인식은 '20대'가 5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44.8%), '40대'(43.6%), '30대'(40.6%)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3-5년 미만'이 7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68.2%), '5-10년 미만'(61.9%), '1-3년 미만'(28.0%), '1년 미만'(22.6%) 등의 순이다.

〈표 IV-17〉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인지]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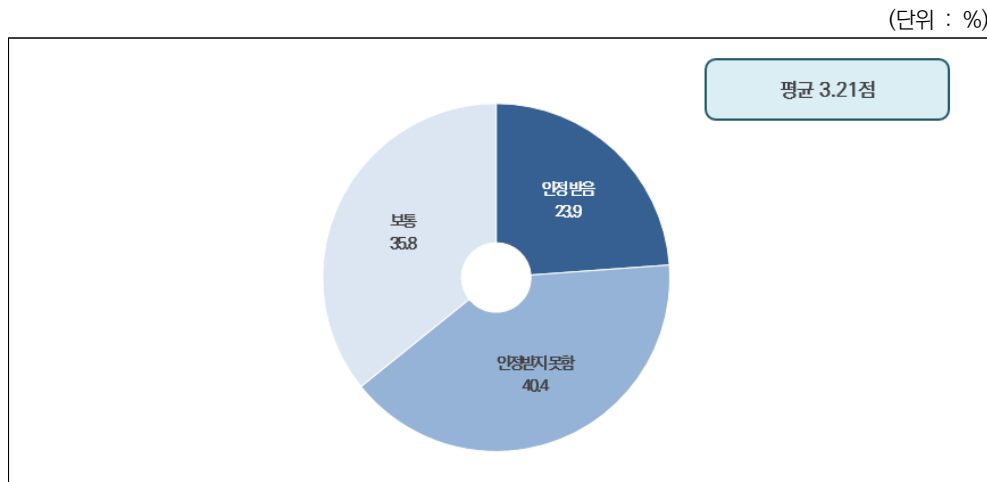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44.0	37.6	17.4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0.0	25.0	-	$\chi^2=25.083,$ $p=0.0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2	49.0	11.8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72.7	27.3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100.0	0.0	0.0	0.0	
	중앙정부	(8)	62.5	0.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5.8	41.9	29.0	3.2	
성별	여성	(85)	43.5	40.0	16.5	0.0	$\chi^2=0.797,$ $p=0.671$
	남성	(24)	45.8	29.2	20.8	4.2	
연령별	20대	(7)	57.1	0.0	42.9	0.0	$\chi^2=9.043,$ $p=0.171$
	30대	(32)	40.6	50.0	9.4	0.0	
	40대	(39)	43.6	33.3	23.1	0.0	
	50대 이상	(29)	44.8	37.9	13.8	3.4	
	무응답	(2)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2.6	45.2	29.0	3.2	$\chi^2=23.949,$ $p=0.002$
	1-3년 미만	(25)	28.0	40.0	32.0	0.0	
	3-5년 미만	(8)	75.0	25.0	0.0	0.0	
	5-10년 미만	(21)	61.9	38.1	0.0	0.0	
	10년 이상	(22)	68.2	22.7	9.1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2)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응답자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정도’에 대해 ‘인정받는다’는 23.9%, ‘인정받지 못한다’는 40.4%였으며, 평균은 3.21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2〉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인정받지 못함:①+②, 보통:③, 인정받음:④+⑤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4.55점으로 이주민이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인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2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각 3.10점), ‘중앙정부’(2.50점), ‘출입국관리사무소’(2.25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46점으로 ‘여성’(3.14점)에 비해 ‘인정받지 못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30대’가 각 3.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3.10점), ‘20대’(3.00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3-5년 미만’이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3.29점), ‘1년 미만’, ‘1-3년 미만’(각 3.16점), ‘10년 이상’(3.14점) 등의 순이다.

〈표 IV-18〉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인정받지 못함 ①+②	보통 ③	인정받음 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40.4	35.8	23.9	3.21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2.25	F=10.293,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1.4	47.1	21.6	3.1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0.9	9.1	0.0	4.55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100.0	0.0	0.0	4.25	
	중앙정부	(8)	12.5	37.5	50.0	2.50	
	지방자치단체	(31)	41.9	29.0	29.0	3.10	
성별	여성	(85)	37.6	37.6	24.7	3.14	F=2.093, p=0.151
	남성	(24)	50.0	29.2	20.8	3.46	
연령별	20대	(7)	28.6	42.9	28.6	3.00	F=0.361, p=0.781
	30대	(32)	37.5	43.8	18.8	3.28	
	40대	(39)	48.7	28.2	23.1	3.28	
	50대 이상	(29)	34.5	37.9	27.6	3.10	
	무응답	(2)	50.0	0.0	50.0	3.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51.6	16.1	32.3	3.16	F=0.277, p=0.892
	1-3년 미만	(25)	28.0	56.0	16.0	3.16	
	3-5년 미만	(8)	50.0	37.5	12.5	3.50	
	5-10년 미만	(21)	38.1	42.9	19.0	3.29	
	10년 이상	(22)	36.4	31.8	31.8	3.14	
	무응답	(2)	50.0	50.0	0.0	3.50	

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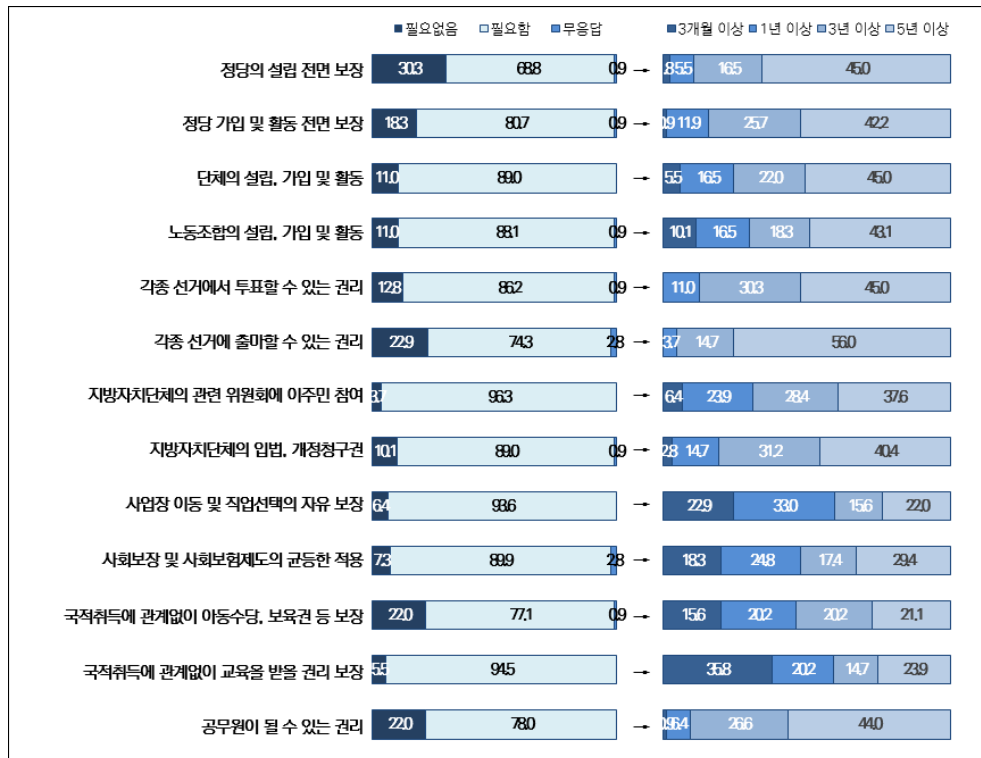
(1) 종합

이주민에 대한 권리의 인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96.3%,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94.5%,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93.6%,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제도의 균등한 적용’ 89.9%,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각 89.0%,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88.1%,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86.2%,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80.7%,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8.0%,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77.1%,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74.3%, ‘정당의 설립 전면보장’ 68.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필요] 종합

(단위 : %)



(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8%, ‘필요 없다’는 인식은 30.3%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6.5%), ‘1년 이상’(5.5%), ‘3개월 이상’(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9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76.5%),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75.0%), ‘지방자치단체’(64.5%), ‘출입국관리사무소’(50.0%), ‘중앙정부’(12.5%) 등의 순이다. 정

당 설립의 전면보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 관계자는 각 50.0%, 1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70.6%로 '남성'(6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8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71.4%), '40대'(64.1%), '50대 이상'(58.6%)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7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 미만'(75.0%), '10년 이상'(72.7%), '1-3년 미만'(72.0%), '1년 미만'(58.1%) 등의 순이다.

〈표 IV-1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30.3	68.8	1.8	5.5	16.5	45.0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50.0	0.0	0.0	0.0	50.0	0.0	F=3.059, p=0.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1.6	76.5	0.0	7.8	25.5	43.1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9.1	0.0	18.2	63.6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75.0	0.0	0.0	0.0	75.0	0.0	
	중앙정부	(8)	87.5	12.5	0.0	0.0	0.0	12.5	0.0	
	지방자치단체	(31)	35.5	64.5	3.2	6.5	9.7	45.2	0.0	
성별	여성	(85)	28.2	70.6	1.2	7.1	17.6	44.7	1.2	F=0.380, p=0.539
	남성	(24)	37.5	62.5	4.2	0.0	12.5	45.8	0.0	
연령별	20대	(7)	28.6	71.4	0.0	14.3	42.9	14.3	0.0	F=1.259, p=0.293
	30대	(32)	18.8	81.3	3.1	0.0	25.0	53.1	0.0	
	40대	(39)	33.3	64.1	2.6	5.1	5.1	51.3	2.6	
	50대 이상	(29)	41.4	58.6	0.0	6.9	13.8	37.9	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41.9	58.1	3.2	6.5	19.4	29.0	0.0	F=1.472, p=0.216
	1-3년 미만	(25)	24.0	72.0	0.0	12.0	16.0	44.0	4.0	
	3-5년 미만	(8)	25.0	75.0	0.0	0.0	12.5	62.5	0.0	
	5-10년 미만	(21)	23.8	76.2	0.0	0.0	4.8	71.4	0.0	
	10년 이상	(22)	27.3	72.7	4.5	4.5	27.3	36.4	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50.0	0.0		

(3)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0.7%, '필요 없다'는 인식은 18.3%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25.7%), '1년 이상'(11.9%), '3개월 이상'(0.9%)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86.3%), '지방자치단체'(80.6%), '출입국관리사무소'(50.0%), '중앙정부'(25.0%) 등의 순이다.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전면보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 관계자는 각 50%, 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81.2%로 '남성'(7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9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85.7%), '50대 이상'(72.4%), '40대'(71.8%)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80.0%), '1년 미만'(77.4%), '10년 이상'(77.3%), '3-5년 미만'(75.0%) 등의 순이다.

〈표 IV-2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18.3	80.7	0.9	11.9	25.7	42.2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50.0	0.0	0.0	25.0	25.0	0.0	F=3.289, p=0.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1.8	86.3	0.0	7.8	35.3	43.1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100.0	9.1	27.3	36.4	27.3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25.0	25.0	50.0	0.0	
	중앙정부	(8)	75.0	25.0	0.0	0.0	0.0	25.0	0.0	
	지방자치단체	(31)	19.4	80.6	0.0	16.1	12.9	51.6	0.0	
성별	여성	(85)	17.6	81.2	0.0	11.8	27.1	42.4	1.2	F=0.306, p=0.581
	남성	(24)	20.8	79.2	4.2	12.5	20.8	41.7	0.0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연령 별	20대	(7)	14.3	85.7	0.0	14.3	57.1	14.3	0.0	F=1.638, p=0.185
	30대	(32)	3.1	96.9	3.1	9.4	40.6	43.8	0.0	
	40대	(39)	25.6	71.8	0.0	10.3	10.3	51.3	2.6	
	50대 이상	(29)	27.6	72.4	0.0	17.2	17.2	37.9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0.0	0.0	
이주 민관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2.6	77.4	0.0	12.9	19.4	45.2	0.0	F=1.162, p=0.332
	1-3년 미만	(25)	16.0	80.0	0.0	16.0	28.0	36.0	4.0	
	3-5년 미만	(8)	25.0	75.0	0.0	0.0	25.0	50.0	0.0	
	5-10년 미만	(21)	9.5	90.5	0.0	4.8	28.6	57.1	0.0	
	10년 이상	(22)	22.7	77.3	4.5	18.2	31.8	22.7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0.0	

(4)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9.0%, '필요 없다'는 인식은 11.0%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22.0%), '1년 이상'(16.5%), '3개월 이상'(5.5%)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92.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0.9%), '지방자치단체'(87.1%), '중앙정부'(62.5%) 등의 순이다.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권에 대해 대체적으로 6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는 6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2.9%로 '남성'(7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20대'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96.9%), '40대'(84.6%), '50대 이상'(82.8%)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1-3년 미만'이 9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90.9%), '5-10년 미만'(90.5%), '3-5년 미만'(87.5%), '1년 미만'(83.9%) 등의 순이다.

〈표 IV-2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11.0	89.0	5.5	16.5	22.0	45.0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0.0	0.0	25.0	75.0	F=2.280, p=0.0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7.8	92.2	2.0	11.8	31.4	4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9.1	54.5	9.1	18.2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50.0	25.0	0.0	25.0	
	중앙정부	(8)	37.5	62.5	12.5	0.0	12.5	37.5	
	지방자치단체	(31)	12.9	87.1	3.2	16.1	16.1	51.6	
성별	여성	(85)	7.1	92.9	5.9	15.3	22.4	49.4	F=6.265, p=0.014
	남성	(24)	25.0	75.0	4.2	20.8	20.8	29.2	
연령별	20대	(7)	0.0	100.0	14.3	14.3	28.6	42.9	F=0.938, p=0.425
	30대	(32)	3.1	96.9	3.1	15.6	31.3	46.9	
	40대	(39)	15.4	84.6	7.7	15.4	15.4	46.2	
	50대 이상	(29)	17.2	82.8	3.4	20.7	13.8	44.8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6.1	83.9	9.7	9.7	12.9	51.6	F=0.217, p=0.929
	1-3년 미만	(25)	8.0	92.0	0.0	28.0	20.0	44.0	
	3-5년 미만	(8)	12.5	87.5	0.0	0.0	37.5	50.0	
	5-10년 미만	(21)	9.5	90.5	4.8	19.0	23.8	42.9	
	10년 이상	(22)	9.1	90.9	9.1	18.2	31.8	31.8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5)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8.1%, '필요 없다'는 인식은 11.0%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8.3%), '1년 이상'(16.5%), '3개월 이상'(10.1%)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92.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0.9%), '지방자치단체'(87.1%), '중앙정부'(50.0%) 등의 순이다. 노동

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인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2.9%로 '남성'(7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93.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87.2%), '20대'(85.7%), '50대 이상'(82.8%)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90.3%), '1-3년 미만'(88.0%), '10년 이상'(86.4%), '3-5년 미만'(75.0%) 등의 순이다.

〈표 IV-22〉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11.0	88.1	10.1	16.5	18.3	43.1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0.0	0.0	0.0	100.0	0.0	F=3.161, p=0.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7.8	92.2	7.8	13.7	27.5	43.1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36.4	27.3	9.1	18.2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50.0	50.0	0.0	0.0	0.0	
	중앙정부	(8)	37.5	50.0	12.5	0.0	0.0	37.5	12.5	
	지방자치단체	(31)	12.9	87.1	0.0	19.4	16.1	51.6	0.0	
성별	여성	(85)	7.1	92.9	10.6	15.3	20.0	47.1	0.0	F=5.633, p=0.019
	남성	(24)	25.0	70.8	8.3	20.8	12.5	29.2	4.2	
연령 별	20대	(7)	0.0	85.7	14.3	28.6	28.6	14.3	14.3	F=0.379, p=0.769
	30대	(32)	6.3	93.8	9.4	15.6	21.9	46.9	0.0	
	40대	(39)	12.8	87.2	12.8	10.3	17.9	46.2	0.0	
	50대 이상	(29)	17.2	82.8	6.9	20.7	10.3	44.8	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9.7	90.3	6.5	16.1	16.1	51.6	0.0	F=0.336, p=0.853
	1-3년 미만	(25)	12.0	88.0	4.0	28.0	20.0	36.0	0.0	
	3-5년 미만	(8)	12.5	75.0	12.5	0.0	25.0	37.5	12.5	
	5-10년 미만	(21)	9.5	90.5	19.0	14.3	9.5	47.6	0.0	
	10년 이상	(22)	13.6	86.4	13.6	13.6	27.3	31.8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0.0	

(6)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6.2%, '필요 없다'는 인식은 12.8%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30.3%), '1년 이상'(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88.2%), '지방자치단체'(87.1%), '출입국관리사무소'(75.0%), '중앙정부'(62.5%) 등의 순이다.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은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의 긍정적 입장을 보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는 6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 필요인식은 '남성'이 87.5%로 '여성'(8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9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86.2%), '20대'(85.7%), '40대'(82.1%)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88.0%), '3-5년 미만'(87.5%), '10년 이상'(86.4%), '1년 미만'(80.6%) 등의 순이다.

〈표 IV-23〉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12.8	86.2	11.0	30.3	45.0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0.0	0.0	75.0	0.0	F=0.829, p=0.5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9.8	88.2	19.6	25.5	43.1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0.0	54.5	36.4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0.0	100.0	0.0	
	중앙정부	(8)	37.5	62.5	0.0	12.5	50.0	0.0	
	지방자치단체	(31)	12.9	87.1	6.5	41.9	38.7	0.0	
성별	여성	(85)	12.9	85.9	14.1	25.9	45.9	1.2	F=0.136, p=0.713
	남성	(24)	12.5	87.5	0.0	45.8	41.7	0.0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연령별	20대	(7)	14.3	85.7	28.6	28.6	28.6	0.0	F=0.340, p=0.797
	30대	(32)	9.4	90.6	6.3	43.8	40.6	0.0	
	40대	(39)	15.4	82.1	5.1	23.1	53.8	2.6	
	50대 이상	(29)	13.8	86.2	17.2	24.1	44.8	0.0	
	무응답	(2)	0.0	100.0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80.6	12.9	29.0	38.7	0.0	F=0.699, p=0.594
	1-3년 미만	(25)	8.0	88.0	20.0	40.0	28.0	4.0	
	3-5년 미만	(8)	12.5	87.5	0.0	37.5	50.0	0.0	
	5-10년 미만	(21)	9.5	90.5	14.3	23.8	52.4	0.0	
	10년 이상	(22)	13.6	86.4	0.0	22.7	63.6	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7)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74.3%, '필요 없다'는 인식은 22.9%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5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14.7%), '1년 이상'(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9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78.4%),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각 75.0%), '지방자치단체'(71.0%), '중앙정부'(37.5%) 등의 순이다.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은 중앙정부 관계자 37.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인정에 다소 소극적이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75.3%로 '남성'(7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72.4%), '40대'(66.7%), '20대'(57.1%)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8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80.0%), '10년 이상'(72.7%), '1년 미만'(64.5%), '3-5년 미만'(62.5%) 등의 순이다.

〈표 IV-24〉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22.9	74.3	3.7	14.7	56.0	2.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0.0	0.0	75.0	0.0	F=1.387, p=0.23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7.6	78.4	5.9	17.6	54.9	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0.0	27.3	63.6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75.0	0.0	0.0	75.0	0.0	
	중앙정부	(8)	62.5	37.5	0.0	0.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5.8	71.0	3.2	12.9	54.8	3.2	
성별	여성	(85)	21.2	75.3	4.7	15.3	55.3	3.5	F=0.167, p=0.683
	남성	(24)	29.2	70.8	0.0	12.5	58.3	0.0	
연령별	20대	(7)	42.9	57.1	14.3	28.6	14.3	0.0	F=2.316, p=0.080
	30대	(32)	9.4	87.5	0.0	25.0	62.5	3.1	
	40대	(39)	28.2	66.7	0.0	2.6	64.1	5.1	
	50대 이상	(29)	27.6	72.4	6.9	13.8	51.7	0.0	
	무응답	(2)	0.0	100.0	50.0	5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3	64.5	3.2	12.9	48.4	3.2	F=0.854, p=0.495
	1-3년 미만	(25)	16.0	80.0	8.0	20.0	52.0	4.0	
	3-5년 미만	(8)	37.5	62.5	0.0	12.5	50.0	0.0	
	5-10년 미만	(21)	14.3	85.7	4.8	9.5	71.4	0.0	
	10년 이상	(22)	22.7	72.7	0.0	18.2	54.5	4.5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0.0		

(8)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96.3%, '필요 없다'는 인식은 3.7%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28.4%), '1년 이상'(23.9%), '3개월 이상'(6.4%)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9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96.1%), '중앙정부'(87.5%)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관련 위원회 이주민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기관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7.6%로 ‘남성’(9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20대’, ‘30대’가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94.9%), ‘50대 이상’(93.1%)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1년 미만’, ‘1-3년 미만’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95.5%), ‘3-5년 미만’(95.2%), ‘1년 미만’(93.5%) 등의 순이다.

〈표 IV-25〉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3.7	96.3	6.4	23.9	28.4	37.6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0.0	0.0	0.0	100.0	F=2.302, p=0.0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	96.1	3.9	19.6	31.4	41.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100.0	18.2	63.6	9.1	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25.0	75.0	0.0	
	중앙정부	(8)	12.5	87.5	12.5	0.0	12.5	62.5	
	지방자치단체	(31)	3.2	96.8	6.5	25.8	32.3	32.3	
성별	여성	(85)	2.4	97.6	4.7	23.5	31.8	37.6	F=1.939, p=0.167
	남성	(24)	8.3	91.7	12.5	25.0	16.7	37.5	
연령별	20대	(7)	0.0	100.0	0.0	42.9	28.6	28.6	F=0.031, p=0.993
	30대	(32)	0.0	100.0	9.4	18.8	40.6	31.3	
	40대	(39)	5.1	94.9	7.7	25.6	12.8	48.7	
	50대 이상	(29)	6.9	93.1	3.4	20.7	34.5	34.5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5	93.5	6.5	25.8	22.6	38.7	F=0.306, p=0.873
	1-3년 미만	(25)	0.0	100.0	8.0	24.0	32.0	36.0	
	3-5년 미만	(8)	0.0	100.0	12.5	0.0	37.5	50.0	
	5-10년 미만	(21)	4.8	95.2	4.8	33.3	19.0	38.1	
	10년 이상	(22)	4.5	95.5	4.5	22.7	36.4	31.8	
	무응답	(2)	0.0	100.0	0.0	0.0	50.0	50.0	

(9)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9.0%, ‘필요 없다’는 인식은 10.1%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31.2%), ‘1년 이상’(14.7%), ‘3개월 이상’(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94.1%), ‘지방자치단체’(83.9%), ‘중앙정부’(50.0%) 등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등 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89.4%로 ‘남성’(8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20대’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96.9%), ‘40대’(87.2%), ‘50대 이상’(79.3%)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3-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88.0%), ‘10년 이상’(86.4%), ‘1년 미만’(80.6%) 등의 순이다.

〈표 IV-26〉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10.1	89.0	2.8	14.7	31.2	40.4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0.0	0.0	0.0	100.0	0.0	F=2.426, p=0.0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	94.1	3.9	13.7	29.4	47.1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100.0	9.1	36.4	36.4	18.2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0.0	100.0	0.0	0.0	
	중앙정부	(8)	50.0	50.0	0.0	0.0	12.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16.1	83.9	0.0	16.1	32.3	35.5	0.0	
성별	여성	(85)	9.4	89.4	2.4	15.3	28.2	43.5	1.2	F=0.698, p=0.405
	남성	(24)	12.5	87.5	4.2	12.5	41.7	29.2	0.0	
연령 별	20대	(7)	0.0	100.0	0.0	28.6	42.9	28.6	0.0	F=0.855, p=0.467
	30대	(32)	3.1	96.9	6.3	15.6	31.3	43.8	0.0	
	40대	(39)	10.3	87.2	2.6	7.7	33.3	43.6	2.6	
	50대 이상	(29)	20.7	79.3	0.0	17.2	24.1	37.9	0.0	
	무응답	(2)	0.0	100.0	0.0	50.0	50.0	0.0	0.0	
이주 민관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80.6	0.0	19.4	22.6	38.7	0.0	F=1.027, p=0.397
	1~3년 미만	(25)	8.0	88.0	4.0	8.0	44.0	32.0	4.0	
	3~5년 미만	(8)	0.0	100.0	12.5	0.0	37.5	50.0	0.0	
	5~10년 미만	(21)	0.0	100.0	4.8	19.0	23.8	52.4	0.0	
	10년 이상	(22)	13.6	86.4	0.0	18.2	36.4	31.8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0.0	

(10)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93.6%, '필요 없다'는 인식은 6.4%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1년 이상'이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 이상'(22.9%), '5년 이상'(22.0%), '3년 이상'(15.6%)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93.5%),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0.9%), '중앙정부'(50.0%) 등의 순이다. 사업장 이

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7.6%로 '남성'(7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9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93.1%), '40대'(92.3%), '20대'(85.7%)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1-3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93.5%), '10년 이상'(86.4%), '3-5년 미만'(75.0%) 등의 순이다.

〈표 IV-27〉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6.4	93.6	22.9	33.0	15.6	22.0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25.0	25.0	0.0	50.0	F=3.049, p=0.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0.0	100.0	23.5	31.4	17.6	27.5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0.9	45.5	36.4	9.1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100.0	0.0	0.0	0.0	
	중앙정부	(8)	50.0	50.0	12.5	0.0	0.0	37.5	
	지방자치단체	(31)	6.5	93.5	6.5	48.4	22.6	16.1	
성별	여성	(85)	2.4	97.6	24.7	34.1	15.3	23.5	F=2.178, p=0.143
	남성	(24)	20.8	79.2	16.7	29.2	16.7	16.7	
연령별	20대	(7)	14.3	85.7	14.3	28.6	14.3	28.6	F=1.180, p=0.321
	30대	(32)	3.1	96.9	34.4	40.6	9.4	12.5	
	40대	(39)	7.7	92.3	17.9	35.9	15.4	23.1	
	50대 이상	(29)	6.9	93.1	17.2	24.1	20.7	31.0	
	무응답	(2)	0.0	100.0	50.0	0.0	5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5	93.5	6.5	45.2	12.9	29.0	F=1.830, p=0.129
	1~3년 미만	(25)	0.0	100.0	16.0	36.0	28.0	20.0	
	3~5년 미만	(8)	25.0	75.0	25.0	12.5	12.5	25.0	
	5~10년 미만	(21)	0.0	100.0	47.6	23.8	9.5	19.0	
	10년 이상	(22)	13.6	86.4	31.8	27.3	13.6	13.6	
무응답	(2)	0.0	100.0	0.0	50.0	0.0	50.0		

(11)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89.9%, ‘필요 없다’는 인식은 7.3%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24.8%), ‘3개월 이상’(18.3%), ‘3년 이상’(17.4%)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96.1%), ‘지방자치단체’(87.1%), ‘출입국관리사무소’(75.0%), ‘중앙정부’(50.0%) 등의 순이다. 사회보장관련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5.3%로 ‘남성’(7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30대’가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87.2%), ‘20대’(85.7%), ‘50대 이상’(82.8%)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1-3년 미만’이 9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90.5%), ‘1년 미만’(90.3%), ‘3-5년 미만’(87.5%), ‘10년 이상’(86.4%) 등의 순이다.

〈표 IV-28〉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7.3	89.9	18.3	24.8	17.4	29.4	2.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25.0	0.0	0.0	50.0	0.0	F=2.496, p=0.0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0.0	96.1	17.6	33.3	17.6	27.5	3.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100.0	63.6	27.3	9.1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50.0	25.0	25.0	0.0	0.0	
	중앙정부	(8)	50.0	50.0	0.0	0.0	0.0	50.0	0.0	
	지방자치단체	(31)	9.7	87.1	3.2	19.4	25.8	38.7	3.2	
성별	여성	(85)	3.5	95.3	17.6	28.2	18.8	30.6	1.2	F=3.287, p=0.073
	남성	(24)	20.8	70.8	20.8	12.5	12.5	25.0	8.3	
연령 별	20대	(7)	14.3	85.7	14.3	28.6	14.3	28.6	0.0	F=0.115, p=0.951
	30대	(32)	0.0	100.0	25.0	25.0	18.8	31.3	0.0	
	40대	(39)	7.7	87.2	20.5	17.9	20.5	28.2	5.1	
	50대 이상	(29)	13.8	82.8	6.9	31.0	13.8	31.0	3.4	
	무응답	(2)	0.0	100.0	50.0	50.0	0.0	0.0	0.0	
이주 민관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9.7	90.3	3.2	22.6	22.6	41.9	0.0	F=2.095, p=0.087
	1~3년 미만	(25)	4.0	92.0	20.0	32.0	16.0	24.0	4.0	
	3~5년 미만	(8)	12.5	87.5	25.0	12.5	12.5	37.5	0.0	
	5~10년 미만	(21)	0.0	90.5	19.0	28.6	23.8	19.0	9.5	
	10년 이상	(22)	13.6	86.4	36.4	22.7	9.1	18.2	0.0	
	무응답	(2)	0.0	100.0	0.0	0.0	0.0	100.0	0.0	

(12)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77.1%, '필요 없다'는 인식은 22.0%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이상'(각 20.2%), '3개월 이상'(15.6%)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82.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81.8%), '출입국관리사무소'(75.0%), '지방자치단체'(74.2%), '중앙정부'(37.5%) 등의 순이다. 아

동수당과 보육권의 인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37.5%만이 긍정적이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78.8%로 '남성'(70.8%)에 비해 높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20대'가 8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78.1%), '40대'(76.9%), '50대 이상'(75.9%)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5-10년 미만'이 9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80.0%), '3-5년 미만'(75.0%), '1년 미만'(74.2%), '10년 이상'(68.2%) 등의 순이다.

<표 IV-29>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필요 없음	필요함					무응답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22.0	77.1	15.6	20.2	20.2	21.1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50.0	0.0	0.0	25.0	0.0	F=0.901, p=0.4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5.7	82.4	17.6	19.6	21.6	23.5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18.2	81.8	27.3	45.5	9.1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50.0	25.0	25.0	0.0	0.0	
	중앙정부	(8)	62.5	37.5	0.0	0.0	0.0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5.8	74.2	3.2	19.4	29.0	22.6	0.0	
성별	여성	(85)	20.0	78.8	16.5	18.8	22.4	21.2	1.2	F=0.548, p=0.461
	남성	(24)	29.2	70.8	12.5	25.0	12.5	20.8	0.0	
연령 별	20대	(7)	14.3	85.7	0.0	28.6	28.6	28.6	0.0	F=0.372, p=0.773
	30대	(32)	21.9	78.1	18.8	21.9	18.8	18.8	0.0	
	40대	(39)	20.5	76.9	17.9	15.4	20.5	23.1	2.6	
	50대 이상	(29)	24.1	75.9	13.8	20.7	20.7	20.7	0.0	
	무응답	(2)	50.0	50.0	0.0	5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5.8	74.2	3.2	25.8	19.4	25.8	0.0	F=1.821, p=0.131
	1~3년 미만	(25)	20.0	80.0	8.0	20.0	24.0	28.0	0.0	
	3~5년 미만	(8)	12.5	75.0	0.0	12.5	37.5	25.0	12.5	
	5~10년 미만	(21)	9.5	90.5	38.1	19.0	19.0	14.3	0.0	
	10년 이상	(22)	31.8	68.2	27.3	18.2	13.6	9.1	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50.0	0.0	

(13)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94.5%, ‘필요 없다’는 인식은 5.5%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3개월 이상’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23.9%), ‘1년 이상’(20.2%), ‘3년 이상’(14.7%)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98.0%), ‘지방자치단체’(93.5%), ‘중앙정부’(62.5%) 등의 순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일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60% 정도만이 권리인정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어, 다소 소극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성별 필요인식은 ‘여성’이 96.5%로 ‘남성’(87.5%)에 비해 높다.

연령별 필요인식은 ‘20대’, ‘30대’가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93.1%), ‘40대’(89.7%)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 필요인식은 ‘3-5년 미만’, ‘5-10년 미만’이 각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93.5%), ‘1-3년 미만’(92.0%), ‘10년 이상’(90.9%) 등의 순이다.

〈표 IV-30〉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단위 : %)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5.5	94.5	35.8	20.2	14.7	23.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100.0	50.0	25.0	0.0	25.0	F=1.505, p=0.19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0	98.0	39.2	23.5	13.7	21.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100.0	72.7	9.1	9.1	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75.0	25.0	0.0	0.0	
	중앙정부	(8)	37.5	62.5	12.5	0.0	0.0	50.0	
	지방자치단체	(31)	6.5	93.5	16.1	22.6	25.8	29.0	
성별	여성	(85)	3.5	96.5	37.6	21.2	14.1	23.5	F=0.018, p=0.895
	남성	(24)	12.5	87.5	29.2	16.7	16.7	25.0	
연령별	20대	(7)	0.0	100.0	28.6	28.6	14.3	28.6	F=0.444, p=0.722
	30대	(32)	0.0	100.0	43.8	21.9	15.6	18.8	
	40대	(39)	10.3	89.7	35.9	17.9	15.4	20.5	
	50대 이상	(29)	6.9	93.1	31.0	17.2	13.8	31.0	
	무응답	(2)	0.0	100.0	0.0	50.0	0.0	5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5	93.5	9.7	29.0	25.8	29.0	F=1.583, p=0.184
	1~3년 미만	(25)	8.0	92.0	36.0	24.0	16.0	16.0	
	3~5년 미만	(8)	0.0	100.0	37.5	25.0	12.5	25.0	
	5~10년 미만	(21)	0.0	100.0	57.1	19.0	4.8	19.0	
	10년 이상	(22)	9.1	90.9	50.0	4.5	9.1	27.3	
	무응답	(2)	0.0	100.0	50.0	0.0	0.0	50.0	

(14)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응답자의 이주민의 권리인정 필요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78.0%, ‘필요 없다’는 인식은 22.0%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중 인정 시점으로 ‘5년 이상’이 4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26.6%), ‘1년 이상’(6.4%), ‘3개월 이상’(0.9%) 등의 순이다.

근무기관별 필요인식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10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86.3%), ‘지방자치단체’(77.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72.7%), ‘출입국관리사무소’(50.0%), ‘중앙정부’(37.5%) 등의 순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공무담임권 인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성별로 '여성'이 80.0%로 '남성(70.8%)'에 비해 필요 인식이 높다.

연령별로 '30대'가 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85.7%)', '50대 이상'(75.9%), '40대(69.2%)'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 '1-3년 미만'이 9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81.0%)', '3-5년 미만(75.0%)', '1년 미만(71.0%)', '10년 이상(68.2%)' 등의 순이다.

〈표 IV-31〉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 필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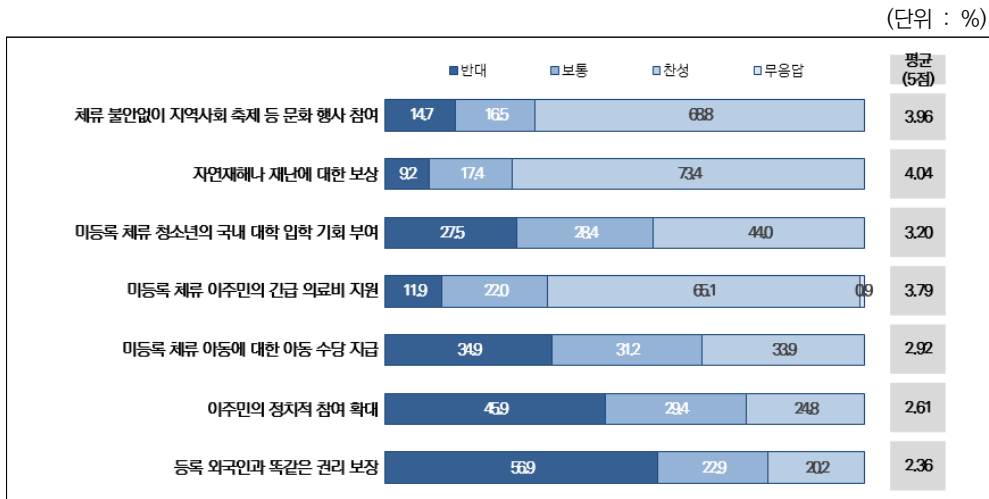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필요 없음	필요함					통계량	
			소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전체	(109)	22.0	78.0	0.9	6.4	26.6	44.0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50.0	0.0	0.0	0.0	50.0	F=3.042, p=0.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3.7	86.3	0.0	9.8	29.4	4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27.3	72.7	0.0	9.1	45.5	18.2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100.0	0.0	0.0	0.0	100.0	
	중앙정부	(8)	62.5	37.5	12.5	0.0	0.0	25.0	
	지방자치단체	(31)	22.6	77.4	0.0	3.2	29.0	45.2	
성별	여성	(85)	20.0	80.0	1.2	8.2	23.5	47.1	F=0.714, p=0.400
	남성	(24)	29.2	70.8	0.0	0.0	37.5	33.3	
연령별	20대	(7)	14.3	85.7	0.0	14.3	28.6	42.9	F=0.870, p=0.459
	30대	(32)	12.5	87.5	0.0	6.3	34.4	46.9	
	40대	(39)	30.8	69.2	0.0	0.0	23.1	46.2	
	50대 이상	(29)	24.1	75.9	3.4	13.8	20.7	37.9	
	무응답	(2)	0.0	100.0	0.0	0.0	50.0	5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9.0	71.0	3.2	3.2	22.6	41.9	F=1.232, p=0.302
	1~3년 미만	(25)	8.0	92.0	0.0	4.0	44.0	44.0	
	3~5년 미만	(8)	25.0	75.0	0.0	0.0	25.0	50.0	
	5~10년 미만	(21)	19.0	81.0	0.0	4.8	23.8	52.4	
	10년 이상	(22)	31.8	68.2	0.0	13.6	18.2	36.4	
	무응답	(2)	0.0	100.0	0.0	50.0	0.0	50.0	

4) 미등록체류(불법체류) 이주민에 대한 권리 보장

(1) 종합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73.4%,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68.8%,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65.1%,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44.0%,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3.9%,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24.8%,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20.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종합



※반대:①+②, 보통:③, 찬성: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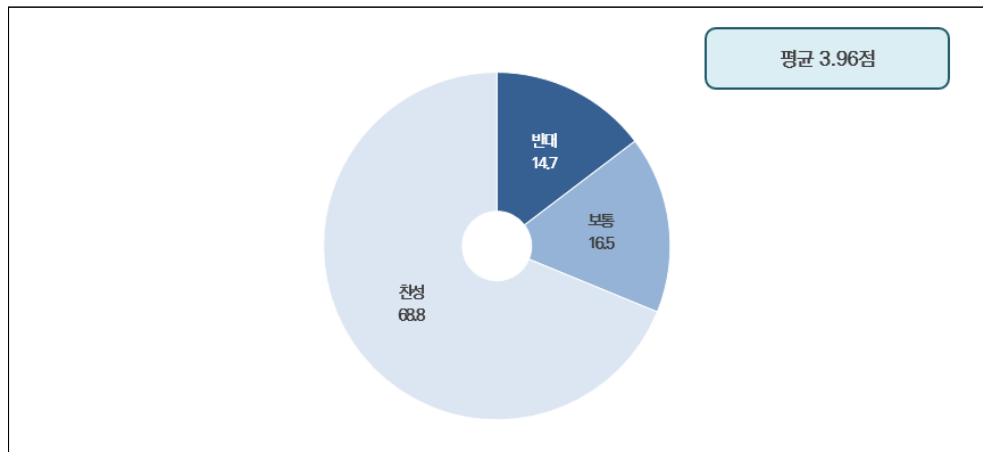
(2)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에 대해 ‘찬성’은 68.8%, ‘반대’는 인식은 14.7%였으며, 평균은 3.96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75점), ‘출입국관리사무소’(4.50점), ‘중앙정부’(4.0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3.82점), ‘지방자치단체’(3.65점) 등의 순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축제 등 이주민의 사회참여는 전체적으로 14.7%만이 반대를 하고 있

어, 다른 권리의 인정의 측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V-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단위 : %)



성별로는 ‘여성’이 4.01점으로 ‘남성’(3.79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4.13점), ‘30대’(3.97점), ‘50대 이상’(3.76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4.08점), ‘10년 이상’(3.91점), ‘1년 미만’(3.77점), ‘3-5년 미만’(3.75점) 등의 순이다.

〈표 IV-32〉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14.7	16.5	68.8	3.96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25.0	75.0	4.50	F=2.488, p=0.0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5.7	17.6	66.7	3.8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100.0	5.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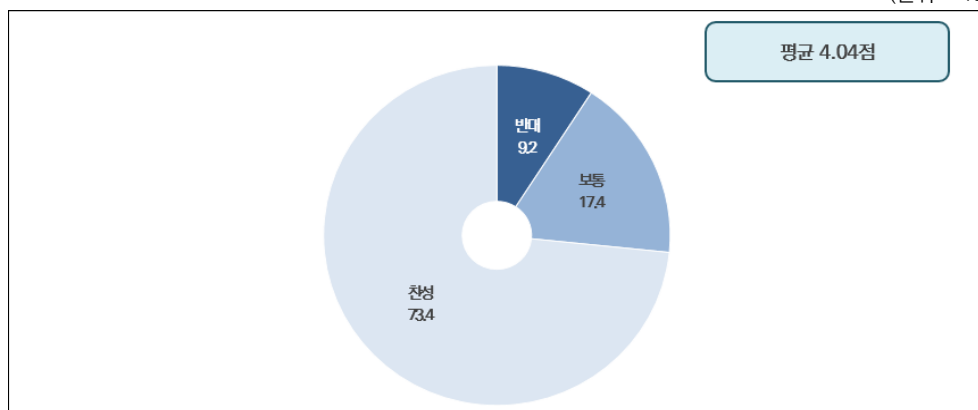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중앙정부	(8)	25.0	0.0	75.0	4.00	
	지방자치단체	(31)	19.4	25.8	54.8	3.65	
성별	여성	(85)	12.9	16.5	70.6	4.01	F=0.536, p=0.466
	남성	(24)	20.8	16.7	62.5	3.79	
연령별	20대	(7)	0.0	14.3	85.7	4.43	F=0.744, p=0.528
	30대	(32)	12.5	21.9	65.6	3.97	
	40대	(39)	12.8	15.4	71.8	4.13	
	50대 이상	(29)	20.7	10.3	69.0	3.76	
	무응답	(2)	50.0	50.0	0.0	2.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19.4	61.3	3.77	F=0.501, p=0.735
	1-3년 미만	(25)	8.0	24.0	68.0	4.08	
	3-5년 미만	(8)	12.5	25.0	62.5	3.75	
	5-10년 미만	(21)	14.3	4.8	81.0	4.24	
	10년 이상	(22)	18.2	9.1	72.7	3.91	
	무응답	(2)	0.0	50.0	50.0	4.00	

(3)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에 대해 ‘찬성’은 73.4%, ‘반대’는 인식은 9.2%였으며, 평균은 4.04점이다(5점 만점 기준). 이들 중 보통 17.4%를 감안하면, 반대는 9.2%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의 보편적 보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V-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75점), '출입국관리사무소'(4.25점), '중앙정부'(4.13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3.88점), '지방자치단체'(3.81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7점으로 '남성'(3.92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4.29점), '40대'(4.15점), '50대 이상'(3.62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4.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 미만'(4.13점), '1년 미만'(4.00점), '10년 이상'(3.95점), '1-3년 미만'(3.80점) 등의 순이다.

〈표 IV-33〉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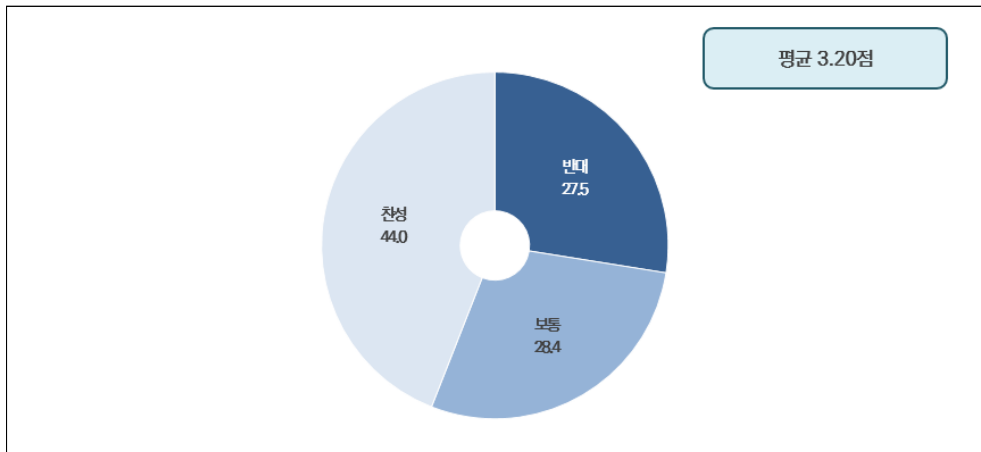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9.2	17.4	73.4	4.04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25.0	75.0	4.25	F=2.713, p=0.0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5.7	11.8	72.5	3.88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100.0	5.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4.75	
	중앙정부	(8)	12.5	12.5	75.0	4.13	
	지방자치단체	(31)	3.2	35.5	61.3	3.81	
성별	여성	(85)	9.4	14.1	76.5	4.07	F=0.361, p=0.549
	남성	(24)	8.3	29.2	62.5	3.92	
연령별	20대	(7)	0.0	28.6	71.4	4.29	F=2.505, p=0.063
	30대	(32)	3.1	15.6	81.3	4.31	
	40대	(39)	7.7	12.8	79.5	4.15	
	50대 이상	(29)	17.2	24.1	58.6	3.62	
	무응답	(2)	50.0	0.0	50.0	2.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	25.8	71.0	4.00	F=0.995, p=0.414
	1-3년 미만	(25)	12.0	28.0	60.0	3.80	
	3-5년 미만	(8)	0.0	25.0	75.0	4.13	
	5-10년 미만	(21)	9.5	0.0	90.5	4.43	
	10년 이상	(22)	18.2	4.5	77.3	3.95	
	무응답	(2)	0.0	50.0	50.0	4.00	

(4)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에 대해 ‘찬성’은 44.0%, ‘반대’는 인식은 27.5%였으며, 평균은 3.20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4.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64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3.29점), ‘지방자치단체’(2.71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각 2.25점) 등의 순이다.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에서 각 2.71점과 2.25점으로 상대적으로 권리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3.28점으로 ‘남성’(2.92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41점), ‘40대’(3.13점), ‘50대 이상’(2.93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3.41점), ‘1-3년 미만’(3.16점), ‘1년 미만’(2.90점), ‘3-5년 미만’(2.88점) 등의 순이다.

〈표 IV-34〉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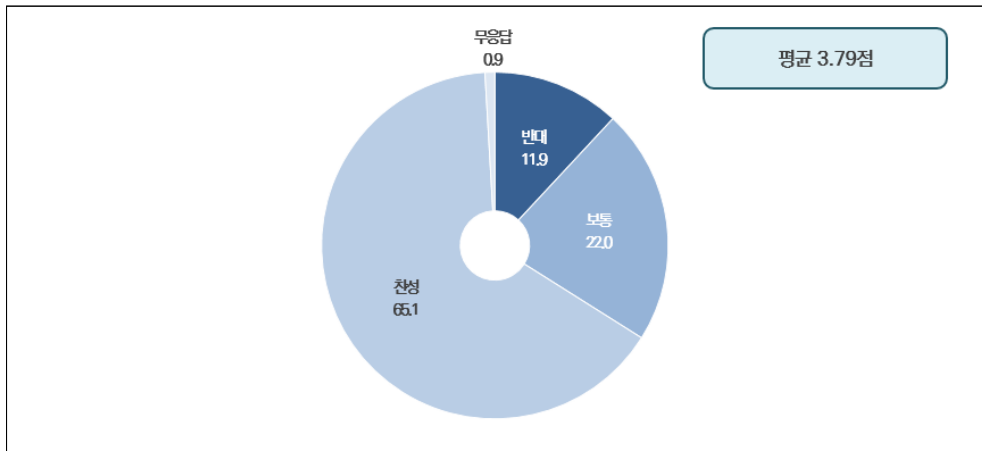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27.5	28.4	44.0	3.20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50.0	0.0	2.25	F=7.701,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7.6	37.3	45.1	3.2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0.0	90.9	4.64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4.75	
	중앙정부	(8)	62.5	37.5	0.0	2.25	
	지방자치단체	(31)	41.9	22.6	35.5	2.71	
성별	여성	(85)	23.5	30.6	45.9	3.28	F=1.447, p=0.232
	남성	(24)	41.7	20.8	37.5	2.92	
연령별	20대	(7)	14.3	14.3	71.4	4.14	F=1.951, p=0.126
	30대	(32)	18.8	31.3	50.0	3.41	
	40대	(39)	30.8	30.8	38.5	3.13	
	50대 이상	(29)	34.5	24.1	41.4	2.93	
	무응답	(2)	50.0	50.0	0.0	2.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41.9	19.4	38.7	2.90	F=1.488, p=0.211
	1-3년 미만	(25)	20.0	44.0	36.0	3.16	
	3-5년 미만	(8)	37.5	37.5	25.0	2.88	
	5-10년 미만	(21)	14.3	23.8	61.9	3.71	
	10년 이상	(22)	22.7	22.7	54.5	3.41	
	무응답	(2)	50.0	50.0	0.0	2.00	

(5)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에 대해 ‘찬성’은 65.1%, ‘반대’는 인식은 11.9%였으며, 평균은 3.79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4.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각 4.2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3.76점), ‘지방자치단체’(3.52점), ‘중앙정부’(3.13점) 등의 순이다. 미등록체류자라 하더라도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11.9%에 불과하여, 건강관련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3.82점으로 ‘남성’(3.67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3.82점), ‘30대’(3.78점), ‘50대 이상’(3.64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0년 이상’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3.96점), ‘5-10년 미만’(3.95점), ‘3-5년 미만’(3.88점), ‘1년 미만’(3.48점) 등의 순이다.

〈표 IV-35〉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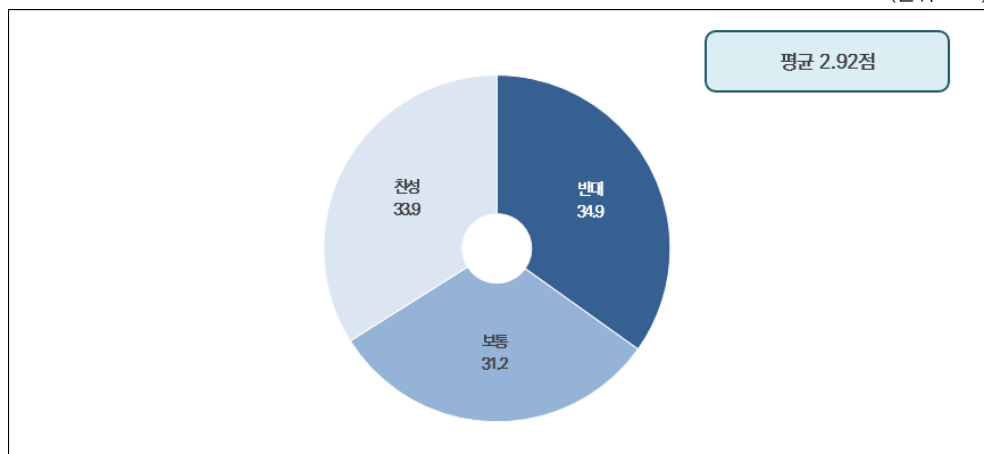
(전체,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무응답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11.9	22.0	65.1	0.9	3.7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25.0	75.0	0.0	4.25	F=3.245, p=0.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1.8	17.6	68.6	2.0	3.7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100.0	0.0	4.82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25.0	75.0	0.0	4.25	
	중앙정부	(8)	25.0	25.0	50.0	0.0	3.13	
	지방자치단체	(31)	16.1	35.5	48.4	0.0	3.52	
성별	여성	(85)	11.8	20.0	67.1	1.2	3.82	F=0.339, p=0.561
	남성	(24)	12.5	29.2	58.3	0.0	3.67	
연령별	20대	(7)	0.0	14.3	85.7	0.0	4.43	F=0.875, p=0.457
	30대	(32)	15.6	12.5	71.9	0.0	3.78	
	40대	(39)	10.3	25.6	64.1	0.0	3.82	
	50대 이상	(29)	13.8	24.1	58.6	3.4	3.64	
	무응답	(2)	0.0	100.0	0.0	0.0	3.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2.6	25.8	51.6	0.0	3.48	F=1.011, p=0.406
	1-3년 미만	(25)	0.0	32.0	68.0	0.0	3.96	
	3-5년 미만	(8)	12.5	12.5	75.0	0.0	3.88	
	5-10년 미만	(21)	9.5	14.3	76.2	0.0	3.95	
	10년 이상	(22)	9.1	13.6	72.7	4.5	4.00	
	무응답	(2)	50.0	50.0	0.0	0.0	2.00	

(6)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은 33.9%, ‘반대’는 인식은 34.9%였으며, 평균은 2.92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9〉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3.75점), ‘출입국관리사무소’(3.5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3.06점), ‘지방자치단체’(2.52점), ‘중앙정부’(1.63점) 등의 순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이 50%임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각 22.6%와 0%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관계자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보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기본권 인정에 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3.00점으로 ‘남성’(2.63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3.06점), ‘50대 이상’(2.83점), ‘40대’(2.74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3.2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 ‘10년 이상’(각 3.00점), ‘1년 미만’(2.71점), ‘3-5년 미만’(2.63점) 등의 순이다.

〈표 IV-36〉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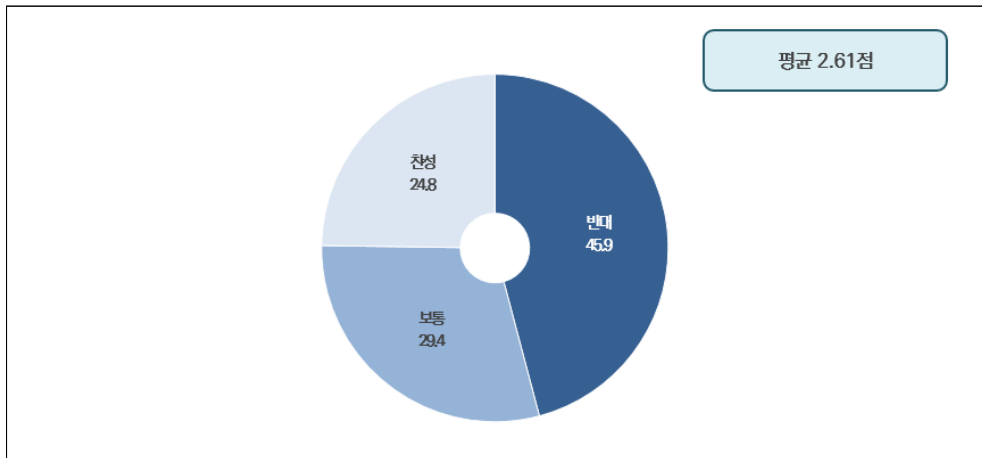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34.9	31.2	33.9	2.92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3.50	F=3.843, p=0.00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9.4	33.3	37.3	3.0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27.3	9.1	63.6	3.82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50.0	50.0	3.75	
	중앙정부	(8)	75.0	25.0	0.0	1.63	
	지방자치단체	(31)	45.2	32.3	22.6	2.52	
성별	여성	(85)	31.8	32.9	35.3	3.00	F=1.383, p=0.242
	남성	(24)	45.8	25.0	29.2	2.63	
연령별	20대	(7)	14.3	14.3	71.4	3.86	F=1.455, p=0.231
	30대	(32)	34.4	25.0	40.6	3.06	
	40대	(39)	35.9	38.5	25.6	2.74	
	50대 이상	(29)	37.9	31.0	31.0	2.83	
	무응답	(2)	50.0	50.0	0.0	2.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45.2	25.8	29.0	2.71	F=0.576, p=0.681
	1-3년 미만	(25)	28.0	40.0	32.0	3.00	
	3-5년 미만	(8)	37.5	50.0	12.5	2.63	
	5-10년 미만	(21)	33.3	14.3	52.4	3.24	
	10년 이상	(22)	27.3	36.4	36.4	3.00	
	무응답	(2)	50.0	50.0	0.0	2.00	

(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치적 참여 확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에 대해 '찬성'은 24.8%, '반대'는 45.9%였으며, 평균은 2.61점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10〉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0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2.76점), '지방자치단체'(2.10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각 1.50점) 등의 순이다. 특히, 긍정적인 입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0%, 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9.7%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72.7%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미등록체류자의 권리인정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2.71점으로 '남성'(2.29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75점), '40대'(2.64점), '50대 이상'(2.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미등록이라 하더라도 권리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3.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2.84점), '10년 이상'(2.50점), '3-5년 미만'(2.38점), '1년 미만'(2.19점) 등의 순이다.

〈표 IV-37〉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단위 :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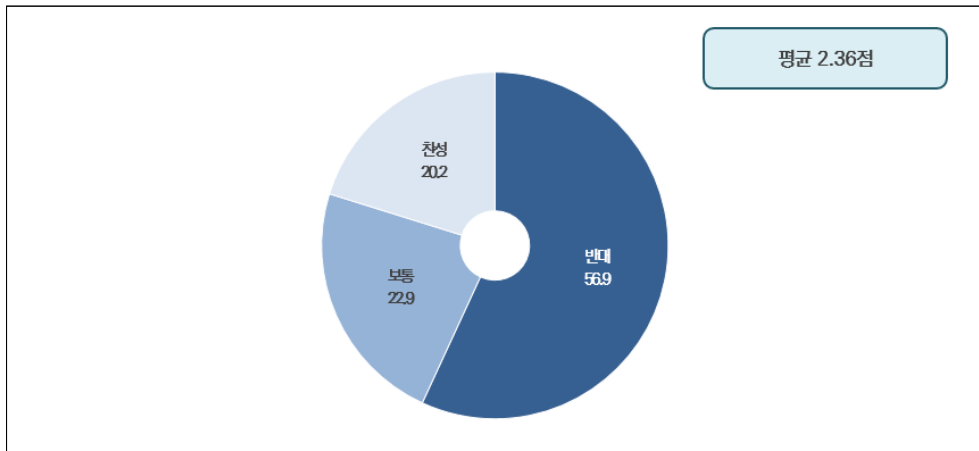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45.9	29.4	24.8	2.61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25.0	0.0	1.50	F=8.660,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7.3	39.2	23.5	2.7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18.2	9.1	72.7	4.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4.25	
	중앙정부	(8)	75.0	25.0	0.0	1.50	
	지방자치단체	(31)	64.5	25.8	9.7	2.10	
성별	여성	(85)	41.2	34.1	24.7	2.71	F=1.841, p=0.178
	남성	(24)	62.5	12.5	25.0	2.29	
연령별	20대	(7)	14.3	28.6	57.1	3.71	F=2.969, p=0.035
	30대	(32)	40.6	34.4	25.0	2.75	
	40대	(39)	43.6	30.8	25.6	2.64	
	50대 이상	(29)	62.1	24.1	13.8	2.17	
	무응답	(2)	50.0	0.0	50.0	2.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58.1	32.3	9.7	2.19	F=1.935, p=0.110
	1-3년 미만	(25)	40.0	32.0	28.0	2.84	
	3-5년 미만	(8)	62.5	12.5	25.0	2.38	
	5-10년 미만	(21)	28.6	28.6	42.9	3.14	
	10년 이상	(22)	50.0	22.7	27.3	2.50	
	무응답	(2)	0.0	100.0	0.0	3.00	

(8)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에 대해 ‘찬성’은 20.2%, ‘반대’는 56.9%였으며, 평균은 2.36점이다.(5점 만점 기준)

〈그림 IV-11〉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3.91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7점), ‘지방자치단체’(1.90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각 1.50점) 등의 순이다. 미등록체류자와 다른 등록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는 0%, 지방정부는 9.1%만이 긍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이주민지원 NGO 등은 각 72.7%, 75.0%가 긍정하고 있어, 각각의 기관별 목적과 업무의 특성, 종사자의 신분에 따라 긍정에 대한 답변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9점으로 ‘남성’(2.25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2.38점), ‘40대’(2.28점), ‘50대 이상’(2.14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2.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2.56점), ‘10년 이상’(2.36점), ‘1년 미만’(2.10점), ‘3-5년 미만’(1.88점) 등의 순이다.

〈표 IV-38〉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이주민 권리 보장]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단위 : %, 5점 만점)

구분		사례수	반대 ①+②	보통 ③	찬성 ④+⑤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56.9	22.9	20.2	2.36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75.0	25.0	0.0	1.50	F=6.999,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52.9	31.4	15.7	2.3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18.2	9.1	72.7	3.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25.0	75.0	4.00	
	중앙정부	(8)	87.5	12.5	0.0	1.50	
	지방자치단체	(31)	74.2	16.1	9.7	1.90	
성별	여성	(85)	55.3	25.9	18.8	2.39	F=0.185, p=0.668
	남성	(24)	62.5	12.5	25.0	2.25	
연령별	20대	(7)	14.3	28.6	57.1	3.71	F=2.618, p=0.055
	30대	(32)	59.4	15.6	25.0	2.38	
	40대	(39)	56.4	30.8	12.8	2.28	
	50대 이상	(29)	65.5	17.2	17.2	2.14	
	무응답	(2)	50.0	50.0	0.0	2.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7.7	22.6	9.7	2.10	F=0.991, p=0.416
	1-3년 미만	(25)	52.0	24.0	24.0	2.56	
	3-5년 미만	(8)	75.0	12.5	12.5	1.88	
	5-10년 미만	(21)	47.6	19.0	33.3	2.71	
	10년 이상	(22)	50.0	27.3	22.7	2.36	
	무응답	(2)	50.0	50.0	0.0	2.00	

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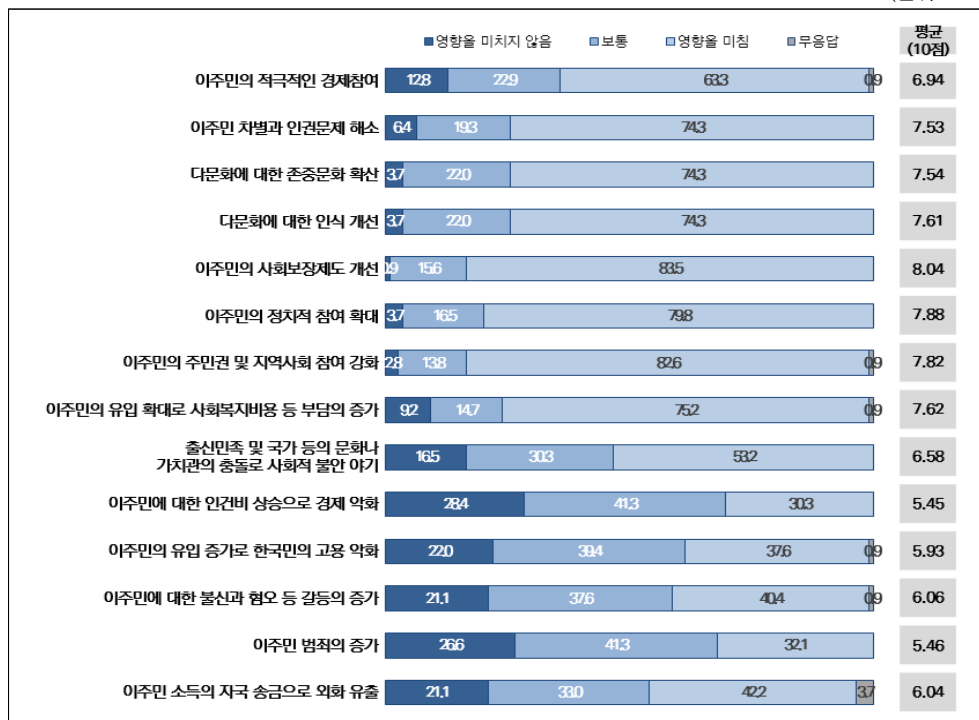
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1) 종합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83.5%,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82.6%,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79.8%,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75.2%,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각 74.3%,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63.3%,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53.2%,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2.2%,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40.4%,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37.6%, ‘이주민 범죄의 증가’ 32.1%,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30.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종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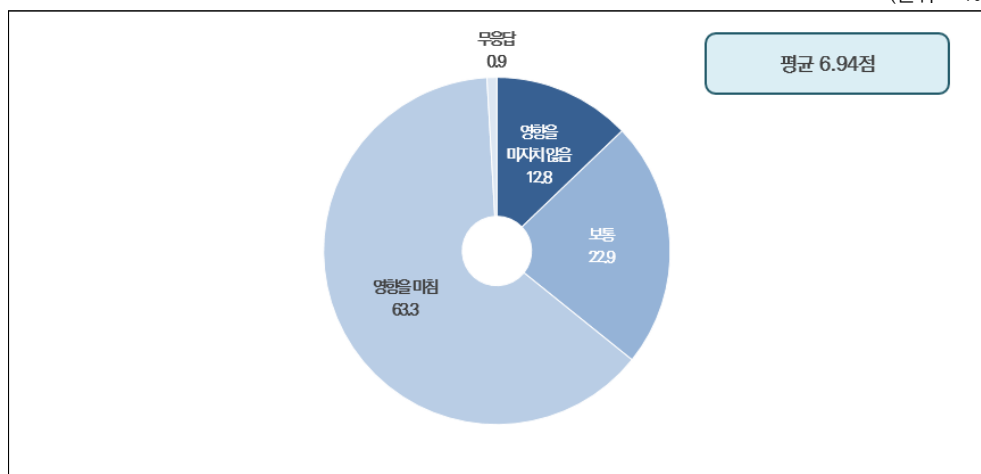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인정받음:⑦+⑧+⑨+⑩

(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63.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12.8%였으며, 평균은 6.94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V-1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단위 : %)



※영향을 미치지 않음:①+②+③+④, 보통:⑤+⑥, 영향을 미침:⑦+⑧+⑨+⑩

근무기관별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7.50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7.0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6.96점), ‘지방자치단체’(6.70점), ‘중앙정부’(6.13점) 등의 순이다.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7.09점으로 ‘여성’(6.91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13점), ‘20대’(6.71점), ‘50대 이상’(6.57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7.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7.33점), ‘10년 이상’(7.32점), ‘3-5년 미만’(6.88점), ‘1-3년 미만’(5.88점) 등의 순이다. 다만, 1-3년 내 근속연수에서는 6%대 이하의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표 IV-3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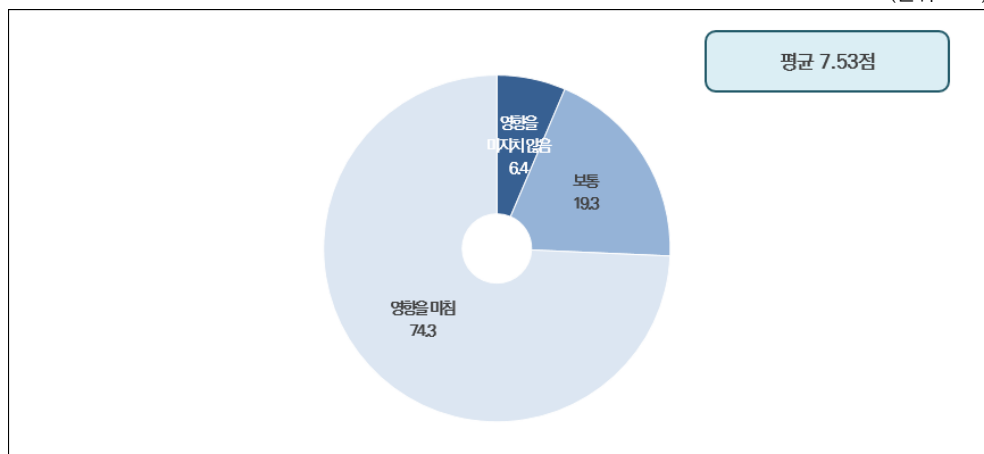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12.8	22.9	63.3	0.9	6.94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7.50	F=0.714, p=0.6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1.8	21.6	66.7	0.0	6.9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1	81.8	0.0	7.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0.0	75.0	0.0	7.00	
	중앙정부	(8)	25.0	37.5	37.5	0.0	6.13	
	지방자치단체	(31)	12.9	25.8	58.1	3.2	6.70	
성별	여성	(85)	11.8	23.5	64.7	0.0	6.91	F=0.114, p=0.736
	남성	(24)	16.7	20.8	58.3	4.2	7.09	
연령별	20대	(7)	14.3	14.3	71.4	0.0	6.71	F=0.439, p=0.725
	30대	(32)	9.4	25.0	65.6	0.0	7.16	
	40대	(39)	10.3	30.8	59.0	0.0	7.13	
	50대 이상	(29)	20.7	10.3	65.5	3.4	6.57	
	무응답	(2)	0.0	50.0	50.0	0.0	6.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9.7	22.6	64.5	3.2	7.33	F=2.196, p=0.075
	1-3년 미만	(25)	16.0	44.0	40.0	0.0	5.88	
	3-5년 미만	(8)	12.5	0.0	87.5	0.0	6.88	
	5-10년 미만	(21)	14.3	14.3	71.4	0.0	7.52	
	10년 이상	(22)	9.1	13.6	77.3	0.0	7.32	
	무응답	(2)	50.0	50.0	0.0	0.0	4.50	

(3)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74.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6.4%였으며, 평균은 7.53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V-1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8.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7.88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각 7.50점), ‘지방자치단체’(7.42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4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8.21점으로 ‘여성’(7.34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56점), ‘50대 이상’(7.55점), ‘20대’(6.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20대가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3-5년 미만’이 8.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8.00점), ‘5-10년 미만’(7.95점), ‘10년 이상’(7.68점), ‘1-3년 미만’(6.56점) 등의 순이다.

〈표 IV-4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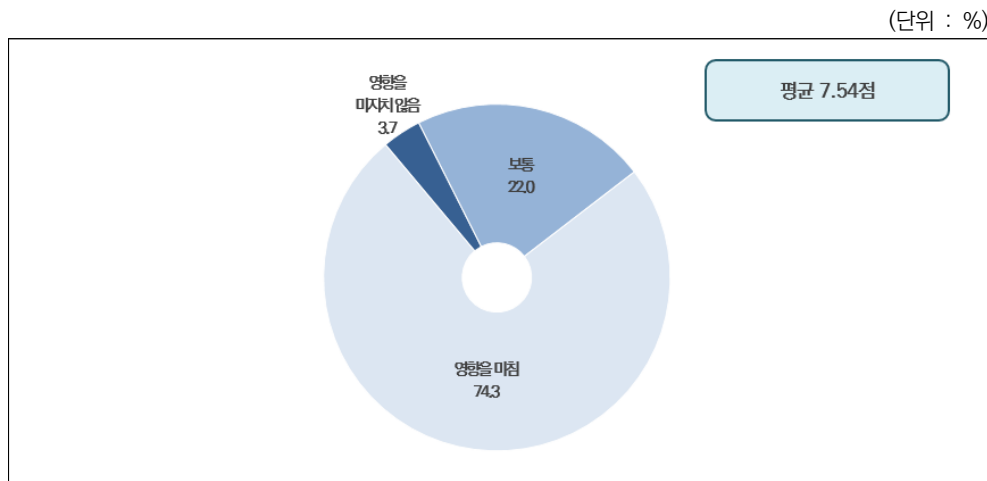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6.4	19.3	74.3	7.53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7.50	F=0.336, p=0.89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5.9	21.6	72.5	7.4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1	81.8	8.18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0.0	75.0	7.50	
	중앙정부	(8)	0.0	25.0	75.0	7.88	
	지방자치단체	(31)	6.5	16.1	77.4	7.42	
성별	여성	(85)	8.2	22.4	69.4	7.34	F=3.718, p=0.056
	남성	(24)	0.0	8.3	91.7	8.21	
연령별	20대	(7)	14.3	28.6	57.1	6.57	F=0.715, p=0.545
	30대	(32)	6.3	15.6	78.1	7.78	
	40대	(39)	7.7	17.9	74.4	7.56	
	50대 이상	(29)	3.4	20.7	75.9	7.55	
	무응답	(2)	0.0	50.0	50.0	6.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	12.9	83.9	8.00	F=2.702, p=0.035
	1-3년 미만	(25)	12.0	28.0	60.0	6.56	
	3-5년 미만	(8)	0.0	25.0	75.0	8.13	
	5-10년 미만	(21)	4.8	14.3	81.0	7.95	
	10년 이상	(22)	4.5	18.2	77.3	7.68	
	무응답	(2)	50.0	50.0	0.0	4.00	

(4)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74.3%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3.7%로 나타났고, 평균 7.54점이다(10점 만점 기준). 특히, 보통 22%를 감안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불과 3.7%에 불과하다.

〈그림 IV-1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근무기관별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외국인노동자센터'가 8.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67점, '지방자치단체' 7.45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와 '중앙정부'가 각 7점, '출입국관리사무소' 6.5점의 추이를 보여,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점으로 '여성'(7.36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0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44점), '50대 이상'(7.41점), '20대'(6.71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3-5년 미만'이 8.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8.14점), '1년 미만'(7.71점), '10년 이상'(7.55점), '1-3년 미만'(6.72점) 등의 순이다.

〈표 IV-4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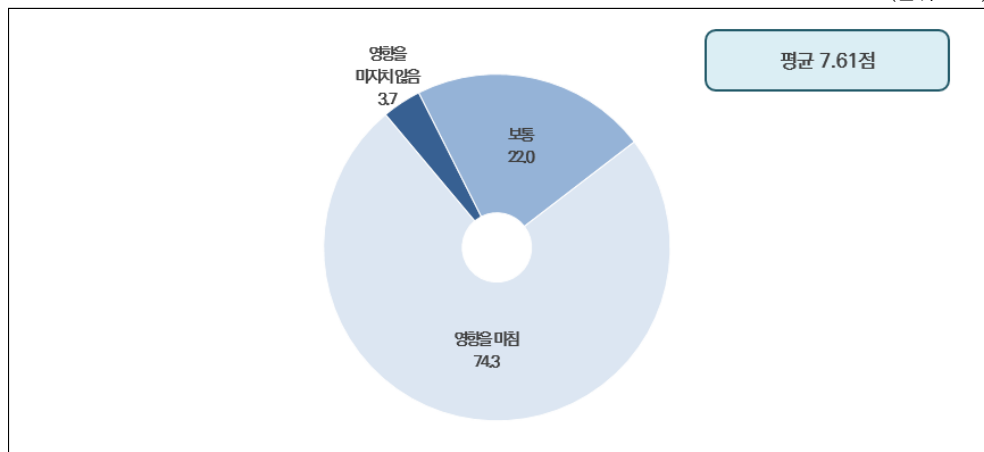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3.7	22.0	74.3	7.54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75.0	25.0	6.50	F=0.838, p=0.5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0.0	17.6	82.4	7.6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18.2	0.0	81.8	8.18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0.0	75.0	7.00	
	중앙정부	(8)	12.5	37.5	50.0	7.00	
	지방자치단체	(31)	0.0	29.0	71.0	7.45	
성별	여성	(85)	3.5	23.5	72.9	7.36	F=3.891, p=0.051
	남성	(24)	4.2	16.7	79.2	8.17	
연령별	20대	(7)	14.3	0.0	85.7	6.71	F=1.400, p=0.247
	30대	(32)	3.1	12.5	84.4	8.03	
	40대	(39)	2.6	33.3	64.1	7.44	
	50대 이상	(29)	3.4	20.7	75.9	7.41	
	무응답	(2)	0.0	50.0	5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	16.1	80.6	7.71	F=2.432, p=0.052
	1-3년 미만	(25)	4.0	40.0	56.0	6.72	
	3-5년 미만	(8)	0.0	12.5	87.5	8.25	
	5-10년 미만	(21)	4.8	9.5	85.7	8.14	
	10년 이상	(22)	4.5	22.7	72.7	7.55	
	무응답	(2)	0.0	50.0	50.0	6.00	

(5)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74.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3.7%였으며, 평균은 7.61점이다(10점 만점 기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대해 3.7%만이 응답하고 있어, 조사대상 구분 요인을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9.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8.7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63점), ‘지방자치단체’(7.32점), ‘중앙정부’(6.88점), ‘출입국관리사무소’(6.00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13점으로 ‘여성’(7.4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59점), ‘20대’(7.29점), ‘50대 이상’(7.28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8.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 미만’(7.88점), ‘10년 이상’(7.68점), ‘1년 미만’(7.58점), ‘1-3년 미만’(7.00점) 등의 순이다.

〈표 IV-4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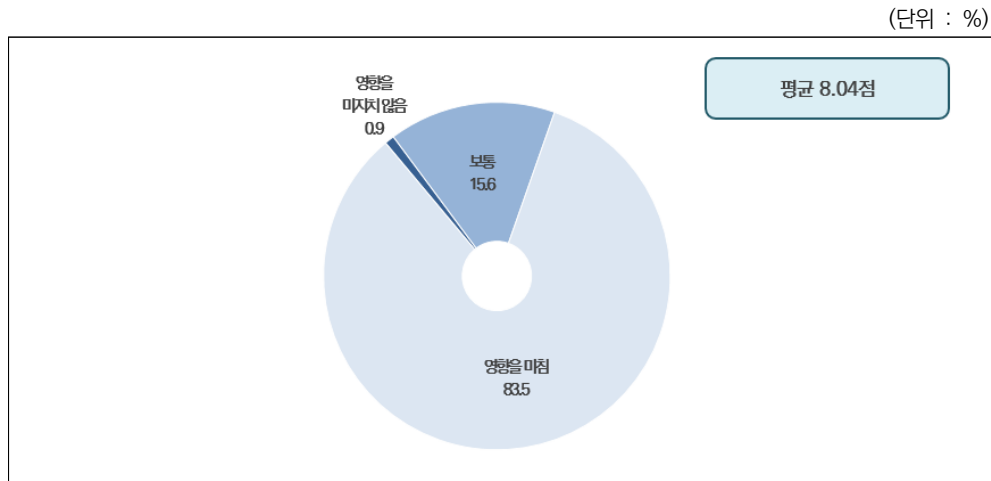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영향을 미침	평균(점)	통계량	
		①+②+ ③+④	⑤+⑥	⑦+⑧+ ⑨+⑩			
전체	(109)	3.7	22.0	74.3	7.61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75.0	25.0	6.00	F=3.019, p=0.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0	15.7	82.4	7.6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100.0	9.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8.75	
	중앙정부	(8)	12.5	50.0	37.5	6.88	
	지방자치단체	(31)	6.5	29.0	64.5	7.32	
성별	여성	(85)	3.5	23.5	72.9	7.46	F=2.663, p=0.106
	남성	(24)	4.2	16.7	79.2	8.13	
연령별	20대	(7)	0.0	14.3	85.7	7.29	F=1.099, p=0.353
	30대	(32)	3.1	9.4	87.5	8.06	
	40대	(39)	0.0	35.9	64.1	7.59	
	50대 이상	(29)	10.3	17.2	72.4	7.28	
	무응답	(2)	0.0	50.0	5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5	19.4	74.2	7.58	F=1.700, p=0.156
	1-3년 미만	(25)	4.0	36.0	60.0	7.00	
	3-5년 미만	(8)	0.0	37.5	62.5	7.88	
	5-10년 미만	(21)	0.0	4.8	95.2	8.33	
	10년 이상	(22)	4.5	18.2	77.3	7.68	
	무응답	(2)	0.0	50.0	50.0	6.00	

(6)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83.5%,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0.9%였으며, 평균은 8.04점이다(10점 만점 기준).

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0.9%만이 답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거의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8.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8.75점), ‘지방자치단체’(8.1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86점), ‘중앙정부’(7.63점), ‘출입국관리사무소’(7.50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점으로 ‘여성’(8.0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8.03점), ‘40대’(7.90점), ‘20대’(7.43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8.35점), ‘3-5년 미만’(8.13점), ‘10년 이상’(7.82점), ‘1-3년 미만’(7.32점) 등의 순이다.

〈표 IV-4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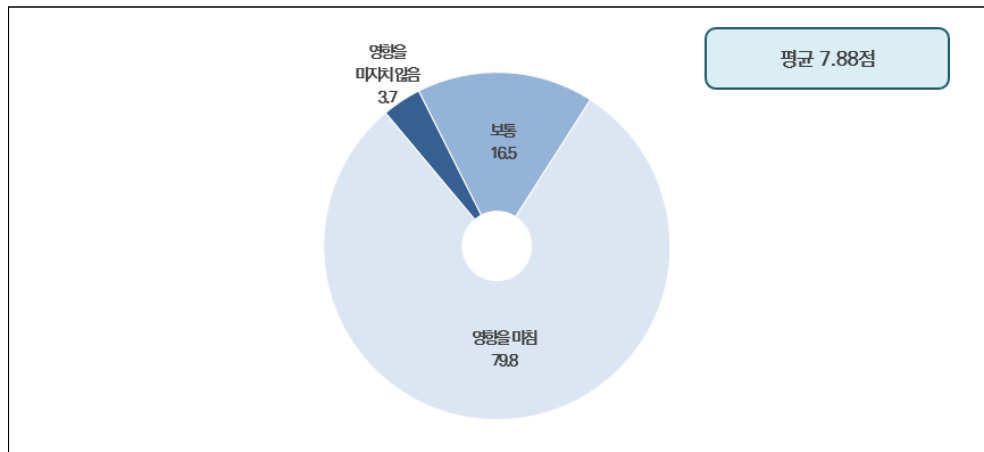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0.9	15.6	83.5	8.04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7.50	F=1.131, p=0.34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0.0	13.7	86.3	7.86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100.0	8.91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8.75	
	중앙정부	(8)	0.0	50.0	50.0	7.63	
	지방자치단체	(31)	3.2	12.9	83.9	8.10	
성별	여성	(85)	0.0	16.5	83.5	8.00	F=0.199, p=0.656
	남성	(24)	4.2	12.5	83.3	8.17	
연령별	20대	(7)	0.0	28.6	71.4	7.43	F=1.209, p=0.310
	30대	(32)	0.0	9.4	90.6	8.47	
	40대	(39)	0.0	23.1	76.9	7.90	
	50대 이상	(29)	3.4	6.9	89.7	8.03	
	무응답	(2)	0.0	50.0	50.0	6.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0.0	12.9	87.1	8.35	F=2.338, p=0.060
	1-3년 미만	(25)	4.0	28.0	68.0	7.32	
	3-5년 미만	(8)	0.0	12.5	87.5	8.13	
	5-10년 미만	(21)	0.0	4.8	95.2	8.57	
	10년 이상	(22)	0.0	18.2	81.8	7.82	
	무응답	(2)	0.0	0.0	100.0	8.50	

(7)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79.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3.7%였으며, 평균은 7.88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이 9.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8.73점), ‘지방자치단체’(8.16점), ‘중앙정부’(7.88점), ‘출입국관리사무소’(7.5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47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점으로 ‘여성’(7.8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7.85점), ‘50대 이상’(7.76점), ‘20대’(7.57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8.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5년 미만’(8.25점), ‘5-10년 미만’(8.19점), ‘1-3년 미만’, ‘10년 이상’(각 7.32점) 등의 순이다.

〈표 IV-4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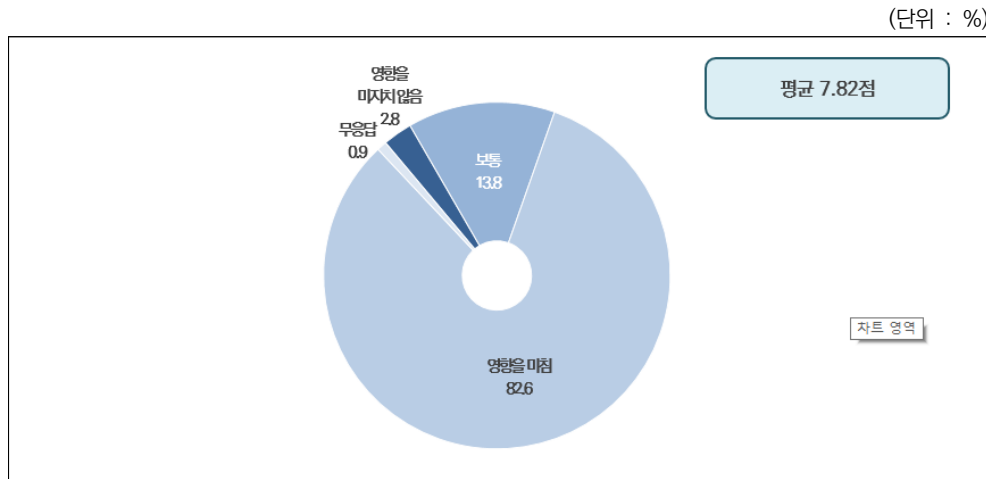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3.7	16.5	79.8	7.8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7.50	F=1.592, p=0.16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	21.6	74.5	7.4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0.0	90.9	8.73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9.00	
	중앙정부	(8)	0.0	25.0	75.0	7.88	
	지방자치단체	(31)	3.2	9.7	87.1	8.16	
성별	여성	(85)	2.4	20.0	77.6	7.80	F=0.794, p=0.375
	남성	(24)	8.3	4.2	87.5	8.17	
연령별	20대	(7)	0.0	14.3	85.7	7.57	F=0.427, p=0.734
	30대	(32)	3.1	15.6	81.3	8.19	
	40대	(39)	2.6	15.4	82.1	7.85	
	50대 이상	(29)	6.9	17.2	75.9	7.76	
	무응답	(2)	0.0	50.0	5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	6.5	90.3	8.39	F=2.125, p=0.083
	1-3년 미만	(25)	4.0	28.0	68.0	7.32	
	3-5년 미만	(8)	0.0	0.0	100.0	8.25	
	5-10년 미만	(21)	4.8	9.5	85.7	8.19	
	10년 이상	(22)	4.5	31.8	63.6	7.32	
	무응답	(2)	0.0	0.0	100.0	8.50	

(8)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82.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8%였으며, 평균은 7.82점이다(10점 만점 기준). 따라서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1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근무기관별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8.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8.50점), ‘중앙정부’(8.00점), ‘지방자치단체’(7.77점), ‘출입국관리사무소’(7.7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7.62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8.21점으로 ‘여성’(7.7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7.79점), ‘40대’(7.67점), ‘20대’(7.57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8.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8.16점), ‘3-5년 미만’(8.13점), ‘10년 이상’(7.52점), ‘1-3년 미만’(7.24점) 등의 순이다.

〈표 IV-4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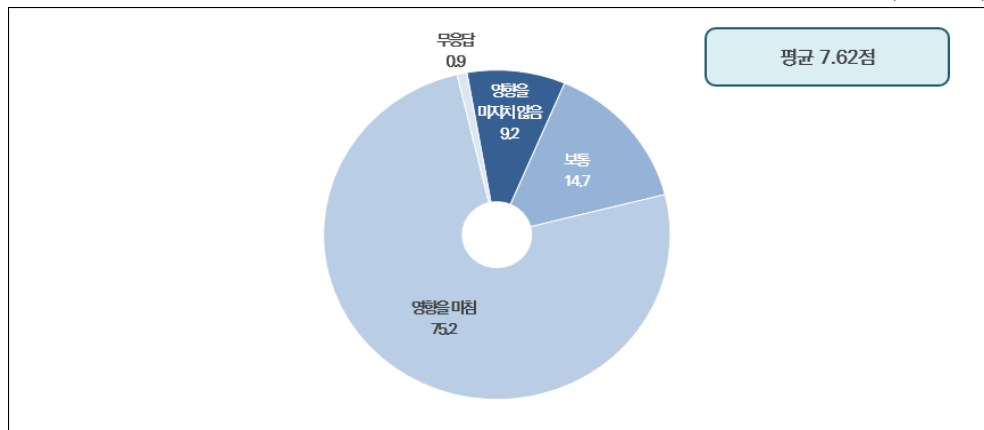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109)	2.8	13.8	82.6	0.9	7.82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7.75	F=0.698, p=0.6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0.0	15.7	82.4	2.0	7.6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1	9.1	81.8	0.0	8.55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100.0	0.0	8.50	
	중앙정부	(8)	0.0	25.0	75.0	0.0	8.00	
	지방자치단체	(31)	6.5	6.5	87.1	0.0	7.77	
성별	여성	(85)	1.2	16.5	81.2	1.2	7.71	F=1.626, p=0.205
	남성	(24)	8.3	4.2	87.5	0.0	8.21	
연령별	20대	(7)	0.0	0.0	100.0	0.0	7.57	F=0.654, p=0.582
	30대	(32)	3.1	6.3	90.6	0.0	8.19	
	40대	(39)	2.6	17.9	79.5	0.0	7.67	
	50대 이상	(29)	3.4	17.2	75.9	3.4	7.79	
	무응답	(2)	0.0	50.0	50.0	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	6.5	90.3	0.0	8.16	F=1.956, p=0.107
	1-3년 미만	(25)	4.0	16.0	80.0	0.0	7.24	
	3-5년 미만	(8)	0.0	0.0	100.0	0.0	8.13	
	5-10년 미만	(21)	4.8	4.8	90.5	0.0	8.38	
	10년 이상	(22)	0.0	31.8	63.6	4.5	7.52	
	무응답	(2)	0.0	50.0	50.0	0.0	6.00	

(9)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75.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9.2%였으며, 평균은 7.62점이다(10점 만점 기준). 다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는 9.2%여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나, 앞의 질문에서의 답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9.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8.19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8.00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63점), '출입국관리사무소' (7.50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73점) 등의 순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에는 45.5%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이주민의 권리인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중앙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모두 0%로,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7.68점으로 '남성' (7.42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8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7.69점), '30대' (7.41점), '20대' (7.29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7.76점), ‘1-3년 미만’(7.52점), ‘3-5년 미만’(7.38점), ‘10년 이상’(6.86점) 등의 순이다.

**〈표 IV-4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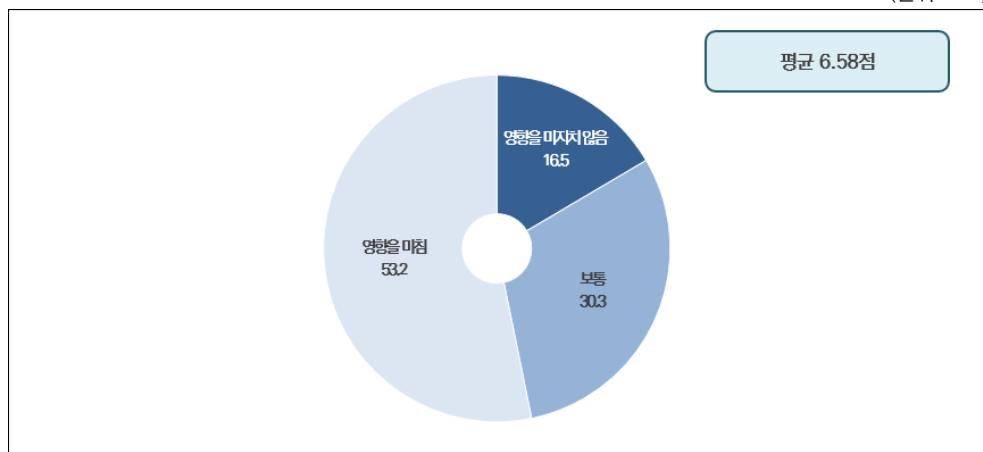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109)	9.2	14.7	75.2	0.9	7.62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7.50	F=5.782,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5.9	13.7	80.4	0.0	7.63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45.5	27.3	27.3	0.0	4.73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0.0	75.0	25.0	8.00	
	중앙정부	(8)	0.0	0.0	100.0	0.0	9.25	
	지방자치단체	(31)	6.5	12.9	80.6	0.0	8.19	
성별	여성	(85)	7.1	14.1	77.6	1.2	7.68	F=0.242, p=0.624
	남성	(24)	16.7	16.7	66.7	0.0	7.42	
연령별	20대	(7)	0.0	14.3	85.7	0.0	7.29	F=0.218, p=0.884
	30대	(32)	9.4	18.8	71.9	0.0	7.41	
	40대	(39)	10.3	12.8	76.9	0.0	7.69	
	50대 이상	(29)	10.3	13.8	72.4	3.4	7.82	
	무응답	(2)	0.0	0.0	100.0	0.0	8.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6.5	9.7	83.9	0.0	8.29	F=1.304, p=0.274
	1-3년 미만	(25)	8.0	16.0	76.0	0.0	7.52	
	3-5년 미만	(8)	0.0	25.0	75.0	0.0	7.38	
	5-10년 미만	(21)	14.3	4.8	81.0	0.0	7.76	
	10년 이상	(22)	13.6	22.7	59.1	4.5	6.86	
	무응답	(2)	0.0	50.0	50.0	0.0	6.00	

(10)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53.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16.5%였으며, 평균은 6.58점이다(10점 만점 기준). 이는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3.2% 정도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16.5%, 보통이 30.3%에 달하고 있어,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7.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7.00점), ‘지방자치단체’(6.74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6.71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6.00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73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59점으로 ‘남성’(6.54점)에 비해 높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6.97점), ‘40대’(6.67점), ‘30대’(6.09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5-10년 미만’이 7.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6.97점), ‘1-3년 미만’(6.60점), ‘10년 이상’(5.86점), ‘3-5년 미만’(5.63점) 등의 순이다.

〈표 IV-47〉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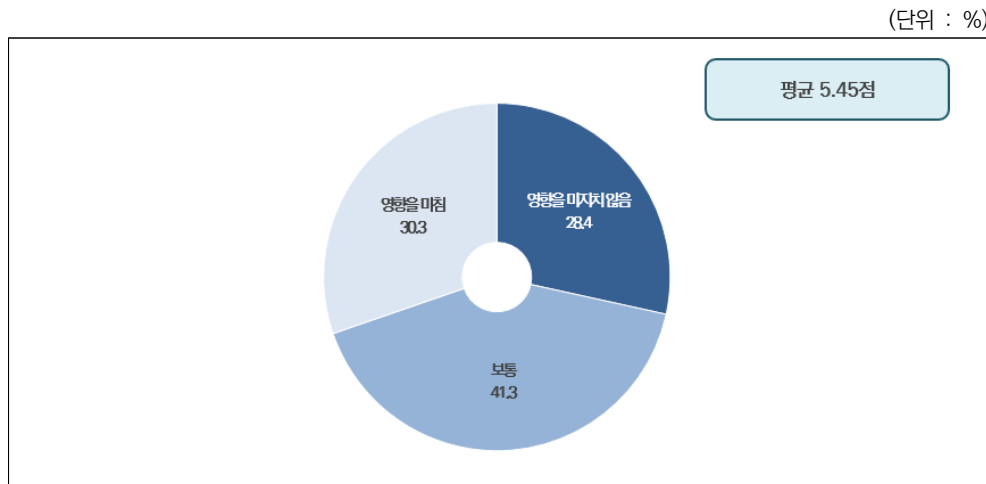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16.5	30.3	53.2	6.58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7.00	F=2.440, p=0.0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1.8	27.5	60.8	6.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54.5	27.3	18.2	4.73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50.0	25.0	6.00	
	중앙정부	(8)	0.0	25.0	75.0	7.75	
	지방자치단체	(31)	16.1	32.3	51.6	6.74	
성별	여성	(85)	12.9	32.9	54.1	6.59	F=0.009, p=0.926
	남성	(24)	29.2	20.8	50.0	6.54	
연령별	20대	(7)	0.0	28.6	71.4	7.14	F=1.074, p=0.363
	30대	(32)	21.9	31.3	46.9	6.09	
	40대	(39)	15.4	33.3	51.3	6.67	
	50대 이상	(29)	13.8	27.6	58.6	6.97	
	무응답	(2)	50.0	0.0	50.0	5.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6.1	16.1	67.7	6.97	F=1.650, p=0.167
	1-3년 미만	(25)	8.0	52.0	40.0	6.60	
	3-5년 미만	(8)	25.0	50.0	25.0	5.63	
	5-10년 미만	(21)	9.5	14.3	76.2	7.14	
	10년 이상	(22)	31.8	31.8	36.4	5.86	
	무응답	(2)	0.0	50.0	50.0	6.00	

(11)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30.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8.4%였으며, 평균은 5.45점이다(10점 만점 기준).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통’ 41.3%를 감안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근무기관별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가 각 7.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5.77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5.51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25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73점) 등의 순이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는 미치지 않는 경우가 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54점으로 ‘여성’(5.4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5.97점), ‘40대’(5.28점), ‘30대’(5.00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6.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5.56점), ‘10년 이상’(5.14점), ‘5-10년 미만’(4.95점), ‘3-5년 미만’(4.50점) 등의 순이다.

〈표 IV-48〉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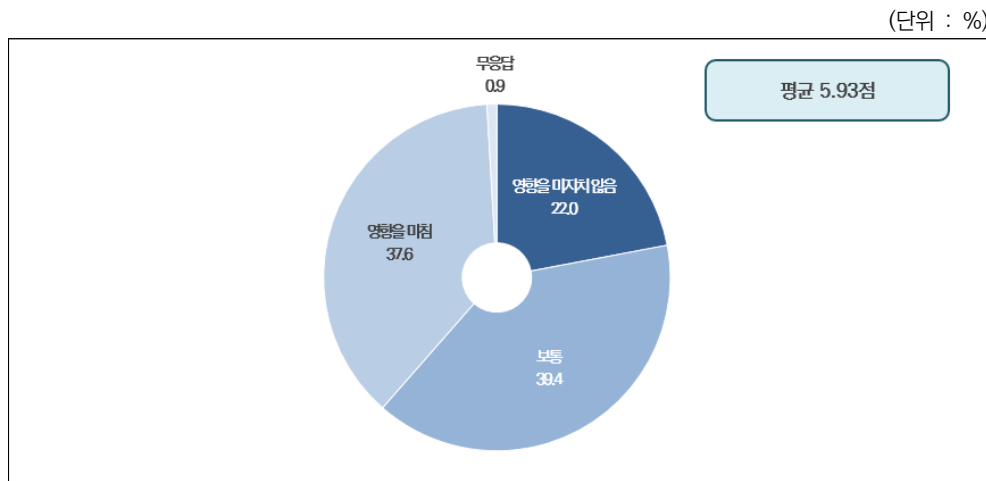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28.4	41.3	30.3	5.45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7.25	F=5.525,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3.5	47.1	29.4	5.5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81.8	9.1	9.1	2.73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50.0	50.0	0.0	4.25	
	중앙정부	(8)	0.0	50.0	50.0	7.25	
	지방자치단체	(31)	25.8	38.7	35.5	5.77	
성별	여성	(85)	24.7	47.1	28.2	5.42	F=0.046, p=0.831
	남성	(24)	41.7	20.8	37.5	5.54	
연령별	20대	(7)	0.0	42.9	57.1	6.57	F=1.418, p=0.242
	30대	(32)	28.1	53.1	18.8	5.00	
	40대	(39)	30.8	41.0	28.2	5.28	
	50대 이상	(29)	31.0	27.6	41.4	5.97	
	무응답	(2)	50.0	50.0	0.0	4.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22.6	35.5	41.9	6.16	F=1.340, p=0.260
	1-3년 미만	(25)	16.0	52.0	32.0	5.56	
	3-5년 미만	(8)	37.5	62.5	0.0	4.50	
	5-10년 미만	(21)	38.1	38.1	23.8	4.95	
	10년 이상	(22)	40.9	27.3	31.8	5.14	
	무응답	(2)	0.0	100.0	0.0	5.50	

(12)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37.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2.0%였으며, '보통'이 39.4%를 보여 유보적인 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평균은 5.93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V-23〉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8.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6.50점), '지방자치단체'(6.4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5.92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33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3.18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00점으로 '남성'(5.6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50대 이상'이 각 6.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5.82점), '30대'(5.59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6.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6.32점), '3-5년 미만'(5.75점), '10년 이상'(5.38점), '5-10년 미만'(5.29점) 등의 순이다.

**〈표 IV-49〉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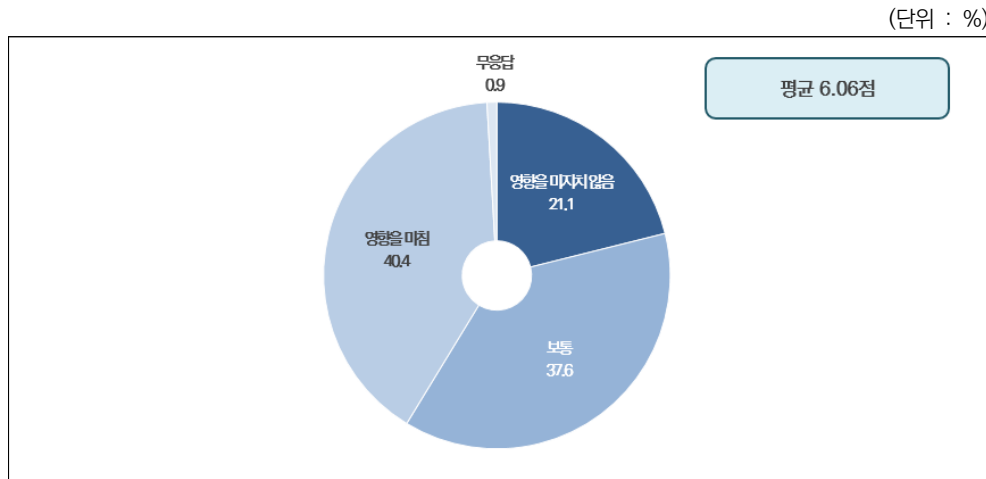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22.0	39.4	37.6	0.9	5.93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6.50	F=5.602,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7.6	51.0	31.4	0.0	5.9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72.7	18.2	9.1	0.0	3.18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50.0	25.0	0.0	25.0	4.33	
	중앙정부	(8)	0.0	12.5	87.5	0.0	8.00	
	지방자치단체	(31)	16.1	35.5	48.4	0.0	6.45	
성별	여성	(85)	16.5	44.7	37.6	1.2	6.00	F=0.353, p=0.554
	남성	(24)	41.7	20.8	37.5	0.0	5.67	
연령별	20대	(7)	0.0	57.1	42.9	0.0	6.43	F=0.717, p=0.544
	30대	(32)	21.9	50.0	28.1	0.0	5.59	
	40대	(39)	25.6	35.9	38.5	0.0	5.82	
	50대 이상	(29)	20.7	27.6	48.3	3.4	6.43	
	무응답	(2)	50.0	50.0	0.0	0.0	4.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6.1	32.3	51.6	0.0	6.48	F=1.213, p=0.310
	1-3년 미만	(25)	8.0	52.0	40.0	0.0	6.32	
	3-5년 미만	(8)	25.0	50.0	25.0	0.0	5.75	
	5-10년 미만	(21)	38.1	33.3	28.6	0.0	5.29	
	10년 이상	(22)	31.8	31.8	31.8	4.5	5.38	
	무응답	(2)	0.0	100.0	0.0	0.0	5.50	

(13)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0.4%,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1.1%였으며, 평균은 6.06점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10점 만점 기준).

〈그림 IV-24〉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8.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6.25점), ‘지방자치단체’(6.13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6.04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5.75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5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07점으로 ‘남성’(6.0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8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6.39점), ‘40대’(6.10점), ‘30대’(5.63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6.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 ‘10년 이상’(각 6.00점), ‘3-5년 미만’(5.88점), ‘5-10년 미만’(5.62점) 등의 순이다.

〈표 IV-50〉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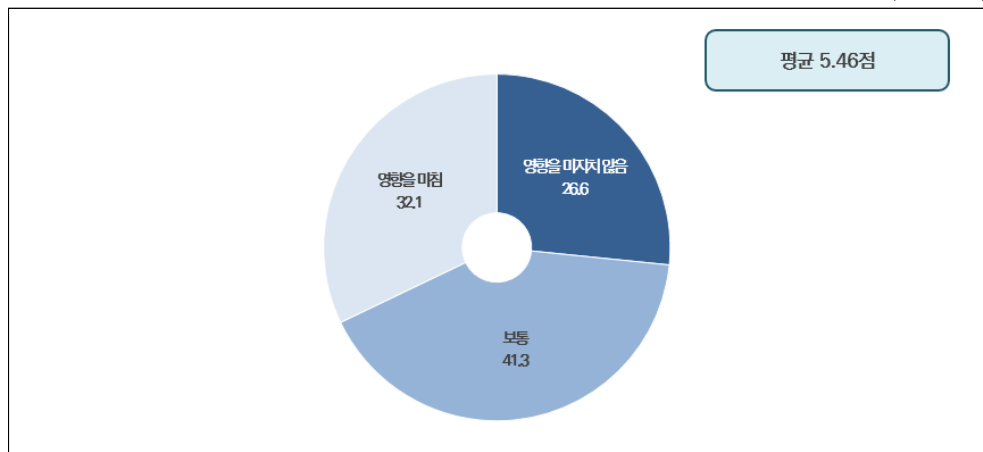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21.1	37.6	40.4	0.9	6.06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50.0	50.0	0.0	6.25	F=2.326, p=0.0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9.6	47.1	33.3	0.0	6.0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45.5	27.3	27.3	0.0	4.55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25.0	50.0	0.0	5.75	
	중앙정부	(8)	0.0	25.0	75.0	0.0	8.00	
	지방자치단체	(31)	22.6	29.0	45.2	3.2	6.13	
성별	여성	(85)	17.6	41.2	40.0	1.2	6.07	F=0.018, p=0.892
	남성	(24)	33.3	25.0	41.7	0.0	6.00	
연령별	20대	(7)	0.0	42.9	57.1	0.0	6.86	F=0.882, p=0.453
	30대	(32)	18.8	53.1	28.1	0.0	5.63	
	40대	(39)	20.5	41.0	38.5	0.0	6.10	
	50대 이상	(29)	27.6	13.8	55.2	3.4	6.39	
	무응답	(2)	50.0	50.0	0.0	0.0	4.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6.1	29.0	51.6	3.2	6.53	F=0.530, p=0.714
	1-3년 미만	(25)	16.0	48.0	36.0	0.0	6.00	
	3-5년 미만	(8)	37.5	37.5	25.0	0.0	5.88	
	5-10년 미만	(21)	23.8	47.6	28.6	0.0	5.62	
	10년 이상	(22)	27.3	22.7	50.0	0.0	6.00	
	무응답	(2)	0.0	100.0	0.0	0.0	5.50	

(14) 이주민 범죄의 증가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 범죄의 증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32.1%,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6.6%였으며, 평균은 5.46점이다(10점 만점 기준). 따라서 이주민 범죄의 증가에 대한 영향은 절반 정도만이 긍정으로 답하였다.

〈그림 IV-25〉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단위 : %)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6.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5.92점), ‘출입국관리사무소’(5.75점), ‘지방자치단체’(5.74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3.25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27점) 등의 순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90.9%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보통’에 대한 답변이 강해 범죄 증가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1점으로 ‘남성’(5.29점)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6.28점), ‘40대’(5.03점), ‘30대’(4.97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5.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5.64점), ‘3-5년 미만’(5.38점), ‘10년 이상’(5.32점), ‘5-10년 미만’(4.67점) 등의 순이다.

〈표 IV-51〉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범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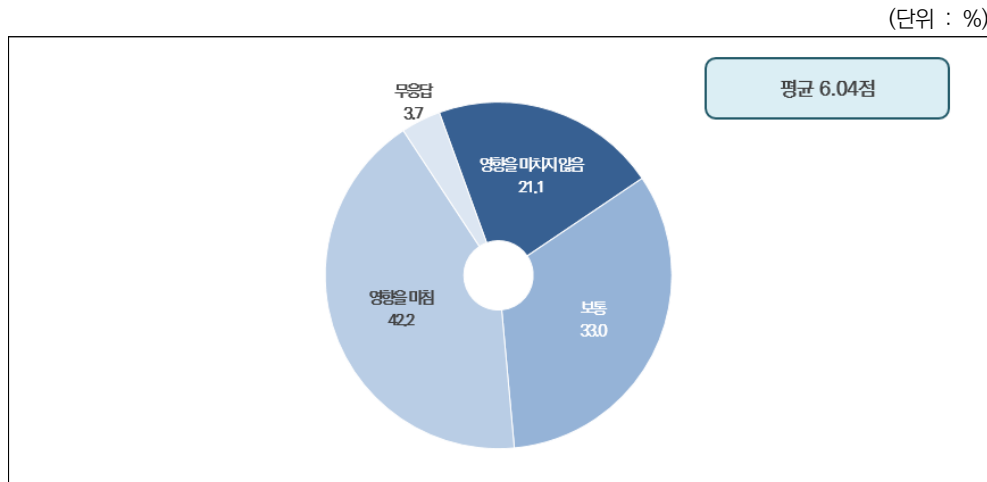
(단위 : %, 10점 만점)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평균(점)	통계량
전체		(109)	26.6	41.3	32.1	5.46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75.0	25.0	5.75	F=6.753,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1.6	39.2	39.2	5.9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90.9	9.1	0.0	2.27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50.0	50.0	0.0	3.25	
	중앙정부	(8)	12.5	50.0	37.5	6.75	
	지방자치단체	(31)	16.1	48.4	35.5	5.74	
성별	여성	(85)	22.4	45.9	31.8	5.51	F=0.144, p=0.706
	남성	(24)	41.7	25.0	33.3	5.29	
연령별	20대	(7)	0.0	57.1	42.9	6.43	F=2.351, p=0.077
	30대	(32)	31.3	37.5	31.3	4.97	
	40대	(39)	33.3	48.7	17.9	5.03	
	50대 이상	(29)	20.7	31.0	48.3	6.28	
	무응답	(2)	0.0	50.0	5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41.9	38.7	5.90	F=0.855, p=0.494
	1-3년 미만	(25)	16.0	48.0	36.0	5.64	
	3-5년 미만	(8)	37.5	37.5	25.0	5.38	
	5-10년 미만	(21)	38.1	42.9	19.0	4.67	
	10년 이상	(22)	36.4	31.8	31.8	5.32	
	무응답	(2)	0.0	50.0	50.0	6.50	

(15)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42.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은 21.1%, '보통'이 33%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6.04점이다(10점 만점 기준). 그러므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는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약간 강하다.

〈그림 IV-26〉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근무기관별로는 '중앙정부'가 8.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6.40점), '지방자치단체'(6.17점), '출입국관리사무소'(5.75점),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5.25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80점)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13점으로 '남성'(5.68점)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6.43점), '40대'(5.72점), '30대'(5.48점) 등의 순이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는 '1년 미만'이 6.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년 미만'(6.25점), '10년 이상'(5.90점), '3-5년 미만'(5.71점), '5-10년 미만'(5.38점) 등의 순이다.

〈표 IV-52〉 [이주민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단위 :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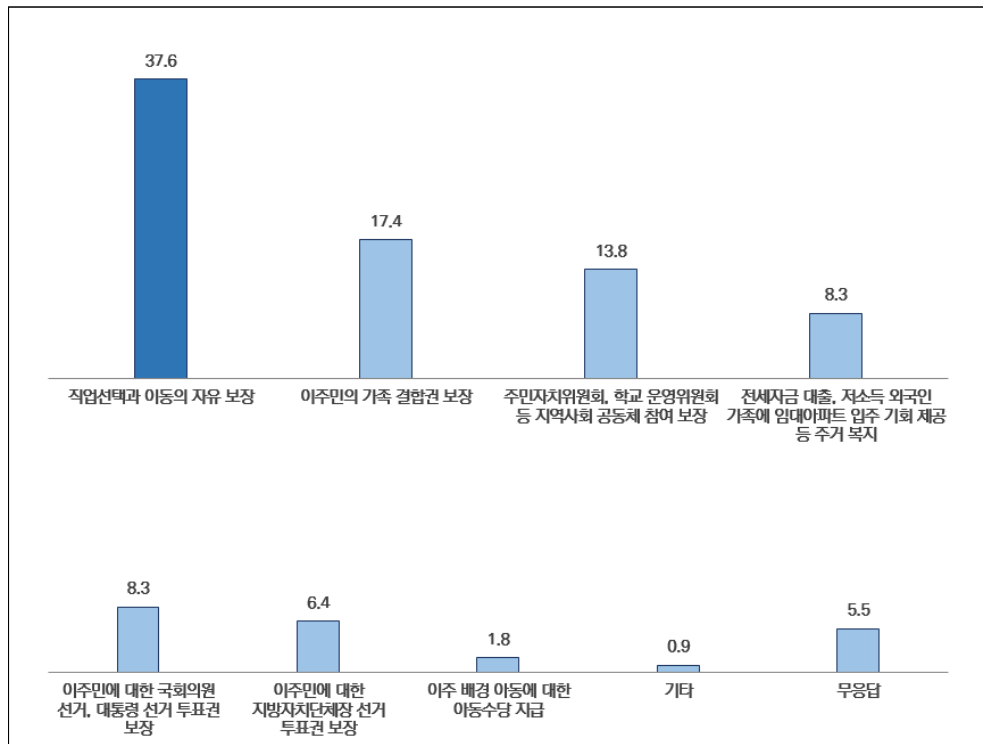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②+ ③+④	보통 ⑤+⑥	영향을 미침 ⑦+⑧+ ⑨+⑩	무응답	평균 (점)	통계량	
전체	(109)	21.1	33.0	42.2	3.7	6.04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75.0	25.0	0.0	5.75	F=5.887, p=0.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15.7	35.3	47.1	2.0	6.4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72.7	9.1	9.1	9.1	2.8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50.0	25.0	0.0	5.25	
	중앙정부	(8)	0.0	12.5	75.0	12.5	8.14	
	지방자치단체	(31)	19.4	35.5	41.9	3.2	6.17	
성별	여성	(85)	15.3	38.8	43.5	2.4	6.13	F=0.575, p=0.450
	남성	(24)	41.7	12.5	37.5	8.3	5.68	
연령별	20대	(7)	0.0	57.1	42.9	0.0	6.43	F=1.957, p=0.125
	30대	(32)	28.1	34.4	34.4	3.1	5.48	
	40대	(39)	20.5	38.5	33.3	7.7	5.72	
	50대 이상	(29)	20.7	17.2	62.1	0.0	6.90	
	무응답	(2)	0.0	50.0	50.0	0.0	6.5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25.8	54.8	0.0	6.52	F=0.736, p=0.570
	1-3년 미만	(25)	8.0	52.0	36.0	4.0	6.25	
	3-5년 미만	(8)	12.5	50.0	25.0	12.5	5.71	
	5-10년 미만	(21)	42.9	23.8	33.3	0.0	5.38	
	10년 이상	(22)	22.7	22.7	50.0	4.5	5.90	
	무응답	(2)	0.0	50.0	0.0	50.0	5.00	

2)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응답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으로는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17.4%),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13.8%),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각 8.3%),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6.4%),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1.8%) 등의 순이다.

〈그림 IV-27〉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단위 : %)



근무기관별로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 5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39.2%),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63.6%),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75.0%), 중앙정부(25.0%)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

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여성'(37.6%)과 '남성'(37.5%) 모두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 각 28.6%, 30대(50.0%), 40대(38.5%), 50대 이상(24.1%)은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 '1년 미만'(32.3%), '1-3년 미만'(44.0%), '3-5년 미만'(37.5%), '10년 이상'(36.4%) 모두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3〉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1)

(단위 : %, 1순위)

구분	사례수	직업 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주민자치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통계량	
전체	(109)	37.6	17.4	13.8	8.3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0.0	0.0	0.0	25.0	$\chi^2=46.105,$ $p=0.0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39.2	21.6	5.9	9.8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63.6	27.3	9.1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75.0	0.0	0.0	0.0	
	중앙정부	(8)	25.0	12.5	12.5	0.0	
	지방자치단체	(31)	29.0	12.9	32.3	9.7	
성별	여성	(85)	37.6	20.0	9.4	9.4	$\chi^2=9.638,$ $p=0.210$
	남성	(24)	37.5	8.3	29.2	4.2	
연령별	20대	(7)	28.6	14.3	0.0	14.3	$\chi^2=19.036,$ $p=0.583$
	30대	(32)	50.0	21.9	9.4	9.4	
	40대	(39)	38.5	12.8	17.9	7.7	
	50대 이상	(29)	24.1	20.7	17.2	3.4	
	무응답	(2)	50.0	0.0	0.0	5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32.3	22.6	16.1	9.7	$\chi^2=33.841,$ $p=0.206$
	1-3년 미만	(25)	44.0	12.0	20.0	8.0	
	3-5년 미만	(8)	37.5	25.0	12.5	12.5	
	5-10년 미만	(21)	38.1	23.8	9.5	9.5	
	10년 이상	(22)	36.4	9.1	4.5	4.5	
	무응답	(2)	50.0	0.0	50.0	0.0	

〈표 IV-54〉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순위 (2)

(단위 :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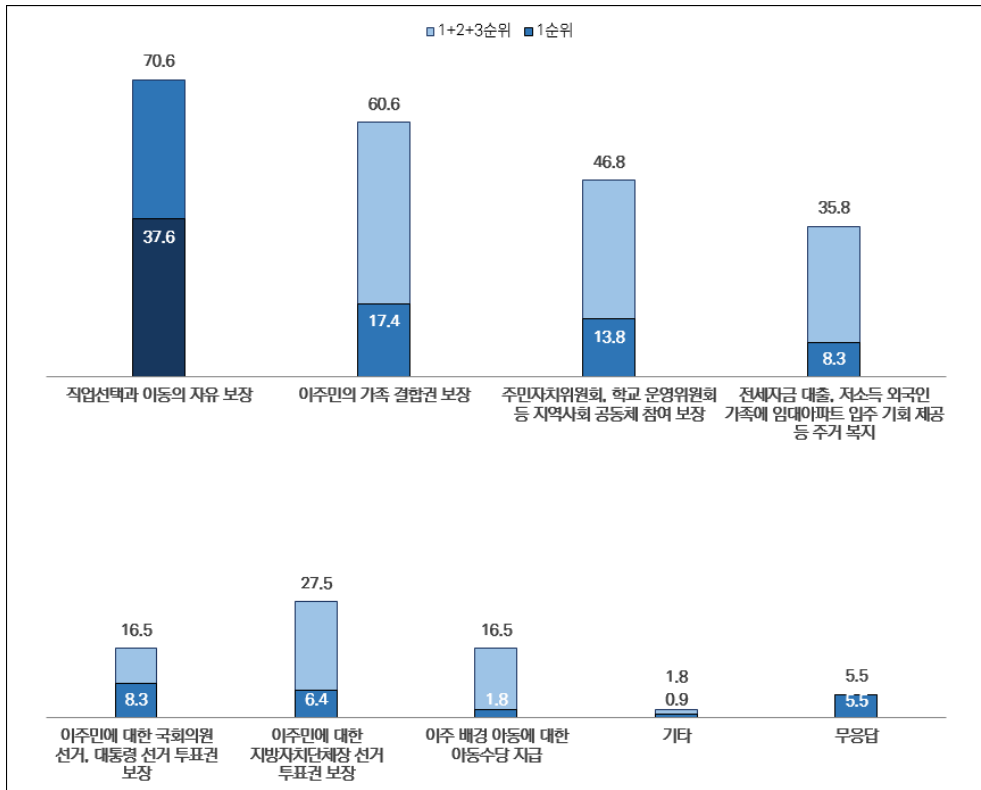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 아파트 입주 기회제공 등 주거 복지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기타	무응답	통계량
전체	(109)	8.3	6.4	5.5	1.8	0.9	-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50.0	25.0	0.0	0.0	$\chi^2=46.105,$ $p=0.0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9.8	7.8	3.9	0.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0.0	0.0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0.0	25.0	0.0	0.0	
	중앙정부	(8)	0.0	12.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6.5	0.0	3.2	6.5	
성별	여성	(85)	9.4	7.1	4.7	1.2	$\chi^2=9.638,$ $p=0.210$
	남성	(24)	4.2	4.2	8.3	4.2	
연령별	20대	(7)	28.6	0.0	14.3	0.0	$\chi^2=19.036,$ $p=0.583$
	30대	(32)	3.1	3.1	0.0	3.1	
	40대	(39)	7.7	5.1	7.7	2.6	
	50대 이상	(29)	10.3	13.8	6.9	3.4	
	무응답	(2)	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2.9	0.0	3.2	3.2	$\chi^2=33.841,$ $p=0.206$
	1-3년 미만	(25)	8.0	0.0	4.0	4.0	
	3-5년 미만	(8)	0.0	0.0	12.5	0.0	
	5-10년 미만	(21)	9.5	4.8	0.0	0.0	
	10년 이상	(22)	4.5	27.3	13.6	0.0	
	무응답	(2)	0.0	0.0	0.0	0.0	

응답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으로는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2+3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60.6%),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46.8%),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35.8%),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27.5%),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각 16.5%) 등의 순이다.

〈그림 IV-28〉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단위 : %)



근무기관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74.5%),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81.8%), 지방자치단체(74.2%)는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은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각 75.0%, 중앙정부는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50.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여성'(72.9%)과 '남성'(62.5%) 모두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71.4%), '30대'(71.9%), '40대'(69.2%), '50대 이상'(72.4%) 모두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연수별로 1년 미만(77.4%), 1-3년 미만(76.0%), 5-10년 미만(66.7%), 10년 이상(59.1%)은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3-5년 미만은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각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5〉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1)

(단위 : %, 1+2+3순위)

구분	사례수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주민자치 위원회, 학교운영 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전체	(109)	70.6	60.6	46.8	35.8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75.0	25.0	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74.5	60.8	41.2	49.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81.8	63.6	45.5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75.0	75.0	50.0	50.0
	중앙정부	(8)	37.5	50.0	25.0	25.0
	지방자치단체	(31)	74.2	58.1	64.5	19.4
성별	여성	(85)	72.9	63.5	44.7	42.4
	남성	(24)	62.5	50.0	54.2	12.5
연령별	20대	(7)	71.4	28.6	57.1	57.1
	30대	(32)	71.9	65.6	46.9	43.8
	40대	(39)	69.2	64.1	43.6	28.2
	50대 이상	(29)	72.4	62.1	44.8	31.0
	무응답	(2)	50.0	0.0	100.0	5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77.4	61.3	51.6	38.7
	1-3년 미만	(25)	76.0	68.0	52.0	32.0
	3-5년 미만	(8)	62.5	62.5	25.0	25.0
	5-10년 미만	(21)	66.7	52.4	52.4	38.1
	10년 이상	(22)	59.1	54.5	36.4	40.9
	무응답	(2)	100.0	100.0	50.0	0.0

〈표 IV-56〉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정책 1+2+3순위 (2)

(단위 : %, 1+2+3순위)

구분	사례수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 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기타	무응답	
전체	(109)	27.5	16.5	16.5	5.5	1.8	
근무 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4)	25.0	25.0	25.0	0.0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1)	29.4	15.7	13.7	3.9	2.0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1)	36.4	27.3	27.3	0.0	0.0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4)	25.0	0.0	0.0	0.0	25.0
	중앙정부	(8)	12.5	0.0	12.5	37.5	0.0
	지방자치단체	(31)	25.8	19.4	19.4	3.2	0.0
성별	여성	(85)	23.5	16.5	15.3	4.7	2.4
	남성	(24)	41.7	16.7	20.8	8.3	0.0
연령별	20대	(7)	14.3	14.3	0.0	14.3	14.3
	30대	(32)	34.4	25.0	6.3	0.0	3.1
	40대	(39)	23.1	12.8	23.1	7.7	0.0
	50대 이상	(29)	27.6	10.3	24.1	6.9	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이주민 관련 분야 근무 연수	1년 미만	(31)	19.4	19.4	19.4	3.2	0.0
	1-3년 미만	(25)	20.0	20.0	8.0	4.0	4.0
	3-5년 미만	(8)	12.5	25.0	25.0	12.5	0.0
	5-10년 미만	(21)	38.1	19.0	23.8	0.0	4.8
	10년 이상	(22)	40.9	4.5	13.6	13.6	0.0
	무응답	(2)	50.0	0.0	0.0	0.0	0.0

3. 요약 및 시사점

이주민 관계자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이주민의 권리 보유에 대한 사항

1) 조사 결과

이주민의 권리 보유 관련하여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는 ‘있음’ 15.6%, ‘없음’ 74.3%이고,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있음’ 73.4%, ‘없음’ 8.3%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있음’ 33.0%, ‘없음’ 36.7%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있음’ 22.9%, ‘없음’ 36.7%이다.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 37.6%, ‘없음’ 45%이다.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있음’ 84.4%, ‘없음’ 6.4%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는 ‘이다’가 45.9%, ‘아니다’가 32.1%이다.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있음’ 26.6%, ‘없음’ 49.5%이다.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있음’ 44.0%, ‘없음’ 37.6%이다.

이주민의 권리 보유 관련하여 ‘등록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4.4%, ‘영주자격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73.4%,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45.9%,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44.0%,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33.0%,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6.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등록 외국인은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22.9%, ‘등록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 15.6%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96.3%,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94.5%,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93.6%,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제도의 균등한 적용’ 89.9%,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각 89.0%,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88.1%,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86.2%,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80.7%,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8.0%,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77.1%,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74.3%, ‘정당의 설립 전면보장’ 68.8%로 나타났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73.4%, ‘체류불안 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68.8% 등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체류자의 긴급 의료비 지원’ 65.1%, ‘미등록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44.0%,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33.9%,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24.8%,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20.2% 등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및 평가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에 대한 질문에서 근무기관별 권리인식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23.5%), ‘지방자치단체’(9.7%),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에서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5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길수록 권리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로 구분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등록 외국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업무를 관할하거나 관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관련 업무만을 주로 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③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치적 권리 인정 수준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5점)와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4.25점)은 인식정도가 높았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각 3.10점), ‘중앙정부’(2.50점), ‘출입국관리사무소’(2.25점)는 상대적으로 인식정도가 낮았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적인 특성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④ 이주민에 대한 권리의 인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각 기관별 입장이 각각 다

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자는 12.5%만이,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전면보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 관계자는 각 50%, 25%만이,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권'에 대해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중앙정부 관계자는 62.5%만이,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은 중앙정부 관계자 37.5%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등 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이주민에 대한 공무담임권 인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50%)와 중앙정부(37.5%), '사회보장관련 권리의 인정'에서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아동수당과 보육권의 인정'에서 중앙정부에서는 37.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중앙정부 관계자는 권리인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은 대체적으로 80%대 이상의 긍정적 입장을 보이거나, 중앙정부 관계자는 62.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편,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는 모두 90%대 이상이 인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60%대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는 5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권리인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 이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축제 등 참여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보상의 전체 답변 중 '보통' 17.4%를 감안하면, '반대'는 9.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 수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다소 그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다만, 중앙정부 등 정부기관은 비정부기관에 비해 권리 인정에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행법상 권리 인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입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⑤ 미등록체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이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간에 분명하게 갈린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대학입학기회 부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앙정부에서 각 2.71점과 2.25점으로 상대적으로 권리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이 50%임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각 22.6%와 0%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보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기본권 인정과 관련하여, 더욱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정치적 참여 확대’는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이 0%, 지방자치단체 9.7%,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0%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72.7%가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미등록체류자의 권리인정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미등록체류자의 다른 등록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중앙정부는 0%, 지방정부는 9.1%만이 긍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이주민지원 NGO 등은 72.7%, 75%가 긍정하고 있어, 각각의 기관별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긍정에 대한 답변도 차이를 알 수 있다.

다만, 미등록체류자라 하더라도 ‘긴급의료비 지원’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11.9%에 불과하여, 건강관련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주민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미등록체류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권리 인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 인정은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1) 조사 결과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83.5%,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82.6%,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79.8%,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75.2%,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각 74.3%,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63.3%,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53.2%,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42.2%,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40.4%,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 37.6%, ‘이주민 범죄의 증가’ 32.1%,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 30.3%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17.4%),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13.8%) 순이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2+3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7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60.6%),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46.8%) 등의 순이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1순위 기준)으로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17.4%), ‘주민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13.8%),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각 8.3%),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6.4%),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및 평가

①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인 적극적인 경제참여,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긍정하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0.9%만이 답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거의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인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9.2%로, ①에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관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③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3.2% 정도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16.5%, 보통이 30.3%에 달하고 있어,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영향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④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악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28.4%, ‘보통’이 41.3%임을 감안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⑤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인의 고용 악화’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37.6%,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2.0%였으며, ‘보통’이 39.4%를 보여 유보적인 입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⑥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 증가와 외화 유출 등에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향이 약간 강했으나, 이주민 범죄는 32.1%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다. 소결

이주민 관계자의 설문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부기관, 관계기관 등에서 각 권리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총체적으로 당사자와 기관 관계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이주민 당사자의 권리 요구 정도보다 오히려, 관계자의 권리 요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관계자의 경우 이주민에 비해 기본권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내국인의 권리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특히 이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기관 관계자는 비정부기관 관계자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권리인정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에 더욱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이주민 관계자의 경우에는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이 인식하거나 요구하는 권리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관계자의 소속기관 및 자신이 맡은 바 직무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권리의 인정에서 정부기관 관계자는 비정부기관에 비해, 등록자에 대한 권리인정에서보다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이주민의 권리보다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V

심층면접 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심층면접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면접조사로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조사개요

이 조사는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 업무담당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주민 당사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주민 관계자의 경우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을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만 앞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심층면접의 경우 이주민 관련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여서 실시하였다.

〈표 V-1〉 조사 개요

구분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이주민 당사자	이주민 관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유학생 등	민간 및 정부기관의 이주민 전문가
분석 사례수	7명	18명
조사 기간	2018. 9. ~ 10.	

다. 조사항목

1) 이주민 당사자 조사

이주민 당사자 조사에서는 이주민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인적사항은 연령, 성별, 출신국가, 현재 국적, 체류 형태, 현재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여부, 지방선거 투표 여부,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참정권 인지 여부 및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에서는 한국사회에 사는 이주민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권리가 왜 필요하며 언제부터 인정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이주민들의 지위와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표 V-2〉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응답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성별 - 출신국가 - 현재 국적 - 체류 형태 - 현재 직업 등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의 선거권 유무, 투표 경험여부 - 선거권이 있음에도 투표한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 - 한국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한국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정치적 자유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지 - 한국에서 이주민이 위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사는 이주민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인정한다면 언제부터, 왜 인정하면 좋을지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에게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들의 지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사회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이주민 관계자 조사

이주민 관계자 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인적사항,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에 관하여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인적사항은 연령, 성별, 학력, 근무기관, 근속연수, 이주민을 접하는 횟수 및 사유 등을 조사하였다.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에서는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정당, 단체 및 노동조합 설립·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입법 개정 등 청구권 부여 등),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균등 적용, 아동수당 및 보육권·교육권, 공무담임권) 및 미등록체류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에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표 V-3〉 조사협조 기관-이주민 당사자 조사

구분	조사 항목
응답자 인적사항	- 연령 - 성별 - 학력 - 근무기관 - 근속연수 - 이주민을 접하는 횟수 및 사유 등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견(정당, 단체 및 노동조합 설립·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 관련 위원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입법 개정 등 청구권 부여 등) -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균등 적용, 아동수당 및 보육권·교육권, 공무담임권) - 미등록체류자의 권리 보장의 정도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는데 대한 본인의 의견 -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라.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사항

1) 이주민 당사자

	성별	나이	출신국	현재 국적	체류형태	현재직업
면접자 1	여	30대	네팔	한국	혼인귀화	주부
면접자 2	여	30대	베트남	한국	혼인귀화	이주여성센터 상담원
면접자 3	여	30대	캄보디아	한국	혼인귀화	이주여성센터 상담원
면접자 4	남	40대	미얀마	미얀마	난민 인정자	판매점 이사
면접자 5	여	20대	몽골	몽골	유학생	대학원생
면접자 6	남	50대	네팔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 귀화자	레스토랑 운영
면접자 7	남	40대	네팔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 귀화자	레스토랑 운영

2) 이주민 관계자

	성별	나이	소속기관	담당업무	근속연수	이주민 접촉횟수
면접자 8	여	40대	대학	이주민 연구	10년	비정기적
면접자 9	여	40대	이주민 협동조합	관리업무	11년	매일
면접자 10	여	30대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상담	1년6개월	월 3회
면접자 11	여	30대	이주민지원센터	법률상담	3년	주 5회
면접자 12	남	40대	대학강사	이주민 강의	15년	매주
면접자 13	남	50대	공익변호사단체	법률상담	14년	비정기적
면접자 14	여	40대	(前)국회의원	이주민지원	12년	주 3회
면접자 15	여	40대	이주민지원센터	상담	6년	매일
면접자 16	남	50대	대학교수	직무상	18년	주 4회
면접자 17	여	40대	서울시 공무원	직무상	10년	비정기적
면접자 18	여	40대	서울시 공무원	직무상	11년	비정기적
면접자 19	남	50대	출입국외국인청	직무상	20년	비정기적
면접자 20	여	60대	서울시의원	직무상	5년	비정기적
면접자 21	남	50대	대학교수	직무상	20년	주 1회
면접자 22	여	30대	외국인지인권 지원센터	실태조사 및 실태 모니터링	6년	꾸준히
면접자 23	여	40대	여성가족연구원	이주민 가족 및 당사자 방문	1년6개월	주 1회
면접자 24	남	40대	대학교수, 연구소 운영	학교 현장에서 접촉	4년	주 4회
면접자 25	남	60대	(現)국회의원	직무상	10년	비정기적

2. 심층면접 조사결과 분석

가. 이주민의 권리

1) 정치적 권리

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인식유무 및 행사경험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치적 권리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을 하러 와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다는 면접자도 있었다. 그만큼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부족과 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권리는 우리한테 없는, 없는 것…. 처음엔 이렇게 해준다 하고, 또 나중엔 의미도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받는 것도 없고. 근데 다문화 지원 받았다고 욕만 먹고…. (면접자 1)

저는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만약에 제가 유학을 와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2년 기간으로 와서,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오래 살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아서. (면접자 5)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뭐 투표 권리? 뭐 그리고 국민들이 의견 낼 수 있는 권리. 근데 투표 말고 의견은 잘 내지는 않았고… 또 내는 통로도 잘 모르기도 했고요. 뭐 와 달지는 않아요. 정치적 권리가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와 달지 않고. 물론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용하는 데,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민원 넣을 수 있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면접자 2)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진짜 제가 주위에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사실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아직까지 몰라서 오늘로 알게 됐어요. 제 생각에 모르는 것 같아요. 90%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면접자 6)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유무에 앞서, 정치적 권리에 관심이 없는 이주민들도 많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하는 등의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실 그런 거 외국 사람이어서 제가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 (면접자 6)

노조에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 한다는 것은, 체류 자격 자체가 외국인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한 4,5년만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한국의 정치에 내가 왜 개입하냐, 하면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관심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나도 죽으니까 그런 건 관심 있지만. 근데 누구 선거에 나옴고 누구 대통령이 어떤 사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는 있겠지만 별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면접자 14)

영주권 있으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2~3명쯤 있는데. 그 친구도 안 하더라고요... 투표권이 있어도. 제가 보면서 이거 선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우리가 해 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가 얘기도 들어 봤어요. (면접자 7)

이 사람은 시간도 되고 해서 등록하구 투표를 하면 되는데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주 여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누가 하든 말든 자기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쪽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치상황을 돌아가는 걸 알려면 언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언어도 모르는데 정보 관심을 두려면 그 쪽에 뭔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한 것도 이해돼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누가 정치 나오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후보가 누구고, 또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그를 해야 되는 건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면접자 14)

선거권을 행사한 경험은 있지만, 너무 많고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유인물을 읽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투표를 했다고 한다.

우리의 선거가 내국인들도 너무 복잡해서 힘든 상태인데 이들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정보나 후보자들의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자 했다는 점은 분명하나 후보자가 이주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과 정책을 알고 이들의 지원하고자 하는가가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지방선거 1번, 대통령선거 1번 해봤어요. 투표할 때 집에서 적어서, 배워서 가서 어렵진 않았어요. 집에 편지 많이 오잖아요, 그거 읽고 갔어요. 이 사람 뽑아야겠다... 그 기준은 좀 이주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기 어머니니까, 청소년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면접자 1)

2012년에 국적 받아서 지방선거 2번 해봤어요. 투표할 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온 편지도 읽어봤지만 뭔지 모르니까 주변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당 정도? 어느 당이 좋은지, 그 다음에 당 투표한 것 같아요. 그 개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되는 상황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이주민한테 조금 더 친근한 정책이나, 이주민이 얘기했을 때 좀 얘기 들으려고 하고, 정책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자에게. (면접자 2)

나)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1) 이주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

이주민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이주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에 대한 정책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는 같은 인간이잖아요. 인간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이주민이지만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권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6)

우리가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사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권리에 차등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누구는 권리를 가지고 갖지 않았을 때, 노동자와 고용주 관계가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들로 엮여 있는데 누구는 권리가 있고 누구는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결국에는 이젠 계층화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는 권리가 있고 누구는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전부터 계층 계급화 되는 시스템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해로운 구조거든요, 이렇게 권리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잠시 방

문하는 건 다른 세팅이지만 같이 살고 있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거... 그것이 주택 계약을 하는 것이든, 아니 세입자 이런 계약을 맺는 것이든, 특히나 노동관계를 하는 것이든, 학교에 다니든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있으면 관계가 생긴단 말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비대칭... 그러니까 그자체가 불평등한 법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걸 법 앞에 불평등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생활의 순간마다. (면접자 8)

특히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연계해서 정확한 답변은 얻기 힘들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견참여, 정당가입 등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행 법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회 내에서 완전하게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구현하는 것, 완전한 참여를 하는 것,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표, 정치적 권리인 거죠,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참여적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12)

이주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등은 허용해야 한다... (면접자 21)

이주민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권리는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후와 촛불 이전의 우리사회는 달라졌죠... 정치적 권리를 이주민에게도 주어야 하고 이들이 자신의 의견 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허용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면접자 20)

(2) 정당·노동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가) 정당의 설립·가입 및 활동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현재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가능하나 이주민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며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주민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출입국관리법에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정당 활동은 좀 곤란할거 같
아요. (면접자 19)

그러나 이주민의 정당 가입 등 활동을 긍정하는 응답도 많았다. 그들은 한국에 정착
하여 자녀를 키우는 등 한국에서 오래 생활할 계획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는 이주민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민들 스스로도 그리고
정당들도 이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논의할 장도 마련하고
함께 자리해서 이주민들의 요구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을 비롯해 우리 사
회가 과연 이주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과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정당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의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
실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이 사회를 얼마나 평등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과 과정의
문제인 거 같거든요. 계급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는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되
고, 그것이 들려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
어요. (면접자 8)

정당도 물론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으면 장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즘 들어서 또 이주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많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오래 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 있잖아요. 국적과 영주권 관계없이 자녀도 키우고 있고,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훨씬 관심이 많고 하니, 어디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자 9)

법을 떠나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체류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정당활동을 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당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 이런 걸 위해서 만약에 E-9
같은 경우엔 거의 한국에 최대 10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한국에 있
는 동안에 그런 특정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투표권이 없으면 이제 특별하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적극적으로 뭐 이
렇게 활동, 가입을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약간 더 큰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이주
노동권 향상이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런 거는 표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당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면접자 11)

그런걸 아예 지금 담아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열리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열고 이주민들도 물론 이주민들 중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정당에서도 이런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의 일부라는 걸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자 10)

이주민 당사자는 이주민에게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들의 문제를 표현할 창구로서 이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한국 문화, 성질을 모르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 정당이 보다 열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주민들 스스로도 권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생각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이주민들의 문제 같은 거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정당에서. 지금은 당장 어디 가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누구 받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라서 정당 하면 좋은 거 같아요. (면접자 6)

제가 보기에는 정당이라는 걸 만들면 거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아무리 그래도 5년 이상 돼야 이 나라의 정책도 알게 되고, 그때 가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주 아까 말씀대로 3개월 이상 되면 이주민들, 한국문화도 한국 성질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면접자 6)

(나)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

전문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의 권리를 이주민을 위한 중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문제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인권 내지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고용주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주요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조 설립·가입 및 활동문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할 때 정당 활동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노동조합과의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권력 관계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권리고, 게다가 아주 오래된 노예제도 경험했던 인류의 역사를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게 접근되는 거고... (면접자 8)

노동조합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근로자로서 열악한 한국인 사용자 대비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낮은 처우를 고려할 때 정당활동보다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자 18)

단체,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에 관한 권리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 이주민들은 대다수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동권은 노동자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지 국적 유무가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자 24)

또한 이러한 권리는 현재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주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 법과 제도는 인정했으나 실제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등의 문제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다.

노조나 단체는 기존에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바 있고, 국제기준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면접자 13)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보면, 노조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인정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면접자 21)

노조가입 및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활동이므로 이는 인정되어야 하나 정치적 활동을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견해도 있었다.

노동조합 설립도 이것도 어차피 뭐 E-9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찾고자, 지키고자 했을 때 가입하고 활동하는 정도는,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접자 19)

실제로 이주민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 입국 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현실과 법제도상의 보장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법제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요구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는 것이 현

실이므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 즉 다문화감수성, 인권감수성 등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본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일한 적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거기서 분리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하긴 오래 됐는데 제가 96년도나 그 때쯤 되었는데... 한국 사람하구 외국 사람하구 분리하더라고요. (면접자 7)

공장 같은 데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노동조합 가입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볼 때 자국민들끼리만 해요. 우리 같은 경우 나올 때 그쪽 송출기관으로 해서 거기 가면 단체 활동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니까 한국에 출발할 친구들 모아 놓고 교육한다는 거기에서, 한국 가서 일단 열심히 해. 한국사람 실망 시키지 마,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업장 이동하지 말고 일해야 된다, 뭐 법에 없는 말들도 막 하면서... 그리고 거주기간 3개월 안에 미안마 갔다 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까지도 다 해요. 친구들이 여기 오면 그런 것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면접자 14)

(다) 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이주민의 단체설립·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주민의 정당 활동은 부정하더라도, 기타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단체라는 것은 자기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혼자서 곤란하니까 단체의 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건 되는 거 같아요. (면접자 19)

이주민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권리는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단체활동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을 허용하는 것은 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민도 노조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이들의 삶과 즉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도 한 단체활동 등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단체활동 하다가 단체장 역할을 하다가 본국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으나... 단체활동도 하다 없어지는 것도 많고, 그리고 단체활동은 그 단체원들에 의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면접자 20)

이주민이 정당 등과 같은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타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사회활동이나,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경제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주민의 단체활동은 영역별로 구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자 16)

이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협동조합, 학부모회, 상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답한 이주민들은 대체로 그 단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제 와이프가 외식업 협동조합 위원장이예요. 그런 거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 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밥 한 끼 먹고 뭐 의논도 할 수 있다고 얘기 하는데 관심 없더라구요. 그 주변 사람들… (면접자 7)

제가 이번에 아이 학부모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룹채팅도 만들어서… 또 학교에서 아들 차별받을까봐 같이 엄마들이랑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해요. 가끔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도 놀아주고… 그런데 어떤 데는 엄마들도 같이 어울리는 거 무서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무서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노력하면 되지. 가자!”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요. (면접자 1)

제가 가게를 하는데… 상인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인데 저는 못 가요. 바빠가지고… 가끔 한 번씩 가보려고 하긴 하는데, 가서 뭐하나… 할 거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가면 들으면서 의견도 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든 거에 대해 의견 내고 좋을 것 같긴 해요. (면접자 3)

또한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특히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경우, 갈등이 생기거나 폭력, 협박,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주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양국 간 협정을 통해서나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행비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법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럴 때 어떤 단체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해결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민자 입장도 있겠지만 사업관리하는 업체의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 서로 해결할 때 좀 좋지 않을까. (면접자 9)

사실 한국에서 몽골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관광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광비자로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나서 불법으로 체류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불법적인 일을 했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회사에서 나

간다고 하면 월급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불법이니까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돈을 안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인 경우에도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면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신고하지도 못하고 다쳤더라도, 병원가면 잡힐까봐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으로 있는 건 좀 나쁜 거지만, 또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조정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아니면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는 않고, 다른 조선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1년, 2년 근로비자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또 양국 간에 그런 협정 같은 거 체결되면, 그런 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한데... (면접자 5)

한 전문가는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체류자격이나 체류상황에 따라 정치활동의 범주를 공식화하고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치활동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기본활동으로서 인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제도적으로 억압할 수는 있으나, 정치활동을 정당가입과 같이 좁은 개념으로 보지 않고 단체활동(사교적인 커뮤니티 활동)까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이주민이지만 한국사회 정주하는 구성원으로서 납세 등 의무를 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류자격이나 상황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공식화하고 규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8)

(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노동조합, 단체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의 자유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적어도 협의의 어떤 투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은 최소한 인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마치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표현의 자유 부분까지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하는데. (면접자 13)

이주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음은 물론, 본인의 권리 보장 및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보장은 국제인권협약에서도 보장하는 바이고요. (면접자 22)

한 면접자는 국적자, 영주자격 체류자 및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주민의 목소리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표출되고, 그들이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이들의 활동이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내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활동 등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간으로, 저 같은 사람 경우에는 꼭 이렇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영주권을 가지거나,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어차피 여기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아니면 무슨 영주권,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권리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위운동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정치를 반대하거나 정치의 입장을 반대하거나,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그런 권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자 5)

한국맥락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싫어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접근을 했고. 이거는 조금 더 집회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느 사회나 권력자 입장으로서의 집회는 되게 무서운 거니까. 그것을 누르려는 것은 당연한데 집회라는 것에 대한 약간 오래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그냥 연결된 게 아닌가. 사실은 집회라는 것이 있으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연대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과정이어야 하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결국에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물결이 되는 건데... 이런 특정한 것들은 그게 되지만 뭐 장애인운동이든 이주민 운동이든, 이런 것들이 소리가 있으면 무슨 얘가지 하고 연대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정부가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 입장에서 당연한 거 같고, 그거에 대응하는 시민의 어떤 태도의 측면에서 저는 좀 그런 연대 부분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게 왜 안 될까. 그래서 뭐 노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않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메시지를 안 듣고. (면접자 8)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

(가)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등은 각각 다르다.

다른 나라들 봐도 그게... 전 그런 걸 해외 사례랑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왜냐면 최근에 이주 정책의 경향은 거의 이제 뒷걸음질 달리기 대회?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다 서로서로 재가 저런다, 재가 저런다, 이런 거만 서로서로 계속 가져와가지고 계속 폐쇄적으로 가고... 그래서 전 별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면... 가장 많이 나간 데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도 투표권이, 대통령 선거, 총선 투표권이 있거든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지형이 완전히 우리랑 다른 게, 기본이 영주권자, 그러니까 이주민의 대부분은 영주권자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체류 이주자들은, 진짜 투표를 자기네들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들이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은 되게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근데 영주권을 줬다는 거는, 저는 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어떤 자신의 평생의 기간, 되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commitment,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인생의 일부를.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어떤 책임과 권리를 둘 다 이야기할 수,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자 12)

면접자들 중 몇몇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권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현행법에 의해 이주민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참정권은 서구에서도 드문 진보적 정책입니다. 따라서 현재수준에서 역행하는 것은 어렵고, 더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을 현행보다 더 많이 인정하는 것은 한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면접자 16)

이는, 이주민에게 그냥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주는 정도도 우리나라가 매우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0)

이주민에게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면접자 21)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 결혼이주민 또는 중국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한국 거주 이주민의 특성상, 오랜 기간 정주의사를 갖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국가 이주민 정책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 농어촌 등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도입 등에 의해 거주 중인 경우가 다수이고, 그 외는 중국동포가 다수입니다. 체류 유형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주민 특성상 한국에 이민, 영주하기보다 본국으로 복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 시 책임감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자 17)

그러나 어떤 면접자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영주자격을 받고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을 보다 확대하여야 이주민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선거참여의 권리는 이주민에게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장기체류 의사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영주권자에게만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장기체류 이주민에게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2)

한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되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거권을 주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정치적인... 어떤 정당이 좀 그런 활동을 하는지, 어떤 정당을 투표해야 그 사회가 좀 좋아질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선거를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살고 지식 같은 거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선거권도 관철은 거 같고. (면접자 5)

어차피 영주권 받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 있으려고 영주권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나라 어떻게 운영하려면 그 지방선거 때문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관심 갖게 되면 관철을 것 같아요. (면접자 6)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언제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기존에 어떤 논의의 수준은 광의의 어떤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조차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법제 태도라고 해석되고 있고... 투표권을 주냐 마냐는 지방선거 일부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당연히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전제들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 투표권 준 것이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사회구성원, 사회통합, 그리고 어떤 사회 책임 있는 성원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는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국민과 구별되는 측면은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죠. (면접자 13)

모든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여러 요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정권의 부여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장려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자 24)

면접자 일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 이주민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위험, 이주민이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 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저는 고민이 좀 되는 게... 저도 한국에 온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주로 결혼이주자들은 자기 가족, 한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뽑기도 하고. 알아보고 해도 제대로 잘 이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특히 또 노동자 같은 경우 왔다가 몇 년 후에 또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참여할 권리는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장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저처럼 잘 모르면, 그러면 또 이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되긴 해요. 뭐 네팔 정당에서도 네팔 사람들 불러서 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 국내에서도 이주민 이용해서 막 자기 편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기본 교육은 같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언어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배우러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내문이나 이런 게 이해가 덜 될텐데...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면접자 2)

몽골도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선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외국사람뿐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멀어지거나 참여도가 적거나 없으니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뭐 정당활동도 해보고 선거운동도 해보고 했지만... 물론 이주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거기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런이런거다, 여기여기에 도장 찍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는 좋은 의도로 하는데 그게... 좋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면접자 9)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단기체류자가 아닌 한국 사정과 정치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꼭 굳이 그런 권리까지 주고 나서 그럴 필요는 없고... 국적을 갖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면 상관없기는 한데... 관심 갖은것도 갖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기간으로 살게 되고, 그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한다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오히려 선거 결과 같은 것들도 오히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드는데... (면접자 5)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첨에 올 때 그거 몰려가고 저거 몰려가고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잘 몰라서. 여기 정착하고 알게 되고 그때 가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면접자 7)

귀화자, 영주권자 등 한국에서의 정주를 결정한 경우 선거 투표 및 출마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날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권리는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접자 18)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 국회의원 임기인 4년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5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 등, 선거권을 부여할 이주민의 범주를 정하는 구체적인 체류기간 기준에 있어 면접자들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그냥 일반론으로 어차피 4년 동안 할 거잖아요. 4년 동안의 팀이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적어도 4년까지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뭐 당연히 선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아까 그런 맥락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느냐의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선거권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대강의 예상되는 것의 기반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면접자 8)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어쨌든 그 안에 한국에 살았던 거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사람 본인에게 미치는 그런 정치인과 어느 정도 삶을 살았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4년이 되고, 구의원 시의원 선거 같은 거는 짧을 수도 있고... 나눠서 딱 잘라서 5년 이상은 지방자치가능 그런 것 보다는, 본인이 본인의 삶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선거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면접자 10)

만약에 체류기간이 5년이 안되더라도... 노동자나 학생이라도 그 정치인이 대표하는 이익이나

정책에 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이 사람들도 다 뭔가 세금 간접적으로 내는 거 있고... 뭔가 자기가 여기에 살기 때문에 나라에 하는 의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래서 저도 투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체류기간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자 11)

제 생각엔 5년 이상 산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관광 오는 사람들 문화도 모르고 생활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친한 사람들 정치도 알 수 있고, 그러면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괜찮을 거 같아요. (면접자 6)

(나) 피선거권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면접자들이 많았다.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할 전례가 없다는 점, 이주민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제어할 제도가 없다는 점,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권리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점, 한국이 아닌 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주민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인정하고 있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정도로 좋다고 봐요. 피선거권은 전례가 없는 듯 하네요. (면접자 21)

보수적입니다. 영주권자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정도 수준은 용인합니다. 다만, 규정이나 제도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법, 제도 전반이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7)

결국 피선거권이라 하면 본인도 뭐 선출직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영주권이라고 하면 영주권자는 아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3년 지나서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제가 보건데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확대해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면접자 19)

이자스민 국회의원님 활동할 때 다양한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시선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자 라고 나서서... 물론 그 사람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리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물론 그 사람은 그런 의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그래도 지금은 아직 좀 이르지 않나. (면접자 9)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민을 대표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애초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건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국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나...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다만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표를 해야 하니 그전에 몇 년을 살았다거나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마 영주권이라든 거의 연동이 될 테니까...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면접자 8)

실제로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고... 또 그런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겠조. 만약에 그런 요건을 다 맞은 사람이면, 갖춘 사람이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그런 일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같은 거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면... 사회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좀 실제로 그런 자격 같은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면 상관없는 거 같아요. (면접자 5)

한 면접자는 이주민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사례를 통하여 이주민 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뉴질랜드도 이주 배경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중국배경 의원이 있고 한국인도, 그 분이 귀화를 했는지 시민권을 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 의원이 있고 오히려 그 당대표는 그 의원들을 되게 잘 활용하거든요. 그 민족들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더 연결 되는 게 있기는 있고, 그 이주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도 돼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면접자 10)

(다) 투표권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군·구 단위에서의 참정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국가 전체단위로서의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일부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는 65개국이며, 그중 36개국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

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시군구 단위에서 이주민 참정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 전체 단위 선거 투표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면접자 24)

(3) 지방자치단체 내의 참여: 관련 위원회 참여, 조례 입법·개정청구권 등

지방자치단체 내의 활동에 관하여는 상당수의 면접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주민이 각종 자문활동과 입법활동을 하는 것, 의견 개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자치 권력을 구성하는 선거권과 주민조례 등의 제정과정,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 그러니까 주민투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감사청구, 주민소환투표권 등에 정당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선거권의 부여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과정에 이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4)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식의 정책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지자체 수준에 국한하여 각종 자문활동과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6)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외국인 이주민이 자꾸 증가하면서 그 사람들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이니까 참여는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로는 좋은 거 같고. (면접자 19)

위원회 참여 허용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위원회에 당사가 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나 요구가 정책화로 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고,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 내지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매우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0)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이주민이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주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권리측면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 지역의 다양성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접자 25)

지역사회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이주민도 주민으로서 일정 정도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그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부여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지역사회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단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마땅하며, 이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접자 22)

한국 국적 취득 유무와 무관하게 이주민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세금 납부 등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상호성의 원리에도 부합할 것 같습니다. (면접자 24)

이주민 당사자 역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역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 같은 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도 와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위원회 같은 거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내가 내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좀 누구나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면접자 7)

지역위원회 같은 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정책도 알게 되고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관심도 갖게 돼 가지고 제일 좋을 같은데. (면접자 7)

한 면접자는 비록 먹고 사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대개는 일하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활동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면 나가서 활동하고, 안 되는 것 있거나 불편한 것 생기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보면 가서 정치와 관련해서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투표도 하고, 뭐 지역에서나 사람들 활동하고, 행동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니까. (면접자 9)

한 전문가는 현재는 단순히 외국인 관련 위원회, 다문화 관련 위원회 등에만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회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이주민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투표하는 투표권과 출마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개정청구권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외국인 관련인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 위원회 모두에 개방적으로 하고, 단순히 의견 제시한다고 생각하기보다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소통하고 의견 제안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자 23)

이주민의 지역사회 내 참여를 긍정하면서도, ‘한국 성원으로서’의 정치참여, 입법청구는 허용 가능하나, ‘자국민’의 이익,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접자도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주민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상응하는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치참여, 입법청구 등은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이익,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면접자 17)

(4) 공무담임권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았다.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적을 것이라는 점,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현재 외국인이 공무원이 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우려되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의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접자 17)

우리나라 같아도 그런 거 들어주는 것도 없어요. 거의 없을 거라 생각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거 자체에 이 나라 시민, 이 나라 운영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외국 사람인데 그러면 공무원 일해도 있잖아요, 이 나라 이득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국적 다른데 있는데 이 사람 여기서 돈 벌고 자기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외국사람 이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팔에서도

문제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미국 영주권 갖고 있는데 네팔에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많이 반발이 되고 있어요. (면접자 7)

현행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적으로 관련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면접자 16)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문기능 외국인의 경우에 공무원이 되는 길이 대폭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예요.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길은 봉쇄되어 있으나,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전문직 21)

반면, 공무수행 능력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면접자들도 있었다. ‘이주민이라서’가 아니라, 업무 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관련 업무는 누구보다도 이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업무에는 이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무원이 그것을 이주민이라서 막아야 될게 아니라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잘 하려면 어쨌든 한국어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하니까. 공무원을 타입으로 정할게 아니라 공무원을 뽑을 때 되게 많은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야지... (면접자 10)

제가 이주민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신분이나 역할, 책임 등에 대한 이해와 공익우선의 마인드가 국적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국적 유무가 아니고 개개인의 품성, 정체성, 책임감 등이 더 중요한 거죠. 또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행정을 실현할 외국인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자 18)

지금 우리 하고 있었잖아요. NGO를 운영하잖아요, 외국인들도, 노동자들도 다. 공무원, 상관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니까. 한국 사람들도 통과 못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외국인이면, 충분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겠죠. 이주민이 공무원시험을 볼 정도면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어능력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면접자 14)

외국인 정책 같은 거는 외국인이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성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외국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외국인이 하게 되면 더 혜택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뭐가 특별하게 로열티가 필요한지 충성

도가 필요한지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오히려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충성도가 높고, 만약에 그거에 어긋나는 윤리적인 일을 저지르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 뭐 잘은 모르겠거든요. (면접자 8)

실제로 외국인 관련 업무에 외국인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관련 개방직 공무원 채용 시 장기체류자인 F-4(거주), F-5(영주)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에는 외국인 관련 개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장기체류자인 F-5, F-6비자 소지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관련 개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F-4 비자소유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에 F-4비자도 표기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담당관 글로벌센터장 직은 외국인출신 제한경쟁으로 채용까지 해서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출입국 법적 근거에 따라 장기체류와 전문직 종사할 수 있는 비자의 경우 개방직 공무원으로 허용이 되는지, 타 지역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면접자 23)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필요에 의해 접점 개방이 되고는 있지만, 국가안보 등 국가의 비밀정보를 담은 업무에는 이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26조의3 제1항), “국가기관의 장은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및 외교, 3.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각호). 「공무원시험령」 제4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를 8가지로 열거하고 있다.⁵⁹⁾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59) 공무원시험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즉 한국인이 아니면 안 될 업무가 아닌 한, 이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임권 관련 그 부분도 한국 같은 경우 매우 엄격하게 되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점점 개방이 되고 있죠. 위원회나 이런 덴 이미 외국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가 됐건 중앙정부가 됐건 위원회에 외국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정하면 되겠다, 뭐 국가안보라든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외국인이 누가 봐도 외국인이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뭐 국가 안보를 다루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를 다루는데 미국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제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보장되는 게 맞다... (면접자 13)

현행처럼 국가안보 관련 비밀 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국적이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적을 취득해도 국제경기에서 한국이 아닌 출신국(모국)을 응원하더라'며 전쟁나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외국인지원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생 한국인은 모두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쓸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면접자 18)

공무원임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데 국가안보라든지... 외국에서도 사실 그런 기준으로 공무원임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 간호사가 한국인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건소에 갔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FDA인가?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한국인인데,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게 이제 국가안보라든지, 몇 가지 진짜 반드시 국민만이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명백한 그런 영역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개방하는 게 맞다... (면접자 13)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에 상관없이 다문화 또는 이주민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공무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하므로 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공무원일 경우는 이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가족 등의 업무를 보는 경우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접자 20)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주민이 공무원이 될 경우 소통도 원활하고 훨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같은 이주민에게 도움을 받으며 더 믿음이 가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있으면 좋죠. 좋지 않을까요? 외국에 대한 이해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이야기나,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자 3)

일단은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관심 갖게 되고, 언어, 의사소통도 되고, 아무래도 더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꼭 국적 아니어도, 노동자 상황 잘 이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특별히 채용 방식으로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설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주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산지 오래 되고, 그래서 장기체류 가능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출신으로 해주면, 너무 좋죠. 왜냐면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노동자 입장이거나 이런 상황은 100% 이해하기가 어렵죠. (면접자 2)

외국인 출신이라면, 자기 의지가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외국인이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런 높은 분도 외국인 출신이라고, 가서 도움을 받으면 더 믿음이 가고 더 아, 그 사람이 외국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하고 가서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갖고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가봤자 뭐 한국사람인데, 한국사람 돕겠죠? 우리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사람, 그렇게 노동자 중에 되면 어쨌든 우리 같은 이주자이니까, 이해 잘해주겠지? 뭐 잘 도움 받을 수 있겠지? 그런 힘이 생기겠죠. (면접자 1)

다만 한 전문가는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더라도 이주민들이 출마를 고려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것이 이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 전체 단위의 공무담임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단위의 공무담임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이장이나 통반장은 이주민에게도 열려 있어야 할 것이고요. 내국인에게 공무담임권이 있다고 해

서 모두가 출마를 고려하지 않듯,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상징적 조치에 머물 것이다. 다만 해당 이슈에 대한 논쟁의 과정에서 다소 배타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면접자 24)

2) 사회적 기본권

가) 노동권: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등

(1)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 사업장이 지정되고, 비자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줄 수는 없다고 본다. 내국인의 일자리, 고용과 충돌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주노동자 자체가 일정 영역에서 취업하겠다고 들어온 경우이므로 이를 다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0)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보장은...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어느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그 이외에 직업 선택하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장 지정이 되는데... 옮길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 하는 것도 외국인은 어떤 특정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일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제한 없이 막 이동하고 자유롭게 하자, 확대하자는 얘긴데... 결국엔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특히 돈벌이를 하는 얘긴데. 이 부분은 국민의 일자리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일자리가 뭐 결국 이제 국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외국인에게 이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긴데... 지금도 이제 뭐 각종 건설 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잠식을 해서 자리가 없다고 신고도 참 그리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과연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직업선택을 이들이 자유롭게 했을 때, 과연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면접자 19)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기 어렵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근무 지역과 종사업을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자 16)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론으로 하고(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부정하더라도),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주민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고용보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주민의 권익 보호 등을 근거로 한다.

일단은 직종별, 사업장별로 들어오게 되어있죠, 지금 고용허가제 구조는. 그니까 구조가 사업주에게 고용을 허가해서 사업주가 부르면 그 때 비자 받고 오는... 사용자한테 사실은 종속돼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 이동 규정이 있는 거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거냐, 근데 현행 규정에서 제한을 없애는 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사업장 이동에서 가장,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문제라고 얘길 했던 게, 내국인 어떤 고용보장이 안 된다,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 이게 하나인데. 근데 이미 규정이 있어요.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에 따라서 내국인 고용 먼저 노력해서 안 된 사람만이 사실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 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죠. 수요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외국인은 수요공급의 원칙 무시하고 무조건 임금 통제를 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 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도 법조항도 있는데 법조항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고... (면접자 13)

같은 직종 안에서 사업장 이동이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 직업선택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종 안에서 사업장 이동은 자유롭게 하는 거는 보장되는 게 맞다는 생각하고. 예전에 선원이주노동자 들을 만났을 때 보면, E.P.S 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선원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E.P.S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동, 옮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더 옮길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다른 비자, 선원비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힘들어서 옮기고 싶다고 하면 위협, 협박을 받거나 선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선원 비자를 받았으면 그거 직종 안에서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업 아예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면접자 11)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이동과 직업선택 자유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에 찬성합니다.(면접자 17)

사용자와 이주민 간의 권력 균형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 이동 제한은 오히려 사용자 등의 부당행위를 조장하여 이주민에게 굴레가 되고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계약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위협하거나,, (아님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

는 사항)일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언어 등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고, 이주민에게 굴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면접자 18)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노동직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자로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E-9 비전문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3회 정도만 사업장 이동만 허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3)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전면 허용해야 한다. 내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직이 잦지 않고,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용자 등의 부당행위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 및 관리인의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면접자 24)

실제로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사업장 이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고용허가로 온 사람들이 물론 첫째는 임금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는... 사업장 변경, 이동에 대해서... 물론 3번 정도 허용하는데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너 가라'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아 이동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진짜 힘든데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법치주의는 허용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이동할 수 있게 좀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3번이다 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물론 너무 많이 이동하게 되면 그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짜 현장이 어려운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든가 건강에 너무 안 좋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바꾸고 싶어하죠. 근데 그 사람은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에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면접자 9)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하여, 국내 취업기간의 장단에 따라 해당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단순노무비자라 할지라도 사업장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주노동자도 영주(F-5) 또는 거주(F-2)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국내취업기간의 장단에 따라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 같아요. 국내취업이 1년 이상 되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영주(F-5)나 거주(F-2) 자격의 취득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자 21)

(2) 직업선택의 자유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해진 업무만 해야 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외국인도 여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는데, 정해진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노동자라면 노동일밖에 할 수 없고, 서비스업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와서 들어와서 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좋는데... 노동자도 능력 있으면 자기 원하는 일도 가능할까 싶는데, 그거 못해요, 정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공장에 가고, 더러운 일 해야 되는... 한국이 정해주는 노동자의 업무... (면접자 3)

변경하려면 또 사장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굶어죽든지, 네팔을 가든지, 아니면... (면접자 1)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체류 관리의 필요성, 예측가능성, 규정된 비자타입 등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저는 사업장이동이나 직종선택을 왜 굳이 막 막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근데 직업선택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변한 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체류 관리를 해야 하고, 그쪽에서도 외국인의 관리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정책을 잘 펼칠 때에도 어느 외국인이 어느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직업선택에 아주 완전히 자유가 보장이 돼서 어떤 비자로 들어왔던, 예를 들면 C-3로 들어와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 어업노동자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펼칠 때도 예측 불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면접자 10)

직업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비자타입이 있는 거잖아요. 비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직업이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한되는 건 맞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들어올 때 어떤 비자 타입에 의해서 제한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을 제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면접자 13)

나)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1) 인정여부

한 면접자는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가도, 건강보험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때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난민 인정받기 전에, 그 아파트형 공장에서 1년에 한 번 씩 응급차, 병원에서 차 와가지고 한국인들 건강검진, 피 뽑고 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이 나 너무 소외되는 거. 그전에는 다른 시간에는 어울리고 장난치면서 내가 외국인인거 인식 못할 정도로 장난 잘 치면서 잘 지내며 사는데, 그때만 '아 나는 진짜 나 외국인이구나' 다들 안가? 뭐 이러면서, 내가 대답 막히는 거지. G1 비자 때는 건강보험에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면접자 4)

돈을 내고 권리를 받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주민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세금 또는 보험금을 내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입 자격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회보장권은 일종의 단체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보험의 성격 그쪽에 사회보장 제도가 있죠. 협동조합이든 뭐든 거에 가입을 하는 거란 말예요.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는 그 가입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 내가 의무를 하고 권리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한다는 건 돈도 낸다는 이야기 인거고... 그런 개념이라서, 열어놓고 의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국적이 라고 해서 달리 할 이유가 없고, 다만 얼마나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 있을 것이냐 최소한 우리가 회원이 1년 정도는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하면 그런 식의 뭔가 장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재정 외에 다른 것들도 생각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회원 가입하고 재정 운영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할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외국인이 가입을 하면 이것이 고갈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이. (면접자 8)

사회보장은,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이제 얼마나 사회보장에 관련된 보험이나, 뭐 그분들이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세금을 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 사회보장 관련되는 기금을 냈을 때 그 사람도 적용되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뭐 국민들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자 19)

왜 국민만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가도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한편으로는. 세금 안 내

는 국민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면접자 12)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규약을 보면 그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보장권을 포함한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를 나눠서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게 헌법개정안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전엔 아예 사람의 권리란 게 없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일정 정도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온 부분들이 있죠.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그걸 명문화하려는 시도조차도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 국제법, 한국 정부가 비준해서 국내법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 그 국제법에서,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유보할 이유가 없다, 그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 그 사회에 있는,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자기 부모 따라 오게 된 거고, 태어난 거고...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또 질문을 하면, 왜 국민만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가도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한편으로는. 세금 안 내는 국민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토론도 없고 그냥 국민이 아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을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훌쩍어서 바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면접자 12)

(2) 제한의 필요성 및 구체적 기준

다만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제방안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에서의 의료보험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이주민은 없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겠고요. (면접자 20)

인간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소득재분배 등 위험에 공동대응 하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가 종종 제기됩니다. 얼마 전에... 3개월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고액 치료를 받고, 귀국하는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었고, 그래서 6개월로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하는 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용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면접자 18)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권은 가능할 것이나, 의도적으로 건강보험 등 제도적 수혜를 받는 등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의 사회보장권은 제도적으로 만들면 될 일이지,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보장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면접자 17)

물론 관광 목적으로 여행 온 외국인에게까지 해당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권리를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다.

뭐 여행객한테도 국민연금 가입시킬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체류, 거주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구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라는 생각이 고... 저는 장기체류, 단기체류로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진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나, 체류하는 사람이나 그게 국적여부, 어떻게 보면 체류자격여부와 무관하게... (면접자 13)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한국인 노동자와 함께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3)

얼마 전 보도와 같이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노동자들 가운데에도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에게 적어도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어야 한다. (면접자 24)

사회보장권의 경우 악용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면접자 18)

한 전문가는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외국인에게 균등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한국의 법대로 재산소유에 따라 의료보험을 책정할

것, 그리고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의료보험 가입을 가능케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는 외국인에게 똑같은 균등 보험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8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처음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선뜻 가입하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국의 법대로 재산소유에 따라 의료보험이 책정되면 좋겠습니다. 재산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의료보험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것이 향후 사회비용이 덜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가족단위로 묶는 의료보험제도를 똑같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가입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번역공증을 받고, 실사를 하여 확인 될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의료보험 가입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선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면접자 23)

다) 아동의 보육권, 교육권 및 아동수당

(1) 아동수당

한 면접자는 보육권,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동수당의 경우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아동인권협약 가입 국가로서, 최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보육권, 교육권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현재 아동수당은 한국국적 아동 및 난민아동에 대해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동수당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8)

하지만 많은 면접자들이, 세부적 견해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건 매우 필요해요, 그들에게. 일단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동들은 한국에나 외국에나 똑같은...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1)

아동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어리고 약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부모가 실업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그럼 애가 굶어서 죽어야 하느냐, 이걸 또 다른 문제

췌. 기본적으로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2)

저는 아동의 이슈는 뭐가 연동이 되냐면 아동은 누구든 받는 식이잖아요. 부모에게든 누구든 뭐든 뭔가를 받는 식이란 말예요. 일종의 투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손해보는 식이에요.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인권의 영역인 거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갈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건 각 나라가 각 영토에 있는 아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영토 안에 있는 아동은, 출신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투자를 받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골라서 미래에 여기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투자했으니 외국에 못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잘 모르고 투자하는 시기예요, 결과를 모르고. 이왕 모르고 투자 할 시기이면 각 나라가 책임제로 하는 것이 맞다... (면접자 8)

그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특히 아동의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자기 부모 따라 오게 된 거고, 태어난 거고...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 아동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자 12)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사회권 규약의 경우 1990년 4월에 가입한 바 있다(1990.7.10. 발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권리협약 및 사회권 규약을 근거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권리는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으로서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 혹은 사회권도 외국인 구별 없이 보장하자는 것이 사회권 규약의 취지이고, 그랬을 때 당연히 보장되는 게 맞겠다... 실상 어려운 법을 고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학교마다 언어적인 거 보조하는 교사도 생기고 이려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비용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고, 그 비용을 안 들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반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통합 안 되는 그룹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 왜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애들 학교에서 말 통하게 도와줘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 최소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면접자 13)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으며, 동 조약 제2조에서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등록체류 아동일지라도 의무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합법 체류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이주민에게는 보육권, 아동수당 등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자 24)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다는 견해, 한국에서의 아동수당은 일관적인 진행이 어렵고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 동등하게 지급할 경우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이 받는 수당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아동수당은 이제 돈이 이렇게 직접 나가는 부분이라서 뭐 역시 이제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은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부분 수당을 차등해서, 국민하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차등해서 주면 의미가 있을 거 같고. (면접자 19)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보육권, 교육권 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수당은 차등지급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아동수당도 일관적인 진행이 어렵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말뿐인 보장체계로 국내 주민과의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수당의 경우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한국인이 받는 수당의 50%, 3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접자 23)

그리고 한 전문가의 경우 미등록체류자의 자녀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주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미등록 애들 있잖아요. 여기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사실은 세금 같은 거 아무도 안내잖아요, 부모가.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어차피 비자 있고 다 있으면 세금도 주고 다 줘야 되지만, 미등록 사람들은 제약 있어야 되나... 미등록 그 친구들은 힘들 거 같아요. (면접자 6)

(2) 보육권 및 교육권

일부 면접자는 일괄적으로 보육권 및 교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얻으려는 이주민의 행태를 근거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괄적인 보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이주민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보장에 반대합니다. (면접자 17)

만나 본 이주민가정의 경우에는 자녀(남자)의 군대문제 때문에 국적 취득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보육료 지원은 요구하는 것을 보면 좀 씩씩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다 사람의 생리겠지만, 그런 사람의 특성 때문에 제도적으로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자 18)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들의 보육권 및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아동인권협약 가입 국가로서, 최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보육권, 교육권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18)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능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6)

보육권, 교육권 이런 것은 내가 보건데... 어차피 외국인도 장기간 외국인들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보육도 이렇게 보장을 해야 한국인들과 이렇게 잘 갈등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걸 보장이 되는 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자 19)

아동의 발달 보장 및 보호와 관련된 보육, 의료,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은 국적취득여부, 미등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자 22)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경우 오히려 보육권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보육권은 오히려 이주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보육일 거 같거든요? 보통 부모들이 바쁘게 일을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한국사회에 뭐,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린이집 같은데 일거 같아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에게 보장이 되어야 할 권리라 생각합니다. (면접자 10)

하지만 보육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세금을 내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합법적 체류를 요하는 등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어차피 유치원이나 학교 보낼 때 그 부모님 여기 정착 비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법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비자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럼 세금 내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특히나 애들이나 뭐... 애들이 여기서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결정...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면접자 7)

현재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지원이나 교육권 등을 아동인권보장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0)

국내에 합법체류하는 외국인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이나 보육권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의 경우에게 먼저 보장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면접자 21)

한 면접자는 이주민 2세라고 해서 다문화라는 이름에 가두어 구별하는 시각으로 보지 말 것을 강조한다.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며, 정체성 혼란으로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2세라고 해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묻혀가지고, 저 아이들은 이미 이제 '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이 아니라 똑같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에서 온 것뿐이지, 나는 한국인이야. 이런 아이들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상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아이들, 2세라고 얘길 하면, 중도입국 아이들입니다. 중도입국 아이들은 엄마가 재혼을 해서,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친구들은 정말 어느 정도 정체성도 확립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알겠지만, 어른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감수할 건 감수해야지, 아이들한테는 그게 되게 무자비한 말이거든요. (면접자 14)

그러나 아동의 학교 입학이 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장이 거부할 경우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육 보장을 우리... 지금... 아동이, 모든 아동이 교장의 재량으로 받아주나 안

받아주냐 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그게 이미 교육권이 주어졌다 라고... 그게 교육부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재량이기 때문에 교장이 어떤 이유로든 안 된다고 하면, 뭐 안전 때문인지 뭔지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안 받게 되면, 그 아이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면접자 14)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의 보육제도와 교육제도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권과 교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보육권, 교육권 등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되, 교육권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보육제도와 교육제도에 편입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한국의 저출산 제도는 이런 아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역사학자 거다러너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유대인 대학살 시기에 미국으로 도망 와서 여성역사학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독일에서 자라나 독일어를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가장 잘하는 독일어로 독일어를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고.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국어를 가장 잘 합니다. 그들이 커서 한국을 가장 중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력을 단순한 국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서와 지식과 지혜와 민주주의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향후 세대에 글로벌 역량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로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한국 체류권을 갖지 못합니다. 과도기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권과 교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3)

3)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권리

가)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권리 인정여부

(1) 부정적 견해

몇몇 전문가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면접자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미등록체류자들에게까지 정치적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한다.

미등록체류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에 맞습니다. 즉 미등록체류 이주민에게 권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추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는 고용주와 인권단체의 로비에 의해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법적 처리가 미온적인 상태죠. (면접자 16)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미등록체류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미등록체류 외국인 중 케이스별로 어떤 사유로 미등록이 되었는지,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법무부 등이 출입국 법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생각해요. (면접자 17)

미등록 이주민의 정치적인 참여를 확대한다... 이게 과연 정치라는 게 결국은 질서인데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람이 정치에까지 참여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면접자 19)

등록이랑 똑같은 권리보장... 이걸 뭐 국가가 존립을 하는데 거기에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면접자 19)

한 면접자는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국적취득 관계없이 주는 것. 이걸 이제 미등록체류자인데 미등록체류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 기여한 바가 얼마나.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 미등록체류자는 국내에서 뭐 세금을 낸다든가 그런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가는 게 맞을까 싶고요. (면접자 19)

그러한 법 위반자들이 공무담임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본다.

비자가 없는 사람은 구별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아이들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아이들은 그거 적용은 가능 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미 다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와서 뭐하다가 미등록체류자 돼서 한국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공무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 위반한 거예요. 법위반하는거 원래 조건으로 공무원은 법위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접자 15)

(2) 긍정적 견해

반면,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등록체류 외국인이야말로 노동숙련도, 한국생활 적응 등의 면에서 우리 사회에 정주하여 통합될 수 있는 이주민이라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는 비록 현행법을 어기긴 했으나,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주하여 통합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등은 단기 체류 후 이탈한 경우도 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숙련 노동, 한국생활 적응 등에서 오히려 여타의 이주민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 정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보다 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한국이 노동 이민을 거의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한국 사회가 이들의 불법을 어떻게 처벌하고 추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면접자 24)

한 전문가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오히려 미등록체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면 미등록이 아닌 등록 외국인을 고용할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외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강조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등록 외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세상에 어떻게 체류자격도 없고 취업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지만... 오히려 권리를 줌으로써 미등록 상태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등록외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미등록한테 줘야 된다면 당연히 등록외국인만을 고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연감소를 한다든지... 뭔가 오히려 제대로 통제도 안 하면서, 권리도 보장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악용만 하고 착취만 하는...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려면, 오히려 최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 때에 착취 구조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미등록의 문제가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당연히 등록외국인과 거의 비슷한, 혹은 똑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게 동인이 된다는 거죠. 등록외국인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면 굳이 벌금을 받을 위험이 있고, 단속돼 가지고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미등록을 고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권리를 더 많이 줄 때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면접자 13)

전문가들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똑같은 권리에서 차이가 있는 건 출입국이겠죠. 단속이 되고, 강제퇴거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체류자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럴 권한이 있는 거고... 다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인데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니까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잡아먹는 식으로 지금은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역전될 필요가 있다... (면접자 13)

인권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자 24)

(3) 구체적 인정 내용

일부 전문가들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들은 재난시 보상, 지역사회 내 참여 및 미등록체류 아동의 교육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것들을 긍정한다.

미등록이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권리 침해를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시의 보상, 지역사회 내의 참여 정도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면접자 25)

미등록체류자의 자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교장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아이를 학교에 받아주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 근거로 비자를 신청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근거가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면접자 9)

아동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정신이므로, 미등록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수당 지급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식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개정은 시기상조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면접자 21)

다른 한 면접자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 등록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더라도, 긴급의료비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등록 이주민에게 등록 이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긴급 의료비의 지원의 경우처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의 경우에는 미등록체류자도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면접자 21)

다수 면접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이 체류‘자격’이 체류‘기간’에 따른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당 및 단체 등의 가입 및 활동, 선거권, 피선거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내의 참여, 사회보장적 권리 등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미등록체류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적용되는 권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당 및 단체가입, 노조가입, 선거 출마... 선거, 투표, 출마까지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사회보장 다 미등록체류 이주민에게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체류의 기간이 문제지, 기간과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지, 체류 자격에 따른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면접자 10)

미등록이주민의 경우에도 자조모임을 보장하고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은 행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자 20)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거권을 미등록체류자에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는... 그대로 빠지는 순간 트랙에 발목 잡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미등록 노동자가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정치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법상으로는. 그니까 그거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면접자 12)

인권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권리는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중략) 정치적 권리 등은 합법 이주민에 한정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조치는 한국에서 오래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이주민에 대하여 필요할 것이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4)

한 면접자는 국가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비자를 얻거나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이 비자가 없이 왔지만, 그들도 안전하게 살고 싶고 합법화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알려준다면 미등록체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을 어떻게 처벌하고 추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이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사면조치를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자 24)

만약 한 친구가 공무원의 자격이 돼요. 실력이 된다 하면, 자기가 그 비자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옛날에 화재 사고에 그 한국인들은 미등록체류자인데 몽골인이 가서 구해주니까 이 친구를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합법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은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하면 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 보다 그런 단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자 4)

나는 비자가 없는 거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미등록체류자가 됐어. 근데 합법을 누구나가 원해. 안전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살길을 찾을, 합법화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이런 요소도 노력하면 다시 합법으로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살 길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4)

나. 사회통합 방안

1)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만큼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권력의 부여는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주류가 가진 권력을 나누어주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권력을 할애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의 할애는 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소통, 뒤섞임이 그 사회의 통합력을 높인다. 그것이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면접자 24)

면접자의 대부분이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주민 차별 완화, 문화의 다양성,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다수 면접자들은 이주민의 차별이 완화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저는 급격한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점진적 정치활동 허용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문화에 대한 존중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주민의 범죄 증가 등 부정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면접자 21)

권리 같은 거, 차별 같은 거 없어지고 조금... 다문화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조금 나아지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면접자 1)

제가 첫 번째로 사람 인식하는 거 좋아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아무리 제 생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네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팔에서보다 한국에 더 많이 살거든요. 제가 한국사람처럼 느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저한테 인식하는 거 외국사람이에요. 그답에 제가 아무리 민증이 있어도 그거 그냥 서류상만 한국사람이지 그 사람들 인식 있잖아요, 외국사람이에요. 인식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면접자 6)

그러면 이주민들 많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저도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보는 표정 있잖아요. 그런 거 상태는 조금 달라질까? 이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투자도 해주고 다 이주민들이 와서 한다면, 나라에서 조금 이 이친구들, 이주민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좋은 일 하고 있다, 라고 그런 거는 바뀔 수 없을까? 인정받으면, 있잖아 나라 조금 자유롭게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면접자 6)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이해의 증진, 갈등예방 및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 또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일단은 더 다양해지고, 삶의 질이 더 풍부해지고... 솔직히 시간이 더 지나가면요, 거의 다 혼혈이 살아남아 있어서 한국사람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아이를 낳는데 30년 후에 거의 다 혼혈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섞여 있어서 그게 다른 나라하고 왕래가 되는, 그니까 강제적으로도 아주 문화가 섞이고 경제, 음식 그런 거를 더 풍부해 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면접자 15)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면,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접점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의 증진, 갈등예방 및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이주민을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 대신, 이주민도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역량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면접자 22)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기통치'로부터 배제된 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데, 이주민 등 배제된 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한 논쟁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이주민 권리 보장은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핵심은 '자기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구성된 권력과 제도에 스스로가 구속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한 민주주의는 '자기통치'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가는 긴 과정이기도 합니다. 즉 배제된 자의 축소과정이 민주주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에 '자기통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진 가능성을 상징하며, 실제 그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통치에서 누락되는 집단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긴요한 요소이고... 이주민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역으로 이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한 논쟁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자 24)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에 정착하고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각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들어요. 이주민 그러면 어디가도 제재 있잖아요. 이쪽도 안 된다 그리고 저쪽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거 같은 느낌 들어요. 만약에 여기 정착하고 목표 갖고 있으면. (면접자 6)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얀마 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미얀마랑 경제 교류하고 싶은 한국인들이 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하나 때문에 미얀마도 발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한국도 미얀마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얻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하면서 나는 좋은 직원을 소개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에게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난 생각해요. (면접자 4)

이주민에게 권리를 주면 한국인들의 자리를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회를 얻는 것과 실제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주민이 역량이 되고 그러면, 약간 그 기회는 열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경쟁하기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학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그렇게 열어줘도 이 사람, 정말 죽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열어놓는다

고 그게 뭐 위험한 이주민이라든지, 뭐 이주민들이 다 들어와서 큰 일 다 맡는 거 아니냐, 이 렇게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면접자 2)

이주민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주민의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 정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반이예요. 난민의 범죄율은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국인 중 상당수의 반감이라는 것은 범죄가 내국인보다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인은 죽일 놈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범죄의 증가라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고... 내국인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가짜 뉴스에 불과한데, 결국 부딪히는 지점은 '외국인이 감히 국법을 어기다니.' 그래서 부딪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참정권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낼거나, 하는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면접자 13)

한 전문가는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경우, 한편으로는 반발이 심해지는 반면 다른 편으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강화될 것인데, 양자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이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면 일단은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반발이 심할 거고요. 참정권이나, 어떻게 재네들이 우리와 같은 구성원이나, 반발이 뭐 지금도 심하지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참여를 하면서 이주민들 입장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 어떤 책임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당연히 기여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양자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건가는 그야말로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고안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정부나 권력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달랑 참정권 주겠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방향과는 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되고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명확한 메시지를 수반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접자 13)

다른 전문가도 이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화될 수 있

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문제를 공식적인 창구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또는 정치화되겠죠. 분명히 지자체에서부터 역할을 하고, 또 막 해성같이 어떤 인기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당연히 정치참여 해야죠. 그래야지 선주민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 저도 활동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몰랐던 영역들은 항상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좀 열어주면, 그 분들이 문제를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풀어나갈텐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책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자 12)

한 면접자는 어차피 이주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이주민이 한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겪어나갈 일들을 이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만 산다 해도 좋은 세상,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같이 사는, 같이 산다 해서 완벽하거나 불안정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감하게 기대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 한국사회가 지금 이주민들 없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괜찮아,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주민은 거기의 일부에 한 부분의 역할을 하겠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겪고 있는 큰 문제가 이주민과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 하면 이제부터 통제와 차단과 감시와 이런 것들은 하나둘씩 풀어 주는 것이 더 한국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 합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주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깐요. (면접자 4)

2) 기존의 이주민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중 개선이 필요한 점

가) 명확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이주민 관련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이주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법부터 잘못됐잖아요. 외국인처우기본법이 귀화하고 3년 동안 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대상자 상태잖아요. 저는 이게 보면 부처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일단은, 왜냐면, 예산은 '부'당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처우기본법은 법무부 법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가부 법이다보니까... 그러면 귀화를 하고 3년 동안 외국인처우기본법에 들어온 사람이면 수당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사실상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냐고, 3년

동안. 물론 사실상 다 좋은 이유로 다 있는 건데, 결국은 외국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 자체가 '외국인처우' 기본법이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인이 된 사람이 외국인처우기본법상에 들어가 있는 게 웃기는 거죠. 게다가... 그런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개념정리를 못했어요. 개념정리라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서도 이민자의 정의가 없어요. 이민자하고 이민부터 정의 내려야죠. (면접자 14)

국가법령과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접자 24)

나)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 정책 비판

체류자격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정책을 체류자격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미래의 이민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래의 인구 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민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보는 거지... 체류자격을 가지고, 비자 이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모든 걸 체류자격으로 해결하려는 이 법무부의 방식은... 되게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거죠. 정책에 따라서 체류자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체류자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끼워맞추고 있으니까... (면접자 12)

그리고 이주노동자도 국내에의 합법체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거주나 영주자격의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도 국내에 합법체류가 장기간 계속되면(예를 들어, 7년), 거주나 영주자격의 취득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과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주거 복지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기능 외국인을 전문기능 외국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차별해요. 단순기능과 전문기능의 차이는 생각보다 근소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의 고학력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경로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접자 21)

다) 이주민 분리교육 비판

몇몇 면접자들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이 선주민과 분리되어 교육받고 생활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저는요. 이주민만은 아닌데. 좀 많은 이런 대상자 특화된 공간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니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에 의해 생길 수는 있는데... 상담소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뭔가 비슷한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대상자 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거 잘 모르겠어서. 저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다양하게. 어쨌든 공간. 사람을 만나는 곳.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종 공간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그 익숙함이 중요한 거 같아서 저는 이런 분리된 공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면접자 8)

구청 등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외국인을 배제하거나 외국인을 별도의 존재로 인식하여,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거는 어떻게 서로 만나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어떤 거 뭐든지 외국인까지 생각 못 해요. 그들이 원래 했던 거라 외국인 존재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조를 못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뭐냐면 봉사자, 참여자 그런 거를 만약에 물을 때도 우리 뭔가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엮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우리는 배제되는 존재라서... 항상 외국인이면 별도로 어디서 하나하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해요. 우리 멀게 시켜요. 왜냐면 거기서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이야기 하면 이해 못 할까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말 못하니까 서로 다른 한국인하고 어울리는 거 문제가 생길까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어울려요? 어떻게 그 사회가 통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배제되는 거죠. 존재가. 그러니까 그 이주민 당사자가 지자체든 정부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면접자 15)

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간을 같이 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면, 서로 인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어느 정도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공간을 같이 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서로 인식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면접자 5)

내·외국인 간의 접점, 접촉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회 전반에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자 17)

이주민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상으로 또는 중복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주민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16)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권리만큼이나 의무 및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책임성 있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합니다. (면접자 23)

3)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가)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

많은 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활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면접자 21)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법제도상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접자 22)

출입국 관리법에 정치활동금지조항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17조인가? '정치활동은 금지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그거 진짜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조항인 것 같은데. (면접자 10)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정치 금지... 그건 좀 되게 악법인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에 대해서 왜 이주단체들이 여태까지, 물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것을 폐지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 이주에 관한,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이주가 단기이주, 일시이주만을 이주라고 생각해 온 그것들이 보여준 결과 아닌가. 왜냐면 정치활동이라는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냥 테러방지법, 써먹기 좋은 그런

것 이상이 아닌 거잖아요. ... 그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출입국관리법은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베낀 거라서... 뭐 별 고민 없이 갖다 붙인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출입국관리법 완전 누더기법이었던잖아요, 난민법 빠져나가기 전에, 전부 42조의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데... 하이트 좀 따져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자 12)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불허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불허할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제한된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4)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법에 따른 정치활동, 뭐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한다면 명확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나, 진짜 뭐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자 12)

나)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 방안 마련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3년 혹은 최장 4년 10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충분히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조치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주민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자격 연장 혹은 변경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는 3년 혹은 최장 4년 10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시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갖는데요. 이는 주류의 입장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 즉 주민의 구성원으로서 유지된 시간에 대한 고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기체류 이후에 귀국해야 하는 시스템이 온존한다면 선주민을 설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한국 거주가 오래되었고 주민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조치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 연장권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가 가족재결합권인데요... 사실 가족결합권은 인권의 영역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인권적 태도라고 봅니다. (면접자 24)

저는 일시적 체류자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일시적 체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없든지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항상 두고 있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일시 노동제도를 없앨 순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살지 말지를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돌아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겠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어떤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들어선 사람들은 완전한 정치적 권리가 될 거고, 그 이전 사람들도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단기 체류, 뭐 그런 프레임 안에서 계속 논의가 되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정당가입의 자유 보장

일부 전문가는 현행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이주민의 경우 정당 가입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당법의 경우, 추측컨대 입법자는 “국민이 아닌 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외국인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만약 그러한 추측이 맞다면,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법으로 ‘국내 거주 1년 이상’ 등의 특정 조건의 이주민인 경우 정당 가입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면접자 24)

그러나 정당설립의 자유에 관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으면 원칙상 정당을 구성할 권리도 주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특정한 조건을 구비한 이주민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정당 구성권은 일부 제한하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자 24)

다만 현행 「정당법」상 현실적으로 이주민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구성하기는 어려우

나, '지역정당'을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 정당법은 시도당이 있어야 정당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주민이 독자 정당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주민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은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정당 허용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류의 권리가 서로 얽혀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자 24)

라) 이주민 할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위원회에 이주민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하여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스리랑카 친구가 그 활동하고 있어요. 자기 지자체에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거는 있고... 제가 지금 외국인 대표자회의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처럼, 구청에서도 외국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생겼으면 하고... 만약에 안 만든다 해도 주민위원회에 그거를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생각도 회의할 때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마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서면화 하거나 뭐 어디 공식적으로 구청장한테 뭐 그런 제의하든지, 저희는 시장님한테는 얘기 했구요. 시장님은 그 공관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런 거를 진짜 저희가 어떤 이야기 하나면, 명예구청장 그리고 외국인 자문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외국인에 관한 정책을 펼칠 때 외국인 자문이 필요할 때 외국인 한 명이라도 고문으로 채용하던지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제일 열악하게 그 주민 자치단체에서, 주민 동사무소에서 외국인에 관한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속한다는, 우리가 구민이라는 걸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는. 뭔가 없는 존재처럼 느끼거든요. (면접자 15)

따라서 정당 등 단체에의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에 이주민 대표 또는 이주민 할당을 두는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관과의 협조 혹은 요구를 통해 이주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과 관련된 공적 사안에 이주민을 '직능대표'로서 포함하거나 이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치(governance)의 영역을 넓히는 것과 관련됩니다. (면접자 24)

정당이나 이런데도 쿼터를 주는 정도의 적극적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의 비례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자스민 의원도 있었고 경기도에 이라 의원 있었던 거처럼, 저는

할당량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가 아무리 교육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면접자 11)

사회통합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투표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투표권에 앞서서 그 생활에, 그 자기 거주지역이 있잖아요. 거주지에서 위원회 뭐 이런 거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먼저 뭔가 법에 할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면접자 13)

만약에 노동자가 많이 있거나 그런 지역은 특히 조레나 이런 수준에서라도 그 구성원 중에 얼마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에 노동자 얼마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정도 수준의 조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낮은 수준의 지방자치 지역에서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종이나 국적이나 차별 없이 다양한 구성원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저는 최대한 사회적 약자는 그런 1/N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면접자 11)

단순히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빈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 말초단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인구비율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부녀회나, 청년회나, 마을공동체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의견 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적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스타트라고 생각됩니다. (면접자 23)

그러한 권리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주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준다면, 이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 거 훨씬 더 넓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보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좀 많이 알려주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넓혀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면접자 9)

실제로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을 지켜본 결과, 처음 1~2년의 시간을 교육하는 데 쓴다 할지라도 이주민들의 상황, 수요 등을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주민의 위원회 참여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업무를 하면서 권리로 구체화되지 않은 위원회 활동 '외국인 대표자회의'가 운영되는 것을 곁에서 보았는데... 이주민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나 조례개정까지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에 대해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여 거의 1~2년간은 설명하고 교육하는 바가 더 많았고, 3년차쯤 되어서야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상황, 수요 등을 알림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직접적인 입법-개정 청구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회 참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접자 18)

마) 통일적 제도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어떤 전문가는 이주민 정책의 통일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컨트롤타워 만들어라, 그러는 이유가 이민청이 '청'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커요, 아직. '청'이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타워 개념으로 기관 하나 만들자. 사실 저는 그냥 어떤 한 기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 기관에서... 우리는 정책이 진보적인데 집행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면접자 14)

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보 제공

(1) 정치적 권리 인식 교육

이주민은 자신의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에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들 설문조사를 하다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정보가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있는 서비스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이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고, 이주민들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자 10)

이주민들 교육시켜야 그 친구 조금 머릿속에 우리는 한국에 같이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친구들은 바로 사회통합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회통합해서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든지 교육, 이주민 대상 인권, 여러 가지 그런 거 교육하면 좋겠어요. (면접자 6)

특히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의 경우, 우리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주민들이 많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정 요건 하에 이주민이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도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행사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및 홍보작업이 시급하다.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 유럽에서 외국인 참정권 시행 사례를 보건데, 오히려 걱정할 것은 참정권 부여의 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면접자 24)

현 출입국 법적 근거에 따라 장기체류와 전문직 종사할 수 있는 비자의 경우 개방직 공무원으로 허용이 되는지, 타 지역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면접자 23)

현재 공직선거법상 영주권 취득 3년 이상인 경우 지방단체장 및 의회의원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리에 대해 모르는 영주권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사회주의권 출신이 많은 이주민들의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 투표권에 대해 생소하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해도가 낮고 필요성도 낮은 것이 실정입니다. 투표의 중요성과 필요성, 투표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및 홍보 작업이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3)

(2) 주민으로서의 의무 교육

이주민의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면접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래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거나, 이주민들도 주민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그러한 의무사항을 각국의 언어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실제로 정책이 보면 잘살아 내고 있는 사람은 정책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며 이주민 중에서도 준법정신이 뛰어나고 대한민국 국가의 법질서를 잘 준수하는 사람은 통합정책이 별 필요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 범법자가 있다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하게 범칙금을 내는 교통관련 법규나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인해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은 출국 또는 강제 퇴거를 하고, 금고이상의 형은 반드시 강력처벌이구요... 저는 비록 강제퇴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통합차원의 교육이 조금 그 액수에 따라서, 범죄 유형에 따라서, 뭔가 통합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 범칙금을 내고 거기에 벌점이 이렇게 부가가 되면 그 상황에 교통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벌점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외국인들도 역시,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는데 500이하가 된다고 해서 엄중 경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래에 더 큰 범죄자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정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교육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담에 장래에도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장치가 지금 없어요. (면접자 19)

이주민들이 외국인등록증 등록시, 체류연장시 내고 있는 수수료 내에 주민세를 포함시키고,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해당 나라 언어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자 23)

(3) 교육의 방법

이러한 이주민 교육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사회통합 부분은 내국인의 다문화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시되어야 하겠죠. 현재 프로그램들이 지역별 특색이나 이주민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주민은 이제 우리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생프로그램으로 내국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 다문화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자 20)

한 전문가는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이주민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체류기간, 체류목적,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 특히 취약계층 중도입국자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성장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의 최접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주민 사업 시 대상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한국거주 초기인지 중장기인지, 체류목적은 무엇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별로 유/무료 등 비용을 지불하거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책임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면접자 17)

이주민은 다양한 경로를 가진 외국인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체류자격을 쪼개서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이주민이라는 대분류로 뭔가 정책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이고, 여성가족부는 내국인과 별 차이 없는, 오히려 미래 인적자원으로 보며, 법무부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행법과 제도는 이주민을 세분화하고 있고, 그에 맞춰 섬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면접자 18)

사) 사회활동 참여 유도

이주민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활동을 좀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 외국인 교육 몇 달 안에 어디서 어떤 걸 해야 한다든가, 단계별로 뭔가 하도록 한다든가... 물론 저희도 점수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서 비자 연장할 때 조건을 두는 거죠. 수료증이나 이런 걸 요구하도록... 물론 사통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하고, 결혼이주여성 같은 경우 물론 국적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작은 프로젝트라든가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많으면 사회통합에도 좋은 영향이 되고, 한국어도 문화적인 것도 적응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면접자 9)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주민들의 시민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조직되고 성숙한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파트너로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면접자 23)

아) 선주민 의식 개선 및 교육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수 면접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한국인도 외국인에 대해 알아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는 사회라면, 표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을 주장하더라도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민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선주민들 역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쪽의 이해와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선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5)

먼저 주류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적대감을 과감 없이 표출하는 국가에서 이주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요원하고 감상적 논의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만연하고 '반외노자, 반다문화' 정서가 부상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라는 식의 당위를 설파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하고, 그에 따라 정책이 입안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자 24)

사회적응 지원이나 지역사회 참여, 한국인의 인식 개선, 이런 건 굳이 오래 사는 분들이 아니어도 이런 권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서 외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서로 이해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고, 한국인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조화롭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왔다, 외국문화도 이렇다 저렇다 좀 생각해보고 그럴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5)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체들 간 쌍방향적 소통과 협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통합과 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향유 주체는 당연하게도 주류 시민과 이주민 모두가 포함됩니다. 사회통합은 어느 일방 혹은 통합 대상이 상대방에 흡수 또는 동화되는 식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이고, 설혹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통합은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에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면접자 24)

한 전문가는 '이주민 사회통합' 하면 늘 이주민에 '대한' 것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주민 사회통합으로 이야기 하면 늘... 왜 뭐... 예전에, 초반에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다문화 교육이며 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의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건데, 저는 그건 그중 하나로 생각이 드는 거라서... 좀 더 차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8)

지금도 학교 등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나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다문화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소위 말하는 원주민 대상으로 차별금지나 사회 다양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게 되게 초등이나 이런 되게 유아교육 이런 데부터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정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고, 그게 꼭 인종이나 체류자격 이런거 알지도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뭐 장애인이나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는 걸 좀, 학교 교육에서 좀 많이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어릴 때부터 폭넓게 다양한 활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꼭 할당을 해서라도...(면접자 11)

지금 학교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머릿속에 인식하고 살면,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별 없을 것 같아요. 학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7)

사회통합을 위해선 이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주민 역시 이주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권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주민도 한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도 선주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사회통합을 위해선 이주민들도 필요하지만 선주민이 먼저, 한국인이 먼저 이주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동의 보육이랑 교육이, 그리고 이주민들 성인 또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면접자 10)

대중 대상 교육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난민 신청자들이 작은 1인 시위를 하거나 이주노동자 들이 시위 하는 것에 대해서 답글 달리는 것 보면, 재네들은 와서 조용히 있다가 가지 와서 시위까지 하네? 니네가 뭔데 시위를 하나?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치적 권리나 집회결사의 자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권리라서 누구나 해야 하는 건데,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고... 그래서 정부가 대중을 대상으로 그런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10)

한국 지역 주민과의 공감을 위해서는 단순히 투표와 출마 권리를 표명하기보다, 이들이 주민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세 납부, 이주민도 한국인과 같이 모든 소득세, 세금을 납 후하고 있다는 것 등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23)

어떤 전문가는 선주민 교육에서 나아가 법적, 제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제도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부터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일부 세력의 거센 저항에 번번이 좌절되었는데요… 인식 개선이라는 자발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자 24)

하지만 그에 앞서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 사회적 공론화과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곧바로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주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의 권리, 특히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타자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러한 성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그 성향을 무마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얘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표의 설정은 당연히 주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담고 있어야 하고요. 목표의 설정 이후에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의 재설정, 구체적 권리 내용의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공론화 및 합의과정에는 주류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인 이주민이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단위에서 곧바로 이슈를 제기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면접자 24)

이 전문가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치적 권리 인정에 ‘상호성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가 해당 권리들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호성, reciprocity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지역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중국 거주 한국 국적자의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면접자 24)

3. 요약 및 시사점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견

1) 조사결과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정치적 권리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을 하러 와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다는 면접자도 있었다. 그만큼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부족과 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유무에 앞서, 정치적 권리에 관심이 없는 이주민들도 많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지방선거에 참여하거나 투표하는 등의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거권을 행사한 경험은 있지만, 너무 많고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유인물을 읽어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투표를 했다고 한다.

우리의 선거가 내국인들도 너무 복잡해서 힘든 상태인데 이들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정보나 후보자들의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투표하고자 했다는 점은 분명하나 후보자가 이주민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과 정책을 알고 이들의 지원하고자 하는가가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민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이주민의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에 대한 정책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연계해서 정확한 답변은 얻기 힘들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견 참여, 정당가입 등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1) 정당·노동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①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현재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가능하나 이주민에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며 이러한 부분은 현재 이주민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주민의 정당 가입 등 활동을 긍정하는 응답도 많았다. 그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를 키우는 등 한국에서 오래 생활할 계획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되는 이주민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민들 스스로도 그리고 정당들도 이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논의할 장도 마련하고 함께 자리해서 이주민들의 요구를 정책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과연 이주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과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주민 당사자는 이주민에게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들의 문제를 표현할 창구로서 이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한국 문화, 성질을 모르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해 정당이 보다 열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이주민들 스스로도 권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전문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의 권리를 이주민을 위한 중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문제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시장에

서의 인권 내지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고용주에 대하여 상대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주요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조 설립 및 가입·활동 문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안할 때 정당 활동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현재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주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 법과 제도는 인정했으나 실제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등의 문제는 또 다른 현실이라는 것이다.

노조가입 및 활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활동이므로 이는 인정되어야 하나 정치적 활동을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견해도 있었다.

실제로 이주민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일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 입국 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단체활동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현실과 법제도상의 보장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법제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이주민들도 자신들의 권리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요구하고 활동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 즉 다문화감수성, 인권감수성 등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본다.

③ 이주민의 단체설립·가입 및 활동에 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주민의 정당 활동은 부정하더라도, 기타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주민들은 자신의 속한 공동체 내의 협동조합, 학부모회, 상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응답한 이주민들은 대체로 그 단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특히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경우, 갈등이 생기거나 폭력, 협박,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주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

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양국 간 협정을 통해서나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한 전문가는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체류자격이나 체류상황에 따라 정치활동의 범주를 공식화하고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④ 정당, 노동조합, 단체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의 자유 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면접자는 국적자, 영주자격 체류자 및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는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주민의 목소리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 표출되고, 그들이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이들의 활동이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내국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단체활동 등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

① 선거권은 선거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 각급 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국가마다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 등은 각각 다르다.

면접자들 중 몇몇은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의 권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로, 결혼이주민 또는 중국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한국 거주 이주민의 특성상, 오랜 기간 정주의사를 갖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어떤 면접자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영주자격을 받고 3년 이

상 거주한 사람이면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을 보다 확대하여야 이주민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면접자 일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언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 이주민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위험, 이주민이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위험 등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단기체류자가 아닌 한국 사정과 정치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다르다. 국회의원 임기인 4년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 5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견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 등, 선거권을 부여할 이주민의 범주를 정하는 구체적인 체류기간 기준에 있어 면접자들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였다.

②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거권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면접자들이 많았다.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할 전례가 없다는 점, 이주민의 이러한 권리행사를 제어할 제도가 없다는 점,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므로 더 이상의 권리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점, 한국이 아닌 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주민의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피선거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국민을 대표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애초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 면접자는 이주민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사례를 통하여 이주민 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뉴질랜드와 같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군·구 단위에서의 참정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국가 전체단위로서의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내의 참여: 관련 위원회 참여, 조례 입법·개정청구권 등

지방자치단체 내의 활동에 관하여는 상당수의 면접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주민이 각종 자문활동과 입법활동을 하는 것, 의견 개진, 관련 위원회 참여하여 이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이주민도 주민으로서 일정 정도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그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주민 당사자 역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지역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면접자는 비록 먹고 사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한 전문가는 현재는 단순히 외국인 관련 위원회, 다문화 관련 위원회 등에만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회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이주민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주민의 지역사회 내 참여를 긍정하면서도, ‘한국 성원으로서’의 정치참여, 입법청구는 허용 가능하나, ‘자국민’의 이익,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접자도 있었다.

(4) 공무담임권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았다.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적을 것이라는 점,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현재 외국인이 공무원이 되는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반면, 공무수행 능력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면접자들도 있었다. ‘이주민이라서’가 아니라, 업무 수행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관련 업무는 누구보다도 이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잘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업무에는 이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외국인 관련 업무에 외국인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관련 개방직 공무원 채용 시 장기체류자인 F-4(거주), F-5(영주) 및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필요에 의해 점점 개방이 되고는 있지만, 국가안보 등 국가의 비밀정보를 담은 업무에는 이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26조의3 제1항), “국가기관의 장은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및 외교, 3.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각호). 「공무원시험령」 제4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를 8가지로 열거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즉 한국인이 아니면 안 될 업무가 아닌 한, 이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에 상관없이 다문화 또는 이주민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주민이 공무원이 될 경우 소통도 원활하고 훨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같은 이주민에게 도

60) 공무원시험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움을 받으며 더 믿음이 가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다만 한 전문가는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더라도 이주민들이 출마를 고려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것이 이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의 권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1) 노동권: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 사업장이 지정되고, 비자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줄 수는 없다고 본다. 내국인의 일자리, 고용과 충돌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는 별론으로 하고(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부정하더라도),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주민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고용보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노동시장 유연성과 이주민의 권익 보호 등을 근거로 한다.

사용자와 이주민 간의 권력 균형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 이동 제한은 오히려 사용자 등의 부당행위를 조장하여 이주민에게 골레가 되고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사업장 이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하여, 국내 취업기간의 장단에 따라 해당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단순노무비자라 할지라도 사업장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주노동자도 영주(F-5) 또는 거주(F-2)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②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해진 업무만 해야 하고 다른 일은 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체류 관리의 필요성, 예측가능성, 규정된 비

자타입 등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2)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돈을 내고 권리를 받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주민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세금 또는 보험금을 내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입 자격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제방안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관광 목적으로 여행 온 외국인에게까지 해당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권리를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 전문가는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외국인에게 균등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한국의 법대로 재산소유에 따라 의료보험을 책정할 것, 그리고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의료보험 가입을 가능케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아동의 보육권, 교육권 및 아동수당

① 한 면접자는 보육권,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아동수당의 경우 시가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면접자들이, 세부적 견해에는 차이가 있을 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동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사회권 규약의 경우 1990년 4월에 가입한 바 있다(1990.7.10. 발효).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동권리협약 및 사회권 규약을 근거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하고 똑같이 줄 수

는 없다는 견해, 한국에서의 아동수당은 일관적인 진행이 어렵고 변화가 많은 상태에서 동등하게 지급할 경우 국민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이 받는 수당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한 전문가의 경우 미등록체류자의 자녀는 부모가 대한민국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② 일부 면접자는 일괄적으로 보육권 및 교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얻으려는 이주민의 행태를 근거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인권선언 및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아동들의 보육권 및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고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경우 오히려 보육권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보육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세금을 내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합법적 체류를 요하는 등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 면접자는 이주민 2세라고 해서 다문화라는 이름에 가두어 구별하는 시각으로 보지 말 것을 강조한다. 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며, 정체성 혼란으로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 입학이 교장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장이 거부할 경우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의 보육제도와 교육제도에 편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권과 교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

(1) 권리 인정여부

몇몇 전문가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면접자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미등록체류자들에

게까지 정치적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한다. 한 면접자는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또한 그러한 법 위반자들이 공무담임권을 가질 수도 없다고 본다.

반면,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등록 외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등록체류 외국인이야말로 노동숙련도, 한국생활 적응 등의 면에서 우리 사회에 정주하여 통합될 수 있는 이주민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권리를 줌으로써 오히려 미등록체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면 미등록이 아닌 등록 외국인을 고용할 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외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권리 인정범위

일부 전문가들은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들은 재난시 보상, 지역사회 내 참여 및 미등록체류 아동의 교육권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것들을 긍정한다. 다른 한 면접자는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 등록 외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더라도, 긴급의료비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 면접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이 체류‘자격’이 체류‘기간’에 따른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당 및 단체 등의 가입 및 활동, 선거권, 피선거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내의 참여, 사회보장적 권리 등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미등록체류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면접자는 국가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의 경우에 비자를 얻거나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등록체류 외국인들이 비자가 없이 왔지만, 그들도 안전하게 살고 싶고 합법화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알려준다면 미등록체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것이다.

2) 소결

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많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정치적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초부터 정치적 권리에 관심이 없는 이주민들도 많았는데,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주민의 권리, 특히 정치적 권리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권리이다. 이주민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나)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 필요성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이주민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응답도 있었으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오래 생활할 계획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된 이주민이라면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주요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에의 설립·가입 및 활동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주민의 단체설립·가입 및 활동할 권리 역시 실제로 이주민들은 자신의 속한 공동체 내의 협동조합, 학부모회, 상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상당수 이주민들이 단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장될 필요가 있다.

선거권의 경우, 현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래 거주할 의사가 있고 한국 사회 내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주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례가 없다는 점, 한국이 아닌 본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선거권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면접자들이 많았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선 가능성을 떠나 피선거권 부여를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 내의 활동에 관하여는 이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이주민도 주민으로서 일정 정도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이 그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주민들이 단순히 외국인 관련 위원회, 다문화 관련 위원회 등에만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회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이주민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많았지만, 이주민에게 업무수행능력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상 이주민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이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이주민들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더라도 이주민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었다. 사용자와 이주민 간의 권력 균형이 사용자에게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장 이동 제한이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사업장 이동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돈을 내고 권리를 받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이주민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세금 또는 보험금을 내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가입 자격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의 경우,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보육

권, 교육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예산이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

법을 준수하지 않는 미등록체류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재난시 보상, 지역사회 내 참여, 긴급의료비의 경우 미등록체류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미등록체류 외국인이 비자를 얻거나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자가 없이 왔지만, 그들도 안전하게 살고 싶고 합법화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알려준다면 미등록체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이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1) 조사결과

가)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면, 그만큼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권력의 부여는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통합력을 높일 수 있다. 면접자의 대부분이 이주민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주민 차별 완화, 문화의 다양성,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다수 면접자들은 이주민의 차별이 완화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이해의 증진, 갈등예방 및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 또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기통치’로부터 배제된 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인데, 이주민 등 배제된 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민의 권리 확대를 위한 논쟁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았다.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에 정착하고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각 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민에게 권리를 주면 한국인들의 자리를 다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회를 얻는 것과 실제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주민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주민의 범죄율이 내국민 범죄율의 절반 정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한 전문가는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이 될 경우, 한편으로는 반발이 심해지는 반면 다른 편으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강화될 것인데, 양자 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이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전문가도 이주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문제를 공식적인 창구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 면접자는 어차피 이주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이주민이 한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겪어나갈 일들을 이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 기존의 이주민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중 개선이 필요한 점

① 전문가들은 이주민 관련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이주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서도 이주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주민’과 ‘이주’부터 정의 내리고, 국가법령과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체류자격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정책을 체류자격에 끼워 맞추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미래의 이민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도 국내에의 합법체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거주나 영주자격의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몇몇 면접자들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이 선주민과 분리되어 교육받고 생활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구청 등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외국인을 배제하거나 외국인을 별도의 존재로 인식하여, 다른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간을 같이 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면, 서로 인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주민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상으로 또는 중복 제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권리만큼이나 의무 및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① 많은 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을 불허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3년 혹은 최장 4년 10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되고 충분히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조치도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③ 일부 전문가는 현행 「정당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이주민의 경우 정당가입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당설립의 자유에 관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행 「정당법」상 현실적으로 이주민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구성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정당’을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④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위원회에 이주민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하여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 등 단체에의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에 이주민 대표 또는 이주민 할당을 두는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한 권리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이주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알려준다면, 이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을 지켜본 결과, 처음 1~2년의 시간을 교육하는 데 쓴다 할지라도 이주민들의 상황, 수요 등을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주민의 위원회 참여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⑤ 어떤 전문가는 이주민 정책의 통일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⑥ 이주민은 자신의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에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의 경우, 우리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된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주민들이 많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정 요건 하에 이주민이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도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행사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및 홍보작업이 시급하다.

이주민의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면접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래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거나, 이주민들도 주민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하고 그러한 의무사항을 각국의 언어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주민 교육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중도입국 자

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이주민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체류기간, 체류목적,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⑦ 이주민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⑧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수 면접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한국인도 외국인에 대해 알아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표출되는 사회라면, 표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을 주장하더라도 사회통합의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이주민 사회통합’ 하면 늘 이주민에 ‘대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도 학교 등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나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이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주민 역시 이주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권리를 표명하기 이전에, 이주민도 한국인과 같이 소득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어떤 전문가는 선주민 교육에서 나아가 법적, 제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 사회적 공론화과정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곧바로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치적 권리 인정에 ‘상호성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우리가 해당 권리들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2) 소결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이주민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이주민 차별 완화, 문화의 다양

성, 경제 활성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1) 이주민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 필요

우리나라의 어느 법에서도 이주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주민’과 ‘이주’부터 정의 내리고, 국가법령과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

많은 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동 조항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활동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법」에 따른 정치활동 등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 방안 마련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3년 혹은 최장 4년 10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4) 지역사회 내 각종 위원회에 이주민 할당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내의 주민위원회에 이주민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리하여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 등 단체에의 이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에 이주민 대표 또는 이주민 할당을 두는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보 제공 필요성

이주민은 자신의 권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에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의 경우, 우리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인 이주민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주민들이 많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정 요건 하에 이주민이 임시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도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행사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및 홍보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이주민 교육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이주민 대상을 세분화하여 각 체류기간, 체류목적,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선주민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수 면접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 등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나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이주민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선주민 역시 이주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교육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청 등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외국인을 배제하거나 외국인을 별도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간을 같이 하는 교육 및 활동을 확대하여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VI

정책제언

1. 법제개선방안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1. 법제개선방안

가. 공직선거법

1) 이주민의 선거권 부여 요건 완화

가) 현황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는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일명부작성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5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정주한 사람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3년을 더 거주하게 한 것은 너무 요건이 어렵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이를 영주자격 체류자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묶어내려는 거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헌법재판소 1991.03.11. 91헌마21).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정치요체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이 당해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수렴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의 자격을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개선안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당사자들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자신이 보유한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5.7%,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3.2%,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5%,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2.0%,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요구도에서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개정청구권' 각 55.0%,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53.3%,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52.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51.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권리 필요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따라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이 주민으로서의 권리확대가 요구된다.

〈표 VI-1〉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현행법	개정안
<p>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p> <p>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p>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p> <p>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p> <p>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2) 피선거권 인정여부 검토 필요

가) 현황

「공직선거법」상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립된 태도는 없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주권행사의 한 양식임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⁶¹⁾

이주민도 주민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자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게 요구

61) 정태호(2008),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논총」 19집, 헌법재판소.

된다는 점이 피선거권 제한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제는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인정하면 피선거권도 일정한 요건을 두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피선거권을 심도있게 다루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통합차원에서 정주이주민의 피선거권은 국정선거차원과 지방선거차원으로 구분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차원의 선거에 정주이주민의 피선거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방차원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이주민에게는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본다.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의 행사도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제한의 합헌성심사에 선거권과는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⁶²⁾ 평등선거 원칙에 의해도 신분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연령 혹은 거주요건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뿐 신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다.

나) 개선안

이주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 인정이 미칠 영향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46.7%,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45.7%,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44.8%,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44.1%,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43.2%,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보아도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민주적 절차에도 어

62) 헌법재판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립된 태도는 없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주권행사의 한 양식임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정태호(2008),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논총」 19집, 헌법재판소.

긋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에서 선거권을 갖는 이주민의 경우는 피선거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이 주권자의 권리로서 동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이주민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선거권만 인정하고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 이주민이 자신의 선거권 인식정도가 낮고 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 당사자의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이주민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선거 후보자가 이주민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선거를 해도 우리의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계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를 검토하면 정주이주민에게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고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를 행하므로 국민주권과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도 할 수는 있기는 하다. 노르웨이는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인도 등의 국가는 일부 제한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이라고 피선거권을 배제하기보다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책임 있는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무를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집단을 통해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 참여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외국인 인구 성장과 함께 이주민 당사자 운동의 전면화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주민의 피선거권 인정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나 그에 대한 제한요건이 보다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

가) 현황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민도 주민의 자격이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로서 제13조제1항에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주민의 권리로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제13조제1항), 지방선거참여권(제13조제1항), 주민투표권(제14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제15조), 감사청구권(제16조), 주민소송청구권(제17조), 주민소환권(제20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다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동일한 요건 하에서 주민소환투표권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의 요구를 하지 않아 완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개선안

현행 법제는 국민과 주민을 구분하여 19세 이상으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은 국민인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VI-2〉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출입국관리법

가) 현황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위험이 크다. 아직은 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용받아 강제퇴거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실제로는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외국인은 정당을 설립하거나 당원이 될 수 없고(「정당법」 제22조), 일부 영주자격 체류자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외 투표권, 피선거권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반면 적국에 의한 내정간섭, 폭동·선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오히려 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규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다. "정치활동"이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⁶³⁾ 다른 법률상 규정된 "정치활동"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63) 헌법재판소 2004.03.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종래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4조(공무원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 및 그밖에 제72조(국민투표권)가 규정하는 이른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예시 문구도 없어 입법취지 및 관련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⁶⁴⁾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곤란하다. 결국 광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과 양립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연혁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1977년 전부개정 당시 도입되었다.⁶⁵⁾ 당시 개정이유는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류증대에 따라 출입국자의 수가 격증하고 있어 내·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활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실정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규율하려는 것이었으며, 제23조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05년 3월 24일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제17

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존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그 중 정치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64) 헌법재판소 2014.08.28. 선고 2011헌가18 결정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이 비록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규정 및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교원노조의 인정취지, 그리고 관련 규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고, 교원노조는 교육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 내용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4.07.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이 사건 정의조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란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 정의조항이 예시하고 있는 ‘정당 등’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5) 「출입국관리법」 [시행 1978.4.1.] [법률 제3044호, 1977.12.31., 전부개정]

제23조 (활동범위)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제2항).

사실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동법 제17조상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이주노동조합의 지도부를 표적단속하거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입국당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에서 집단행동, 집회참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을 듣기도 한다. 그리하여 「출입국관리법」의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모르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음은 알고 있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⁶⁶⁾

“정치활동”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 참정권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그 안에서 외국인의 정치활동의 허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각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85년 UN총회는 “거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을 채택하여 모든 외국인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거주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⁶⁷⁾

나) 개선안

정부는 동 조항에 대해 협의의 참정권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경우도 있으나,⁶⁸⁾ 그 해석론의 근거를 찾기 힘들며 그렇게 해석한다면 무용한 조항에 불과하다. 실제로 동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으나, 위 조항의 존재로 인해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있어 문제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정치행위를 자제할 것을 학교 담당자가 요청한 사례, 외국인 유학생이 위 조항을 이유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시위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⁶⁹⁾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심사과정의 문제에 항의하는

66)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52~53면.

67) 이주정책포럼, 위의 책(주 66) 54면

68)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 김병철 사무관 발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의 2006. 10. 26., 법무부 김종훈 인권국장 발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의 2006. 10. 26. 황필규, 외국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유엔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인용.

69) 체류 외국인이 ‘박근혜 퇴진’ 외치면 추방? 2016.12.9. 뉴스1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법무부 난민과 직원들이 위 조항을 예시로 들며 정치활동은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 등이 있다. 사실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 조항에 의해 위축되는 것도 활동가들이 꾸준히 주장하는 문제이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제한에 엄격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즉, 이주민의 경우 선거활동은 다소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특히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내지 침해이고 더 나아가 강제퇴거와 같은 제재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⁷⁰⁾

이를 위해 과거 1960-1990년대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활동을 한 외국인들의 경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및 정치적 의사표현은 정치적 기본권이면서 자유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치적 활동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 운동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도 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강제출국의 처분은 과도하여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강제출국은 보통 수년간의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특히 이미 한국 사회 내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한 이주민에게는, 강제출국은 이러한 기반 및 관계가 일순간에 모두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정치활동의 '금지'는 강제출국 등과 같은 고강도의 '불이익'과 결합하여 위축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 강제출국 등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모호한 개념의 정치활동으로 강제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외국인 관련 행정편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나

<http://news1.kr/articles/?2853042>

70)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시행령에서는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하여 준사법적 또는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VI-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삭제,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현행법	개정안
<p>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p> <p>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p> <p>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p> <p>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p> <p>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p> <p>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p> <p>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p> <p>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p> <p>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p>	<p>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p> <p>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p> <p>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p> <p>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p> <p>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p> <p>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p> <p>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p> <p>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p> <p>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p> <p>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p>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정 참여 내용 규정

가) 현황

이주민들과 관련된 조례의 명칭도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고 명하면서 거주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광역단체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이다. 이외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고 명하면서 거주

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관련 조례 내용에서 이주민 지위에 대한 조항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선안

이주민들의 ‘권리 필요이유’는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 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사실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은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등이 광역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민 등에 대한 행정참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표 VI-4〉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

현행법	개정안
<p>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신설</p>	<p>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대구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p>	<p>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거주외국인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하게</p>

현행법	개정안
<p>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광주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강원도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강원도 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강원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 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3조(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3조(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현행법	개정안
<p>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신설</p>	<p>도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전라북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③ 신설</p>	<p>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③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현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을 인정하는 것은 광역단체 등의 행정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 광역단체 등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VI-5〉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p>	<p>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p>

현행법	개정안
<p>인주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인주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p>	<p>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전라남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전라남도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p> <p>① 전라남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전라남도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p>	<p>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p>

현행법	개정안
<p>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p> <p>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p> <p>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충청남도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p> <p>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충청남도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2) 협의회 등에 참여규정

가) 현황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신이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주민 관련 협의회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상의 각종 위원회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한다고 반드시 해당 지역 내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거버넌스가 창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접촉 지점을 늘리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조직에 외국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⁷¹⁾

법적인 권리 이전에 지역 안에서, 직장 안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성원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에 대하여 세금 논쟁이 많은데 세금을 내고 있는 이주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금이 주민 수에 비례하여 주는 것인데, 거기에 이주민 주민

71) 최영미·전경숙·정은지(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주민은 세금은 내는데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통로가 닫혀 있다. 예를 들어, 구로중학교의 30%, 대동초등학교의 1~2학년 90%가 중국동포 인데,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에 중국동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단 1명도 없다. 사실 선거권, 피선거권 가기 이전에, 동네정치에서도 비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에서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관련단체 어디에도 이주민이 없는데,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이야기하려면 그러한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안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지원조례상의 협의회 구성시 이주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또는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기간과 범위도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또한 현재 우리 법제상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달리 보고 있고 광역지자체 중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외국인주민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상의 협의회 및 위원회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표 VI-6〉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경상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현행법	개정안
<p>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경찰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p> <p>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u>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u></p> <p>④ 생략</p>	<p>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경찰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p> <p>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와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u>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u></p> <p>④ 생략</p>
<p>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4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30% 미만인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p> <p>2.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p> <p>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p> <p>4.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문화가족분야 전문가</p> <p>5. <u>다문화가족으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u></p> <p>⑤ 생략</p>	<p>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2.06.21.))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4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30% 미만인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p> <p>2.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p> <p>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p> <p>4.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문화가족분야 전문가</p> <p>5. <u>다문화가족으로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u></p> <p>⑤ 생략</p>
<p>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생략</p>	<p>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생략</p>

현행법	개정안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p>④ - ⑥</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p>④ - ⑥</p>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3. (생략)</p> <p>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p>	<p>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3. (생략)</p> <p>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p>
<p>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시책위원회)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③ - ④ 생략</p>	<p>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시책위원회)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③ - ④ 생략</p>
<p>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협의회의 구성)</p>	<p>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협의회의 구성)</p>

현행법	개정안
<p>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7. (생략)</p> <p>8.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p>	<p>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7. (생략)</p> <p>8.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p>
<p>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4 생략</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여성가족국장</p> <p>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생략</p>	<p>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약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4 생략</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여성가족국장</p> <p>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생략</p>
<p>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6조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p>	<p>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6조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p>

현행법	개정안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대표 4.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외국인지원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대표 4. 그 밖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신설 	<p>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p>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p>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p>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 	<p>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

현행법	개정안
<p>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p>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p>	<p>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p>

현행법	개정안
<p>제8조(협의회 구성·운영)</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2. (생략)</p> <p>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p>	<p>제8조(협의회 구성·운영)</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2. (생략)</p> <p>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p>
<p>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7조 (구성 및 운영)</p> <p>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p> <p>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p> <p>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p> <p>4. 신설</p> <p>③ - ⑦ 생략</p>	<p>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 <p>제7조 (구성 및 운영)</p> <p>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p> <p>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p> <p>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p> <p>4.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p> <p>③ - ⑦ 생략</p>
<p>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p> <p>제7조(위원회의 설치)</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3. (생략)</p> <p>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p>	<p>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p> <p>제7조(위원회의 설치)</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3. (생략)</p> <p>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p>

현행법	개정안
<p>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신설 ④ - ⑦ 생략</p>	<p>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다문화가족 정책 소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2. 경기도의회 의원 3.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④ - ⑦ 생략</p>
<p>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3. (생략)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p>	<p>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3. (생략)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p>
<p>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전남도 행정부지사, 다문화가정업무 담당국장, 전남교육청 담당국장, 전남지방경찰청 담당과장,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소장, 법무부광주출입국사무소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p>	<p>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7조(외국인주민지원시책 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전남도 행정부지사, 다문화가정업무 담당국장, 전남교육청 담당국장, 전남지방경찰청 담당과장,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소장, 법무부광주출입국사무소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p>

현행법	개정안
<p>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③ -④ 생략</p>	<p>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u>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③ -④ 생략</p>
<p>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협의회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고용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4.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u>사회활동 참여 경력, 또는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u> <p>④ 생략</p>	<p>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협의회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고용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4.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u>사회활동 참여 경력, 또는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 가족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자</u> <p>④ 생략</p>
<p>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p> <p>① - ② 생략</p> <p>③ 협의회는 정무부지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전북교육청 교육담당 국장, 전북경찰청 외국인 관련 부서장, 전주고용센터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 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18. 6. 29>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 	<p>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p> <p>① - ② 생략</p> <p>③ 협의회는 정무부지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장, 전북교육청 교육담당 국장, 전북경찰청 외국인 관련 부서장, 전주고용센터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 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18. 6. 29>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

현행법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화가족 대표자</u></p> <p>④ -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화가족</u></p> <p>④ - ⑥ 생략</p>
<p>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8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6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경제관련 국장·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위촉직 위원(9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거주외국인 등 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 대표,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p>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8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연직 위원(6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관련 국장·경제관련 국장·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위촉직 위원(9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u>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등</u>, 거주외국인등 단체 대표, 거주외국인 등 지원 단체 대표,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p>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p>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특별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u>거주이민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당사자</u>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현행법	개정안
<p>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p> <p>④ 생략</p>	<p>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p> <p>①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협의회'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들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 당연직 위원</p> <p> 가. - 나 생략</p> <p> 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p> <p> 라.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 나. 기관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④-⑥ 생략</p>	<p>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9조(협의회)</p> <p>①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협의회'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들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 당연직 위원</p> <p> 가. - 나 생략</p> <p> 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p> <p> 라.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 나. 기관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④-⑥ 생략</p>
<p>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 가. (생략)</p> <p> 나. 학계 및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p>	<p>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협의회 설치)</p>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p> <p> 가. (생략)</p> <p> 나. 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p>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2017년 현재 이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으로 거주외국인의 10.8%에 해당한다.

자녀의 연령대는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 56.4%(113,506명), 초등학생(만 7~12세), 28.2%(56,768명), 중고생(만 13~18세) 15.4%(31,059명)이다. 행안부 통계는 결혼이주민과 등록된 거주외국인 등의 자녀에 대한 통계이므로 실제로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수는 이 통계보다 많을 것이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지 조사결과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은 과반수인 53.6%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하였다. 이주민 당사자나 관련자 등의 인터뷰 결과를 보아도 학부모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이주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잘 참여하는 분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아이여서 뭐 그렇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워서 꺼리는 분들도 계세요. 학부모회에는 현실적으로 좀... 저는 한국적인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이가 반장이 되는데 학부모회 회장이 되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다 알고 잘 하시고 하는 걸 저는 잘 모르니까... 힘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 2)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주여성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주여성 중에 어떤 엄마들도 같이 어울리는 거 무서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왜 무서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노력하면 되지. 가자!”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가요. (면접자 1)

이 연구에서 이주민 대상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주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의 상당수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법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회는 학교전반에 대한 중요 모니터링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 의견전달이나 학교행사 등에 학부모 참여 독려 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법규 내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무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위원이 구성원의 40% 내지 50%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이주민을 고려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 이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근거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무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부모위원 40% 내지 50%를 구성시 성별, 이주민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법	개선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 <u>위원 구성시 성별, 이주민 등을 고려한다.</u>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

현행법	개선안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④ 생략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④ 생략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초·중등학교법에 학부모회에 법적 근거 마련하여 학부모회의 학교참여활동을 기반조성하고 학부모회 구성시 성별, 이주민에 대한 내용 규정 필요함

2.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언

가. 이주민에 대한 참정권 등에 대한 교육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조사 항목에 포함된 권리는 이주민의 체류자격에 따라 일정 자격을 보유한 이주민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들에서 ‘있음’이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정권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등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는 귀화자를 포함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영주자격 체류자 등에게도 인정되지만, 이 역시 인식 실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현행법상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자의 경우, 94%가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나머지 1.5%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하였고,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도 각각 1.5%와 3%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화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주자격 체류자의 경우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42.4%, ‘모름’ 24.2%에 달했다.

그러나 이주민 권리인정 요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 및 사회보

협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단체의 설립·가입 및 활동', '노동조합의 설립·가입 및 활동' 각 58.0%,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6.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개정 청구권' 각 55.0%,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53.3%,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52.2%,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리 필요이유'로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가 2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까'(26.5%),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22.7%),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16.3%) 등의 순이다.

이는 선거권에 대한 보유인식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교육 또는 홍보 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한국민의 경우에도 이주민의 체류자격별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드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주민은 국적 취득자, 영주비자를 취득하고 제도적으로 정치참여 보장된, 한국사회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 단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 이주민의 층위가 다 다르다. 귀화자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면, 국적 취득해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다. 어떤 제한도 없이 다 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한국말, 응급처치 정도만 배우고 정당 지지나 그런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별 그룹, 생애주기에 맞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참정권, 정치권에 대한 교육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해뿐 아니라 조금 더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 정당이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정당방문 등, 마을정책에서 요구도 등을 발표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인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주민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방안 강화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류형태별 투표경험을 보면 ‘귀화자’가 90.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에 비추어 매우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5(영주)’의 투표율은 63.6%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성별 투표경험으로 ‘여성’은 ‘귀화자’가 90.3%, ‘F-5(영주)’(70.0%)가 투표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남성’은 ‘F-5(영주)’가 100%가 투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성이 오히려 권리행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체류형태별로 ‘F-5(영주)’(58.3%)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F-5(영주)’(55.6%)와 ‘귀화자(50.0%)’ 모두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F-5(영주)’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각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남성은 앞서 F-5(영주)의 경우 투표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선거에 대하여 그 나라 언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정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선거에 관련된 정보제공을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참여나 지역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중 언어적 장벽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선거공보(온라인이나 각 선거단위별로) 또는 선거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나, 주민투표 관련한 부분 등에서 한국어 비숙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치하면 좋을 것 같다.

선거절차는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각 후보자 공보물에 대하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지난 월드컵 때 호주에서는 36개 언어로 송출했다고 한다. 지방선거 등에서 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국가가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 재난방송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로 송출할 필요가 있다. 응급상황에 대피 등을 할 수 있게 재난 방송, 라디오 등은 다국어로 방송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은 고베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여 재난 시 라디오방송을 10여 개국 언어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충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의 참정권 행사 등을 위해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선거관련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민 강사도 있고, 이주민 대상 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의회 선거 등에서 이주민할당제 등 제도 도입 필요

이주민 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의 중요 정도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 57.7%,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54.5%,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53.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47.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45.0%,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43.9%,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38.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37.4%로 나타났다.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권뿐만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기에는 우리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시기가 길지 않아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방의회나 구의회 등에서 일부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주민이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선 일정한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일정비율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주민이 거주 하는 지역에서 이들은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일정비율 의 원으로서 참여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주민 자녀지원 강화

이주민 기본권의 범위가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아동의 경우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아동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동이 전 인류의 미래라는 점, 아동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였다면 그 책임은 그 아동이 거주하고 성장한 국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국가의 책임은 자국 국적 아동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권은 물론, 보육권 또한 교육의 전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양질의 양육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국적이라고 해서 당연히 배제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모든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보육법」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3조제3항)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예산(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5세 한국 국적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난민아동을 제외한 외국 국적의 아동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⁷²⁾ 높은 보육료 부담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육기관의 보육 서비스는 유아의 성장 발달, 한국어 습득 및 정규교육 준비를 위해 필요한데, 적절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주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지적능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

72)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2018, 310면.

다.73)

이주아동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육지원 및 이후 교육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이주아동의 한국 사회통합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주아동 가족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이주아동의 보육권 및 교육권이 중요한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을 불가피하게 본국의 친척에게 보내어 맡기는 등 비자발적인 가족해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마. 사업장 이동,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장

이주민에 대한 권리 인정 관련하여, 이주민들의 권리요구 정도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68.8%,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67.7%,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67.4%,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67.2%,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5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10년 가까이(4년10개월+4년10개월) 한 사업장에 묶어놓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1년을 넘기지 못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2007년 실효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통상 최초 체류기간에 맞추어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사용자의 재고용허가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해서 같은 사용자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능에 가까우며,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위반 또한 모두 사업장변경사유가 되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요건(예를 들어 30%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사유가 된다.

특정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은 인권침해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철저한 근로감독이

73)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한국어 교육 부재가 아동들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최근에 보도된 바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222257005

필요하나 고용노동부 자체 통계에 의하더라도 범위반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고 사법처리나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농축산어업의 경우 사업장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이 넓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민은 한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동안에만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만 수급자로 선정되며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는다. 사회보장권 제한에 대한 근거로 흔히 상호주의를 들고 있으나, 상호주의라고 한다면 한국인의 사회보장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국가(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권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서유럽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사회보장권을 상호주의만으로 규율하려는 것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생활의 기본적 조건을 형성하는 권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외국인을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잠탈하는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같은 맥락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를 최초 3년의 취업기간 동안 3회, 추가 1년 10개월 동안 2회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승인을 요구한다. 또한 사업장을 옮길 경우에도 1개월 내에 구직신청 하지 않거나, 3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1년 이상 2개월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침해의 정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상 이주노동자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때문에 입증이 어려운 차별적 대우, 상습적 폭언, 성폭력 등은 문제제기조차 어려우며, 명백해 보이는 임금체

불이나 근로계약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와 노동청이 이주노동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현장단체 활동가들의 문제제기이다.⁷⁴⁾ 고용허가제의 기본 전제가 정주화 방지 및 (노동력의) 단기순환정책이므로, 필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가 쉽게 감춰지고 구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이주노동자를 소외, 차별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를 결혼이주민과 난민 인정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임신 또는 양육, 국민의 양육” 등의 기여를 기준으로 수급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성격은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부 이주민들을 배제시키고, ‘권리’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구획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인권중심차원에서의 사회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법과 정책의 검토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바.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2012)”에 따르면,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 평균은 51.17점이었고, 하위 20%에 속한 집단의 평균 지수는 30.91점, 상위 20%에 속한 집단의 평균 지수는 70.8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첫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타난 평균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위 20%의 평균 지수가 70.89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11월 26일 - 12월 14일 제97차 세션 대한민국 17-19차 국가 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52면.

다.75)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1+2+3순위 기준)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5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55.2%),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38.6%),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24.9%),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23.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14.1%),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12.9%),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주민의 권리라고 하면 뭐 거주권, 체류권, 뭐 참여에 대한 권리,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니까 여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적 따지기 이전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생활하고 똑같잖아요, 국적만 다를 뿐이지... 한국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되는 대로 이주민도 그런 권리가 같이 보장이 되고, 이주민이어서 이거 안 되고 한국사람이어서 이거 된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있다면, 이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피해 입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사는 곳,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전한 화장실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노동 등 하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그런 능력 좀 키워주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면접자 2)

지금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주민들은. 가시 울타리처럼 그런 게 있어요.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지금 목소리도 내지 못해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일 시키고. (면접자 1)

제일 먼저 저는 아까 외국사람하고 한국사람하고 외모 인식 있잖아요. 제일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통합하려면 그거 먼저 바뀌야 할 것 같아요. 제일먼저. 백인하고 흑인하고 그담에 우리 아시안 쪽으로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 시선하고 말투하고 시각 드니까 이거 제일먼저 개선해야 된다 생각 들어요. (면접자 6)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시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뿐만

75) 여성가족부(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120면.

아니라 이주민들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선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주민의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이해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서로간의 만남이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상두, 김민정, 김성진(2017), 『이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생애주기 언어·문화교육정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고상두·하명신(2012),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 제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곽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춘권(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 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제4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센터.
- 김민정(2007), “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선택(2012),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 김영란(2015), “독일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 법제 연구”, 『독일연구』 29, 한국독일사학회.
- 김용찬(2011), “영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1호, 한국정당학회.
- 김은정 외(2017),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근(2017),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와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 창간호 Vol.1.
- 김태완·서재권(201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제55권 제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형민(2010),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미국의 다문화 참정권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제42권, 한국민족연구원.
- 김혜련(2014), “한국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주민의 인식과 수요조사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8권 제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노호창(2017),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박미경(2013),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획득 문제의 최근 동향”, 『일본공간』 제13권, 국

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박채복(2008),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6권, 한국동북아학회.
- 박해육·윤영근(2016),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통합정책 연구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54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해육·윤영근(2018), “지방정부의 이주민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Stuttgart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박호성(2011), “논단: 한국 사회의 이주민 참정권 문제”, 「민족연구」 제47권 제0호, 한국민족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보건(2009),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법제 633호, 법제처.
- 손병덕(201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간기관의 역할”,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7권,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 송석원(2010),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일본에서의 이주민 통합과 참정권”, 「민족연구」 제42권, 한국민족연구원.
- 신은주(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경인행정학회.
- 오동석(2005),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헌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 여성가족부(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윤수(2017),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 그리고 분배정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규영·김경미(2009),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정치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유럽학회.
- 이규영·김경미(2010),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이주민의 참정권”,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미영(2017),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병하(2014),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 이상우(2011), “다문화시대의 이주민 참정권”, 『대한정치학회보』 제19권 제2호, 대한정치학회.
- 이용승(2016),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제65권, 한국민족연구원.
- 이윤환(2005),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 이윤환(2008),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한국법학회.
- 이윤환(2013),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 임형백(2014),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다문화와 평화』 제8권 제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임희선·김경제(2017),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일 고찰 -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3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장명선 외(2016),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장미혜 외(2008),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서연(2009), “사회권관련 국내법현황 및 국제기준의 이해”,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권 워크숍 자료집』.
- 전중평(2010), “각국의 외국인 참정권: 재일외국인 참정권”, 『민족연구』 제42권 제0호, 한국민족연구원.
- 정상기(2018), “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제24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정상우(2016),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 정상호(2010),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한국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성에 대한 연구”, 『민족연구』 제44권 제0호, 한국민족연구원.
- 정상호·전찬희(2013),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참정권 제도의 비교 연구: 시민적 공화주의의 제도적 함의”, 『아시아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아시아학회.

- 정태호(2008),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보장과 발전”, 「헌법논총」19집, 헌법재판소.
- 정해성(2016),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보장-인간의 권리로서 공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2권 제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조항록(2011),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실제와 과제”, 「다문화와 평화」 제5권 제2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정기학술대회」.
- 최영미·전경숙·정은지(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유(2008),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사회과학연구」 19,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윤철(2012), “다문화주의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 한상우(2010), “독일의 다문화사회 통합정책과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3호, 한독사회과학회.
- 황미경(2010), “국내 외국인 이주민 지원제도와 복지권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3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황필규(2009),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법학논총」 제16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황필규(2017), “이주민과 사회권”, 「월간 복지동향」 22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Bauböck, Rainer, How migration transforms citizenship: international, multination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Wien: Ö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2)

Castles, Stephen,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Earnest, David C., Old Nations, new Vote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008)

Ireland, Patrick, “Reaping What They Sow: Institutions and Immigra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in Ruud Koopmans and Paul Statham eds., Challenging Im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38.

- Joppke, Christian, "Citizenship in immigration states" in Ayelet Shachat, Rainer Bauböck, Irene Bloemraad, Maarten Vink eds., *The Oxford Handbook of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Kofman, Elenore, Annie Phizacklea, Parvati Raghuram, Rosemary Sales,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 Marshall, T.,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http://www.mipex.eu/political-participation>
- Marticiello, Marco, "Political Participation, mobilisation and representation of immigrants and their offspring in Europe" in Rainer Bauböck ed., *Migration and Citizenship*
- Niessen, Jan, Thomas Huddleston, Laura Citr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07) <http://www.integrationindex.eu>,
- Raskin, Jamin B., "Legal Aliens, Local Citizens: The Historical, Constitutional and Theoretical Meanings of Alien Suffrag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1-4 (1993)
- T.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 <http://www.mipex.eu/political-participation>



부록

1. 이주민 당사자 설문조사지
2.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지

※ 부록1. 이주민 당사자 설문조사지

분류코드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함께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관련 통계 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주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수행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장명선 02-3277-2764
회신처	OOO 실장 Tel. 02-000-0000 Fax. 02-000-0000 E-Mail. ooo@neorns.com		

■ 조사정보

조사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2018년 __월 __일

■ 설문 응답 요령

- 해당되는 번호나 빈칸에 √를 표시하시고,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써주세요.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A**응답자 인적사항****A01** 귀하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태국 ② 인도네시아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캄보디아 ⑥ 중국 ⑦ 일본 ⑧ 기타 ()

A0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A0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여성 ② 남성

A04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동거

A05 귀하가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_____년

A06 귀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②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③ 시간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A07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무직 ② 관리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축산업 종사자 ⑧ 기능직 종사자 ⑨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노무 종사자 ⑪ 학생 ⑫ 전업 주부
 ⑬ 자영업 ⑭ 강사/통번역사 등 ⑮ 기타 ()

A08 귀하의 현재 개인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A09 한국에서의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 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 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 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A10

귀하와 동거하고 있는 19세 이하 (2000년 이후 출생)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그 중 미취학(8세 이하, 2011년 이후 출생)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 수 _____ 명 중 미취학 자녀 _____ 명

A11

귀하께서 처음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국에 체류(거주)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최초 입국 시기 _____ 년 _____ 월

총 체류(거주)기간 _____ 년 _____ 개월

☞ (예시) 2018년 5월

☞ (예시) 12년 3개월

A12

귀하의 현재 체류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E-9 (고용허가제, 단순노무) | ② E-7 (전문직) |
| ③ F-6 (결혼이민) | ④ F-5 (영주) |
| ⑤ F-4 (재외동포) | ⑥ F-2 (거주) |
| ⑦ H-2 (방문취업) | ⑧ D-2, D-4 (유학생) |
| ⑨ 귀화자 | ⑩ 미등록자 |
| ⑪ 난민 | ⑫ 기타 거주자 |

A13

귀하의 현재 한국어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에 해당하십니까?

- ①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 ②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은 못한다
- ③ 간단한 자기소개, 안부인사가 가능하다
- ④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정도로 활동한다(말하고, 읽고, 쓰기 가능)
- 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능숙하다(말하고, 읽고, 쓰기 능숙)

B

정치적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

B01

현재 귀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 B01-1로 이동) ② 아니오 (☞ B02로 이동) ③ 모름 (☞ B02로 이동)

B01-1

귀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B02로 이동) ② 아니오 (☞ B01-2로 이동)

B01-2

귀하께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어를 잘 몰라서
- ②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 ⑤ 찍고 싶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어서
- ⑥ 투표장까지 거리가 멀고 방문하기 어려워서
- ⑦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⑧ 한국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 ⑨ 기타 ()

B02

한국 사람은 다음과 같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있음	없음	모름
1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2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4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5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①	②	③
6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①	②	③
7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①	②	③
8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①	②	③
9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①	②	③

B03

한국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자유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있음	없음	모름
1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①	②	③
2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3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①	②	③
4 사회단체(시민단체 등) 등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5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①	②	③
6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7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8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SNS, 언론매체 등)	①	②	③
9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B04

귀하께서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통	상당히 인정받는다	매우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C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정도

C01 귀하는 다음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인정 시점은 입국시기를 기준으로 언제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필요 없다 (☞ D01로 이동)	필요한 경우, 인정 시점 (☞ C01-1로 이동)				
		3개월 이전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2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3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4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6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7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8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①	②	③	④	⑤	⑥
9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10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①	②	③	④	⑤	⑥
11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12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13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C01-1 이러한 권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주민과 내국인은 모두 한국사회 구성원이니까
- ② 이러한 권리의 인정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 ③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니까
- ④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 ⑤ 기타 ()

D 사회통합을 위한 권리 보장의 수용성 정도

D01 귀하는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된다면 다음 항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미치지 않는다	←	→	매우 미친다
1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02 귀하는 이주민에게 한국인과 동등하게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	→	매우 걱정한다
1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민의 고용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이주민 범죄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기타(직접 기재해 주세요)				

D03 다음은 이주민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집회시위, 정치적 표현, 투표 등)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정치,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항상 추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직접 기재해 주세요)					

E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E01 다음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①	②	③	④	⑤
2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①	②	③	④	⑤
4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8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①	②	③	④	⑤
9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①	②	③	④	⑤

E02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가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전면적인 인정
- ② 참정권 인정 비자 범주의 확대
- ③ 선거권 인정 거주 기간 범주의 축소
- ④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 ⑤ 이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 ⑥ 학부모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참여 및 한국인과의 관계 증진 지원
- ⑦ 문화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⑧ 권리공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개선
- ⑨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에 이주민 할당

E03 위 항목 이외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통합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부록2. 이주민 관계자 설문조사지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

-			
---	--	--	--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함께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이주민의 정치권 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관련 통계 마련과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 설문 대상자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처리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주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수행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장명선 02-3277-2764
최신처	이상희 대리 Tel. 02-3142-8055 Fax. 02-3446-8007 E-Mail. ssang2@neorns.com		

■ 조사정보

조사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2018년 __월 __일

■ 설문 응답 요령

- 해당되는 번호나 빈칸에 √를 표시하시고, 괄호 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써주십시오.
-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A**응답자 인적사항****A0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세

A0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 ① 여성 ② 남성

A03 귀하의 현재 근무기관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
-
-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글로벌센터
-
- ③ 이주민 지원 NGO, 종교단체, 노동조합
-
- ④ 이주민 공동체
-
- ⑤ 중앙정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
- ⑥ 지방자치단체
-
- ⑦ 기타 ()

A04 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주민을 접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거의 만날 기회가 없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 ③ 1주일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3-4회 이상
-
- ⑤ 거의 매일 만난다

A05 이주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체류, 귀화, 가족초청 등 관련 ② 노동, 인권 문제 상담
-
- ③ 한국어 습득 및 문화 적응 ④ 취업 및 경제적 활동 관련
-
- ⑤ 가족관계 유지, 가정폭력 관련 ⑥ 출산·육아·아동수당 등 관련
-
- ⑦ 기타 ()

A06 귀하가 이주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총 재직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B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

B01 귀하는 이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항목	있음	없음	모름
1 등록 외국인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이 있다	①	②	③
2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3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①	②	③
5 등록 외국인인 누구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6 등록 외국인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②	③
7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다	①	②	③
8 등록 외국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9 미등록 외국인이 산재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 등록 외국인인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B02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통이다	상당히 인정받는다	매우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B03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다음 항목의 권리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시다면 인정 시점은 언제 부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필요 없다	필요한 경우, 인정 시점			
		3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 정당의 설립 전면 보장	①	②	③	④	⑤
2 정당 가입 및 활동 전면 보장	①	②	③	④	⑤
3 단체의 설립, 가입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6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7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위원회에 이주민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개정청구권	①	②	③	④	⑤
9 사업장 이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제도의 균등한 적용	①	②	③	④	⑤
11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보육권 등 보장	①	②	③	④	⑤
12 국적취득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13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①	②	③	④	⑤

B04 귀하는 미등록 체류(불법 체류) 이주민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찬성 한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대체로 아니다	반대 한다
1 체류 불안없이 지역사회 축제 등 문화 행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한 보상	①	②	③	④	⑤
3 미등록 체류 청소년의 국내 대학 입학 기회 부여	①	②	③	④	⑤
4 미등록 체류 이주민의 긴급 의료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 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6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7 등록 외국인과 똑같은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⑤

C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사항

C01 귀하는 이주민에게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권이 인정된다면 다음 항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미치지 않는다	← →		매우 미친다						
1 이주민의 적극적인 경제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이주민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다문화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이주민의 주민권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이주민의 유입 확대로 사회복지비용 등 부담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출신민족 및 국가 등의 문화나 가치관의 충돌로 사회적 불안 야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이주민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이주민의 유입 증가로 한국민의 고용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혐오 등 갈등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이주민 범죄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이주민 소득의 자국 송금으로 외화 유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기타 (직접 기재해 주세요)										

C02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이주민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 ②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 보장
- ③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 보장
- ④ 이주민의 가족 결합권 보장
- ⑤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 ⑥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외국인 가족에 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등 주거 복지
- ⑦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보장
- ⑧ 기타 _____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 인쇄일 | 2018년 11월 28일
| 발행일 | 2018년 11월 29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2125-9841
| F A 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 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代)

ISBN: 978-89-6114-664-7 93330 비매품

